

國內言論關係判決集

第 5 輯

言論仲裁委員會

言論仲裁委員會는 「定期刊行物の 登録 등에 관한 法律」, 「放送法」, 「綜合有線放送法」, 「公職選舉 및 選舉不正防止法」에 의거 反論 및 訂正報道請求와 追後報道請求에 따른 紛爭을 仲裁 하고, 言論侵害에 관한 사항을 審議합니다.

발 간 사

現代社會 어디를 가더라도 언론매체는 여러가지 형태로 존재하며, 그 영향력은 우리들 삶의 구석구석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의 발전양상 또한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 넘어 限없이 擴散되어 가는 實情입니다. 신문과 지상과 방송으로 대표되던 올드 미디어와는 달리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인터넷 신문이나 DBS(직접위성방송), 쌍방향TV 등 다양한 형태의 뉴미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생활에서 언론과 관련되지 않은 領域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이며, 언론의 영향력은 더욱 擴大·深化되어 현대사회의 본질적인 성격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언론환경의 변화와 발전은 국민들의 알 권리와 언론소비자로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社會統合의 매개체이자 社會發展의 촉진제로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昨今の 국제통화기금(IMF)체제하에서도 이러한 언론의 순기능적인 영향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언론이 과소비자제, 근검절약을 강조하는 계도성기사나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의 흐트러진 자세를 바로 잡는가 하면 '신국채보상운동'으로 불리는 금모으기 운동, 증권갓기 저축운동 등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量的, 質的으로 팽창하고, 보다 치열한 경쟁의 환경 속에 처해진 언론에 의해 일반국민의 人格權이나 기업의 信用權 등이 침해될 蓋然性이 증가하는 역기능적인 측면을 看過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언론매체의 발전이 어떠한 형태로 전개된다 하더라도 언론의 자유와 책임간의 조화라는 根源的이고 內在的인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론에 대한 최소한의 法的 規制는 언론자유의 伸張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은 수레의 양바퀴와 같은 것이어서 어느 한 쪽도 과장되거나 소홀히 여겨질 수 없으며 서로가 서로를 代替할 수 없는 相互補完하는 관계에 있다 할 것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러한 인식의 토대 위에 보도로 인한 분쟁사건을 처리함

에 있어 언론자유의 伸張과 국민의 權益保護라는 두 가치 사이의 조화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당위원회는 중재업무와 관련해 수집한 언론관련 판결들을 모아 국내언론관계판결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미 1990년에 제1집을 시작으로 하여 1997년에 제4집까지 출간한 바 있습니다.

언론관계판결에 관한 국내의 唯一한 자료집이라고 할 수 있는 본 판결집에 언론계, 학계, 법조계 등에서 그 동안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었습니다. 위원회는 이에 부응하고자 새롭게 축적된 사례들을 모아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5집을 이번에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할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5집에는 1996년 ~ 1997년 중의 판결례와 결정례 총 32건을 수록하였으며 그 내용은 반론보도청구사례 10건, 정정보도청구사례 2건, 손해배상청구사례 12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례 2건, 헌법재판소결정사례 3건, 기타사례 3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진하지만 언론관계판결들의 범주를 확대하여 언론의 자유와 책임과 관련된 보다 다양한 사례들을 수록함으로써 자료집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언론으로 인한 많은 분쟁들이 법원에까지 이르지 않고 중재위원회의 중재과정에서 해결되어 迅速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언론사의 언론소비자에 대한 능동적인 서비스 정신과 양 당사자 모두의 互讓의 정신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본 판결집이 언론과 피해자간의 권익분쟁의 조정에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고 바람직한 보도방향을 정립해 나가는 데 충실한 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1998년 6월 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김 두 현

차 례

I . 반론보도청구사례

- 1 국가전복의 저의가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의견에 불과하고 노조간부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노조활동이라는 신청인의 정정보도 요구는 이유없다
한국 노동조합 對 경향신문사 외 6인
(서울고등법원 95라178, 대법원 96마367) …… 11
- 2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문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반론보도를 게재하라
양 對 축산신문사 (서울지방법원 96카기2889) …… 26
- 3 검찰 발표내용이라 하더라도 신문을 통해 공표된 이상 이는 피신청인의 사실적 주장으로서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된다
국 對 연합통신사 (서울지방법원 96카기2868) …… 30
- 4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 1인이 언론중재절차를 거쳤다면 다른 피해자는 중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중앙일보사 對 바른언론신문사 (서울지방법원 96카기2828) …… 35
- 5 신청인은 보도로 인해 인격적 법익과 영업적 이익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라
전 對 한국방송공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6카합1231) …… 41
- 6 전체 기사 중 원고의 반론내용 위치와 분량 등에 비추어 피고가 반론내용을

일부 보도한 것만으로 원고에게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 없다
**황○○ 對 한겨레신문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6카합3172,
 서울고등법원 96라265) …………… 49**

7 보도내용에서 특정되거나 추지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당해보도가 그 사람에 관한 것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나 언론기관이
 그 사람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등은 개별적인 연관성이 인정된다
**정□□ 對 한국방송공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4카합3123,
 서울고등법원 95나11261, 대법원 95다37278) …………… 61**

8 속보와 해설 기사를 통해 신청취지가 상세히 보도된 이상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다
**정□□ 對 강원일보사 (춘천지방법원 95카기299, 서울고등법원 96나44350,
 대법원 97다28803) …………… 73**

9 반론보도는 단순한 반박뿐만 아니라 원문보도를 보충하거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반론보도문의 사실주장을 입증하는 새로운 사실을 적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강□□ 對 한국방송공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7카합3509) …………… 91

10 구 정간법상 정정보도청구권하에서 원 보도내용이 사실에 반한다고
 밝혀진 경우에는 단순한 반론에 그치지 아니하고 정정을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방송위원회 對 (사)한국광고주협회 (서울지방법원 95카합135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5카합2283, 서울고등법원 95나38815,
 대법원 96다40998) …………… 98**

II . 정정보도청구사례

- 1 허위기사를 게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의제자백하였으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서□ 외 24인 對 남원신문사 (전주지방법원 96가5949) ······ 118

- 2 문제된 프로그램은 음주단속을 벗어나기 위한 부조리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그 보도내용 또한 진실하므로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정○○ 對 문화방송사 외 3인 (서울지방법원 96가합82966,
 서울고등법원 97나47141) ······ 123**

Ⅲ . 손해배상청구사례

- 1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직접 취재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면서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보도한 경우, 기사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최□ 對 (주)코리아헤럴드 내외경제신문사 (대법원 94다33828,
 서울고등법원 96나24196) ······ 136**

- 2 공인의 경우 상업적이 아니라면 언론에 의해 초상이 공표되는 것을
 감수해야 하겠지만,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관련 없는 보도에 공표되었다면
 이는 초상권침해에 해당된다
**임□ 對 한국방송공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5가합13495,
 서울고등법원 96나282) ······ 151**

- 3 수사기관의 공식발표내용에 자기의 견해나 억측을 부가하거나 각색하여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경우에는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對 서울신문사 외 5인 (서울지방법원 94가합17753,
 서울고등법원 96나7849) ······ 164**

- 4 교재판매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 사건 보도내용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진실에 근거해 위법성이 없다
전 對 한국방송공사 (서울지방법원 96가합23110) 181
- 5 입장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고발성 아이템에 대해 자유토론하는 이 건
프로그램의 특성상, 방송사는 원고회사제품의 효능을 왜곡설명한 출연자를
제지하거나 그 내용을 수정해야 할 의무가 없다
(주) 합동 외 2인 對 한국방송공사 외 1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6가합12727) 190
- 6 자매지간을 모녀지간인 것처럼 묘사해 명예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승낙없이 사진을 게재하여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손 외 2인 對 세계일보사 외 1인 (서울지방법원 96가합31227,
서울고등법원 97나14240) 198
- 7 공무원의 개인적인 비위사실을 제보받아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없이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최 對 국제신문사 (부산고등법원 96나11761, 대법원 97다24207) 216
- 8 원고가 발행하는 신문과 관련한 기사로 인해 발행인인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 對 이 외 2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5가합3788,
서울고등법원 96나5348, 대법원 96다38032) 225
- 9 남북교류를 촉구하는 원고의 편지를 '김일성 애도서신' 으로 왜곡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정 對 강원일보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96가합2272) 241

- 10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성□□ 외 3인 對 문화방송사 외 2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7가합8022, 서울고등법원 97나43156) ······ 250
- 11 ‘한통노조의 북한조종설’ 을 언급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박 총장은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이를 보도한 신문사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한국□□ 노동조합 외 5인 對 박□□, 중앙일보사 (서울지방법원 95가합94047, 서울고등법원 97나23466) ······ 265
- 12 원고가 호화사교클럽을 조직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이□□ 對 부산일보사 (부산지방법원 95가합18232, 부산고등법원 97나3873) ······ 283

IV.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례

- 1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형법 제309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무죄이다
정○○ 외 1인 (서울지방법원 94고합485 · 94고합1032, 서울고등법원 94노3855, 대법원 96도2234) ······ 296
- 2 배포된 유인물이 등록된 인쇄물이거나 그와 같은 효용과 기능을 가진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출판물’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95고단220, 춘천지방법원 95노430, 대법원 97도133) ······ 325

V. 헌법재판소결정사례

- 1 공륜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영화 상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구 영화법은 헌법상 금지된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위헌이다
강□, 홍□ (헌법재판소 93헌가13, 91헌바10) 334
- 2 음반제작시 공륜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토록 한 구 음반법의 규정은
헌법이 금지한 검열행위에 해당한다
정□ (헌법재판소 94헌가6) 343
- 3 공륜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음반을 판매·배포 또는 대여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형사처벌토록 한 구 음반법의 규정은 헌법이 금지한
검열행위에 해당한다
강□ (헌법재판소 97헌가1) 351

VI. 기타사례

- 1 전교조가 비합법단체라고 하여 정간물법상 뚜렷한 근거 없이 단체의 목적과 성격을
문제삼아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정□ 對 공보처장관 (서울고등법원 95구27365) 355
- 2 신청인의 학위논문이 외국논문을 표절한 것이라는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판매, 배포해서는 안된다
장□ 對 한겨레신문사 (서울지방법원 96카합3181) 361
- 3 신청인을 비방하기 위해 진실성이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게재하여 공인으로서의
명예를 훼손시킨 주간지의 관련 기사를 삭제하고, 단행본의 판매·배포를 금지한다
김□ 對 (주)인사이드월드 외 2인 (서울지방법원 97카합2923) 365

I . 반론보도청구사례^{주)}

국가전복의 저의가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의견에 불과하고 노조간부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노조활동이라는
신청인의 정정보도 요구는 이유없다

서울고등법원 1996. 2. 15.자 결정 (95라178)

대법원 1996. 4. 30.자 결정 (96마367)

事實概要

대법원(주심 신성택 대법관)은 한국 [] 공사노동조합이 경향신문사 외 6개 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의 재항고심에서 원고의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앞서 항고심 관할부인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보현 부장판사)는 기각결정문에서 “언론중재제도는 언론보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에 의한 권리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안된 점, 신청인의 1회 불출석으로 중재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분쟁된 공표가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라면 다시 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 데에 반하여 피신청인이 2회 불출석하면 중재신청 내용대로 정정 기사를 게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되고 그 이후 더 이상의 구제절차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신청인의 중재기일 1회 불출석에 대한 제재로서 중재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는 정간법 제18조 제5항이 신청인을 피신청인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1조의 평등 조항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 본 사례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개정법률(제 5145호, 1995. 12. 30.)이 시행(1996. 7. 1.)되기 전에 법원에 청구된 사건들이어서 사건명이 정정보도청구로 표기되어 있으나 개정법에서는 정정보도청구권이 그 권리의 성격에 적합하게 반론보도청구권으로 개칭되었으므로 본 판결집에서는 반론보도청구사례로 구분하여 게재한다.

며 1심결정 중 각하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고를 기각했다.

신청인은 1995년 6월 15일자 경향신문의 “한 [] 분규 안보차원 엄단” 제하의 기사 등 피신청인들이 게재한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 오찬에서 밝힌 내용 가운데 “한국 [] [] 노조가 불법적인 노조행위를 계속해 정보통신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국가전복의 의지가 있다”고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인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여왔고 국가전복의 저의를 갖거나 국가안정을 위협한 사실이 없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 (95서울중재155~162)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문제의 보도는 대통령의 담화를 그대로 보도한 것이고, 발언 내용 또한 대통령 통치행위로 생각되고 정정보도할 수 없다고 주장, 중재불성립되었다. 그 가운데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중재신청에 있어서 중재기일에 신청인이 불참하여 중재신청이 취하 간주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조선일보사 등 5개 신문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1심법원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심판청구의 필요적 전치절차인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중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국가전복의 저의가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의견에 불과하고 노조간부들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노조활동이라는 신청인의 정정보도 요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결정을 하였다.

〈서울지방법원 1995. 9. 30.자 결정(95카기3525)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4집 pp. 103~112 참조〉

이에 신청인은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고 다시 기각결정되자 대법원에 재항고 하였다.

2심 決定文

사 건 : 95라178 정정보도

신청인, 항고인: 한국 [] 공사노동조합

서울 []

대표자 조합장 유 []

대리인 변호사 송두환, 안상운, 이상경, 김기중

피신청인, 상대방: 1.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서울 []

대표이사 안신배
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서정우, 백윤재, 김훈, 김철
2.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대표이사 권오기
대리인 변호사 차형근
3.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서울
대표이사 손주환
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복대리인 변호사 김시현
4. 주식회사 세계일보
서울
대표이사 황환채
지배인 이봉식
5.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대표이사 방우영, 방상훈
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광률, 장원찬, 최승인
6.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대표이사 홍석현
대리인 변호사 이경훈
7.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서울
대표이사 장재근
대리인 변호사 이인철

제1심결정: 서울지방법원 1995. 9. 30. 고지 95카기3525 결정

주 문: 1. 항고인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1. 신청인에 대하여,

가.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그가 발행하는 일간 경향신문에 별지목록 제1-1 기재 정정보도문 게재방법에 따라 별지목록 제1-2 기재 정정보도문을, 나.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그가 발행하는 일간 동아일보에 별지목록 제2-1 기재 정정보도문 게재방법에 따라 별지목록 제2-2 정정보도문을, 다. 피신청인 주식회사 서울신문사는 그가 발행하는 일간 서울신문에 별지목록 제3-1 기재 정정보도문 게재방법에 따라 별지목록 제3-2 기재 정정보도문을, 라. 피신청인 주식회사 세계일보는 그가 발행하는 일간 세계일보에 별지목록 제4-1 기재 정정보도문 게재방법에 따라 별지목록 제4-2 기재 정정보도문을, 마.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그가 발행하는 일간 조선일보에 별지목록 제5-1 정정보도문 게재방법에 따라 별지목록 제5-2 기재 정정보도문을, 바. 피신청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그가 발행하는 일간 중앙일보에 별지목록 제6-1 정정보도문 게재방법에 따라 별지목록 제6-2 기재 정정보도문을, 사.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국일보사는 그가 발행하는 일간 한국일보에 별지목록 제7-1 기재 정정보도문 게재방법에 따라 별지목록 제7-2 기재 정정보도문을 각 게재하여야 한다.

2. 만약 피신청인들이 제1항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신청인들은 제1항의 이행기간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신청인에 대하여 각 매일 금 20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결정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결정 이유 중, '제2항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에 대한 신청에 대한 판단' 부분에 아래 2항 기재의 판단을 부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결정 기재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1항,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이에 대해 신청인은, 정기간행물등록에관한법률 제18조 제5항에 따르면 중재피신청인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여야 중재신청 내용대로 정정 기사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는 반면 중재신청인은 단 '1회' 만이라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인 바, 이는 중재신청인과 중재피신청인을 합리적 기준없이 차별하는 법규정일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상의 변론주의 원칙과 달리 되어 있는 불평등한 조항이므로 결국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정보도청구를 위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르는 혼란을 줄이고 언론활동에 대한 충격이나 언론보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권리남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필요적 전치절차로서 규정한 것이 그 입법취지인데, 중재위원회의 중재기일에 당사자의 불출석 등 불성실한 태도는 중재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원인이 되므로 중재절차의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해 위 법 제18조 제4항에서는 당사자의 출석의무를 법적으로 부과하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중재신청인에게는 1회 불출석의 경우 중재신청 철회간주로, 피신청인에 대해서는 2회 불출석의 경우 합의간주로 삼고 있는 것인 바,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재피신청인에 비해 신청인에 대해서는 단 1회의 불출석만으로도 불이익을 입도록 하였더라도 신청인은 위 중재절차의 적극적 당사자로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는 소극적 당사자보다 출석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도 적극적 당사자가 2회 이상 불출석하면 소나 상소가 취하되는 데에 반하여 소극적 당사자의 불출석에 대해서는 의제자백 이외에는 특별한 제재가 따르지 않는다). 우리 법제도에 특유한 언론중재제도는 언론보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에 의한 권리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안된 점, 신청인의 1회 불출석으로 중재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분쟁된 공표가 있는 날로부터 1월(피해자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정정보도를 청구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라면 다시 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 데에 반하여(위 법 제18조 제1항) 피신청인이 2회 불출석하면 중재신청 내용대로 정정 기사를 게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되고 그 이후 더 이상의 구제절차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신청인의 중재기일 1회 불출석에 대한 제재로서 중재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는 위 법 제18조 제5항이 신청인을 피신청인에 대해 합리적 근거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조항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피신청인 조선일보사에 대한 신청은 각하하고, 신청인의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주식회사 세계일보,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에 대한 신청은 기각하기로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결정은 정당하여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15.

재판장 판사 이 보 현
판사 박 홍 우
판사 주 한 일

〈별지목록 제1-1) 정정보도문 게재방법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송달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경향신문」 제1면 우측 최상단 부분에 별지목록 제1-2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지목록 제8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별지목록 제1-2) 정정보도문

정정보도문

대제목 : 한국 [] 노동조합, 국가전복 저의 없다.

중제목 : 한국 [] 노동조합, 불법파업을 하거나 불법파업을 결의한 사실 없다.

소제목 : 한국 [] 노동조합, 국가안전을 위협한 사실 없다.

본지는 지난 5. 20.자 1면 머릿기사로 『한 []분규, 안보차원 엄단/통신망파업은 국가전복저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별지목록 제9기재와 같이 정정합니다.

〈별지목록 제1-3) 보도내용

김영삼 대통령은 19일 “한국 []노조의 불법행위를 단순히 노사분규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로 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또 “한국 [] 노조가 지난해 5월부터 정부의 통신정책에 대한 반대투쟁을 전개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해 정보통신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국가전복의 의의가 있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낮 국제언론인협회(IPI) 한국위원장 등 이사진 21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국가의 중추신경인 한국통신이 파업할 경우 국민 생활에 주는 불편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 입법, 사법의 모든 국가기관의 업무가 마비되며 신문 방송의 제작도 중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등 일대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대통령은 특히 “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지키고 국민생활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의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어떤 경우든 법을 어기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파업과 같은 극한상황에 대비해 즉각 대체할 수 있는 요원을 훈련시켜 놓았으므로 국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불법적인 노사분규에 대해 신속히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19일 오후 이형구 노동부장관, 경상현 정보통신부 장관 등 3부 장관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불법행위 관련자는 법에 따라 처리하며 노조원이 아닌 제3자가 개입할 경우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부총리는 「현대자동차와 한국 []공사 사태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수출과 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때에 일부 불순 노조원을 중심으로 현대자동차와 한국 []공사에서 불법·폭력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전제, 앞으로 정부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李장관은 공권력 투입의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직장에 복귀하도록 여러 차례 권유했으나 소용없었다”면서 “이런 권유로는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 공권력을 투입했다”고 대답했다. 李장관은 현대자동차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 한국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키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현대와 한국 []사태는 다른 사안이므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별지목록 제2-1〉 정정보도문 게재방법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송달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생하는 「동아일

보」 제1면 우측 최상단 부분에 별지목록 제2-2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지목록 제8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별지목록 제2-2) 정정보도문

정정보도문

대제목 : 한국 [] 노동조합, 국가전복 저의 없다.

중제목 : 한국 [] 노동조합, 불법파업을 하거나 불법파업을 결의한 사실 없다.

소제목 : 한국 [] 노동조합, 국가안전을 위협한 사실 없다.

본지는 지난 5. 20.자 1면 머릿기사로 『한 [] 파업위협, 국가전복 저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별지목록 제9기재와 같이 정정합니다.

〈별지목록 제2-3) 보도내용

정부는 19일 한국 [] 노조의 파업움직임을 국가전복의 저의가 있으며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로 규정, 엄중한 대처방침을 밝혔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국제언론인협회(IPI) 한국측 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한국 [] 사태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으며 관계부처 장관들도 이날 오후 합동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강경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김대통령은 “한국 [] 노조가 작년 5월부터 정부의 통신정책에 대한 반대투쟁을 전개하는 등 불법적 행위를 계속해 정보통신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국가전복의 저의가 있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노사분규차원이 아니라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로 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법을 어기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한국 []이 파업할 경우 행정·경제·산업·언론 등 국가기능이 마비되는 사태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부는 파업과 같은 극한상황에 대비해 즉각 대체할 수 있는 요원을 훈련시켜 놓았으므로 국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재형 부총리, 이형구 노동, 경상현 정보통신부 장관 등 3부 장관은 이날 오후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최근 현대자동차와 한국 []의 노사분규와 관련,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공권력을 투입하고 불법행위 관련자는 법에 따라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별지목록 제3-1〉 정정보도문 게재방법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송달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생하는 「서울신문」 제1면 우측 최상단 부분에 별지목록 제3-2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지목록 제8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별지목록 제3-2〉 정정보도문

정정보도문

- 대제목 : 한국 [] 노동조합, 국가전복 저의 없다.
- 중제목 : 한국 [] 노동조합, 불법파업을 하거나 불법파업을 결의한 사실 없다.
- 소제목 : 한국 [] 노동조합, 국가안전을 위협한 사실 없다.

본지는 지난 5. 20.자 1면 머릿기사로 『韓 [] 파업위협 국가전복 底意』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별지목록 제9기재와 같이 정정합니다.

〈별지목록 제3-3〉 보도내용

김영삼 대통령은 19일 한국 [] 사태와 관련,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노사분규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로 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손주환 서울신문사장, 방상훈 조선일보사장, 현소환 연합뉴스사장 등 국제언론인협회(IPI) 한국위원회 임원진 21명과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국가의 중추신경인 한국 [] 이 파업을 할 경우 그것이 국민생활에 주는 불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행정·입법·사법 등 국가기관의 업무를 포함, 경제·산업 등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윤여전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김대통령은 “한국 [] 노조가 작년 5월부터 정부의 통신정책에 대한 반대투쟁을 전개하는 등 불법적 행위를 계속하여 정보통신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국가전복의 저의가 있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지키고 국민생활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의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법을 어기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한국 [] 의 파업과 같은 극한 상황에 대비해 즉각 대체할

수 있는 요원을 훈련시켜 놓았으므로 국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별지목록 제4-1〉 정정보도문 게재방법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송달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생하는 「세계일보」 제1면 우측 최상단 부분에 별지목록 제4-2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지목록 제8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별지목록 제4-2〉 정정보도문

정정보도문

대제목 : 한국	노동조합, 국가전복 저의 없다.
중제목 : 한국	노동조합, 불법파업을 하거나 불법파업을 결의한 사실 없다.
소제목 : 한국	노동조합, 국가안전을 위협한 사실 없다.

본지는 지난 5. 20.자 1면 머릿기사로 『한 []분규 국가전복 저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별지목록 제9기재와 같이 정정합니다.

〈별지목록 제4-3〉 보도내용

김영삼 대통령은 19일 한국 []노조의 파업 움직임과 관련, “국가전복의 저의가 있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노사·분규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로 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제언론인협회(IPI) 한국위원회 이사진 21명과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한국 []이 파업을 할 경우 그것이 국민생활에 주는 불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나라의 행정 경제 산업 등 국가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말했다.

김대통령은 “한국 []은 국가의 중추신경”이라며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 입법 사법의 모든 국가기관이 업무가 마비되고 신문 방송의 제작도 중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등 국민생활에 일대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한국 []노조가 이런 점을 분명히 알면서도 작년 5월부터 정부의

통신정책에 대한 반대투쟁을 전개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해 정보통신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국가전복의 저의가 있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파업과 같은 극한 상황에 대비하여 즉각 대체할 수 있는 요원을 훈련시켜 놓았으므로 국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별지목록 제5-1〉 정정보도문 게재방법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송달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생하는 「조선일보」 제1면 좌측상단 부분에 별지목록 제5-2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지목록 제8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별지목록 제5-2〉 정정보도문

정정보도문

대제목 : 한국 [] 노동조합, 국가전복 저의 없다.

중제목 : 한국 [] 노동조합, 불법파업을 하거나 불법파업을 결의한 사실 없다.

소제목 : 한국 [] 노동조합, 국가안전을 위협한 사실 없다.

본지는 지난 5. 20.자 1면 좌측 상단부분에 『한 [] 파업때 국가위협 간주』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별지목록 제9기재와 같이 정정합니다.

〈별지목록 제5-3〉 보도내용

김영삼 대통령은 19일 한국 [] 노조가 법으로는 불가능한 파업을 결행할 경우, “정부는 이를 단순한 노사분규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로 보고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낮 IPI(국제언론인협회) 한국위원회(위원장 방상훈 조선일보사장) 이사들과의 오찬석상에서 “한국 []은 국가의 중추신경으로서, 한국 []이 파업을 할 경우 국민생활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나라의 행정, 경제, 산업 등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그같이 말했다.

김대통령은 “한국 [] 노조가 이런 점을 분명히 알면서도 작년 5월부터 정부의 통신정책에 대한 반대투쟁을 전개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하여 정보통신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국가를 전복하려는 음모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법을

어기는 파업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그러나 “정부는 작년말부터 파업과 같은 극한상황에 대비하여 즉각 대체할 수 있는 요원을 훈련시켜 놓았으므로 국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후 우수발명인 2백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다과를 베푸는 자리에서도 같은 내용을 강한 어조로 되풀이했다.

〈별지목록 제6-1) 정정보도문 게재방법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송달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생하는 「중앙일보」 제1면 우측 최상단 부분에 별지목록 제6-2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지목록 제8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별지목록 제6-2) 정정보도문

정정보도문

대제목 : 한국 노동조합, 국가전복 저의 없다.

중제목 : 한국 노동조합, 불법파업을 하거나 불법파업을 결의한 사실 없다.

소제목 : 한국 노동조합, 국가안전을 위협한 사실 없다.

본지는 지난 5. 20.자 1면 머릿기사로 『한□사태 안보차원 대처, 김대통령, 통신방해는 국가안전 위협』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별지목록 제9기재와 같이 정정합니다.

〈별지목록 제6-3) 보도내용

김영삼 대통령은 19일 한국□사태에 대해 “정보통신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국가전복의 저의가 있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엄중한 사법 처리를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낮 국제언론인협회(IPI) 한국위원회 이사진과 오찬을 함께 하며 IPI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데 대해 노고를 치하하고 “정부는 한국□사태를 단순한 노사분규 차원이 아니라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로 간주하고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어떤 경우든 법을 어기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파업과 같은 극한 상황에 대비해 즉각 대체할 수 있는 요원을

혼란시켜 놓았으므로 국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한국 []은 국가의 중추신경이므로 파업할 경우 행정과 경제·산업 등 국가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입법·사법의 모든 국가기관 업무가 마비되고 신문·방송의 제작도 지장을 받게 되는 등 국민생활에 일대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통령은 또 “한국 [] 노조가 이런 점을 분명히 알면서도 지난해 5월부터 정부의 통신정책에 대한 반대투쟁을 전개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해 정보통신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지키고 국민생활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의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별지목록 제7-1〉 정정보도문 게재방법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송달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생하는 「한국일보」 제1면 우측최상단 부분에 별지목록 제7-2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지목록 제8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별지목록 제7-2〉 정정보도문

정정보도문

대제목 : 한국 [] 노동조합, 국가전복 저의 없다.

중제목 : 한국 [] 노동조합, 불법파업을 하거나 불법파업을 결의한 사실 없다.

소제목 : 한국 [] 노동조합, 국가안전을 위협한 사실 없다.

본지는 지난 5. 20.자 1면 머릿기사로 “한 [] 사태 국가안전 위협, 김대통령, 파업강행엔 법따라 엄단”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별지목록 제9기재와 같이 정정합니다.

〈별지목록 제7-3〉 보도내용

김영삼 대통령은 19일 한국 [] 사태와 관련, “한국 [] 노조가 불법행위를 계속하며 정보통신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국가전복의 저의가 있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에 따라 엄중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낮 국제언론인협회(IPI) 한국위원회 위원장 및 이사진 21명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노사분규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대통령은 “한국 []은 국가의 중추신경”이라며 “한국 []이 파업할 경우 국민생활에 주는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나라의 행정, 경제, 산업 등 국가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지키고 국민생활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의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어떤 경우든 법을 어기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치 않겠다”고 강조했다.

〈별지목록 제8〉

제목 『정정보도문』은 50급 고덕체활자로, 대제목 부분은 검은색 바탕의 흰 글씨의 140급 고덕체활자로, 중제목 부분은 각 80급 명조체활자로, 소제목 부분은 50급 명조체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정정보도신청인 부분은 50급 고덕체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별지목록 제9〉

한국 []노동조합이 불법으로 파업을 하거나 불법파업을 결의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

또한 한국 []노동조합이 불법파업을 하거나 국가의 정보통신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노동조합에 대하여 국가전복 저의가 있다고 한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은 과장된 허위내용임이 드러났다.

한국 []노동조합은 그동안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였을 뿐 국가를 전복하려 하였거나, 노조의 활동으로 국가안전이 위협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노동조합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바에 따라 조합원들의 자주적인 결정에 의하여 설립된 적법한 노동조합으로서 소속 조합원들의 지위와 권익에 직결되는 정부의 통신개방정책과 대미 통상협상 자세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서 통신주권을 확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표시해 왔다.

한국 []노사는 지난 5월 중순경 3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회의절차 등의 논의를 마치고 5월 19일부터 임금과 단체교섭에 임할 예정이었다.

한국 []노조는 임금과 단체협상에 임하는 조합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하여 5월 19일 전남대학교에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노조는 쟁의에 돌입할

경우 발생할 막대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쟁의를 유보하며, 5월 21일부터 10일간 냉각기간을 갖기로 하는 등 법이 보장한 쟁의권을 유보하면서까지 국가통신시설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등 적법 절차를 지켜 왔다.

또한 한국 [] 노사간의 단체협상과정에서 한국 [] 노동조합을 위하여 제3자가 개입하거나 조종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

정정보도신청인 한국 [] 공사노동조합

大法院 決定文

사 건 : 96마367 정정보도

재항고인 : 한국 [] 공사노동조합

서울 []

조합장 유 []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김기중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6. 2. 15.자 95라178 결정

주 문 :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30.

재판장 대법관 안 용 득

대법관 천 경 송

대법관 지 창 권

주심 대법관 신 성 택

□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문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반론보도를 게재하라

서울지방법원 1996. 7. 4.자 결정 (96카기2889)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민사 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1996년 7월 4일 []상사 대표 양 [] 씨가 축산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상사는 []상사로부터 착유기를 구입한 낙농가에게 사후 수리봉사를 해 주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신청인의 반론보도가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신청인의 반론보도를 게재하라고 결정했다.

축산신문은 1996년 4월 12일자 “일부 착유설비 수입 판매업체 사후봉사 엉망 농가 피해 속출”, “팔고난 후 ‘나몰라라’ 집단진정 등 민원 빈발” 제하의 기사에서 독일 [] []사로부터 밀크 파이프라인 등 착유설비를 수입, 농가에 판매 중인 []상사는 3년 전후부터 A/S를 거의 하지 않아 관련농가들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신청인은 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고(96서울중재107), 중재결과 불성립되자 서울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決定文

사 건 : 96카기2889 정정보도

신청인 : 양 []

서울 []

대리인 변호사 손경한, 최형구

피신청인 : 주식회사 축산신문

서울

대표이사 윤봉준

대리인 법무법인 서부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여달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행되는 ‘축산신문’의 제3면 기사란 우측 하단 부분에 가로 9cm, 세로 2단 크기로, 그 우측 상단에는 세로로 『반론문』이라는 제목을 32급 고딕체활자로, 그밖의 여백에는 세로로 별지목록 제1.기재 반론문의 내용 및 반론보도신청인을 10급 명조체의 본문활자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축산신문 제3면 기사란 하단에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2단의 크기로 별지목록 제2.기재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32급 고딕체활자로 위쪽에 가로로, 정정보도의 내용 및 정정보도신청인 성명은 10급 명조체의 본문활자로 위 제목의 옆 및 아래쪽에 세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이 주 2회 발행하는 ‘축산신문’ 1996. 4. 12.자 제3면 우측 상단부분에 젓소 착유현장 사진과 함께 가로로 『일부 착유설비 수입 판매업체 사후봉사 영망 농가 피해 속출』, 세로로 『팔고난 후 ‘나몰라라’ 집단진정 등 민원 빈발』이라는 제목 아래 본문 내용으로 “착유설비를 수입, 판매 중인 일부업체가 장기간 A/S를 하지 않아 관련농가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관련 낙농가와 업계에 따르면 독일 사로부터 밀크 파이프라인 등 착유설비를 수입, 농가에 판매 중인 상사(대표 양)는 3년 전후부터 A/S를 제 때에 하지 않은 데다 일부지역은 A/S를 거의하지 않아 관련 농가들이 큰 피해를 당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남 산청지역의 경우 B유업으로 납유 중인 H씨를 비롯 K씨 등. 낙농가 30여 명은 5년 전후 착유기를 구입, 사용해오다 맥동기·조절기 등의 고장이 발생해 방문을 요구했는데도 A/S는 커녕 반년이 넘도록 소모성 부품마저 보내주지 않고 있어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략)… 이에 []상사 한 관련인은 A/S는 정확히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일부 직원이 출장일지를 제 때 정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 및 신청인은 []상사라는 상호로 독일 []사로부터 밀크 파이프라인 등 착유설비를 수입, 농가에 판매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축산신문에 공표된 위 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기사에 대하여 반론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반론보도의 내용으로서는 위 기사 중 신청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반론으로서 별지목록 제1.기재 내용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그러나 신청인이 게재를 구하는 별지목록 제2.기재의 정정보도문 중 위 인정한 반론의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반론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구하는 위 반론보도의 내용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거나,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경영하는 []상사와 []상사로부터 착유기를 구입한 일부 낙농가 사이에 착유기 고장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상사는 []상사로부터 착유기를 구입한 경남 산청 지역의 낙농가에게 사후수리 봉사를 해주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신청인의 반론보도가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반론보도문의 크기 및 게재방법에 관하여는 위 기사 중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 기사부분의 크기, 반론보도문의 글자수 등을 종합하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4.

재판장 판사 권 광 중
판사 김 형 두
판사 신 광 렬

〈별지목록 제1〉 반론문

축산신문 1996. 4. 12.자 제3면에 『일부 착유설비 수입 판매업체 사후봉사 엉망 농가 피해속출』이라는 제목하에 독일 []사로부터 착유설비를 수입, 농가에 판매 중인 []상사(대표 양 [])는 경남 산청지역 낙농가 30여 명이 []상사로부터 구입한 착유기가 고장나 방문을 요구했는데도 A/S는 커녕 소모성 부품마저 보내주지 않고 있어 낙농가들이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그러나, 반론보도신청인은 위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한다.

즉, []상사는 착유기를 구입한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A/S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상사가 경남 산청지역 낙농가 30여 명에게 A/S를 해주지 아니하고 있다는 축산신문의 보도내용은 []상사와 분쟁 중인 일부 낙농가의 의견을 경남 산청지역 낙농가 전체의 견해인 양 보도한 것이다.

반론보도신청인 양 [] ([]상사 대표)

〈별지목록 제2〉 신청인이 게재를 구하는 반론문

정정보도문

축산신문은 1996. 4. 12.자 제3면에 『일부 착유설비 수입 판매업체 사후봉사 엉망 농가 피해속출』이라는 제목과 『팔고난 후 '나몰라라' 집단진정 등 민원 빈발』이라는 소제목 아래 독일 []사로부터 밀크 파이프라인 등 착유설비를 수입, 농가에 판매 중인 []상사(대표 양 [])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경남 산청지역의 낙농가 30여 명이 []상사의 착유기를 구입, 사용해 오다 고장이 발생해 방문을 요구했는데도 A/S는 커녕 부품마저 보내주지 않고 있어 큰 손해를 보고 있으며, []상사측 관련 직원은 출장일지를 제 때 정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변명한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상사의 착유기를 구입, 설치한 경남 산청지역의 24개 낙농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본 바에 의하면 이들 낙농가는 []상사의 A/S와 관련하여 축산신문사의 취재에 일체 응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으므로 축산신문사의 위 보도내용은 []상사와 분쟁 중인 극소수 낙농가의 의견을 사실확인도 하여 보지 아니한 채 경남 산청지역 낙농가 전체의 견해인 양 과장한 것이고, []상사측 관련 직원은 축산신문사의 취재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응답을 한 적이 없고 다만 서비스장부가 비치되어 있으니 서비스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응답을 한 것일 뿐이며, []상사는 착유기를 구입한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A/S를 실시해 오고 있으므로

상기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정정보도신청인 양 (상사 대표)

검찰 발표내용이라 하더라도 신문을 통해 공표된 이상 이는 피신청인의 사실적 주장으로서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된다

서울지방법원 1996. 8. 1.자 결정 (96카기2868)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민사 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1996년 8월 1일 15대 총선시 전남 선거구 국민회의 후보였던 국 씨가 연합통신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기사내용이 검찰의 발표 내용을 보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문을 통하여 공표된 이상 이는 피신청인의 통신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으로서 정정보도(실질적으로는 반론보도)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신청인의 주장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정정보도를 게재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게재를 구하는 각 정정보도문 중, 신청인은 검찰로부터 소환받은 바 없다거나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사법처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부분은 당초 각 정정보도 대상 기사가 게재된 후의 사정을 주장하는 것이고 위 각 정정보도 대상 기사가 사실과 다름이 밝혀져 정정한다는 부분은 반론이 아닌 민법상의 정정보도를 구하는 것으로서 모두 신청인의 반론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피신청인 연합통신은 1996년 3월 30일 “검찰, 공천현금 수사 본격화 후보 1명 수사착수”(08시 00분 송신) 및 “검찰, 공천자금 국 후보(국민회의) 수사(종합)”

(09시 54분 송신), “초점 ‘焦點’ 공천현금 수사본격화, 의미와 전망”(11시 09분 송신) 제하의 기사에서 “검찰은 신청인이 공천을 앞두고 1995. 11.부터 1996. 1.까지 사이에 전남 국민상호신용금고의 30여 개 차명계좌에서 총 8억원 가량을 전액 1만원 권 현금으로 인출한 것이 확인되어 그 인출한 금원을 공천현금으로 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바 공천현금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라는 요지의 보도를 하였고, 1996년 4월 28일 “검찰 선거사범 수사, 당선자 사법처리 전망”(18시 17분 송신) 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과 그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권노갑 당선자는 검찰의 선거사범 집중 수사대상이다”는 요지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위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96서울중재109). 피신청인이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이므로 정정보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중재가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서울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決定文

사 건 : 96카기2868 정정보도

신 청 인 : 국
 전남
 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신청인 : 주식회사 연합통신
 서울
 대표이사 현소환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양호, 박현욱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때부터 21시간 이내에 대한민국 전역으로 배포되는 연합통신에 별지 제1, 제2기재 각 반론문을 각 1회 게재하여야 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기간 만료시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 시간 금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에 연합통신에 별지 제3, 제4 기재 각 정정보도문을 각 게재하여야 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금 10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이 1996. 3. 30. 대한민국 전역에 배포한 연합통신을 통하여 『검찰, 공천 현금 수사 본격화 후보 1명 수사착수』(08시 00분 송신) 및 『검찰, 공천자금 국 [] 후보(국민회의) 수사(종합)』(09시 54분 송신), 『〈초점(焦點)〉 공천현금 수사 본격화, 의미와 전망』(11시 09분 송신)이라는 각 제목하에 “검찰은, 15대 국회의원 선거의 전남 [] 선거구에서 국회의원회로부터 공천을 받은 국 [] 후보가 공천을 앞두고 1995. 11.부터 1996. 1.까지 사이에 전남 국민 상호신용금고의 30여 개 차명 계좌에서 총 8억원 가량을 전액 1만원권 현금으로 인출한 것이 확인되어 그 인출한 금원을 공천현금으로 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바 공천현금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후보를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라는 요지의 기사가 각 송신된 사실, 그리고 1996. 4. 28. 대한민국 전역에 배포한 연합통신을 통하여 『검찰 선거사범 수사, 당선자 사법처리 전망』(18시 17분 송신)이라는 제목 아래 “8억원의 공천 현금을 낸 국 [] 당선자와 그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권 [] 당선자(국민회의, 전국구)는 검찰의 선거사범 집중 수사대상이며, 검찰은 다음 주 중으로 이들 당선자에 대한 사법처리 기준을 마련 일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라는 요지의 기사가 송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위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위 1996. 3. 30.자 기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3기재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위 1996. 4. 28.자 기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4기재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각 구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보도한 위 각 기사 내용이 검찰의 발표 내용을 보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문을 통하여 공표된 이상 이는 피신청인의 통신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으로서 정정보도(실질적으로는 반론보도)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신청인의 위 각 주장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서 신청인은 위 각 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기사에 대하여 반론, 반박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그 정정보도의 내용으로서 위 1996. 3. 30. 자 기사에 대한 반론으로서는 별지 제1기재 내용과 같이, 위 1996. 4. 28. 자 기사에 대한 반론으로서는 별지 제2기재 내용과 같이 각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이 게재를 구하는 각 정정보도문 중, 신청인은 검찰로부터 소환받은 바 없다거나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사법처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부분은 당초 각 정정보도 대상 기사가 게재된 후의 사정을 주장하는 것이고, 위 각 정정보도 대상 기사가 사실과 다름이 밝혀져 정정한다는 부분은 반론이 아닌 민법상의 정정보도를 구하는 것으로서 모두 신청인의 반론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간접강제신청부분에 관하여는 주문 제1항의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데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주문 제2항과 같이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1.

재판장 판사 권 광 중

판사 여 훈 구

판사 김 형 두

〈별지목록 제1〉 공천헌금 관련 반론문

…제15대 국회의원 공천 관련 헌금한 적 없다.

연합통신은 1996. 3. 30. 『검찰, 공천헌금 수사 본격화 후보 1명 수사착수』 및 『검찰, 공천자금 국[鞫] [] 후보(국민회의) 수사(종합)』, 『〈초점[焦點]〉 공천헌금 수사 본격화, 의미와 전망』이라는 각 제목하에 “검찰은, 15대 국회의원 선거의 전남 [] [] 선거구에서 새정치국민회의로부터 공천을 받은 국 [] 후보가 공천을 앞두고 1995. 11.부터 1996. 1.까지 사이에 전남 국민상호신용금고의 30여 개 차명계좌에서 총 8억원 가량을 전액 1만원권 현금으로 인출한 것이 확인되어 그 인출한 금액을 공천헌금으로 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라는 요지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그러나 본 신청인은 제15대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하여 새정치국민회의에 현금을 하거나 공천자로 확정되면 새정치국민회의나 당지도부에 현금을 내기로 약속을 한 바 없다. 그리고 국민 상호신용금고와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한 적도 없고 비밀계좌를 갖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이 8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도 없다.

정정보도신청인 국 []

〈별지목록 제2〉 공천현금 관련 반론문

…제15대 국회의원 공천 관련 현금한 적 없다.

연합통신은 1996. 4. 28. 『검찰 선거사범수사, 당선자 사법처리 전망』이라는 제목하에 “8억원의 공천현금을 낸 국 [] 당선자와 그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권 [] 당선자(국민회의, 전국구)는 검찰의 선거사범 집중 수사대상이다”라는 요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그러나 본 신청인은 권 [] 의원에게 공천현금으로 금8억원을 지불하거나 지불할 것을 약속한 사실이 없고 소속 정당에 공천현금을 낸 사실도 없다.

정정보도신청인 국 []

〈별지목록 제3〉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

제 목 : 국 [] 후보(국민회의), 공천 관련 현금한 적 없다.

본 문 : 연합통신이 1996. 3. 30. 『검찰, 공천현금 수사 본격화 후보 1명 수사착수』 및 『검찰, 공천자금 국[] 후보(국민회의)수사(종합)』, 『〈초점(焦點)〉 공천현금 수사 본격화, 의미와 전망』이라는 각 제목하에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아래와 같이 밝힌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국 [] 후보(전남 [])는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면서 소속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기 위하여 현금을 한 적이 없다. 국 [] 후보는 광주광역시 소재 국민 상호신용금고와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한 적도 없고 비밀계좌를 갖고 있지도 않다. 또한 국 [] 후보는 지난해 11월말부터 금년 1월말까지 8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도 없다. 국 [] 후보는 새정치국민회의의 공천자로 확정되면 소속 정당이나 당지도부에 현금을 내기로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 국 [] 후보는 검찰로부터 이른바

공천 헌금에 따른 정치자금법위반 및 도명계좌 개설과 관련한 금융실명제위반 혐의로 소환당한 사실이 없고 또 전혀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사법처리를 받은 사실이 없다.

정정보도신청인 국 [] (국민회의)

<별지목록 제4>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

제 목 : 국 [] 후보(국민회의), 공천관련 헌금한 적 없다.

본 문 : 연합통신이 1996. 4. 28. 『<초점(焦點)> 검찰 선거사범 수사, 당선자 사법처리 전망』이라는 제목하에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아래와 같이 밝힌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국 [] 후보(전남 [])는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면서 소속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기 위하여 헌금을 한 적이 없다.

국 [] 후보는 권 [] 의원에게 공천헌금으로 금8억원을 지불하거나 지불할 것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 국 [] 후보는 검찰로부터 이른바 공천헌금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및 도명계좌개설과 관련한 금융실명제위반 혐의에 대하여 전혀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사법 처리를 받은 사실이 없다.

정정보도신청인 국 [] (국민회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 1인이
언론중재절차를 거쳤다면 다른 피해자는
중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서울지방법원 1996. 8. 9.자 결정 (96카기2828)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1996년 8월 9일 주식회사 중앙일보사가 주식회사 바른언론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피신

청인 바른언론은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결정했다.

바른언론은 1996년 3월 30일자 제1면에 “의정부 아파트촌 12.1%가 구독강요에 시달려” 제하로 신문확장지 강제투입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 1,400가구 중 170가구가 구독의사와 관계없이 배달되는 신문확장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특히 피해가구 중 48.2%에 해당하는 82가구에 중앙일보가 무단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면서 중앙일보는 시계 등 경품을 제공하여 불공정거래를 야기하고 1년 내내 신문확장대회를 열어 무가지 살포를 부추기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주식회사 중앙일보는 의정부 아파트촌 82가구에 중앙일보 확장지를 배포한 바 없고 경품은 본사가 아닌 지국에서 제공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고지를 통해 허용되고 있는 범위 내의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담당재판부는 “피신청인은 반론보도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므로 반론보도문을 게재를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며 인용 결정을 했다.

이 사건기사가 보도되자 중앙일보는 1996년 4월 20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으나 불성립되자(96서울중재98)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決定文

사 건 : 96카기2828 정정보도

신청인 :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대표이사 홍석현

대리인 변호사 이경훈, 윤용근, 여상규

피신청인 : 주식회사 바른언론신문사

서울

대표이사 이영우

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고지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바른언론의 제1면 기사게재 부분의 좌측 가운데 부분(바른언론 1996. 3. 30.자 신문 중 「확장지 조사결과에 관한 도표」를 게재한 부분)

에 가로 10cm, 세로 14cm의 크기의 여백에다가 그 위쪽에는, 가로로 『반론문』이라는 제목을 24급 고딕체 활자로 게재하고 그 밖의 여백에는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반론문 및 반론보도신청인을 11급 명조체의 본문활자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기간만료 익일부터 이행만료시까지 매일 금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신청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위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하는 주간신문 바른언론에 별지 2. 정정보도문 게재방법에 따라 별지 3.에 기재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금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이 주 1회 발행하는 바른언론 1996. 3. 30.자 제1면 좌측 상단부분에서부터 제2면 좌측 중앙부분에 이르기까지 대제목 『의정부 아파트촌 12.1%가 구독강요에 시달려』, 소제목 『본지, 신문확장지 강제투입 실태조사』, 『연중실시 부수확장대회가 무가지 살포 부추겨』, 『경품제공여전... 일부 가정선 소송의사 밝히기도』라는 제목 아래 본문 기사 내용으로 “의정부 아파트촌 일대 1백가구 중 12가구 정도가 신문 강제투입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본지 조사팀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 동안 싹곡동 동신(3백24가구)·신성(3백36가구)·벽산아파트(3백24가구), 장암동 우성아파트(3백50) 등 총 1,400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중앙일간지를 대상으로 의정부 일대에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전체 1천4백 가구 중 12.1%에 해당하는 170가구가 구독의사에 상관없이 배달되는 이른바 「확장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작년에 한창 문제가 됐던 경품이 아직도 공공연하게 제공되고 있어 불공정거래 또한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중략- 의정부 아파트촌 일대에 확장지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중앙일간지 중 중앙일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중앙일보는 확장지 피해 전체 170가구 중 48.2%에 해당하는 82가구에

무단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략- 문제가 되고 있는 확장지 살포는 신문 확장대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중앙일보> 의정부 3동 지국의 김 관리소장은 “판촉의 일환인 신문확장대회는 일년내내 열린다”며 “신문 1부를 확장하면 배달원에게 1만원의 이익금도 배당하고 있다”고 말해 신문확장대회가 무가지 살포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신문확장을 위해 시계나 티스푼 등의 경품도 제공하고 있어 작년에 한창 문제가 되었던 불공정거래의 시비가 다시 일 조짐이다. 김소장은 「확장대회는 본사와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중략- 「확장지 살포에는 각 신문사 본사의 신문 과잉공급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의정부 일대의 중앙일보의 예만 보더라도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중앙일보> 의정부지국의 김소장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의정부 8개 지구에 2만 8천부 가량 공급되는데, 이 중 65%가 유가지이며 나머지 35%가 무가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비슷한 사세의 모중앙일간지는 지국에 공급되는 전체 부수 중 유가지로 소화되는 양이 4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취재돼 김소장의 말은 다소 과장됐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국에 배달되는 신문 중 적게는 35%가, 많게는 45% 정도가 판촉지라는 명목아래 그냥 버려진다는 것이다.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기사와, 신청인 발행의 중앙일보가 확장지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 총 적발건수 170건 중 82건을 차지하여 점유율이 48.2%에 이른다는 내용의 확장지 조사결과표와 강제 투입된 중앙일보 등 신문이 아파트 출입문 앞에 쌓여져 있다는 설명을 단 사진이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한 정기간행물인 바른언론에 공표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의 기사(이하 원문 기사라고 한다)로 인하여 그의 인격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문 기사의 진위(眞僞)여부에 관계없이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문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의 내용에 관하여는 원문 기사 중 신청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반론으로서 신청인이 구하는 별지 3. 정정보도문의 범위 내에서 별지 1. 반론문의 내용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반론보도의 내용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므로 위 반론보도문을 게재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나아가 반론보도문의 크기 및 게재방법에 관하여는 위 기사 중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 원문기사 부분의 크기 및 게재 면수, 반론보도문의 글자수 등을 종합하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간접강제신청부분에 관하여는 주문 제1항의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데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주문 제2항과 같이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9.

재판장 판사 권 광 중
판사 김 형 두
판사 신 광 렬

〈별지 제1〉 반론문

바른언론 1996. 3. 30.자 제1면 좌측 부분에 대제목 『의정부 아파트촌 12.1%가 구독 강요에 시달려』, 소제목 『본지, 신문확장지 강제투입 실태조사』 등의 제목 아래 바른언론 신문의 조사팀이 의정부 아파트촌 일대 1,400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조사한 결과 12.1%에 해당하는 170가구가 구독의사에 상관 없이 배달되는 강제투입 신문확장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특히 조사대상 중앙일간지 중 중앙일보는 위 170가구 중 48.2%에 해당하는 82가구에 무단투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신문확장을 위해 시계나 티스푼 등의 경품도 제공하고 있어 불공정거래의 시비가 일 조짐이다는 취지의 기사와, 중앙일보 의정부 3동 지국의 김 [] 관리소장과의 인터뷰 기사를 실으면서 위 김소장이 중앙일보 의정부 8개 지국에 28,000부 가량 공급되는데, 이 중 65%가 유가지이며 나머지 35%가 무가지라고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가 중앙일보 등 신문이 아파트 현관문 앞에 쌓여 있는 사진 및 확장지 조사결과표와 함께 보도되었다.

그러나, 반론보도신청인은 위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한다.

즉, 반론보도신청인은 의정부 아파트촌의 위 170가구 중 48.2%에 해당하는 82가구에 중앙일보 확장지를 배포한 바는 없다. 바른언론 신문의 기자가 위 김 []을 만나거나 전화 등을 통해 인터뷰한 사실이 없고, 위 김 []도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반론보도신청인이 의정부 지국에 공급하는 중앙일보 부수는 매일 20,100부로서 판촉 목적의 무가지율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반론보도신청인과는 별도의 독자적인 계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지국이 유리컵 세트나 어린이용 학습지를 일부 중앙

일보 구독자들에게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경품고지를 통하여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의 경품으로서 적법하다.

반론보도신청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별지 제2〉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

신청인은 이 사건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일자의 주간신문 바른언론 제1면 좌측 윗부분에 가로 25cm, 세로 23cm의 크기로 그 상단에는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견고딕체 7배활자로, 그 밑의 여백에는 별지 2. 정정보도문 내용을 명조체 132×110 활자로, 그 하단 여백에는 정정보도신청인을 견명체 19포인트 활자로, 그 옆의 (주)중앙일보사를 견명체 23포인트 활자로 각 가로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3〉 신청인이 게재를 구하는 반론문

정정보도문

1996. 3. 30.자 본지(바른언론) 제1면 윗부분과 제2면 좌중앙부분에, (1) “본지(바른언론) 조사팀이 1996. 3. 18.부터 같은달 22.까지 의정부 신곡동 동신아파트 390가구 등 그 일대의 아파트 1,400가구를 대상으로 개별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중 12.1%에 해당하는 170가구가 구독의사에 상관 없이 배달되는 이른바 강제투입 신문 확장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 중앙일간지 중 신청인 발행의 중앙일보는 위 확장지 피해 170가구 중 48.2%에 해당하는 82가구에 무단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라는 기사와, (2) 중앙일보 의정부 3동 지국의 김_____ 관리소장은 “판촉의 일환인 신문확장대회는 일년 내내 열린다. 신문 1부를 확장하면 배달원에게 1만원의 이익금도 배당하고 있다.”고 말해 신문확장대회가 무가지 살포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신문확장을 위해 시계나 티스푼 등의 경품도 제공하고 있어 작년에 한창 문제가 되었던 불공정거래의 시비가 다시 일 조짐이다. 김소장은 “확장대회는 본사와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김소장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의정부 8개 지국에 28,000부 가량 공급되는데, 이 중 65%가 유가지이며 나머지 35%가 무가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비슷한 사세의 모 중앙일간지는 지국에 공급되는 전체 부수 중 유가지로 소화되는 양이 45% 정도로 취재돼 위 김소장의 말은 다소 과장됐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국에 배달되는 신문 중 적게는 35%, 많게는 45% 정도가 판촉지라는

명목 아래 그냥 버려진다는 것이다”라는 기사가 각 보도되었다.

그러나 위 (1)항 기사와 관련하여 본지(바른언론)는 위 조사대상 아파트 1,400가구의 일부만을 방문하여 조사하였을 뿐 위 가구들을 모두 방문하여 조사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신문이 아파트 출입문 앞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과연 위 신문이 아파트 입주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투입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서는 그 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로 일일이 이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

위 (2)항 기사와 관련하여 본지(바른언론) 조사팀이나 소속 취재기자들은 신청인의 의정부 3동지국 관리소장 김□□을 만나거나 전화 등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터뷰한 사실이 없으며, 위 김□□도 위 기사내용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한편 신청인이 의정부 8개지국에 매일 공급하는 중앙일보 부수는 20,100부로서 그 중 관측목적의 무가지 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신청인이 중앙일보의 구독확장을 위하여 직접 경품을 제공한 사실은 없으며 단지 신청인과는 별도의 독자적인 계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지국의 3,500원 상당의 유리컵 세트나 1권에 500원하는 어린이용 학습지를 일부 중앙일보 구독자들에게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도 모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품고지를 통하여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의 경품으로서 적법한 것이다.

정정보도신청인 (주)중앙일보사

□

신청인은 보도로 인해
인격적 법익과 영업적 이익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반론보도문을 발송하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6. 10. 10.자 판결 (96카합1231)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심명수 부장판사)는 1996년 10월 10일 □□□ 교육원 대표 전 □□ 씨가 K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심판청구 소송판결에

서 “방송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은 보도내용에 의하여 인격적 법익과 영업적 이익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며 피신청인은 반론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안 중, “ [] 교육원은 학교 선배라고 사칭하여 대학 신입생들에게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거나 회원가입신청서를 받아낸 사실이 없다”고 하는 부분과 “교재 구입자가 교재를 반품해 올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별도의 학원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교재 구입자가 반품을 요구하였는데도 하안누리 교육원에서 법적처리신청예정통지서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하는 부분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청인에게 반론보도의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며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KBS는 1996년 3월 6일 <KBS 9시 뉴스>와 <뉴스라인>에서 “교재 사기판매 극성” 제하의 보도 중 신청인이 운영하는 [] 교육원이 사기판매를 하는 대표적인 업체인 것처럼 보도했다. 이에 신청인은 1996년 3월 1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해당 기사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집계한 자료에 근거하여 보도한 것이므로 소비자보호원 집계자료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정정보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불성립되자(96서울중재75) 신청인은 법원에 정정보도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동일사안에 대하여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보도내용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보도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서울지방법원 1997년 4월 16일자 판결 96가합23110)

判決文

사 건 : 96카합1231 정정보도심판청구

신청인 : 전 []

서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서울 []

대표자 사장 홍두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재중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정은, 경수근

변론종결 : 1996. 9. 12.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방송되는 KBS 제1텔레비전 ‘KBS 9시 뉴스’ 및 ‘뉴스라인’ 프로그램의 각 중간 부분에 텔레비전 화면 오른쪽 상단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1. 기재의 반론보도문을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위 5일의 기간 내에 위 제1항의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위 기간만료의 익일부터 이행완료시까지 신청인에 대하여 1일 금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KBS 9시 뉴스’ 및 ‘뉴스라인’의 각 첫머리에서 각 뉴스진행자의 오른쪽 상단화면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각 화면 아래 부분에는 두 줄로 ‘하얀누리 교육원 교재 사기판매한 적 없다’라는 문장을 계속 표시하면서(글자는 통상의 뉴스 보도와 같은 크기로) 각 뉴스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2.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뉴스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각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위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위 기간 만료의 익일부터 이행완료시까지 신청인에 대하여 각 1일 금 20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KBS 제1텔레비전의 1996. 3. 6. ‘KBS 9시 뉴스’와 ‘뉴스라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교재 사기판매 극성』이라는 제목하에 “교재 판매업자들이 새학기 대학가에 신입생들을 상대로 카세트 테이프와 교재 등을 강제로 사게 하는 경우가 있고, 학교 선배라고 사칭하여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면서 회원가입 신청서를 받아내거나 혹은 자격증 안내문을 보내준다거나 설문조사를 한다고 유인하여 가입신청서를

받아낸 다음 위 신청서들을 계약서처럼 이용하여 교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들이 반품을 요구할 경우 법적처리신청예정통보서라는 엉터리 독촉장으로 학부모들을 위협해 대금을 받아내기도 한다”는 요지의 별지 3. 기재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그러한 교재판매 영업을 하는 업체 중의 하나로 [] 교육원을 지적한 사실, 신청인은 [] 교육원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제1호중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이다.

위 방송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은 위 방송 프로그램에서 공표된 위 보도내용에 의하여 인격적 법익과 영업적 이익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신청인이 위 방송내용 중 [] 교육원과 관련된 부분은 허위의 사실로서 위 방송에 의하여 [] 교육원을 경영하는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2.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방송해 줄 것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신청인 주장의 정정보도문을 방송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차례로 살핀다.

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내용 중의 상당부분은 신청인이 경영하는 [] 교육원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교재판매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보도를 한 것이므로 개별적 관련성을 결여한 부당한 청구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갑제1호중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위 보도를 하면서 배경화면으로 [] 교육원에 대한 회원가입 및 교재신청서를 작성하는 모습과, 피해자의 학부모가 [] 교육원 명의로 작성된 법적처리신청예정통보서를 보여주는 모습을 방영하였고, 그 외 다른 업체들 명의로 서류는 전혀 배경화면으로 사용되지 않은 사실, 위 방송 중 기자는 소비자보호원에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교재판매 업체로 [] 교육원을 제일 먼저 낭독하면서 배경화면으로 교재판매업체라는 제목 아래에 [] 교육원을 맨 위에 적어두고 그 다음에 한국교육평가원, 한국교육개발연구원, 태성문화공사를 순서대로 적은 다음 ‘등’ 23개 업체라고 적은 자막을 내보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로서는 [] 교육원이 위 방송의 내용과 같은 형태의 사기판매를 하는 대표적인 업체라고 생각할 소지가 많으므로 위 방송내용은 그 전부가 신청인이 경영하는 [] 교육원과 개별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신청인은 또 신청인이 구하는 이 사건 정정보도문안은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1)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안 중, [] 교육원은 학교 선배라고 사칭하여 대학 신입생들에게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거나 회원가입 신청서를 받아낸 사실이 없다고 하는 부분과 교재 구입자가 교재를 반품해 올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별도의 학원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교재 구입자가 반품을 요구하였는데도 [] 교육원에서 법적처리신청예정통지서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소을 제2호증의 1, 소을 제5, 6, 7, 9, 12, 13, 14, 15호증, 소을 제16호증의 1 내지 5호증, 을제 17호증, 소을 제18호증의 1 내지 6호증, 소을 제21 내지 24호증, 소을 제26 내지 29호증, 소을 제33호증의 5 내지 17, 25 내지 33, 59 내지 76, 80, 85, 86, 88, 89, 90, 소을 제34호증의 4, 5, 6, 소을 제35호증의 1내지 6의 각 기재 및 증인 이현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 교육원은 F.G.S(Fellowship Group Study)라는 영어회화공부에 관한 대학연합동아리를 만들어 [] 교육원의 직원들이 각 대학가를 다니면서 대학생들에게 위 F.G.S. 동아리 회원가입 및 교재신청을 하도록 하고, 위 신청서를 작성한 학생들에게 교재를 보낸 후 그 교재비 명목으로 360,000원 혹은 420,000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한 사실, 위 대금은 [] 교육원에서 개설한 외국어 회화 강의를 포함한 교재대금인 사실, 소외 김 [], 이 [], 권 [], 박 [], 이 [], 이 [], 조 [] 등의 다수의 대학생들은 1992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사이에 학교 선배 혹은 동아리 선배임을 자칭하는 [] 교육원의 영업사원들로부터 동아리 가입을 권유받고 회원가입 및 교재신청을 한 사실, 회원가입 및 교재신청을 한 대학생들 중 소외 권 [], 임 [], 이 [], 조 [], 이 [], 김 [], 황 [], 이 [] 등 다수의 대학생들은 모두 미성년자들이어서 위 교재를 배달받은 후 본인 혹은 그 부모들이 위 교재신청을 취소하고 그 교재를 반품하였으나 [] 교육원에서 그 수취를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재대금으로 제작비, 섭외비, 강사료, 회관운영비 등을 충당한다고 하면서도(위 대학생들이 위 [] 교육원에서 개설한 강의를 듣지 않겠다고 해약의 의사를 밝힌 것과 관계없이) 약정된 대금 전부를 교재비라고 하여 그 전액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의 최고장, 독촉장, 호소문 등의 문서를 계속하여 보내고, 심지어 법적처리신청예정통보서를 보내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증인 [] 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 교육원은 학교 선배라고 사칭하여 대학 신입생들에게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거나 회원가입 신청서를 받아낸 사실이 없다고 하는 부분과 교재 구입자가 교재를 반품해 올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별도의 학원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교재 구입자가 반품을 요구하였는데도 [] 교육원에서 법적처리신청예정통지서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하는 부분의 신청인의 반론보도청구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청인에게 반론보도의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보여지므로, 이 부분의 반론보도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한편 위(1)항에서 판단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신청인의 반론보도청구 중 당원이 인정한 별지 2. 기재 반론보도문의 내용부분에 관하여는 증인 이 []의 증언만으로는 이 부분의 반론보도문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론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한편 신청인이 주장하는 정정보도문안 중 다.항에서 살핀 부분 이외의 부분은 피신청인의 원래의 보도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서 그 반론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거나,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으로서 신청인에게 반론을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그 부분의 반론보도청구는 이유없다.

3. 결론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별지 1.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문의 방송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기로 하되, 피신청인이 반론보도를 명한 기간 내에 반론보도문을 방송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의 익일부터 이행완료시까지 신청인에 대하여 1일 금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함이 상당하여 그 지급을 명하고, 그 외에 위 인용된 부분을 넘어 별지 2.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의 방송을 구하거나 위 1일 금 10,000,000원의 범위를 넘어 이행강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10.

재판장 판사 심 명 수

판사 최 중 길

판사 윤 태 호

〈별지 1〉 반론보도문

한국방송공사는 1996. 3. 6. 'KBS 9시뉴스'와 '뉴스라인'에서 『교재 사기판매 극

성』이라는 제목하에 “교재판매업체들이 새학기 대학가에 신입생들을 상대로 카세트 테이프와 교재 등을 강제로 사게 하는 경우가 있고, 사기판매인들은 학교선배라고 사칭하여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면서 회원가입 신청서를 받아내거나 혹은 자격증 안내문을 보내준다거나 설문조사를 한다고 유인하여 가입신청서를 받아낸 다음 위 신청서들을 계약서처럼 이용하여 교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들이 반품을 요구할 경우 법적처리신청예정통보서라는 엉터리 독촉장으로 학부모들을 위협해 대금을 받아내기도 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그러한 형태의 사기판매를 하는 업체 중의 하나로 [] 교육원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 교육원을 운영하는 진 [] 씨는 [] 교육원에서는 대학 신입생들을 상대로 영어회화 교재 등을 강제로 사게 하거나 사기판매를 한 사실이 없고, 자격증 안내문이나 설문지 등을 이용하여 회원가입을 권유한 바도 없다고 반박해 오므로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밝혀 드립니다.

〈별지 2〉 신청인이 청구하는 정정보도문

본 방송 1996년 3월 6일 ‘KBS 9시 뉴스’ 및 ‘뉴스라인’ 에서 방영한 『교재 사기판매 극성』이라는 보도 중 [] 교육원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과 다르므로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 교육원은 신입생들을 상대로 영어회화 교재 등을 강제로 사게 하거나 교재판매와 관련하여 사기판매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 교육원은 학교 선배라고 사칭하여 대학 신입생들에게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거나 그들로부터 회원가입 신청서를 받아낸 적이 없으며 그들에게 자격증 안내문이나 영어강의 가입신청서를 교부하거나 받은 사실도 없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교육원은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대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나누어 주거나 설문지를 받은 일이 없고 설문지를 이용하여 회원가입을 권유한 적이 없습니다.

[] 교육원은 교재 구입자가 법정기한 내에 교재를 반품해 올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약정된 손료 이외의 돈을 요구하거나 또는 별도의 학원비를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교육원은 교재 구입자가 법정 반품기간이 지난 뒤에라도 교재를 반품할 경우 이를 모두 수용하였으며 다만 교재 구입자가 반품을 요구하였는데도 [] 교육원이 법적처리신청예정통지서를 보낸 사실이 없고 또 교재 구입자가 법정 반품기간이 지난 뒤에라도 교재를 반품하지 않으면서 교재대금 납부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백히 나타내거나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4차에 걸쳐 안내문과 호소문을 보낸 뒤 그 때까지도 교재를 반품하지도 않고 교재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구입자에 대하여 법적처리신청예정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교육원은 교재판매와 관련하여 당국으로부터 처벌이나 그밖의 어떠한 제재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교육원은 사기판매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판명되었습니다.

〈별지 3〉 원래의 보도 내용

류 앵커: 새학기 모든 대학 신입생들을 상대로 카세트 테이프와 교재 등을 강제로 사게 하는 사기판매가 대학가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기 판매업자들은 피해자들이 교재 등을 반품하는 경우에 법적처리신청예정통지서라고 하는 엉터리 독촉장까지 학부모들에게 보내서 위협하고 또 대금을 받아먹는 수법까지 쓰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 기자:(대학 캠퍼스를 비추면서) 대학 신입생을 상대로 하는 사기판매원들은 날로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사기판매원들은 학교 선배 등을 사칭하고 신입생들에게 동아리 가입 신청서를 받아낸 뒤 교재와 대금통지서를 집으로 보내 3, 40만원 하는 교재를 강제로 사게 합니다.

또 자격증 안내문을 보내준다거나 영어강의를 해준다고 속여 가입 신청서를 받아낸 다음 이것을 마치 계약서처럼 이용해 교재대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설문서를 주는 장면과 회원가입 및 교재신청서를 작성하는 장면을 비취줌)

특히 설문조사를 한다고 유인해 가입신청서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 여학생:(얼굴을 가리면서) 반품을 하고도 요구하구요. 교재뿐만 아니라 다니지도 않은 학원비 40만원 정도까지 요구해서 황당했습니다.

이 □□□□ 기자:(소비자보호원에서 상대방이 읽고 문서를 작성하는 장면과 피해구제카드를 비취주면서) 소비자보호원 등에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교재 판매업체는 □□□□ 교육원과 한국교육평가원,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연구원과 태성문화공사 등 23개 업체입니다.

(□□□□ 교육원이 보냈다는 법적처리 적힌 편지봉투를 비취주고 법적처리신청예정통지서를 자세히 비취줌) 특히 이들 업체들은 피해자들이 교재 등을 반품하는 경우 법적처리신청예정통지서라는 엉터리 독촉장으로 학부모들을 위협해 대금을 받아 내

기도 합니다.

피해자 학부모:(얼굴이 보이지 않은 자세로 법적처리신청예정통보서를 보면서) 심적으로 불안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많이 걱정을 했죠.

박[](소보원 피해구제국):(내용증명서를 손으로 들고 비춰주면서) 흔히들 전화로 사업자한테 해약을 요구하게 되는데, 전화로 하면 객관적 근거가 안 남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약을 요구한다는 그런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시면 됩니다.

이[] 기자:(대학 캠퍼스와 [] 교육원에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신입생들을 상대로 한 사기판매는 지난 3년 전부터 급속히 늘기 시작했으나 사기 판매업체에 대한 제재는 극히 미약해 새학기가 되면 소비자들의 피해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입니다.

□

전체 기사 중 원고의 반론내용 위치와
분량 등에 비추어 피고가 반론내용을
일부 보도한 것만으로 원고에게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6. 11. 22.자 결정 (96카합3172)
서울고등법원 1997. 6. 10.자 판결 (96라265)

事實概要

서울고등법원 제20민사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1997년 6월 10일 신양중학교 교장 황○○ 씨가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소송의 항소심판결에서 “전체 기사 중 원고의 반론내용이 차지하는 위치와 분량 및 기사의 제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반론내용을 일부 보도한 것만으로 원고에게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반론보도를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한겨레신문은 1996년 6월 11일자에서 “교장이 여중생 성추행”이라는 대제목하에 중간제목으로 “3학년 3명 불러 ‘명찰 왜 안 달았나’ 가슴 만져”와 소제목으로 “말썽 나자 진술서 강요… 교사들 퇴진운동”을 단 기사에서 문제의 교장인 신청인이 사생대회를 마친 뒤 집에 곧장 돌아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부로 불러온 여학생들 가운데 3명을 교장실에 불러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면서 끝부분에 “이에 대해 황교장은 ‘열심히 일한 교장을 일부 실력 없는 교사들이 음해한다’며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중재를 신청하였으나(96서울중재145) 피신청인이 “기사는 교사의 제보를 통해 사건을 인지한 후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심층취재한 사실보도”라고 주장하여 중재불성립되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반론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법원이 반론보도청구사건을 결정으로 재판한 것은 재판의 방식을 그르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며 1심결정을 취소하였다.

1심 決定文

사 건 : 96카합3172 반론보도

신 청 인 : 황○○(黃○○)

서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황길수, 신성철, 김오수, 이승준, 조경근

피신청인 :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권근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일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 이후에 최초로 발행하는 한겨레신문 제23면(사회면)의 좌측 상단부분에, 가로로 『교장이 여중생 성추행했다는 보도의 반론문』이라는 제목을 24급 고딕체 활자로 게재하고, 그 제목 아래에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반론문 및 반론보도신청인을 11급 명조체의 본문활자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7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금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신청인,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 이후에 최초로 발행하는 한겨레신문 사회면의 좌상단부분에, 별지 제2목록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가로 18cm, 세로 4.5cm의 크기로, 내용은 5호활자로 가로 2단에 걸쳐 게재하라는 결정 및 주문 제2항과 같은 결정.

이 유 :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한겨레신문 1996. 6. 11.자 제23면(사회면)의 상단 좌측부분에 대제목 『교장이 여중생 성추행』, 소제목 『3학년 3명 불러 ‘명찰 왜 안 달았다’ 가슴만저』 『말썽나자 진술서 강요… 교사들 퇴진운동』, 그 아래 본문 기사내용으로 “중학교 3학년 여학생들이 교장한테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힘에 따라 이 학교 교사들이 교장퇴진 서명운동에 나설 방침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10일 학생들과 교사들에 따르면 서울 신양중학교 황아무개(55) 교장은 지난달 16일 어린이 대공원에서 열린 학교 사생대회를 마친 뒤 집에 곧장 돌아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부에 불려온 여학생들 가운데 3명을 교장실에 불러 ‘명찰이 어디 갔느냐’며 가슴을 만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양은 ‘교장선생님이 전교생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 부모님을 부르겠다고 겁을 줬다’며 ‘자꾸 명찰 얘기를 하며 조끼 안으로 손을 집어 넣었다’고 말했다. 또 황교장은 두 여학생을 먼저 내보내고 ○양만 교장실에 남겨 문을 닫은 뒤 다시 비슷한 짓을 한 뒤 ‘담배를 피우냐’는 등의 질문을 했다는 것이다. 한편 성추행 시비를 둘러싸고 말썽이 일자 황교장은 10일 낮 12시 3분께 이들 3명을 다시 교장실로 불러 교감·학생주임 등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는 진술서를 쓰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은 ‘학생주임이 전학시키겠다, 퇴학시키겠다고 말해 사실이 아닌데도 어쩔 수 없이 진술서를 썼다’고 밝혔다.(중략) 이와 관련해 교사들은 ‘교장이 언론에 보도될 것을 우려해 오늘 학교 밖에도 못 나가게 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가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반론보도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한겨레신문에 공표된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적 주장이 공표됨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도에서 이미 신청인의 반박내용을 함께 게재하여 신청인에게 반박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신청인이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위 법률 제1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반론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도의 끝부분에서 “이에 대해 황교장은 ‘열심히 일한 교장을 일부 실력없는 교사들이 음해한다’ 며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고 말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보도의 크기 및 구성과 그 중 위 반박보도가 차지하는 분량 및 내용, 대제목과 소제목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내용의 보도만으로는 이 사건 보도 전부에 대하여 충분한 반론권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 및 게재방법

반론보도의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반론을 제기하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의 범위를 고려할 때 신청인이 구하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반론 보도문의 범위 안에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반론보도문의 크기 및 게재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사 중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 원문기사 부분의 크기 및 게재 면수, 반론보도문의 글자수 등을 종합하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간접강제신청부분에 관하여는 주문 제1항의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데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주문 제2항과 같이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1. 22.

재판장 판사 나 종 태
판사 김 대 응
판사 서 경 환

<제1목록> 교장이 여중생 성추행했다는 보도의 반론문

1996. 6. 11.자 한겨레신문은 23면(사회면)에서 『교장이 여중생 성추행』이라는 제목으로 서울 [] 신양중학교 황아무개(55) 교장이 여중생을 성추행했다는 내용 등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그러나, 황교장은 복장이 불량한 중학교 3학년 여학생 3명을 교장실로 불러 훈계를 하던 중 명찰을 달도록 교복 상단의 명찰 주머니 안에 들어 있는 명찰을 꺼내며 주머니를 흔든 사실이 있을 뿐이다.

위 기사에서는 황교장이 학생부실에서 여중생의 조끼 안에 손을 넣었다고 하였으나, 그곳에는 교감 및 학생주임 등이 함께 있었으므로, 황교장이 이들 앞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할 수는 없다. 위 기사에서는 사건발생 후 학생주임이 관련 학생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실이 없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당시 위 학생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진술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다. 위 기사는 황교장이 언론에 보도될 것을 우려하여 교사들을 밖에 못나가게 했다고 하였으나, 그 날 조퇴를 허가받고 학교 밖에 나간 교사가 2명 있다.

위 학생들은 황교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의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받았다.

반론보도청구인 황○○

<제2목록> 신청인이 게재를 청구하는 반론보도문

교장이 여중생 성추행했다는 본지 기사는 사실과 크게 달라

1996. 6. 11.자 한겨레신문은 23면(사회면)에서 『교장이 여중생 성추행』이라는 제목으로 서울 광진구 신양중학교 황아무개(55) 교장이 여중생을 성추행했다는 내용 등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그러나 위 기사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황교장은 복장이 불량한 중학교 3학년 여학생 3명을 교장실로 불러 훈계를 하던 중 명찰을 달도록 교복 상단의 명찰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명찰을 꺼내며 주머니를 흔든 사실이 있을 뿐이다.

위 기사에서는 황교장이 학생부실에서 여중생의 조끼 안에 손을 넣었다고 하였으나, 그 날 학생부실에는 학생 6명과 교감 및 학생주임이 함께 있었으므로, 이들이 보고 있는 데서 황교장이 위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된다.

위 기사에서는 학생주임이 퇴학 또는 전학 운운하여 학생들이 할 수 없이 진술서를 쓴 것처럼 되어 있으나, 학생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진술서를 작성한 것일 뿐 위 기사내용과 같은 경위로 진술서를 썼던 것이 결코 아니다.

위 기사는 황교장이 교사들을 밖에 못나가게 했다고 하였으나, 그런 적은 전혀 없고 바로 그 날 조퇴를 허가받고 학교 밖에 나간 교사가 2명이나 있었다.

위 기사내용은 신양중학교에 침투한 일부 운동권 교사들이 학생들을 부추겨 문제가 되었다. 위 기사는 그런 부추김을 받은 학생 또는 학부모의 말만 믿고서 한 사실과 다른 보도이다.

반론보도청구인 황○○

2심 判決文

사 건 : 96라265 반론보도

원고, 피항소인 : 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성철, 조경근, 김오수, 이승준

피고, 항소인 :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권근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국,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변론종결 : 1997. 5. 20.

제1심결정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6. 11. 22.자 96카합3172 결정

주 문 : 1.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한겨레신문 사회면 중 가장 마지막 면의 좌단 중앙 부분에 [별지 1] 기재 반론보도문을 『반론보도문』이라는 큰 제목은 26포인트 고딕체 활자로, 『교장의 여중생 성추행 보도 관련 반론문』이라는 작은 제목은 18포인트 고딕체 활자로, 나머지 내용은 11포인트 명조체의 본문활자로 1회 게재하라.

만일 피고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안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7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매일 금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 최초로 발행하는 한겨레신문 사회면의 좌상단 부분에 [별지 2]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가로 18cm, 세로 4.5cm의 크기로, 내용은 5호 활자로 가로 2단에 걸쳐 게재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안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7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매일 금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1. 기초사실

피고가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한겨레신문 1996. 6. 11.자 제23면(사회면)의 상단 왼쪽 부분에 대제목 『교장이 여중생 성추행』, 중간 제목 『3학년 3명 불러 ‘명찰 왜 안 달았나’ 가슴 만져』, 소제목 『말썽 나자 진술서 강요… 교사들 퇴진운동』이라고 제목을 단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중학교 3학년 여학생들이 교장한테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힘에 따라 이 학교 교사들이 교장 퇴진 서명운동에 나설 방침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10일 학생들과 교사들에 따르면, 서울 _____신양중학교 황아무개(55) 교장은 지난 달 16일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린 학교 사생대회를 마친 뒤 집에 곧장 돌아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부에 불러온 여학생들 가운데 3명을 교장실에 불러 “명찰이 어디 갔느냐”며 가슴을 만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양은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 ‘부모님을 부르겠다’고 겁을 줬다”며 “자꾸 명찰 얘기를 하며 조끼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고 말했다.

또 황교장은 두 여학생을 먼저 내보내고 ○양만 교장실에 남겨 문을 닫은 뒤 다시 비슷한 짓을 한 뒤 “담배를 피우냐”는 등의 질문을 했다는 것이다.

한편 성추행 시비를 둘러싸고 말썽이 일자 황교장은 10일 낮 12시 3분께 이들 3명을 다시 교장실로 불러 교감·학생주임 등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는 진술서를 쓰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은 “학생주임이 전학시키겠다, 퇴학시키겠다고 말해 사실이 아닌데도 어쩔 수 없이 진술서를 썼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교장은 “열심히 일한 교장을 일부 실력 없는 교사들이 음해한다”며 “나는 전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교사들은 “교장이 언론에 보도될 것을 우려해 오늘 학교 밖에도 못 나가게 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2. 제1심결정의 취소

가. 원고는 1996. 7. 8.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의 게재와 이에 대한 간접강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이를 신청사건으로 처리하여 변론을 열지 않고 당사자들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쳐 1996. 11. 22.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그러나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제19조의 2 제1항은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이외에는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반론보도 등청구사건심판규칙 제3조도 반론보도청구사건을 심리할 경우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경우 이외에는 변론을 열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재판은 변론을 열어 판결로써 하여야 함이 분명하다.

이처럼 본래 판결로써 재판하여야 할 사항을 원심이 결정으로 재판한 것은 재판의 방식을 그르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제1심결정은 이를 취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8조 단서를 준용하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서 본안의 재판을 하기로 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반론보도청구권의 발생

(1) 앞에서 본 피고 발행의 한겨레신문에 게재된 보도 내용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의 존부에 관한 사실적 주장임이 분명하며, 이러한 주장이 공표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먼저, 피고가 게재한 위 기사의 내용이 모두 사실에 기초한 것이므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반론보도청구권은 피해자가 언론사의 보도내용에 대하여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게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에 불과하고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하게 시정 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는 아니므로, 그 대상이 된 언론사의 보도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는 그 권리행사의 요건이 아니며 진실에 부합되는 보도내용에 대하여도 반론보도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468 판결 및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가카19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가) 피고는 다시 ① 원고가 주장하는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 보도에서 이미 원고의 반박내용을 함께 게재하여 반박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강제추행 등 고소사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사실도 이미 보도하였으므로, 원고는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으며, 따라서 피고는 위 법률 제1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반론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원고로부터 위 보도내용과 같이 피해를 입었다는 학생들과 또는 위 학생들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학부모 및 교사 등의 진술을 기재한 을 제1호증의 3 내지 6·17 내지 19·23·28 내지 31·33·35 내지 38·40 내지 42·61 내지 63·66·67, 을 제2, 6, 7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에 배치되는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을 제1호증의 13 내지 15와 같다), 갑 제4호증의 1·2, 갑 제5, 7호증, 갑 제8호증의 4·5, 을 제1호증의 9 내지 11·22·24·26·27·57 내지 60·65·66의 각 일부 기재 등에 비추어 원고가 게재를 구하고 있는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다) 한편 피고가 위 기사의 끝 부분에서 “이에 대해 황교장은 ‘열심히 일한 교장을 일부 실력 없는 교사들이 음해한다’며 ‘나는 전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게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6. 10. 5.자 한겨레신문 22면에 원고가 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받았으나 무혐의로 처리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언론의 보도가 개인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에 여론 형성에 미치는 언론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 개인이 입는 피해는 매우 큰 것이므로 이른바 무기대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피해자인 개인에게도 신속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을 부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위 전체 기사 중 원고의 반론내용이 차지하는 위치와 분량 및 위 기사의 제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의 반론내용을 일부 보도한 것만으로 원고에게 위 기사 전체에 대하여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갑 제9호증의 1 내지 9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기사내용을 보도한 이

후 1996. 6. 12.부터 같은 해 7. 16.까지 9차례에 걸쳐 한겨레신문에 ① 원고의 학생들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교육청에서 조사하고 있고, ② 교사와 학생들이 원고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으며, ③ 시민단체에서도 원고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고, ④ 원고가 1994년경 교사도 성희롱한 혐의가 있어 조사가 확대되고 있다는 등의 기사를 계속 게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가 검찰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도한 것만으로 원고가 반론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라) 결국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반론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반론보도의 내용과 크기 및 게재방법

(1)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피고의 기사 내용과 이로 인해 침해된 원고의 법익, 그리고 위 보도내용 중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박적 사실의 진술을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의 범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반론보도의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함이 상당하다.

(2) 또한 위 반론보도문은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한겨레신문에 게재하되, 사회면 중 가장 마지막 면의 좌단 중앙 부분에 [별지 1] 기재 반론보도문을 『반론보도문』이라는 큰 제목은 26포인트 고딕체 활자로, 『교장의 여중생 성추행 보도 관련 반론문』이라는 작은 제목은 18포인트 고딕체 활자로, 나머지 내용은 11포인트 명조체의 본문활자로 1회 게재하는 것이 원 보도문과 균형을 이루는 범위 안에서 반론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방법이라고 인정된다.

다. 간접강제

한편 피고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안에 위 반론보도 게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7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매일 금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4. 결론

따라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6. 10.

재판장 판사 이 용 우
판사 최 완 주
판사 강 일 원

〈별지 1〉 반론보도문

교장의 여중생 성추행 보도관련 반론문

1996. 6. 11.자 한겨레신문 23면(사회면)에서 『교장이 여중생 성추행』이라는 제목으로 서울 [] 신양중학교 황아무개(55) 교장이 여중생을 성추행했다는 내용 등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그러나 황교장은 학교 사생대회를 마치고 집에 곧장 돌아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부에 불려온 중학교 3학년 여학생 3명을 교장실로 불러 훈계하고 교복 윗도리 상단 주머니에 들어 있는 명찰을 꺼내주면서 복장을 단정히 하라고 주머니를 흔든 사실이 있을 뿐이며, 황교장이 교장실에서 여중생들의 조끼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학생들을 성추행한 사실은 없다. 또한 학생들이 성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진술서를 쓸 당시 학생들을 퇴학시키겠다는 등 위협한 사실이 없으며, 학생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아울러 위 기사에서는 일부 교사가 황교장이 언론에 보도될 것을 우려하여 교사들을 학교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바로 그 날 조퇴를 허가받고 학교 밖에 나간 교사가 2명이나 있다.

반론보도청구인 황○○

〈별지2〉 원고가 게재를 구하고 있는 반론보도문

교장이 여중생 성추행했다는 본지 기사는 사실과 크게 달라

1996. 6. 11.자 한겨레신문은 23면(사회면)에서 『교장이 여중생 성추행』이라는 제목으로 서울 [] 신양중학교 황아무개(55) 교장이 여중생을 성추행했다는 내용 등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그러나 위 기사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황교장은 복장이 불량한 중학교 3학년 여학생 3명을 교장실로 불러 훈계를 하던 중 명찰을 달도록 교복 상단의 명찰 주머니 안에 들어 있는 명찰을 꺼내며 주머니를 흔든 사실이 있을 뿐인데, 신양중학교에 침투한 일부 운동권 교사들이 학교 내의 교권 장악을 위하여 문제된 학생들을 부추기면서 황교장이 여중생의 가슴을 만진 것처럼 사실을 왜곡, 날조하여 언론사의 기자들에

게 유포시킨 것이다.

위 기사에서는 황교장이 학생부실에서 여중생의 조끼 안에 손을 넣었다고 하였으나, 그 날 학생부실에는 학생 6명과 교감 및 학생주임이 함께 있었으므로, 이들이 보고 있는 데서 황교장이 위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

위 기사에서는 학생주임이 퇴학시키겠다, 전학시키겠다고 하여 학생들이 할 수 없이 진술서를 쓴 것처럼 되어 있으나, 황교장은 1996. 6. 10. 오늘 언론사 기자들이 취재차 학교를 방문했기에 여학생 4명을 교장실에 오도록 한 다음, “기자들의 말을 들어보니 교장이 크게 중상모략에 당하고 있다. 내가 언제 너희들 가슴을 만진 일이 있느냐? 사실대로 말해보라”고 하였고, 동석한 교감과 교무주임, 3학년 주임 등 4명도 여학생들에게 “우리 앞에서 솔직히 말해 보라”고 하자, 위 여학생들은 “교장선생님이 우리 가슴을 만진 일이 없다”라고 하였으므로, “그렇다면 그 사실을 진술서로 써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자, 학생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진술서를 작성한 것일 뿐 학생주임이 퇴학 또는 전학 운운하여 진술서를 썼던 것은 결코 아니다.

위 기사는 황교장이 교사들을 밖에 못나가게 했다고 하였으나, 그런 적은 전혀 없고 바로 그 날 조퇴를 허가받고 학교 밖에 나간 교사가 2명이나 있었다.

그러므로 위 신문기사는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도 아니한 채 일부 운동권 교사들과 그들의 사주를 받은 학생 또는 학부모의 말만 믿은 나머지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보도이다.

반론보도청구인 황○○

□

보도내용에서 특정되거나 추지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당해보도가
그 사람에 관한 것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나
언론기관이 그 사람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등은 개별적인 연관성이 인정된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5. 2. 20.자 판결 (94카합3123)
서울고등법원 1995. 7. 12.자 판결 (95나11261)
대법원 1996. 12. 23.자 판결 (95다37278)

事實概要

대법원 제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1996년 12월 23일 성균관대학교 정 교수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 상고심 재판에서 피신청인인 한국방송공사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보도내용에서 성명이나 초상 등을 통하여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도내용 자체로서는 보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언론기관이 당해보도를 하기 위하여 취재한 내용 등과 당해보도의 내용을 대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 당해보도가 그 사람에 관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 또 당해보도를 한 언론기관에서 보도내용이 그 사람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등은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공사는 KBS-1TV 1994년 10월 6일 21:00시 뉴스시간에 “국가안전기획부는 미국 유학시절 북한과의 접촉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모 대학 정모 교수’ 등 2명을 연행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신청인은 그 해 10월 2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으나 피신청인측에서 “신청인이 지칭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정보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중재가 불성립되자(94서울중재27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 모두 인용판결을 받은 바 있다. 피신청인은 이에 불복 상고했다.

1심 判 決 文

사 건 : 94카합3123 정정보도

신 청 인 : 정

과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두환, 김기중, 안상운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서울

대표자 사장 홍두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변론종결 : 1995. 2. 6.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KBS 제1텔레비전 9시뉴스 시간 첫머리에서 진행자의 오른쪽 상단화면에는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화면 아래부분에는 두 줄로 “정 교수 북한장학금을 받거나 친북활동 한 적 없다”라는 문장을 계속 표시하면서 (글자는 통상의 뉴스보도와 같은 크기로)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뉴스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그가 방송하는 제1텔레비전에 별지목록 2기재 정정보도문을 방송 방법에 따라 별지 제3 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방송하여야 한다.

이 유 :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3 내지 6,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은 KBS 제1텔레비전의 1994. 10. 6. 9시뉴스 프로그램에서 『북 장학금 교수 조사』라는 제목 아래 진행자인 소외 이 이 “국가안전기획부는 오늘 서울 모 대학 정모 교수 등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연행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기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장학금으로 공부해 대학 교수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지난 8월 서강대 박 총장의 발언과 관련해 그동안 10여 명의 대학교수들을 내사해 왔다고 밝히고 유학시절 북한과의 접촉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 교수들을 연행

해 조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뉴스를 보도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보도과정에서 서울 모 대학 정모 교수라고만 표현하여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보도하기는 하였으나, 위 방송 당일 같은 시간대에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는 『교수들 친북조사』라는 제목하에 “안기부가 북한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자금을 받은 혐의로 정 []성균관대 []과 교수와 송실대 김 []과 교수를 긴급구속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뉴스를 방송하였고, 이보다 앞선 같은 날 SBS 8시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북장학금 교수 구속』이라는 제목하에 “안기부가 현직 대학교수 2명을 국가보안법 혐의로 긴급구속해 독일 유학 중 밀입국하거나 이적단체에 가입하는 등의 친북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라는 내용의 뉴스를 방송하였으며, 방송 다음 날인 1994. 10. 7.자 조간신문인 동아일보, 조선일보 및 경향신문 등에서 북한장학금 교수와 관련한 안기부의 연행조사 기사를 보도하면서 신청인을 성균관대 정모 교수(42세) 또는 성균관대 []과 정 [] 교수(41·여)라고 지칭하였다.

다. 위와 같이 동 시간대 또는 그 전후로 방송, 보도된 다른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 및 신문기사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위 보도내용이 신청인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2.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방송프로그램에서 공표된 위 보도내용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1994. 10. 6.자 KBS 9시뉴스의 신청인 관련 보도는 안기부 요원으로부터 신청인을 포함한 교수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긴급구속해 연행조사한다는 설명을 듣고 이에 따라 기사를 작성하여 방송을 한 것이고, 다음 날인 1994. 10. 7. 안기부의 「독일 유학생 부부 간첩 사건」 발표에 따라 신청인 등은 별다른 혐의사실이 없어 귀가조치되었다는 방송을 다시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 신청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정보도청구권은 피해자가 원문보도에 대하여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안기부의 설명을 근거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여 방송하였다거나 이 사건 방송 다음 날 신청인이 별다른 혐의없이 귀가조치되었다는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 신청은, 앞서 본 이 사건 방송의 경위, 그 내용, 방송방법, 방송시간, 신청인의 사회적 지위 및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신청인의

명예훼손의 정도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별지 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의 방송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2. 20.

재판장 판사 김 용 주
판사 강 선 희
판사 이 흥 구

〈별지 1〉 정정보도문

한국방송공사는 1994. 10. 9. 9시뉴스에서 『북장학금 교수조사』라는 제목하에 “서울 모 대학 정모 교수 등이 박□ 총장의 북한장학금 교수 발언과 관련해 안기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으나, 당사자인 성균관대학교 □과 정□ 교수는 1976년 독일 에큐메니칼 장학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유학을 한 것일 뿐 북한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어 박□ 총장이 말한 북한장학금 교수와는 무관하며 안기부 수사과정에서도 북한장학금 수령여부나 친북활동 등에 관한 조사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반박해 오므로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밝혀드립니다.

〈별지 2〉 정정보도문

1. 이 사건 판결문의 송달 후 최초로 방송되는 한국방송공사 제1텔레비전(KBS-1TV) 9시뉴스의 시작 직후 바로 『정정보도문』이라는 글씨를 화면 중앙 상단에 큰 글씨로 가로로 표시하고, 그 다음 줄에는 “1994년 10월 6일 KBS 9시뉴스 보도와 관련하여”라는 글씨를, 그 다음줄에는 “정□ 교수, 북한장학금 받은 사실 없다”라는 글씨를 각각 시청자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명조체 글씨로 화면 가운데에 가로로 표기하여 5초간 음향 없이 송출함으로써 정정보도문이 방송된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2. 이어서 뉴스 진행자가 별지 제2목록 『정정보도문』을 9시 뉴스의 뉴스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제목부터 읽어 방송하는 동시에 화면 상단에는 『1994년 10월 6일 북장학금 교수 조사 방송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글을 계속 표시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정정보도문의 대상을 알 수 있게 하고 화면의 중, 하단에는 뉴스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의 읽는 속도에 맞추어 전문을 계속 두 줄씩 적절한 크기의 명조체 글씨로

가로로 표기하되 한 줄에 들어가는 글자수는 10자 내지 15자로 한다. 다만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소제목, 단락이 끝나는 부분은 10글자에 미달하여도 한 줄로 처리한다.

3. 정정보도문을 표시할 글씨는 흰색으로 하고 배경화면은 녹색 또는 청색계통의 단색으로 하며 배경화면의 밝기와 글씨의 선명도는 정정보도문임을 나타내는 글씨가 쉽게 식별되도록 하고 정정보도문의 낭독 외에는 음향은 방송되지 않도록 한다.

〈별지 3〉 정정보도문

제 목: 정 [] 교수, 북한장학금 받은 사실 없다.

본 방송 1994년 10월 6일 KBS 9시뉴스에 방영된 『北장학금 교수 조사』 보도 중 성균관대학교 [] 과 정 [] 교수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정 [] 교수에 대한 대북혐의는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정 [] 교수는 북한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정교수는 북한으로부터 장학금 이외에도 어떠한 명목으로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정교수는 1976년 독일 에큐메니칼장학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1977년 10월 출국하였다. 독일정부기관인 개발원조처가 그 재정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에큐메니칼재단은 정교수의 왕복항공권, 체류기간 동안의 생활비, 심지어 귀국 때의 이사비용과 박사학위논문 출판비용까지 부담하였다.

정교수는 박 [] 총장이 말한 이른바 북한장학금 교수와는 무관함이 밝혀졌다. 정교수를 연행한 안기부 수사관은 정교수에게 긴급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정교수는 안기부 수사과정에서 북한장학금의 수령여부나 밀입북여부, 친북활동 등에 관하여 조사받은 사실이 없다.

본 방송의 미확인 보도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정 [] 교수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

2심 判決文

사 건 : 95나11261 정정보도

신청인, 피항소인: 정 []

과천시 []

피신청인, 항소인: 한국방송공사

서울

대표자 사장 홍두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변론종결 : 1995. 6. 7.

원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5. 2. 20. 선고 94카합3123 판결

주 문 : 1.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그가 방송하는 제1텔레비전에 별지 목록 기재 정정보도문 방송방법에 따라 별지 제3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방송하여야 한다.

항소취지 : 원심판결 중 피신청인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나. 소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9시 뉴스 프로그램에서 공표된 위 보도내용에 의하여 자신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위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따라 위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별지 2목록 기재 방송방법에 따라 별지 3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의 방송을 할 것을 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항쟁한다.

가. 피신청인은 위 뉴스 방송 중 구체적으로 신청인의 이름을 지명한 것이 아니고 '모 대학' '정모' 교수라고만 밝혔으므로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보도내용만으로는 신청인의 인격적인 법익이 침해된 것이 아니어서 신청인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또는 허위 보도로 인한 인격적 법익의 침해에 있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함은 물론이나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할 필요는 없고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상황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정도이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앞서 1.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위 뉴스방송 전후로 보도된 다른 방송 또는 신문 기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편견 없는 상당수의 시청자나 또는 그

뉴스 내용에 관심이 있는 시청자라면 위 '정모' 교수가 신청인임을 별 어려움 없이 알 수 있었다고 보여져 피해자가 특정되고 보도내용과 신청인의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됨은 물론 그 보도내용에 비추어 신청인의 인격적 법익이 상당히 손상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피신청인은, 위 1994. 10. 6.자 KBS 9시뉴스의 신청인 관련 보도는 안기부 요원으로부터 신청인을 포함한 교수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긴급구속해 연행조사한다는 설명을 듣고 이에 따라 기사를 작성하여 방송을 한 것이고, 다음 날인 1994. 10. 7. 안기부의 「독일유학생 부부 간첩사건」 발표에 따라 신청인 등은 별다른 혐의사실이 없어 귀가조치되었다는 방송을 다시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는 그 신청인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정보도청구권은 피해자가 원문보도에 대하여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서 보도내용이 진실한지 여부는 피해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사 피신청인이 안기부의 설명을 근거로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 믿고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여 방송하였다더라도 신청인의 인격적 법익이 훼손되었음에는 영향이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방송 다음날 신청인이 별다른 혐의 없이 귀가조치되었다는 해명성의 방송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신청인이 원문보도에 대하여 반박할 권리가 실현되었다 할 수 없어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는 되지 아니하므로 위 피신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청구한 정정보도문의 내용은 정정보도청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정정보도청구권자의 입장에서 보도된 사실에 관하여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반박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고 신청인의 명예를 회복시킨다거나 원문보도를 진실에 맞게 시정정보도할 것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신청인 주장의 별지 3목록 기재 정정보도문 중 보도내용을 진실에 맞게 바로 잡는다거나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사죄한다는 부분은 정정보도청구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부당하므로 위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기로 한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정정보도 뉴스를 9시뉴스 첫머리에서 방송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의 9시뉴스 시간은 국내외적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사건을 보도하는 시간대인데 신청인의 이 사건 반박내용을 머릿기사로 방송토록 함은 뉴스가치의 형평성을 무시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신청인에

대한 위 보도내용은 대학교수인 신청인이 간첩혐의를 받고 구속되었다는 것으로 신청인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안보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뉴스라 할 수 있고, 한편 신청인은 그와 같은 보도에 대하여 반박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문보도의 시간대보다도 앞서 방송하여야 시청자들에게 그 반박보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반박보도문에 관하여는 그 자수에 관한 제한 외에 달리 방송의 방법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따로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반박 보도문을 9시뉴스 첫머리에 방송토록 함은 합리성이 있다고 보여져 위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하겠다.

마. 끝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은 원문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방송법 제41조 5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정정보도문에는 정정보도를 위하여 원문요약 기사가 먼저 인용되어야 하므로 정정보도기사 자체를 아주 간략하게 하지 않으면 원문의 자수를 초과하지 않을 수 없어 실제로 동 규정을 준수하기가 불가능하고(따라서 동 규정의 의미를 원문의 자수와 정정보도문 중 인용된 원문 기사를 제외한 순수한 반박보도문의 자수만을 비교하여 원문기사의 자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제한함이 합리적이다), 다음으로 원문보도는 대체로 함축 요약되어 보도됨이 상례임에 반하여 반박보도는 그 속성상 함축된 원문기사에 대하여 반박을 하여야 하는 탓에 원문의 자수를 초과하여 반박함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으므로 반박보도가 원문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원문보도보다 지나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으로 새김이 상당하다고 볼 때 결국 위 방송법의 규정은 이를 강행규정으로 볼 것이 아니고 임의규정 내지는 훈시규정으로서 원문보도의 내용 여하에 따라 동 규정의 준수여부를 달리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피신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정정보도의 내용 및 방법

가. 내용

앞서 살핀 원문보도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반박보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하고, 원문인용분의 자수를 제외하고 순수한 반박보도문의 자수를 원문보도 자수인 186자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신청인은 별지 1목록과 같이 정정보도문을 보도하여야 할 것이다.

나. 방법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피신청인 제1텔레비전 9시뉴

스 시간의 첫머리에 진행자의 우측 상단화면에는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화면 아래부분에는 두 줄로 「정□ 교수 북한장학금을 받거나 친북활동 한 적 없다」라는 문장을 계속 표시하면서(다만 글자는 평소 뉴스보도와 같은 크기로 하여야 한다),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뉴스 진행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의 보도방법에 따라 별지 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별지 3 기재의 방법에 따라 별지 2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하는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신청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7. 12.

재판장 판사 신 정 치
 판사 구 만 회
 판사 조 동 섭

〈별지 1〉 정정보도문

한국방송공사는 1994. 10. 6. 9시뉴스에서 『북 장학금 교수 조사』라는 제목하에 “서울 모 대학 정모 교수 등이 박□ 총장의 북한장학금 교수 발언과 관련해 안기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으나, 당사자인 성균관대학교 □□□□ 과 정□□ 교수는 1976년 독일 에큐메니칼 장학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유학을 한 것일 뿐 북한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어 박□□ 총장이 말한 북한장학금 교수와는 무관하며 안기부 수사 과정에서도 북한장학금 수령여부나 친북활동 등에 관한 조사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반박해 오므로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밝혀 드립니다.

〈별지 2〉 정정보도문

1. 이 사건 판결문의 송달 후 최초로 방송되는 한국방송공사 제1텔레비전(KBS-1TV) 9시뉴스의 시작 직후 바로 『정정보도문』이라는 글씨를 화면 중앙 상단에 큰 글씨로 가로로 표시하고, 그 다음 줄에는 “1994년 10월 6일 KBS 9시뉴스 보도와 관련하여”라는 글씨를, 그 다음 줄에는 “鄭□□ 교수, 북한장학금 받은 사실 없다”라는

글씨를 각각 시청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명조체 글씨로 화면 가운데 가로로 표기하여 5초간 음향 없이 송출함으로써 정정보도문이 방송된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2. 이어서 뉴스진행자가 별지 제2목록 『정정보도문』을 9시뉴스의 뉴스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제목부터 읽어 방송하는 동시에 화면 상단에는 『1994년. 10월 6일, 北장학금 교수조사 방송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글을 계속 표시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정정보도문의 대상을 알 수 있게 하고 화면의 중, 하단에는 뉴스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의 읽는 속도에 맞추어 전문을 계속 두 줄씩 적절한 크기의 명조체 글씨로 가로로 표기하되 한 줄에 들어가는 글자수는 10자 내지 15자로 한다. 다만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소제목, 단락이 끝나는 부분은 10글자에 미달하여도 한 줄로 처리한다.

3. 정정보도문을 표시할 글씨는 흰색으로 하고 배경화면은 녹색 또는 청색계통의 단색으로 하며 배경화면의 밝기와 글씨의 선명도는 정정보도문임을 나타내는 글씨가 쉽게 식별되도록 하고 정정보도문의 낭독 외에는 음향은 방송되지 않도록 한다.

〈별지 3〉 정정보도문

제목: 정 [] 교수, 북한장학금 받은 사실 없다.

본 방송 1994년 10월 6일 KBS 9시뉴스에 방영된 『北장학금 교수 조사』 보도 중 성균관 대학교 [] 과 정 [] 교수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정 [] 교수에 대한 대북협회는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정 [] 교수는 북한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정교수는 북한으로부터 장학금 이외에도 어떠한 명목으로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정교수는 1976년 독일 에큐메니칼 장학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1977년 10월에 출국하였다.

독일정부기관인 개발원조처가 그 재정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에큐메니칼재단은 정교수의 왕복항공권, 체류기간 동안의 생활비, 심지어 귀국 때의 이사비용과 박사학위논문 출판비용까지 부담하였다.

정교수는 박 [] 총장이 말한 이른바 북한장학금 교수와는 무관함이 밝혀졌다.

정교수를 연행한 안기부 수사관은 정교수에게 긴급구속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大法院 判決文

사 건 : 95다37278

신청인, 피상고인 : 정□□

피신청인, 상고인 : 한국방송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5. 7. 12. 선고 95나11261 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방송법(1995. 12. 30. 법률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이 정하는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당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참조). 여기에서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보도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방송이나 신문 등의 보도내용까지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 함은 논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구 방송법이 규정하는 정정보도청구권(위 법 개정으로 반론보도청구권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인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 사실 보도한 내용과 개별적으로 연관된 사람(위 법 개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까지 포함하게 되었다)에게 방송의 사실 보도 내용과 반대되거나 다른 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하여 시청자들로 하여금 균형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음(당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818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보도내용에서 성명이나 초상 등을 통하여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도내용 자체로서는 보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언론기관이 당해 보도를 하기 위하여 취재한 내용 등과 당해 보도의 내용을 대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 당해 보도가 그 사람에 관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 또 당해 보도를 한 언론기관에서 보도내용이 그 사람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등은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한 보도내용이 신청인에 관한 것임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별다른 다툼이 없는 바, 그로써 신청인과 보도내용의 개별적 연관성은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구 방송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방송의 보도가 개인적인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에 여론형성에 미치는 방송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 개인이 입는 피해는 참으로 큰 것이므로 이른바 무기대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피해자인 개인에게도 신속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을 부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 방송법 제41조 제5항이 규정하는 정정보도문의 자수 제한은 혼시적인 의미만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원이 방송을 명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원문보도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알릴만한 가치가 있는 사실에 관한 간결한 기재로 구성되어 있는 이상 정정보도문의 자수가 원문보도문의 자수를 초과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에서 원심법원이 방송을 명한 정정보도문의 내용은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피신청인이 9시뉴스 중간 시간에 원문보도를 한 데 대하여 원심법원이 9시뉴스 시작과 동시에 정정보도를 명한 것이 위법한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구 방송법에는 정정보도의 방송 시간이나 순서에 관한 구체적인 제한이 없고, 오히려 구 방송법 제41조 제6항은 정정보도는 공표가 행하여진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정정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제7조 제1항은 법원이 정정보도심판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를 명하는 때에는 방송할 정정보도의 내용·크기·시기·횟수 등과 함께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법원이 제1항의 정정보도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취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규정들과 함께 정정보도청구의 재판에서 적용하여야 할 이른바 무기대등의 원칙을 고려하여 보면, 법원은 사안에 따라 적절한 반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정보도방송의 시간과 순서를 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공표한 내용이 “신청인 등이 북한의 장학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국가안전기획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 국민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서 큰 전파가능성을 가진 것인 반면에, 정정보도문의 내용은 국가의 안보와 교육, 사회 등 여러 부문에서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문보도와 같이 큰 전파가능성을 가진 것은 아님에 비추어 보면, 원심 법원이 9시뉴스 시작과 동시에 이

사건 정정보도를 하도록 명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12. 23.

재판장	대법관	정 귀 호
	대법관	김 석 수
	대법관	이 돈 희
주심	대법관	이 임 수

□

속보와 해설 기사를 통해 신청취지가 상세히 보도된 이상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다

춘천지방법원 1996. 10. 10.자 판결 (95카기299)

서울고등법원 1997. 6. 13.자 판결 (96나44350)

대법원 1997. 10. 28.자 판결 (97다28803)

事實概要

대법원(주심 최종영 대법관)은 1997년 10월 28일 전 강원도의원 정 [] 씨가 강원 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심판상고심에서 “피신청인이 애도서신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대한 속보 및 해설 기사를 통해 문제의 서신이 김일성 애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북접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의례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를 상세히 보도한 이상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검찰조사과정에서 서신에 신청인의 반정부투쟁경력 등을 담은 경위에 대하여 조사받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정정보도를 구하는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않은 지엽말단적인 것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할 바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일보는 1995년 9월 6일자 “鄭 [] 씨 검찰 소환” 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인 정 씨가 김일성 애도서신과 관련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하였다.

이에 정 [] 씨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였으나(95강원중재13) 피신청인이 “신청인은 공인이므로 알 권리의 대상이 되며, 사건기사 보도 후 검찰 수사가 무혐의 처리되어 이를 상세히 보도했으므로 신청인의 정정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중재불성립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정정보도를 게재하라고 판결하였으나 2심법원은 피신청인 패소를 취소하고 정정보도청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한편 이와 함께 강원일보사와 기자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피고들에게 각각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97. 11. 6. 판결 96가합2272)

1심 判決文

사 건 : 95카기299 정정보도심판

신청인 : 정 [] (鄭 [])

강릉시 []

피신청인 : 주식회사 강원일보사(江原日報社)

춘천시 []

대표이사 조 남 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승걸

변론종결 : 1996. 8. 22.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일자의 강원일보의,
가. 제1판의 19면의 기사란 중 좌측 상단에 2단의 크기로, 오른쪽 윗부

분에는 세로로 『반론문』이라는 제목을 24급 고딕체의 활자로 게재하고, 그 밖의 여백에는 별지 1.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 및 정정보도신청인의 성명을 10급 명조체의 본문활자로 게재하고,

나. 제3판의 19면의 기사란 중 좌측 상단에 2단의 크기로, 오른쪽 윗부분에는 세로로 『반론문』이라는 제목을 24급 고딕체의 활자로 게재하고, 그 밖의 여백에는 별지 2.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 및 정정보도신청인의 성명을 10급 명조체의 본문활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강원일보 제1, 2, 3판의 19면에 6단, 2.3cm 크기로, 오른쪽에는 6단에 걸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4호활자로, 위 제목 왼쪽에는 『정 [] 씨 정정보도 사건에 승소·김일성 애도편지로 볼 수 없어』라는 소제목을 영호활자로, 『김일성 애도편지… 운운은 강원일보의 왜곡기사로』, 『검찰 재소환 추가 보강조사 벌인 바 없는 허위조작기사로 밝혀져』를 각 4호활자로, 위 소제목의 왼쪽에 세로로 6단에 걸쳐 별지 3. 정정보도문의 내용 및 정정보도신청인의 성명을 본문활자로 게재하라는 결정

이 유 :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강원일보의 1995. 9. 6.자 제1판의 19면 1단과 2단 좌측부분에 『정 [] 씨 검찰소환』이라는 제목으로, 위 제목의 왼쪽에는 『김일성애도서신 관련』이라는 소제목 및 “속보 = 선거사범처리문제로 전 도의원 정 [], 김 [], 정 [] 씨 등 3명이 북한의 김일성에게 보낸 서신사건 재조사를 미루어왔던 춘천지검은 5일 오후 정 [] 씨를 소환, 서신을 보내게 된 경위와 강원남북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측과의 직·간접 접촉 등 활동내용 등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서신에 반정부투쟁 등을 담은 경위, 남북접촉 승인과정에서의 승인절차 등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였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같은 일자 제3판의 19면 1, 2, 3단 좌측부분에 위에서 본 내용의 기사에 덧붙여 “특히 정 [], 김 [] 씨가 지난 5, 6월 소환조사 당시 김일성 애도서신은 정 [] 씨가 직접 작성했다고 진술한 점을 중시, 서신작성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금명간 정씨와 정 [], 김 [] 씨를 재소환, 강원남북교류추진위의 활동사항 전반에 걸쳐 추가 보강조사를 벌인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각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한 정기간행물인 ‘강원일보’에 공표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의 기사(이하 ‘원문 기사’라고 한다)로 인하여 그의 인격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문기사의 진위(眞僞)여부에 관계없이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따라 신청인에게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95. 12. 30. 법률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소정의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용어표현과는 달리 피해자가 원문보도에 대하여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에 불과하고 원문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는 아니므로, 위 정정보도청구권(위 개정 법률에서는 제16조의 표목 “정정보도청구권”을 “반론보도청구권”으로 바꾸었다)은 원문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서 진실에 부합되는 원문보도에 대하여도 정정보도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468 판결)}

원문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의 내용에 관하여는 원문 기사 중 신청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반론으로서 신청인이 구하는 별지 3. 정정보도문의 범위 내에서 제1판에는 별지1. 반론문의, 제3판에는 별지2. 반론문의 내용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신청인은, “강원일보가 ‘검찰은 금명간 정씨와 정□□, 김□□ 씨를 재소환, 강원남북교류추진위의 활동사항 전반에 걸쳐 추가 보강조사를 벌인 뒤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라고 보도하였으나, 신청인 등은 1995. 9. 5.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추가 보강조사와 기소는 물론 입건조치된 사실조차 없다”라는 내용도 정정보도문으로 게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검찰은 금명간 정씨와 정□□, 김□□ 씨를 재소환, 강원남북교류추진위의 활동사항 전반에 걸쳐 추가 보강조사를 벌인 뒤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라는 기사부분은 일단 그 내용이 강원일보를 통하여 공표된 이상, 이는 이미 사실에 관한 보도가 되었다고 할 것이나, 그 내용이 단지 검찰이 신청인 등에 대한 수사방향을 밝히고 그 추후처리에 관한 방침 내지 계획을 언급한데 불과한 것이어서 피신청인이 검찰의 이러한 방침 등을 보도한 사실 자체만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어떠한 인격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는 신청인의 반론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1) 위 기사의 내용은 확인된 사실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반론보도의 내용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되고, (2) 위 기사의 내용 중 이 사건 서신이 '애도서신'이라는 부분은 기자가 자기의 의견을 나타낸 주관적인 가치판단부분(평가의 문제)에 불과하여 반론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며, (3) 위 기사의 내용 중 '김일성에게 보낸 서신'이라는 부분은 '김정일에게 보낸 서신'의 교열상의 착오에 불과하여 신청인에게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반론보도는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 증인 이 [] , 최 [] 의 각 증언만으로는 신청인의 이 사건 반박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특히 신청인이 작성한 위 서신의 성격에 관하여, 신청인은 위 서신이 김일성 애도편지가 아니라 강원남북교류성사를 위하여 북한의 김정일에게 지원을 구하고 그 협조를 촉구하는 편지라고 반박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을제8호 증의 6, 9, 12, 14 내지 16, 38 내지 40(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 등은 강원남북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1995. 1. 17.부터 같은 해 2.2.까지 1차로 중국을 방문한 후에 다시 같은해 3. 9. 2차로 중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중국 주재 북한 강원인민위원회 관계자들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그들이 신청인 등을 만나는 것까지 피할 경우에 강원남북교류사업을 성사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일단 그들과 만나서 위 교류사업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는 북한의 김정일에게 보내는 서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여 위 서신을 작성하였고 또 그러한 의도에서 위 서신의 서두에 '김일성 주석께서 서거 이후 애통한 마음으로 나날을 보내셨을 총사령관께 삼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는 문구를 넣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와 같은 위 서신의 작성 경위, 위 서신에 사용된 '위로'와 '애도'의 사전적 의미의 차이 { '위로' : ① 수고함을 어루만져서 치사함, ② 괴로움을 잊게 하고 즐겁게 함(신한출판사, 신한 새국어사전), ① 어루만져 괴로움을 잊게 함, ② 마음을 즐겁게 하고 수고를 치사함(약진문화사, 표준 국어대사전),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 주는 것(금성출판사, 금성판 국어대사전), '애도' : 사람의 죽음을 슬퍼함(위

각 사전}), 위 서신의 전체분량(49행) 중 위 문구의 분량(2행) 등에 비추어 위 서신은 김일성의 죽음을 애도하는 편지라기보다는 강원남북교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북한 강원인민위원회 관계자들 혹은 북한의 김정일에게 보내기 위한 협조촉구의 편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밖에 위 서신이 김일성 애도편지가 아니라는 취지의 신청인의 위와 같은 반박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2) 위 기사의 내용 중 이 사건 서신이 '애도서신'이라는 부분은 신청인 등이 작성한 위 서신과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등 사실관계를 취재하여 보도한 내용이므로 이는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 기사가 기자의 단순한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다는 피신청인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위 기사의 내용 중 '김일성에게 보낸 서신'이라는 부분이 가사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한 교열상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작성한 위 서신이 '김정일에게 보내는 서신'이었음에도 '김일성에게 보낸 서신'이라고 보도됨으로써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그의 인격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을 것이 분명하며, 신청인에게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또한 그 권리의 행사에 상당한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권리의 행사에 상당한 이익이 없다는 피신청인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반론보도문의 크기 및 게재방법

나아가 반론보도문의 크기 및 게재방법에 관하여는 위 기사 중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 원문 기사부분의 크기 및 게재 면수, 반론보도문의 글자수 등을 종합하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10. 10.

재판장 판사 최 병 덕
판사 김 우 수
판사 김 성 대

별지 1. 반론보도문

강원일보는 1995. 9. 6.자 제1판 제19면 1단 및 2단 좌측부분에 『정 [] 씨 검찰 소환』이라는 제목 및 『金日成 애도서신 관련』이라는 소제목 아래 “전 도의원 정 [], 김 [], 정 [] 씨등 3명이 북한의 김일성에게 보낸 서신사건 재조사를 미루어 왔던 춘천지검은 5일 이후 정 [] 씨를 소환, 정씨를 상대로 서신에 반정부투쟁 등을 담은 경위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였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1) 위 서신은 김일성 애도편지가 아니라 강원남북교류성사지원에 대한 협조를 촉구하는 편지이고, (2) 신청인 등이 북한의 김일성이 아닌 김정일에게 보내는 편지이며, (3) 신청인은 95. 9. 5. 검찰 2차조사에서 위 서신에 반정부투쟁 등을 담은 경위에 대하여 집중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

정정보도신청인 정 []

별지 2. 반론보도문

강원일보는 1995. 9. 6.자 제3판 제19면 1내지 3단 좌측부분에 『검찰, 정 [] 씨 소환』이라는 제목 및 『김일성 애도서신 관련』이라는 소제목 아래 “전 도의원 정 [], 김 [], 정 [] 씨 등 3명이 북한의 김일성에게 보낸 서신사건 재조사를 미루어왔던 춘천지검은 5일 오후 정 [] 씨를 소환, 정씨를 상대로 서신에 반정부투쟁 등을 담은 경위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였다. 특히 정 [], 김 [] 씨가 5, 6월 소환조사 당시 김일성 애도서신은 정 [] 씨가 직접 작성했다고 진술한 점을 중시, 서신작성 경위를 집중추궁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으나, (1) 위 서신은 김일성 애도편지가 아니라 강원남북교류성사지원에 대한 협조를 촉구하는 편지이고, (2) 신청인 등이 북한의 김일성이 아닌 김정일에게 보내는 편지이며, (3) 신청인은 95. 9. 5. 검찰 2차조사에서 위 서신에 반정부투쟁 등을 담은 경위에 대하여 집중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고, (4) 정 [], 김 []이 지난 5, 6월 조사를 받을 당시 신청인이 김일성 애도서신을 작성하였다고 한 사실이 없으며, (5) 신청인은 위 검찰 2차조사에서 김일성 애도서신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집중추궁 받은 사실이 없다.

정정보도신청인 정 []

별지 3. 신청인이 청구하는 정정보도문

강원일보는 1995. 9. 6.자 제1 내지 3판 제19면 1, 2, 3단 좌측부분에 『검찰, 정 [] 씨 소환』이라는 제목 및 『김일성 애도서신 관련』이라는 소제목 아래 “前도의원 정

□, 김□, 정□ 씨 등 3명이 북한의 김일성에게 보낸 서신사건 재조사를 미루어왔던 춘천지검은 5일 오후 정□ 씨를 소환, 정씨를 상대로 서신에 반정부 투쟁 등을 담은 경위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였다. 특히 김□, 정□ 씨가 지난 5, 6월 소환조사 당시 김일성 애도서신은 정□ 씨가 직접 작성했다고 진술한 점을 중시, 서신작성 경위를 집중추궁했다. 검찰은 금명간 정씨와 정□, 김□ 씨를 재소환, 강원남북교류추진위의 활동사항 전반에 걸쳐 추가 보강조사를 벌인 뒤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1) 위 서신은 김일성 애도편지가 아니라 강원남북교류성사지원에 대한 협조를 촉구하는 편지이고, (2)신청인 등이 북한의 김일성이 아닌 김정일에게 보내는 편지이며, (3) 신청인은 95. 9. 5. 검찰 2차조사에서 위 서신에 반정부투쟁 등을 담은 경위에 대하여 집중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고, (4) 정□, 김□이 지난 5, 6월 조사를 받을 당시 신청인이 김일성 애도서신을 직접 작성하였다고 한 사실이 없으며, (5) 신청인은 위 검찰 2차조사에서 김일성 애도서신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집중 추궁받은 사실이 없고, (6) 정□ 등은 95. 9. 5. 조사를 받은 이후 추가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 혹은 입건조치된 사실이 없으므로 위의 보도내용은 사실을 왜곡하여 잘못된 보도를 한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정정보도신청인 정 □

2심 判 決 文

사 건 : 96나44350 정정보도심판

신청인, 피항소인 : 정 □

강릉시 □

피신청인, 항소인: 주식회사 강원일보

춘천시 □

대표이사 조남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대호

변론종결 : 1997. 4. 18.

원심판결 : 춘천지방법원 1996. 10. 10. 선고 95카기299 판결

주 문 : 1. 원심판결 중 피신청인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강원일보 제1, 2, 3판의 19면에 6단 2.3cm² 크기로, 오른쪽에는 6단에 걸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4호 활자로, 위 제목 왼쪽에는 『鄭 [] 씨 정정보도 사건에 승소·金日成 애도편지로 볼 수 없어』라는 소제목을 영호활자로, 『김일성 애도편지… 운운은 강원일보의 왜곡기사로』, 『검찰 재소환 추가 보강조사 벌인 바 없는 허위조작기사로 밝혀져』를 각 4호 활자로, 위 소제목의 왼쪽에 세로로 6단에 걸쳐 별지 정정보도문의 내용 및 정정보도신청인의 성명을 본문 활자로 게재하라.

항소취지 : 원심판결 중 피신청인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강원일보의 1995. 9. 6.자 제1판의 19면 1단과 2단 좌측부분에 『鄭 [] 씨 검찰소환』이라는 제목으로, 위 제목의 왼쪽에는 『金日成 애도 서신 관련』이라는 소제목 및 “속보=선거사범 처리 문제로 前 도의원 鄭 [], 金 [], 鄭 [] 씨 등 3명이 북한의 김일성에게 보낸 서신 사건 재조사를 미루어왔던 춘천지검은 5일 오후 鄭 [] 씨를 소환, 서신을 보내게 된 경위와 강원남북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측과의 직·간접 접촉 등 활동 내용 등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鄭씨를 상대로 서신에 반정부투쟁 등을 담은 경위, 남북접촉승인 과정에서의 승인절차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같은 일자 제3판의 19면 1, 2, 3단 좌측 부분에 위에서 본 내용의 기사에 덧붙여 “특히 鄭 [], 金 [] 씨가 지난 5, 6월 소환조사 당시 김일성 애도 서신은 鄭 [] 씨가 직접 작성했다고 진술한 점을 중시, 서신 작성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금명간 鄭씨와 金 [], 鄭 [] 씨를 재소환, 강원남북교류추진위의 활동 사항 전반에 걸쳐 추가 보강조사를 벌인 뒤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는 내용의 기사 각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이하 위 각 기사를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

2. 신청인 및 피신청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신청인은 위 강원일보에 공표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의 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으므로 피신청인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1995. 12. 30. 법률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간법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 정정보도문 (1) 내지 (5)항과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

신청인은 신청인이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고 또한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므로 이를 게재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기로 한다(당원의 심판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인이 별지 정정보도문(1) 내지 (6)항의 정정보도를 청구하였으나 (1) 내지 (5)항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부분만이 인용되고 나머지 신청이 기각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신청인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1) 내지 (5)항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부분만이 당원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5호증의 1 내지 18, 소갑6, 7호증, 소갑10호증의 1 내지 5, 소을8호증의 1 내지 43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정□□, 이□□, 최□□의 각 증언(다만 원심증인 정□□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모든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정□□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다.

(1) 신청인은 강원도 도의회 의원으로서 같은 도의회 의원인 신청외 정□□, 김□□, 이□□, 이□□ 등과 함께 남북강원도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4. 11. 17. 통일원장관으로부터 북한 북강원도 지방 인민위원회와 친선교류를 목적으로 한 북강원도 인민위원회 관계자와의 접촉에 대한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받았다.

(2) 이에 따라 신청인과 위 정□□, 김□□, 이□□은 1995. 1. 17.부터 같은 달 22.까지 중국을 방문하여 북한 대사관 관계자 등과 접촉하여 강원도 남북교류추진위원회와 북강원 인민위원회와의 자매결연, 남북강원도 의원 세미나 개최, 특산물 교환, 문화, 체육행사 교류, 학생수학여행단 교류, 남북청소년 야영대회 개최 등 남북강원도 교류 문제를 논의하려 하였으나 중국 심양 소재 북한영사관 김□□영사와 북경 주재 북한대사관 김□□영사부장 등과 전화 통화만 하였을 뿐 직접적인 접촉은 하지 못하였다(다만 북경 소재 평양냉면집 경리에게 위와 같은 남북강원도 교류사업에 대한 제안문건을 위 김□□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사후에 위 문건이 위 김□□에게 전달되었다).

(3) 신청인은 다시 위 정□□, 김□□과 함께 남북강원도 교류사업 추진을 위하여 1995. 3. 16.부터 같은 달 21.까지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방문 전 신청인은 남강원 도의회와 북강원 인민위원회와의 교류가 성사될 수 있도록 김정일의 지원을 부탁하는 내용을 김정일에게 보내는 서신의 초안을 작성한 후, 위 정□□, 김□□에게 이를 보여주면서 김정일의 지시 없이는 남북강원도 교류사업이 성공할 수 없을 것이

고 또 1차 중국 방문시에 북한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접촉에 실패하였으므로 김정일에게 보내는 서신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 북한측이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 올 것이니 이와 같은 서신을 준비해 가자고 제안하여 위 양인의 동의를 얻어 위 서신 초안에 아무런 수정 없이 각자 서명을 하였는데, 위 서신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각하. 안녕하십니까. 김일성 주석께서 서거 이후 애통한 마음으로 나날을 보내셨을 총사령관께 삼가 위로와 격려 말씀드립니다.”라는 인사말로 시작되고, 신청인의 반독재투쟁 경력 등을 소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4) 신청인은 위 정 [] , 김 [] 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여 1995. 3. 20. 북경에서 북한측 관계자인 위 김 [] 등을 만나 남북강원도 교류 문제를 논의하면서 위 김 [] 에게 위 서신을 전달하였다.

(5) 그 후 신청인 등이 위 서신을 북한측에 전달한 것이 언론에서 문제가 되어 신청인 등은 1995. 4. 12.부터 같은 해 4. 24.까지 경찰에서, 같은 해 5. 24.부터 같은 해 9. 6.까지 검찰에서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각 조사를 받은 후 같은 해 9. 25. 무혐의로 내사종결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강원남북교류추진위의 활동 내용, 남북접촉 승인과정에서의 승인절차, 신청인 등의 북한측과의 직·간접 접촉 등 활동 내용, 위 서신의 작성 경위 및 이를 보내게 된 경위, 위 서신에 신청인의 반독재투쟁 경력 등을 담은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위 김 [] 과 정 [] 은 같은 해 5월 및 6월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서신은 신청인이 작성하였는데 위 김 [] 과 정 [] 은 이를 검토한 후 그대로 북한 측에 전달할 것에 동의하여 위 김 [] 에게 전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신청인은 같은 해 9. 5. 검찰에서 중국에서 북한측과 접촉한 내용에 대하여는 조사를 받았으나 위 서신에 반독재투쟁 등을 담은 경위나 남북접촉 승인과정에서의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6) 신청인 등에 대한 위 사건이 1995. 9. 25. 위와 같이 무혐의 내사종결되자, 피신청인은 강원일보 같은 해 9. 29.자 신문에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한 속보 및 해설 기사의 형태로 6단에 걸쳐 『前 도의원 3명 「對北 접촉 書信」 검찰, 무혐의 內査종결』, 『容共·이적 혐의 없다』는 제목하에 “정 [] , 정 [] , 김 [] 씨 등 전(前) 도의원 3명이 지난 3월 김정일에게 김일성 사망을 애도하는 인사말 등이 담긴 긴 서신을 보낸 것과 관련, 지난 4월부터 국가보안법위반 여부 등의 조사에 착수했던 춘천지검은 6개월만에 실정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위 서신 내용 중에 김일성의 사망을 애도하는 인사말과 김정일에 대한 존칭 등의 문구를 사용했으나, 통일원 등 관계기관과 이들 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반국가단체에 동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북교류 추진을 위한 대북접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의례적인 작성으로 판단돼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청인 등이 북한 외교관리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아무 진전 없이 귀국한 뒤 남북민간교류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중국을 다시 방문했을 때 북한 관리들에게 김정일에게 보내는 편지를 휴대했다고 하면 접촉이 쉬울 것으로 판단, 의례적인 인사 차원에서 서신을 작성해 북경 주재 북한 대사관 소속 김 [] 1등 비서와 이모 씨를 만났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신 내용 및 남북교류 과정 등 사건 전반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이 통일원으로부터 지난 94년 11월 17일부터 1년간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받고 활동한 이상 서신 전달이 남북교류및협력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대북접촉이라고 볼 수 없고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최종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였다.

다. 판단

(1) 먼저 신청인이 구하는 위 정정보도문 중 (1)항 및 (2)항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이 위 1995. 9. 29.자 기사에서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한 속보 및 해설기사의 형태로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크기와 내용 이상으로 위 서신이 김정일에게 보내진 서신으로서 위 서신이 김일성의 사망을 애도하여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반국가단체에 동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북교류추진을 위한 대북접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의례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를 상세히 보도한 이상, 신청인의 이 부분 정정보도청구는 이미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정간법 제16조 제3항 단서의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신청인이 구하는 위 정정보도문 중 (3)항 및 (5)항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한 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구하는 핵심은 위 정정보도문 (1)항에서 구하는 바와 같이 위 서신이 김일성의 사망을 애도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신이 아니라 남북강원도 교류를 위한 대북접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의례적으로 작성된 서신이라는 부분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위 1995. 9. 29.자 기사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충분한 크기 및 내용으로 보도하여 이미 핵심 부분에 관하여는 정정보도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위 인정 사실과 같이 비록 신청인이 이 사건 기사에서 보도된 날인 위 1995. 9. 5. 검찰에서의 2차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서신의 작성 경위 및 위 서신에 신청인의 반정부투쟁 경력 등을 담은 경위에 대하여는 조사받지 아니하였지만, 그 이전에 신청인에 대한 위 경찰 및 검찰에서

의 일련의 조사 과정에서는 위 서신의 작성 경위 및 이를 보내게 된 경위, 위 서신에 신청인의 반독재투쟁 경력 등을 담은 경위 등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조사를 받아 온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신청인의 이 부분 정정보도 청구의 의미는 이 사건 각 기사에서 보도된 날과 다른 날에는 그러한 내용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기사에서 보도된 날에는 그러한 내용의 조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정정보도하여 달라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이 부분 정정보도 청구는 이 사건 각 기사 및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구하는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할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역시 정간법 제16조 제3항 단서의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상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마지막으로 신청인이 구하는 위 정정보도문 중 (4)항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위 서신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직접 위 서신을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정 [] , 김 [] 도 검찰에서 1995년 5월 및 6월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부분 정정보도 청구는 정간법 제16조 제3항 단서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 중 피신청인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6. 13.

재판장 판사 김 대 환

판사 백 창 훈

판사 유 철 환

별지 정정보도문(신청인이 게재를 구하는 것)

강원일보는 1995. 9. 6.자 제1 내지 3판 제19면 1, 2, 3단 좌측 부분에 『검찰, 鄭 [] 씨 소환』이라는 제목 및 『金日成 애도서신관련』이라는 소제목 아래 “前 도의원 鄭 [] 金 [] , 鄭 [] 씨 등 3명이 북한의 김일성에게 보낸 서신사건 재조사를 미

루어왔던 춘천지검은 5일 오후 鄭 [] 씨를 소환, 鄭씨를 상대로 서신에 반정부투쟁 등을 담은 경위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였다. 특히 鄭 [], 金 [] 씨가 지난 5, 6월 소환조사 당시 김일성 애도서신은 鄭 [] 씨가 직접 작성했다고 진술한 점을 중시, 서신작성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금명간 鄭씨와 金 [], 鄭 [] 씨를 재소환, 강원남북교류추진위의 활동사항 전반에 걸쳐 추가 보강조사를 벌인 뒤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1) 위 서신은 김일성 애도편지가 아니라 강원남북교류 성사지원에 대한 협조를 촉구하는 편지이고, (2) 신청인 등이 북한의 김일성이 아닌 김정일에게 보내는 편지이며, (3) 신청인은 95. 9. 5. 검찰 2차조사에서 위 서신에 반정부투쟁 등을 담은 경위에 대하여 집중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고, (4) 정 [], 김 [] 이 지난 5, 6월 조사를 받을 당시 신청인이 김일성 애도서신을 직접 작성하였다고 한 사실이 없으며, (5) 신청인은 위 검찰 2차조사에서 김일성 애도서신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집중 추궁받은 사실이 없고, (6) 정 [] 등은 95. 9. 5. 조사를 받은 이후 추가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 혹은 입건조치된 사실이 없으므로 위의 보도내용은 사실을 왜곡하여 잘못된 보도를 한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정정보도신청인 정 []

大法院 判決文

사 건 : 97다28803 정정보도심판

신청인, 상고인: 정 []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헌록)

피신청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강원일보(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7. 6. 13. 선고 96나44350 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상고 이유를 본다.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95. 12. 30. 법률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3항 단서에 의하면, 일간신문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그 공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여기서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라 함은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이미 원문 기사를 보도한 당해 일간신문을 통하여 원문 기사와 같은 비중으로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 정정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와 정정보도에 기재된 내용과 원문 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발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86. 12. 13. 선고 86다카81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강원일보의 1995. 9. 6.자 제1판의 19면 1단과 2단 좌측 부분에 『정 [] 씨 검찰 소환』이라는 제목으로, 위 제목의 왼쪽에는 『김일성 애도 서신 관련』이라는 소제목 및 “속보=선거사범 처리 문제로 전 도의원 정 [], 김 [], 정 [] 씨 등 3명이 북한의 김일성에게 보낸 서신 사건 재조사를 미루어 왔던 춘천지검은 5일 오후 정 [] 씨를 소환, 서신을 보내게 된 경위와 강원남북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측과의 직·간접 접촉 등 활동 내용 등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정씨 등을 상대로 서신에 반정부투쟁 등을 담은 경위, 남북접촉승인 과정에서의 승인절차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같은 일자 제3판의 19면 1, 2, 3단 좌측 부분에 위에서 본 내용의 기사에 덧붙여 “특히 정 [], 김 [] 씨가 지난 5, 6월 소환조사 당시 김일성 애도 서신은 정 [] 씨가 직접 작성했다고 진술한 점을 중시, 서신 작성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금명간 정씨와 김 [], 정 [] 씨를 재소환, 강원남북교류추진위원회의 활동 상황 전반에 걸쳐 추가 보강조사를 벌인 뒤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는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가 각 게재된 사실, 한편 신청인은 강원도 도의회 의원으로서 같은 도의회 의원인 신청외 정 [], 김 [], 이 [], 이 [] 등과 함께 남북강원도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4. 11. 17. 통일원장관으로부터 북한 북강원도 지방 인민위원회와의 친선교류를 목적으로 한 북강원도 인민위원회 관계자와의 접촉에 대한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받은 사실, 이에 따라 신청인과 위 정 [], 김 [], 이 []은 1995. 1. 17.부터 같은 달 22.까지 중국을 방문하여 북한 대사관 관계자 등과 접촉하여 강원도 남북교류추진위원회와 북강원 인민위원회와의 자매결연, 남북강원도 의원 세미나 개최, 특산물 교환, 문화, 체육행사 교류, 학생수학여행단 교류, 남북청소년 야영대회 개최 등 남북강원도 교류 문제를 논의하려 하였으나 중국 심양 소재 북한 영사관 김 [] 영사와 북경 주재 북한대사관 김 [] 영사부장 등과

전화 통화만 하였을 뿐 직접적인 접촉은 하지 못한 사실, 신청인은 다시 위 정 [] , 김 [] 과 함께 남북강원도 교류사업 추진을 위하여 1995. 3. 16.부터 같은 달 21.까지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방문 전 신청인은 남강원 도의회와 북강원 인민위원회와의 교류가 성사될 수 있도록 김정일의 지원을 부탁하는 내용을 김정일에게 보내는 서신의 초안을 작성한 후, 위 정 [] , 김 [] 에게 이를 보여주면서 김정일의 지시 없이는 남북강원도 교류사업이 성공할 수 없을 것이고 또 1차 중국 방문시에 북한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접촉에 실패하였으므로 김정일에게 보내는 서신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 북한측이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 올 것이니 이와 같은 서신을 준비해 가자고 제안하여 위 양인의 동의를 얻어 위 서신 초안에 아무런 수정없이 각자 서명을 하였는데, 위 서신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귀하. 안녕하십니까. 김일성 주석께서 서거 이후 애통한 마음으로 나날을 보내셨을 총사령관께 삼가 위로와 격려 말씀드립니다.”라는 인사말로 시작되고, 신청인의 반독재투쟁 경력 등을 소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신청인은 위 정 [] , 김 [] 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여 1995. 3. 20. 북경에서 북한측 관계자인 위 김 [] 등을 만나 남북강원도 교류 문제를 논의하면서 위 김 [] 에게 위 서신을 전달한 사실, 그 후 신청인 등이 위 서신을 북한측에 전달한 것이 언론에서 문제가 되어 신청인 등은 1995. 4. 12.부터 같은 해 4. 24.까지 경찰에서, 같은 해 5. 24.부터 같은 해 9. 6.까지 검찰에서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각 조사를 받은 후 같은 해 9. 25. 무혐의로 내사종결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강원남북교류추진위의 활동 내용, 남북접촉 승인과정에서의 승인절차, 신청인 등의 북한측과의 직·간접 접촉 등 활동 내용, 위 서신의 작성 경위 및 이를 보내게 된 경위, 위 서신에 신청인의 반독재투쟁 경력 등을 담은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위 김 [] 과 정 [] 은 같은 해 5월 및 6월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서신은 신청인이 작성하였는데 위 김 [] 과 정 [] 은 이를 검토한 후 그대로 북한측에 전달할 것에 동의하여 위 김 [] 에게 전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신청인은 같은 해 9. 5. 검찰에서 중국에서 북한측과 접촉한 내용에 대하여는 조사를 받았으나 위 서신에 반독재투쟁 등을 담은 경위나 남북접촉 승인과정에서의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사를 받지 않는 사실, 신청인 등에 대한 위 사건이 같은 해 9. 25. 위와 같이 무혐의 내사종결되자, 피신청인은 강원일보 같은 해 9. 29. 자 신문에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한 속보 및 해설 기사의 형태로 6단에 걸쳐 『前 도의원 3명(對北 접촉 書信) 검찰, 무혐의 內査종결』, 『容共·이적 혐의 없다』는 제목하여 “정 [] , 정 [] , 김 [] 씨 등 전(前) 도의원 3명이 지난 3월 김정일에게 김일성

사망을 애도하는 인사말 등이 담긴 서신을 보낸 것과 관련, 지난 4월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등의 조사에 착수했던 춘천지검은 6개월만에 실정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위 서신 내용 중에 김일성의 사망을 애도하는 인사말과 김정일에 대한 존칭 등의 문구를 사용했으나, 통일원 등 관계기관과 이들 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반국가단체에 동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북교류 추진을 위한 대북접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의례적인 작성으로 판단돼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청인 등이 북한 외교관리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아무 진전 없이 귀국한 뒤 남북민간교류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중국을 다시 방문했을 때 북한 관리들에게 김정일에게 보내는 편지를 휴대했다고 하면 접촉이 쉬울 것으로 판단, 의례적인 인사 차원에서 서신을 작성해 북경 주재 북한 대사관 소속 김□□ 1등 비서와 이모 씨를 만났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신 내용 및 남북교류 과정 등 사건 전반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이 통일원으로부터 지난 94년 11월 17일부터 1년간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받고 활동한 이상 서신 전달이 남북교류및협력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대북접촉이라고 볼 수 없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최종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으로 보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청인이 구하는 판시 정정보도문 중 (1)항 및 (2)항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이 위 1995. 9. 29.자 기사에서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한 속보 및 해설 기사의 형태로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크기와 내용 이상으로 위 서신이 김정일에게 보내진 서신으로서 위 서신이 김일성의 사망을 애도하여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반국가단체에 동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북교류 추진을 위한 대북접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의례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를 상세히 보도한 이상, 신청인의 이 부분 정정보도청구는 이미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정간법 제16조 제3항 단서의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음으로 신청인이 구하는 판시 정정보도문 중 (3)항 및 (5)항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한 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구하는 핵심은 위 정정보도문 (1)항에서 구하는 바와 같이 위 서신이 김일성의 사망을 애도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신이 아니라 남북강원도 교류를 위한 대북접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의례적으로 작성한 서신이라는 부분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위 1995. 9. 29.자 기사에서 이 부

분에 관하여 충분한 크기 및 내용으로 보도하여 이미 핵심 부분에 관하여는 정정보도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위 인정 사실과 같이 비록 신청인이 이 사건 기사에서 보도된 날인 위 1995. 9. 5. 검찰에서의 2차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서신의 작성 경위 및 위 서신에 신청인의 반정부투쟁 경력 등을 담은 경위에 대하여는 조사받지 아니하였지만, 그 이전에 신청인에 대한 위 경찰 및 검찰에서의 일련의 조사 과정에서는 위 서신의 작성 경위 및 이를 보내게 된 경위, 위 서신에 신청인의 반독재투쟁 경력 등을 담은 경위 등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조사를 받아 온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신청인의 이 부분 정정보도 청구의 의미는 이 사건 각 기사에서 보도된 날과 다른 날에는 그러한 내용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기사에서 보도된 날에는 그러한 내용의 조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정정보도하여 달라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이 부분 정정보도 청구는 이 사건 각 기사 및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구하는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할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역시 정간법 제16조 제3항 단서의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신청인이 구하는 판시 정정보도문 중 (4)항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위 서신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직접 위 서신을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정□□, 김□□도 검찰에서 1995년 5월 및 6월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부분 정정보도 청구는 정간법 제16조 제3항 단서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 및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정간법 제16조 제3항 단서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0. 28.

재판장 대법관 이 입 수

주심 대법관 최 종 영
대법관 이 돈 희
대법관 서 성

□

반론보도는 단순한 반박뿐만 아니라
원문보도를 보충하거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반론보도문의 사실주장을 입증하는
새로운 사실을 적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7. 10. 30.자 판결 (97카합3509)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의열 부장판사)는 1997년 10월 30일 부안군과 부안군 군수 강 []이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소송에서 한국방송공사에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안 중 ‘부안군이나 강 [] 군수는 자신의 공적비를 세운 사실이 없습니다’ 라는 부분이 명백히 진실에 반하여, 노래비 건립경위에 대해 실시한 것이 법이 허용하는 반론보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반론보도는 단순히 원문보도의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뿐 아니라 원문보도를 보충하는 내용이나 원문보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반론보도문에서 주장하는 사실주장의 정당성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사실을 적시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위와 같이 판결했다.

한국방송공사는 1997년 5월 17일 21:00 <KBS 9시뉴스> 프로그램 중 “군민의 노래비 공적비 반발” 제하의 보도에서 “부안군 강 [] 군수가 군비로 자신의 공적비를 건립하여 반발을 사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1997년 6월 16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으나(97전복중재3), 중재불성립되자 서울

지방법원 남부지원에 반론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判 決 文

사 건 : 97카합3509 반론보도심판청구

신 청 인 : 1. 강 []
전북 부안군 []
2. 부안군
대표자 군수 강수원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서울 []
대표자 사장 홍두표
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복대리인 변호사 조현수, 이병선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방송되는 KBS 제1텔레비전 'KBS 9시뉴스' 프로그램의 전북권뉴스 부분 첫머리에 텔레비전 화면 오른쪽 상단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1 기재의 반론보도문을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위 5일의 기간 내에 위 제1항의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위 기간만료의 익일부터 이행완료시까지 신청인 강 []에 대하여 1일 금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인 강 []의 나머지 신청과 신청인 부안군의 신청을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신청인 강 []과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신청인 부안군과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신청인 부안군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케이비에스 제1텔레비전(KBS-1TV) 'KBS 9시 뉴스'의 첫머리에서 뉴스 진행자의 오른쪽 상단화면에는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화면 아래부분에는 두 줄로 "부안군수 자신의 공적비 세운 적 없다"라는 문장을 표시하면서

(글자는 통상의 뉴스보도와 같은 크기로) 뉴스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2 반론보도문을 뉴스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만약 피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위 기간 만료의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금 50,000,000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신청인 강□□은 1995. 6. 27. 실시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기초 자치단체인 전북 부안군의 군수로 당선되어 같은 해 7. 1.부터 부안군수로 재직 중이고, 피신청인은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로서, 피신청인은 KBS 제1텔레비전의 1997. 5. 17. 21:00 'KBS 9시 뉴스' 라는 프로그램 중 전북권에서만 방영되는 뉴스부분에서 『군민의 노래비 공적비 반발』이라는 제목하에 "지방의회 본회의장 난입사건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지탄을 받아 온 부안군 강□□ 군수가 이번에는 또 군비로 자신의 공적비를 건립해서 각계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라는 앵커의 소개 다음에 전경들과 몸싸움하는 장면을 비추면서 KBS의 기자인 신청외 김□□이 "지역주민들의 대표기구인 의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신성한 공무를 막은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강□□ 부안군수. ...강□□ 군수는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처지임에도 이제는 공적비까지 세우는 앞뒤 가리지 않는 행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임기 1년을 훨씬 넘게 남기고 공적비가 세워진 것은 매우 보기 드문 일입니다. ...군민의 노래비 바로 옆에 세워진 공적비를 세우는데 들어간 예산은 6천만원, 부안 지역 각계의 반응은 한 마디로 어이없다는 표정입니다. ...의회의원들도 당초 예산 설명과는 달리 현직 군수의 공적비가 세워진 것은 편법이라며 강력 대응의지를 밝힙니다. ...공적비 파문이 확산되자 부안군은 부랴부랴 각계의 반발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설득작업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전체 13개 읍면지역에서도 기념표석을 세워 비난을 받고 있는 강군수는 이번에는 군민의 세금으로 자신의 공적비를 세우자 지역주민들은 즉각 철거운동을 벌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여 갑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부안군 의회의원이나 예술인단체총연합회 부안지부장과의 인터뷰장면과 함께 방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신청인 부안군의 신청에 대한 판단

신청인 부안군은 위 방송프로그램에 의하여 공표된 위 보도내용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 부안군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보도내용은 신청인 부안군의 대표자 개인인 신청인 강 []이 마치 스스로의 공적을 자화자찬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서 신청인 부안군의 직무집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신청인 부안군이 법률상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표자 개인에 관한 그와 같은 보도로 인해 신청인 부안군의 이미지가 사실상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보도로 인하여 법률상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대표자 개인이지 신청인 부안군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방송보도와 신청인 부안군은 개별적 연관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 부안군은 위 방송보도에 대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반론보도청구는 이유없다.

나. 신청인 강 []의 신청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 강 []은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의 방송보도로 인하여 그의 인격적, 재산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을 것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에게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유 없는 부분

(가) 신청인 강 []은, “부안군민의 노래비 설치사업에 대하여 이를 비판하는 의견이 부안군이나 부안군의회에 접수된 사실이 없으며 부안군의회에서도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습니다”라는 내용도 반론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부안군민의 노래비 설치사업에 대한 비판의견 존재 여부는 원래의 보도에는 없는 내용이고 다만 공적비 설치에 대하여 각계에 반발의견이 있다는 취지일 뿐이어서 신청인 강 []의 반론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방송보도한 내용과 신청인 강 []이 신청하는 반론내용을 비교하여 볼 때 위 내용은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는 것이 아닌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신청인 강 []의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나) 또한, 신청인 강 []은 “KBS의 이번 방송내용은 명백히 잘못된 보도로서 이로 인하여 부안군과 강 [] 군수의 명예와 공무수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것이어서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라는 취지의 내용도 위 각 반론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반론권이란 방송보도를 한 사람의 사과 의사 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의 보도에 대한 신청인의 반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부분은 신청인의 반론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반론보도문안 중 “부안군이나 강□□군수는 자신의 공적비를 세운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부분은 명백히 진실에 반하므로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방송법 제41조 제3항 단서는 방송기관이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서,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위 법의 반론보도청구권은 어떤 보도에 대한 정정이 아니라 그 보도에 의하여 사실상 피해를 입은 관련 당사자의 반론이 있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그 반론을 보도함으로써, 시청자나 독자들로 하여금 원래의 보도 내용과 관련 당사자의 반론을 비교하여 공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올바른 여론 형성에도 포함과 함께, 자칫 대립되는 이해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이 보도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반론권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므로, 문제된 보도 내용에 의하여 사실상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반론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방송기관은 그 반론내용을 진실성 여부를 떠나 보도해 줄 일응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언론은 공정하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직업 윤리상의 의무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진실한 보도를 추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의 전파는 사회 공익에도 반하므로 이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어서, 누구든지 방송 등 언론기관에게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보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방송법 제41조 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란 그 반론보도의 내용이, 널리 사회 일반에 걸쳐 일반적인 교양을 갖춘 통상인이라면 누구라도 특별한 조사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문의 주장내용이 내용 자체만으로 평가할 때,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신청인의 반론이 명백히 진실에 반한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 강□□이 반론하고자 하는 부분이 공적비에 대한 것임에도 이 사건 반론보도문안 중 “부안군이나 작년… …노래비 제막식을 가졌으며”라고 하는

노래비 건립경위를 실시한 것은 법이 허용하는 반론보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반론보도라는 것이 보도를 접하는 일반 대중에게 원문과 이에 대한 반론을 동등하게 제공하여 대중들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어서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 사실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단순히 원문보도의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뿐 아니라 원문보도를 보충하는 내용이나 원문보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내용도 가능하다 할 것이고, 반론보도문에서 주장하는 사실주장의 정당성을 위하여 필요한 새로운 사실을 적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반론보도문에 신청인 강□□이 반론하고자 하는 공적비에 대한 부분이 아닌 노래비 설치경위에 대한 부분이 담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적비라고 보도된 비석이 설치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신청인 강□□의 이 사건 신청은 별지1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기로 하되, 피신청인이 반론보도를 명한 기간 내에 반론보도문을 방송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의 익일부터 이행완료시까지 신청인에 대하여 1일 금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함이 상당하여 그 지급을 명하고, 신청인 강□□의 나머지 신청과 신청인 부안군의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0. 30.

재판장 판사 김 의 열
판사 유 현 중
판사 김 용 철

〈별지1〉 반론보도문

한국방송공사는 1997. 5. 17. KBS 9시 뉴스 중 전북권뉴스에서 『군민의 노래비 공적비 반발』이라는 제목하에 “부안군 강□□ 군수가 군비로 자신의 공적비를 건립해서 각계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 부안군수는, 부안군이나 강□□ 군수가 자신의 공적비를 세운 사실이 없고, 다만 부안군에서는 작년 부안읍 유일의 휴식공간인 서림공원을 종합쉼터와 산교육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래마당, 역사마당, 문학마당, 스포츠마당을 세울

계획을 마련하였고, 그 첫 사업으로 지난 5월 1일 제34회 부안군민의 날에 부안군민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기관의 단체장과 지역유지, 학생 등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림공원에서 부안군민의 노래비 제막식을 가졌으며, 그 옆에 노래비 설치에 대한 간략한 의미를 담은 초대민선군수 강□□의 이름으로 된 건립취지석을 세운 것일 뿐이고, 위 부안군민의 노래비 설치사업에 소요된 사업비는 금 6천만원이 아니라 금 1,523만원이라고 반박해 오므로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밝혀 드립니다.

〈별지2〉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

한국방송공사는 지난 5월 17일 밤 9시에 방송된 KBS 9시 뉴스에서 부안군 강□□군수가 군비로 자신의 공적비를 건립해서 각계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안군이나 강□□군수는 자신의 공적비를 세운 사실이 없습니다.

부안군에서는 작년 부안읍 유일의 휴식공간인 서림공원을 종합쉼터와 산교육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래마당, 역사마당, 문학마당, 스포츠마당을 세울 계획을 마련하였고, 그 첫 사업으로 지난 5월 1일 제34회 부안군민의 날에 부안군민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기관의 단체장과 지역유지, 학생 등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림공원에서 부안군민의 노래비 제막식을 가졌으며, 그 옆에 노래비 설치에 대한 간략한 의미를 담은 건립취지석을 세운 것이고 강수원 군수의 공적비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부안군민의 노래비 설치사업에 소요된 사업비는 금 6천만원이 아니라 1,523만원입니다.

부안군민의 노래비 설치사업에 대하여 이를 비판하는 의견이 부안군이나 부안군의회에 접수된 사실이 없으며 부안군의회에서도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KBS의 이번 방송내용은 명백히 잘못된 보도로서 이로 인하여 부안군과 강□□군수의 명예와 공무수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것이어서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

구 정간법상 정정보도청구권하에서
원 보도내용이 사실에 반한다고 밝혀진
경우에는 단순한 반론에 그치지 아니하고
정정을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5. 6. 15.자 결정 (95카합1359)
서울지방법원 1995. 8. 31.자 판결 (95카합2283)
서울고등법원 1996. 8. 13.자 판결 (95나38815)
대법원 1998. 2. 24.자 판결 (96다40998)

事實概要

대법원(주심 서성 대법관)은 1998년 2월 24일 방송위원회가 한국광고주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기사의 정정을 구하는 정정보도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며 정정보도를 게재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정정보도청구권을 그 용어표현과는 달리 피해자가 정기간행물의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에 불과하고 원문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 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정정보도청구권은 원문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송위원회는 한국광고주협회가 <KAA 저널> 1994년 12월에 “방송심의규정 개정안 내용뿐 아니라 절차도 문제”라는 제하에 방송위원회의 광고제작물 사전심의에 일관성이 없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데 대해 1995년 1월 26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95서울중재20)을 하여 중재불성립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법원과 2심법원은 “만일 법원에 현출된 증거에 의해 원 보도내용이 사실에 반한

다고 밝혀진 경우에는 단순한 변론에 그치지 아니하고 정정을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며 정정보도를 게재하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반론보도가 아닌 정정보도의 게재판결은 정정보도청구권의 본질
에 반하므로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1심 決定文

사 건 : 95카합1359 정정보도심판청구

신청인 : 방송위원회

서울

대표자 위원장 김 창 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조 영 황

피신청인 : 사단법인 한국광고주협회

서울

대표이사 조 규 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호, 안한주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간되는 월간 KAA 저널
7면 하단에 박스 기사로 제목은 24포인트 활자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표시하고, 내용은 9포인트의 활자크기로 하여 별지 1기재 정정보
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월간 KAA 저
널 제3면에 62급 고딕체 활자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내용은 18급 명조체 활자로 하여 별지 2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이 유 : 이 사건 심문결과, 신청인의 신청은 별지 제1기재 정정보도문의 범위 내
에서 그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15.

재판장 판사 구 충 서
판사 김 은 미
판사 박 범 계

〈별지 1〉 정정보도문

본지는 1994년 12월호에서 “KAA 진단란”의 『방송심의규정 개정안 내용뿐 아니라 절차도 문제』라는 제하의 기사 중 제7면에 「일전에 모광고회사는 방송위원회의 사전 심의의 일관성에 의구심을 갖고 실험적으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똑같은 광고물을 제출하면서 하나는 상업문을 게재한 채 제출하고, 다른 하나는 상업문을 뺀 상태로 제출하였다고 한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상업문을 게재한 광고물은 상업문을 빼라고 조건부 통과 판결을 받았고, 상업문을 배제한 광고물은 상업문을 게재하라는 조건부 판결을 받았다」는 글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출된 두 광고물은 동일한 광고물이 아니며, 두 광고물에 모두 상업문이 게재되어 있었으나 하나의 광고물에서는 상업문을 빼도록 하고, 다른 광고물에서는 상업문을 정정하여 넣도록 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밝혀 드립니다.

〈별지 2〉 정정보도문

KAA 저널은 1994년 12월호(제60호) 5면 내지 제7면 “KAA 진단란”의 『방송심의규정 개정안 내용뿐 아니라 절차도 문제』라는 제하의 기사 중 제7면에 「일전에 모 광고회사는 방송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일관성에 의구심을 갖고 실험적으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똑같은 광고물을 제출하면서 하나는 상업물을 게재한 채 제출하고, 다른 하나는 상업문을 뺀 상태로 제출하였다고 한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상업문을 게재한 광고물은 상업문을 빼라고 조건부 통과 판결을 받았고, 상업문을 배제한 광고물은 상업문을 게재하라는 조건부 판결을 받았다」는 글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두 개의 광고물은 같은 날에 심의신청을 한 것으로 시차를 두고 한 것은 아니며 똑같은 광고물도 아닙니다. 광고물 중 하나는 기업 이미지 광고였고, 다른 하나는 독학 학위교재인 일종의 상품광고였습니다. 똑같은 광고물을 하나는 상업문을 빼라고 하고 하나는 상업문을 게재하라고 한 것도 사실이 아니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를 정정보도합니다.

1심 判決文

사 건 : 95카합2283 정정보도심판청구이의

신청인 : 방송위원회

서울

대표자 위원장 김창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조영황

피신청인 : 사단법인 한국광고주협회

서울

대표이사 민병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호, 안한주

주 문 :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95카합1359호 정정보도 신청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1995. 6. 15.에 한 정정보도결정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신청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피신청인은 주문 제1항기재 정정보도 결정을 별지 3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각 구하다.

이 유 :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이 피신청인 발행의 KAA 저널 1994년 12월호(제60호) 제5면 내지 제7면 「KAA 진단란」에 방송심의규정 관련 개정안의 문제점을 다루며, 『방송심의규정 개정안 내용뿐 아니라 절차도 문제』라는 제하의 기사 중 제7면에 “일전에 모광고회사는 방송위원회의 사전심의의 일관성에 의구심을 갖고 실험적으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똑같은 광고물을 제출하면서 하나는 상업문을 게재한 채 제출하고, 다른 하나는 상업문을 빼 상태로 제출하였다고 한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상업문을 게재한 광고물은 상업문을 빼라고 조건부 통과 판결을 받았고, 상업문을 배제한 광고물은 상업문을 게재하라는 조건부 판결을 받았다”는 글(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을 게재하자, 방송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방송의 운영, 편성에 관한 기본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등의 기본 직무와 함께 방송용 광고물에 대한 사전 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신청인은 이 법원에 “피신청인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월간 KAA 저널 제3면에 62급 고딕체 활자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

고 내용은 18급 명조체 활자로 하여 별지 2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정정보도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6. 15.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간되는 월간 KAA저널의 7면 하단에 박스 기사로 제목은 24포인트 활자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내용은 9포인트의 활자 크기로 하여 별지 1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게재한 이 사건 기사에 실린 위 두 개의 광고물은 독학 학위 교재 판매회사인 신청의 와이제이 물산이 신청의 이명박을 모델로 한 기업 이미지 광고물과 김 [] 의 1인을 모델로 한 상품 광고물로서 똑같은 광고물이 아니며, 실험적으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심의신청을 한 것도 아니고, 똑같은 광고물을 하나는 상업문을 빼라고 하고, 하나는 상업문을 게재하라고 한 것도 사실이 아니므로 이 기사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정정보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두 개의 광고물은 심의 신청일이 다르고, 비록 출연 모델, 대사 내용, 자막이 다르다 하더라도 신청의 [] 물산이 독학 학위 교재를 판매하기 위하여 만든 동일한 내용의 광고물이며, 위 두 개의 광고물 중 하나의 광고물에는 독학학위 교재판매라는 상업문을 게재하였고, 다른 광고물에는 독학학위 교재안내라는 자막을 표시하긴 하였으나 이는 상업문이 아니므로 이 사건 기사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며, 따라서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갑 제1호증의 1, 2, 소갑 제2호증의 1, 2, 소갑 제3, 4호증, 소을 제1호증, 소을 제2호증의 1, 2, 소을 제3호증의 1, 2, 소을 제7호증, 소을 제9호증 2의 각 기재와 소갑 제5호증의 영상 및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광고물은 광고주는 주식회사 [] 물산으로서, 위 두 개의 광고물 중 하나의 광고물은 신청의 이 [] 이 모델로서 동인이 젊은 세대에 주는 교훈의 형식을 통하여 제품을 추천하는 기업 이미지 광고인 바, 1994. 8. 14. 주식회사 [] 프로덕션이 신청인에게 심의를 신청하자 신청인은 이 광고물 중 [] 독학사, 독학사 [] 운운하는 표현이 주식회사 [] 가 현행 독학사학위 수여제도를 운영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현이며, 유명인사인 국회의원 이 [] 이 모델로 등장하여 광고제품을 암시적으로 추천함으로써 소비자가 광고제품을 과신토록 하여 시청자가 광고내용을 그릇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85조 제1항, 제88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1994. 8. 22. 방송불가의 결정을 한 사실, 다시 1994. 9. 7.에 위 [] 프로덕션이 별지 4. 기재와 같이 자막 및 멘트를 작성

하여 재심의 신청을 하자, 신청인은 유명인사인 국회의원이 [] 이 모델로 등장하여 광고제품을 암시적으로 추천함으로써 소비자가 광고제품을 과신토록 하여 시청자가 광고내용을 그릇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88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1994. 9. 12. 다시 방송불가 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1994. 9. 26. 재심의 신청을 하자 1994. 10. 28. [] 사람들, 독학학위 교재판매, 회원제 일주의라는 자막 및 문구를 삭제하도록 하여 조건부 방송가라는 결정을 한 사실, 또 하나의 광고물은 신청의 김 [], 오 [] 을 모델로 하여 학사고시에 합격한 합격자가 학위 수여식에서 제품에 대한 고마움과 학사학위 취득의 감격표현을 통하여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로서 그 멘트는 별지 4. 기재와 같은 바, 주식회사 [] 프로덕션이 1994. 9. 7. 신청인에게 그 심의를 신청하자 신청인은 위 광고물은 교재판매를 내용으로 하는 것임에도 교재안내 운운하여 사실과 다른 표현을 하였고, 학사모를 쓴 모델이 제품과 관련된 자신의 성공체험을 증언함으로써 소비자가 광고제품을 과신토록 하여 사실과 다르게 독학학위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바 이는 시청자가 광고내용을 그릇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어 방송심의 규정 제85조 제2항 제1호 및 제88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1994. 9. 12. 방송불가 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다시 위 [] 프로덕션이 1994. 9. 26. 재심의 신청을 하자 신청인은 1994. 10. 28. 광고주체의 사업 내용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시청자가 현혹되지 않도록 '독학학위 교재안내' 라는 자막을 '독학학위 교재판매' 로 바꾸도록 하여 조건부 방송가라는 심의결정을 내린 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기사 내용에 대하여 1995. 1. 20.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광고물의 제출일자와 심의날짜 부분은 정정을 하고 기타 부분은 반론을 게재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정정은 할 수 없으며, 반론부분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신청인은 반론만으로는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1995. 2. 3. 중재불성립으로 종결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두 개의 광고물은 비록 광고주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위 이 명박 모델의 광고물은 위 [] 프로덕션의 광고물 제작의도의 설명에서도 나타나듯 역경을 이겨내고 현재의 위치에 이른 위 이 [] 국회의원의 사례를 통하여 젊은 세대에게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항상 준비하는 진취적 미래 지향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며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추천 보증이 없는 기업 PR성 이미지 광고이며, 위 김 [] 모델의 광고는 위 [] 프로덕션의 광고물 제작의도에서 보듯 실제 학사학위 수여자인 신청의 오 [] 및 텔런트인 신청의 김 [] 를 모델로 하여 학위수

여시의 감격을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서, 단순한 상품광고이며, 따라서 위 두 개의 광고물은 그 출연모델, 소구목적, 상업문 내용, 화면 구성 등이 전혀 다르며, 또한 위 김 [] 모델의 광고물에는 ‘독학학위 교재 안내’라는 상업문이 게재되어 있었으나 위 광고가 단순한 상품광고인 점에 비추어 위 문구가 사업 주체의 원래 목적이 판매임에도 안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이 적절치 아니하다는 입장에서 이를 ‘독학학위 교재판매’라는 문구로 정정하여 넣도록 한 것이고, 위 이 [] 모델 광고물에는 ‘독학학위 교재판매’라는 상업문이 게재되어 있었으나 위 광고가 기업 이미지 광고인 점에 비추어 ‘독학학위 교재판매’라는 문장이 적절치 아니하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한 것이므로 결국 “똑같은 광고물을 제출하면서”, “하나는 상업문을 게재한 채 제출하고, 다른 하나는 상업문을 뺀 상태로 제출하였는데… 상업문을 게재한 광고물은 상업문을 빼라고 조건부 통과 판결을 받았고, 상업문을 배제한 광고물은 상업문을 게재하라는 조건부 판결을 받았다”라고 게재된 이 사건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고, 따라서 신청인은 위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피신청인은 다시, 가사 신청인의 위 주장이 이유 있다 하더라도, 정정보도는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그 표현과는 달리 언론사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의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인데 신청인이 청구하는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은 단순한 반론이 아닌 정정을 구하고 있는 바, 이는 정정보도의 본질에 반하므로 이 사건 정정보도 결정문 제목도 ‘정정보도문’이 아닌 ‘반론문’이 되어야 하고, 위 결정문 내용도 별지3. 기재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래의 언론보도에 대하여 시정을 구하는 권리는 이를 정정권과 반론권으로 나눌 수 있고, 양자의 차이점은 정정권이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그 정정을 구하는 것임에 대하여, 반론권은 보도내용의 진실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하는 주장의 게재를 요구하는 것인 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은 원 보도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반론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반론권에 불과하다는 의미는 정정보도청구의 경우 허위 여부임을 가릴 필요 없이 반박문을 게재하여야 한다는 의미로서 일응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지, 심리과정에서 원 보도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만 정정을 명할 수 없게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되는 바, 이는 우리 법제가 법문의 제명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청구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정정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 규정에 비추어 이를 단순한 반론 내지 반박이라기보다는 정정보도에 가까운 반론권으로서 물론 이 경우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는 것은 특별한 조사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알 수 있는 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나 사실상 이를 위하여 증거조사가 행하여진 경우 그 현출된 증거에 의하면 원보도내용이 사실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필요한 경우 반론에 그치지 아니하고 정정을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피신청인은 위 언론중재에서 신청인에 대하여 반론내용을 게재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고 법원에 제소를 함으로써 그 권리의 신장이나 방어에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최소한 이 사건 소송비용의 일부라도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정보도를 법원에 소구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야 하는 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제도는 법원에의 제소 전단계로서 전문가에 의한 타협과 양보에 의한 해결을 목적으로 하며 그 법적 성질은 중재가 아니라 조정인 바, 조정은 당사자의 호양에 의한 분쟁해결을 본지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분쟁해결에 성공할 수 없는 것은 조정의 한계로서 당연한 것인 바, 피신청인은 위 중재절차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모든 반론을 전면적으로 수용함에도 이를 신청인이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위 중재과정에서 반론보도가 아니라 정정보도를 요구하여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이며, 나아가 신청인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정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이로써 신청인이 그 권리의 신장이나 방어에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KAA 저널에 공표된 위 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사실, 이 사건 기사의 게재경위, 그 내용, 게재 위치, 이 사건 기사로 인한 신청인의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정정보도결정을 그대로 유지함이 타당하여 이를 인가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8. 31.

재판장 판사 구충서
판사 김은미
판사 박범계

별지목록1 정정보도문

본지는 1994년 12월호에서 「KAA진단란」의 『방송심의규정 개정안 내용뿐 아니라 절차도 문제』라는 제하의 기사 중 제7면에 “일전에 모광고회사는 방송위원회의 사전 심의의 일관성에 의구심을 갖고 실험적으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똑같은 광고물을 제출하면서 하나는 상업문을 게재한 채 제출하고, 다른 하나는 상업문을 뺀 상태로 제출하였다고 한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상업문을 게재한 광고물은 상업문을 빼라고 조건부 통과 판결을 받았고, 상업문을 배제한 광고물은 상업문을 게재하라는 조건부 판결을 받았다”는 글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출된 두 광고물은 동일한 광고물이 아니며, 두 광고물에 모두 상업문이 게재되어 있었으나 하나의 광고물에서는 상업문을 빼도록 하고, 다른 광고물에서는 상업문을 정정하여 넣도록 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밝혀드립니다.

별지목록2 정정보도문

KAA 저널은 1994년 12월호(제60호) 5면 내지 제7면 「KAA진단란」의 『방송심의 규정 개정안 내용뿐 아니라 절차도 문제』라는 제하의 기사 중 제7면에 “일전에 모광고회사는 방송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일관성에 의구심을 갖고 실험적으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똑같은 광고물을 제출하면서 하나는 상업문을 게재한 채 제출하고, 다른 하나는 상업문을 뺀 상태로 제출하였다고 한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상업문을 게재한 광고물은 상업문을 빼라고 조건부 통과 판결을 받았고, 상업문을 배제한 광고물은 상업문을 게재하라는 조건부 판결을 받았다”는 글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두 개의 광고물은 같은 날에 심의 신청을 한 것으로 시차를 두고 한 것은 아니며 똑같은 광고물도 아닙니다. 광고물 중 하나는 기업 이미지 광고였고, 다른 하나는 독학 학위교재인 일종의 상품광고였습니다. 똑같은 광고물을 하나는 상업문을 빼라고 하고 하나는 상업문을 게재하라고 한 것도 사실이 아니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를 정정보

도합니다.

별지목록3 반론문

KAA 저널은 1994년 12월호에서 「KAA진단란」의 『방송심의 규정 개정안 내용뿐 아니라 절차도 문제』라는 제하의 기사 중 제7면에 “일전에 모 광고회사는 방송위원회의 사전심의의 일관성에 의구심을 갖고 실험적으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똑같은 광고물을 제출하면서 하나는 상업문을 게재한 채 제출하고 다른 하나는 상업문을 뺀 상태로 제출하였다고 한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상업문을 게재한 광고물은 상업문을 빼라고 조건부 통과 판결을 받았고, 상업문을 배제한 광고물은 상업문을 게재하라는 조건부 판결을 받았다”는 글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출된 두 광고물은 동일한 광고물이 아니며 두 광고물에 모두 상업문이 게재되어 있었으나 하나의 광고물에서는 상업문을 빼도록 하고, 다른 광고물에서는 상업문을 정정하여 넣도록 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밝혀드립니다.

정정보도신청인 방송위원회

별지목록4

컨 셉	이 [] 모델 광고물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유명인이 된 국회의원 이 [] 을 모델로 하여 그가 젊은 세대에게 주는 교훈의 형식을 통해 제품을 암시적으로 추천	김 [] 외 1 모델 광고물 학사고시에 합격한 합격자가 학위수여식에서 제품의 고마움과 학사취득의 감격표현을 통해 제품의 효과 소구
주연모델	이 []	김 [] (A), 오 [] (B)
배 경	도서실	학사학위 수여식장
상 업 문	* 멘트 (이 []) 성공을 바라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성공을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준비하는 사람만이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바라는 것도 준비하고 도전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 멘트 (여모델) 감사합니다. [] . 꿈만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학사모를 쓰게 되다니, 과연 할 수 있을까 망설이던 내게 [] 는 확실한 길잡이가 되어 주었죠. 그리고 난 오늘 드디어 학사모를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우) (성우)

(30 초)	운명을 개척하는 선구자 [] 사람들 칠육삼에 일반 *자막 국회의원 이 []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들 독학학위 교재판매 (주) [] 불산 회원제일주의 (02)763-[]	운명을 개척하는 [] 사람들 칠육삼에 일반 * 자막 감사합니다. [] 독학학위 교재안내 (주) [] 불산 회원제일주의 (02)763-[]
--------	--	---

2심 判決文

사 건 : 95나38815 정정보도

신청인, 피항소인 : 방송위원회

서울 []

대표자 위원장 김창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조영황

피신청인, 항소인 : 사단법인 한국광고주협회

서울 []

대표이사 민병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호

변론종결 : 1996. 6. 25.

제1심 판결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5. 8. 31. 선고, 95카합2283 판결

주 문 : 1.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신청인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5카합1359호 정정보도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95. 6. 15.에 한 정정보도 결정을 인가한다는 판결.

항소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5카합1359호 정정보도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95. 6. 15.에 한 정정보도 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위 정정보도신청을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이 피신청인 발행의 월간지인 KAA 저널 1994년 12월호(제60호)의 제5면 내지 제7면 「KAA 진단란」에 방송심의규정 관련 개정안의 문제점을 다루며 『방송심의규정 개정안 내용뿐 아니라 절차도 문제』라는 제하의 기사 중 제7면에 “일전에 모광고회사는 방송위원회의 사전심의의 일관성에 의구심을 갖고 실험적으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똑같은 광고물을 제출하면서 하나는 상업문을 게재한 채 제출하고, 다른 하나는 상업문을 뺀 상태로 제출하였다고 한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상업문을 게재한 광고물은 상업문을 빼라고 조건부 통과 판결을 받았고, 상업문을 배제한 광고물은 상업문을 게재하라는 조건부 판결을 받았다”는 글(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을 게재하자, 방송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방송의 운영, 편성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등의 기본직무와 함께 방송용 광고물에 대한 사전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신청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피신청인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월간 KAA 저널 제3면에 62급 고덕채 활자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내용은 18급 명조체 활자로 하여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정정보도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1995. 6. 15.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간되는 월간 KAA 저널의 7면 하단에 박스 기사로 제목은 24포인트 활자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내용은 9포인트의 활자 크기로 하여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신청인은, (1) 피신청인이 게재한 이 사건 기사에 실린 위 두 개의 광고물 중 하나는 독학학위 교재 판매회사인 신청의 [] 물산이 신청의 이 [] 을 모델로 한 기업이미지 광고물이고 다른 하나는 김 [] 외 1인을 모델로 한 상품광고물이기 때문에 똑같은 광고물이 아니며, (2) 일정한 시차를 두고 심의신청을 한 것도 아니라 같은 날 심의신청한 것이고, (3) 똑같은 광고물에 대해 하나는 상업문을 빼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상업문을 게재하라고 한 것도 아니므로, 결국 사실과 다른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정정보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 위 두 개의 광고물은 그 심의신청일이 다르고, (2) 또한 비록 출연모델, 대사내용, 자막이 다르다 하더라도 신청의 [] 물산이 독학학위 교재를 판매하기 위하여 만든 동일한 내용의 상품광고물이며, (3) 위 두 개의 광고물 중 하나의 광고물에는 ‘독학학위 교재판매’라는 상업문을 게재하였고, 다른 광고물에는 ‘독학

학위 교재안내'라는 자막을 표시하긴 하였으나 '독학학위 교재안내'는 상업문이 아니므로 이 사건 기사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며, 따라서 신청인의 정보보호청구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갑 제1호증의 1, 2, 소갑 제2호증의 1, 2, 소갑 제3, 4호증, 소을 제1호증, 소을 제2호증의 1, 2, 소을 제3호증의 1, 2, 소을 제7호증, 소을 제9호증의 2, 소을 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소갑 제5호증의 영상에 당심증인 조 [] , 박 [] 의 각 증언과 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 및 당원의 한국광고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다만 위 증인 박 [] 의 증언과 위 사실조회 결과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광고는 그 목적에 따라 기업이미지 광고와 상품 광고로 분류될 수 있는 바 기업이미지 광고는 기업이라는 특정조직에 대해 대중의 우호적인 태도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광고이며, 상품광고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증대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광고인 사실, 한편 이 사건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두 개의 광고물은 그 광고주가 모두 주식회사 [] 물산인데, 그 중 하나는 주식회사 [] 프로덕션이 신청외 이 [] 을 모델로 하여 제작한 광고물(이하 이 [] 광고물이라 한다)이고 다른 하나는 주식회사 [] 프로덕션이 신청외 김 [] 외 1인을 모델로 하여 제작한 광고물(이하 김 [] 광고물이라 한다)인 사실, 이 [] 광고물을 제작한 위 [] 프로덕션은 별지 4. 기재와 같은 자막 및 멘트를 작성하여 1994. 9. 7.에 신청인에게 광고심의를 신청하였는 바, 신청인은 위 광고물이 그 목적, 출연 모델, 광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특정한 상품을 광고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위 이 [] 이 젊은 세대에게 주는 교훈의 형식을 통하여 독학학위 교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 물산이라는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기업 이미지광고라 할 것인데, 위 광고물에서는 유명인사인 위 이 [] 이 모델로 등장하여 광고제품을 암시적으로 추천함으로써(모델이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는 독학학위 교재판매, 회원 제일주의라는 내용의 자막이 있음) 소비자가 광고제품을 과신토록 하여 시청자들이 그릇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88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1994. 9. 12. 방송불가의 결정을 한 사실(위 [] 프로덕션은 1994. 8. 17.에도 신청인에게 위 이 [] 을 모델로 하고 광고주가 위 [] 물산인 광고물에 대해서도 광고심의를 신청하였다가 방송불가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광고물은 위 1994. 8. 17.자 광고물이 아니다), 이에 대해 위 [] 프로덕션이 1994. 9. 26. 재심의 신청을 하자 신청인은 1994. 10. 28.에 기업이미지 광고로 보이는 이 [] 광고물에서 상품판매의 욕구를 유발시

키는 표현인 ‘[] 사람들’, ‘독학학위 교재판매’, ‘회원 제일주의’ 라는 자막 및 문구를 삭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방송할 수 있다는 조건부 방송가 결정을 한 사실, 한편 김 [] 광고물을 제작한 위 [] 프로덕션은 별지 4. 기재와 같은 자막 및 멘트를 작성하여 1994. 9. 7.에 신청인에게 광고심의를 신청하였는 바, 신청인은 위 광고물이 텔런트인 신청의 김 []와 실제 독학학사 학위 취득자인 오 []을 모델로 하여 학사고시에 합격한 합격자가 학위수여식에서 제품에 대한 고마움과 학사학위 취득의 감격을 표현하는 것을 통하여 제품을 추천하는 상품광고로서 독학학위 교재를 판매하기 위한 광고인데, ‘교재안내’ 운운하여 사실과 다른 표현을 하였고, 학사모를 쓴 모델이 제품과 관련된 자신의 성공체험을 증언함으로써 소비자가 광고제품을 과신토록 하여 사실과 다르게 독학학위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바 이는 시청자가 광고내용을 그릇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어 방송심의 규정 제85조 제2항 제1호 및 제88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1994. 9. 12. 방송불가 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해 위 [] 프로덕션이 1994. 9. 26. 재심의 신청을 하자 신청인은 1994. 10. 28. 광고주체의 사업내용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시청자가 현혹되지 않도록 광고내용 중 ‘독학학위 교재안내’ 라는 자막을 ‘독학학위 교재판매’ 로 교체하는 것을 조건으로 방송할 수 있다는 조건부 방송가 결정을 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자 신청인은 위 기사내용에 대하여 1995. 1. 20.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광고물의 제출일자와 심의날짜 부분은 정정을 하고 기타 부분은 반론을 게재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정정은 할 수 없으며, 반론부분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신청인은 반론만으로는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1995. 2. 3. 중재불성립으로 종결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위 증인 박 []의 일부 증언과 당원의 한국광고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의 일부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이 사건 이 [] 광고물과 김 [] 광고물은 모두 1994. 9. 7.에 심의 신청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재심의 신청도 같은 해 9. 26.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기사 중 “일정한 시차를 두고 —제출하면서”라는 부분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 할 것이고, (2) 또한 위 두 개의 광고물은 비록 광고주가 동일하지만 그 출연 모델, 소구목적, 상업문 내용, 화면구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 광고물은 주식회사 [] 물산이라는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고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추천보증은 없는 기업이미지 광고인 반면, 김 [] 광고물은 모델로 하여금 학위수여식의 감격을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독학학사 교재의 판매를 소구

하려는 상품광고이므로 별개의 광고물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 중 “똑 같은 광고물을 제출하면서”라는 부분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며, (3) 이 [] 광고물에는 ‘독학학위 교재판매’라는 상업문이 게재되어 있었으나 위 광고가 기업이미지 광고인 점에 비추어 ‘독학학위 교재판매’라는 문장이 적절치 아니하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한 것임에 반해, 김 [] 광고물에 나오는 ‘독학학위 교재안내’라는 문구는 위 광고가 상품광고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업문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다만 위 문구 중 ‘안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이 적절치 아니하다는 입장에서 이를 ‘독학학위 교재판매’라는 문구로 정정하여 넣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하나는 상업문을 게재한 채 제출하고, 다른 하나는 상업문을 뺀 상태로 제출하였다고 한다. ……상업문을 배제한 광고물은 상업문을 게재하라는 조건부 판결을 받았다”라는 부분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 할 것인 바, 따라서 신청인은 위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피신청인은 다시, 기사 신청인의 위 주장이 이유 있다 하더라도, 정정보도는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법문상의 표현과는 달리 언론사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의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인데 신청인이 청구하는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은 단순한 반론이 아닌 정정을 구하고 있는 바, 이는 정정보도의 본질에 반하므로 이 사건 정정보도 결정문의 제목도 ‘정정보도문’이 아닌 ‘반론문’이 되어야 하고, 위 결정문 내용도 위 반론문의 신청주체가 표시된 별지 3. 기재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언론보도에 대하여 시정을 구하는 권리는 이를 정정권과 반론권으로 나눌 수 있고, 양자의 차이점은 정정권이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그 정정을 구하는 것임에 대하여, 반론권은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 없이 그와 대립하는 주장의 게재를 요구하는 것인 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원 보도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반론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정정보도청구권이 반론권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는 이유는 정정보도청구의 경우 원 보도내용의 허위 여부임을 가릴 필요 없이 반박문을 게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다는 점에 있는 것인데, 우리 법제가 법문의 제명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1996. 7. 1.부터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반

론보도청구권이라는 용어로 대치되었으나, 이 사건 기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당시에는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용어로 규정되어 있었다)과 피해자가 청구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정정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법원에 현출된 증거에 의해 원 보도내용이 사실에 반한다고 밝혀진 경우에는 법원으로서 필요한 경우 단순한 반론에 그치지 아니하고 정정을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한 반론문의 게재만이 허용된다는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위와 같이 단순한 반론문의 게재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보도를 명하는 경우에는 정정보도의 주체가 피신청인이 되는 것이므로, 정정보도문 말미에 신청인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나아가 피신청인은, 위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에서 신청인에 대하여 반론내용을 게재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고 법원에 제소를 함으로써 그 권리의 신장이나 방어에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최소한 이 사건 소송비용의 일부라도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정보도를 법원에 소구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야 하는 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제도는 법원에서 제소 전 단계에서 전문가에 의한 타협과 양보에 의한 해결을 목적으로 하며 그 법적 성질은 중재가 아니라 조정인 바, 조정은 당사자의 호의에 의한 분쟁해결을 본지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분쟁해결에 성공할 수 없는 것은 조정의 한계로서 당연한 것인 바, 피신청인은 위 중재절차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모든 반론을 전면적으로 수용함에도 이를 신청인이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위 중재과정에서 반론보도가 아니라 정정보도를 요구하여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이며, 나아가 신청인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정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이로써 신청인이 그 권리의 신장이나 방어에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그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KAA 저널에 공표된 이 사건 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사실, 이 사건 기사의 게재 경위, 그 내용, 게재 위치, 이 사건 기사로 인한 신청인의 피해정도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이 1995. 6. 15.에 위와 같은

취지로 한 위 정정보도 결정을 그대로 유지함이 타당하여 이를 인가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 1심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신청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8. 13.

재판장 판사 이 근 응
판사 주 한 일
판사 김 상 근

별지1 <정정보도문>

본지는 1994년 12월호에서 「KAA 진단란」의 『방송심의규정 개정안 내용뿐 아니라 절차도 문제』라는 제하의 기사 중 제7면에 “일전에 모 광고회사는 방송위원회의 사전 심의의 일관성에 의구심을 갖고 실험적으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똑같은 광고물을 제출하면서 하나는 상업문을 게재한 채 제출하고, 다른 하나는 상업문을 뺀 상태로 제출하였다고 한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상업문을 게재한 광고물은 상업문을 빼라고 조건부 통과 판결을 받았고, 상업문을 배제한 광고물은 상업문을 게재하라는 조건부 판결을 받았다”는 글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출된 두 광고물은 동일한 광고물이 아니며, 두 광고물에 모두 상업문이 게재되어 있었으나 하나의 광고물에서는 상업문을 빼도록 하고, 다른 광고물에서는 상업문을 정정하여 넣도록 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밝혀드립니다.

별지2 <정정보도문>

정정보도문

KAA 저널은 1994년 12월호(제60호) 5면 내지 제7면 「KAA 진단란」의 『방송심의규정 개정안 내용뿐 아니라 절차도 문제』라는 제하의 기사 중 제7면에 “일전에 모 광고회사는 방송위원회의 사전심회의 일관성에 의구심을 갖고 실험적으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똑같은 광고물을 제출하면서 하나는 상업문을 게재한 채 제출하고, 다른 하나는 상업문을 뺀 상태로 제출하였다고 한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상업문을 게재한 광고물은 상업문을 빼라고 조건부 통과 판결을 받았고, 상업문을 배제한 광고물은 상업문을 게재하라는 조건부 판결을 받았다”는 글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두 개의 광고물은 같은 날에 심의 신청을 한 것으로 시차를 두고 한 것은 아니며 똑같은 광고물도 아닙니다.

광고물 중 하나는 기업이미지 광고였고, 다른 하나는 독학학위 교재인 일종의 상품 광고였습니다. 똑같은 광고물을 하나는 상업문을 빼라고 하고 하나는 상업문을 게재하라고 한 것도 사실이 아니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를 정정보도합니다.

별지3 반론문

KAA 저널은 1994년 12월호에서 「KAA 진단란」의 『방송심의규정 개정안 내용뿐 아니라 절차도 문제』라는 제하의 기사 중 제 7면에 “일전에 모 광고회사는 방송위원회의 사전심의의 일관성에 의구심을 갖고 실험적으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똑같은 광고물을 제출하면서 하나는 상업문을 게재한 채 제출하고, 다른 하나는 상업문을 뺀 상태로 제출하였다고 한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상업문을 게재한 광고물은 상업문을 빼라고 조건부 통과 판결을 받았고, 상업문을 배제한 광고물은 상업문을 게재하라는 조건부 판결을 받았다”는 글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반론문 게재신청인인 방송위원회는 당시 제출된 위 두 광고물은 동일한 광고물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으며 ‘교재판매’ 문구나 ‘교재안내’ 문구나 모두 상업문이라고 판단하고서 심의 결정하였음을 밝혀드립니다.

반론문게재 신청인 : 방송위원회

별지4 이 사건 광고 내용

	이 [] 모델 광고물	김 [] 위 1 모델 광고물
컨 셉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유명인이 된 국회의원 이 [] 을 모델로 이용, 그가 젊은 세대에게 주는 교훈의 형식을 통해 제품을 암시적으로 추천	학사고시에 합격한 합격자가 학위 수여식에서 제품에 대한 고마움과 학사취득의 감격 표현을 통해 제품의 효과소구
주연모델	이 []	김 [] (A) 오 [] (B)
배경	도서실	학사학위 수여식장
상업문 (30초)	*멘트 (이 [])	*멘트 (여모델)

조.	성공을 바라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준비하는 사람만이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꿈만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학사모를 쓰게 되다니. 과연 할 수 있을까 망설이던 내게 []는 확실한 길잡이가 되어 주었
	이 시대가 바라는 것도 준비하고 도전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성우) 운명을 개척하는 선구자 [] 사람들 칠육삼에 일반 칠육삼에 일반 *자막 국회의원 이 []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들 독학학위 교재판매 (주) [] 물산	그리고 난 오늘 드디어 학사모를 썼 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우) 운명을 개척하는 [] 사람들 칠육삼에 일반 *자막 독학학위 교재안내 (주) [] 물산 회원제일주의 (02)763- []

大法院判決文

사 건: 96다40998 정정보도

신청인, 피상고인: 방송위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조영황)

피신청인, 상고인: 사단법인 한국광고주협회(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8. 13. 선고 95나388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신청인 발행의 월간지에 게재된 이 사건 기사 중 판시부분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서 신청인은 위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정정보도문을 게재 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구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1995. 12. 30. 법률 제5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법문의 제명 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피해자가 청구한 '정정 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정정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만일 법원에 현출된 증거에 의하여 원 보도내용이 사실에 반한다

고 밝혀진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도 필요한 경우 단순히 반론에 그치지 아니하고 정정을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유로 단순한 반론문의 게재만이 허용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용어 표현과는 달리 피해자가 정기간행물의 사실적 주장(이하 원문보도라 한다)에 대하여 주장하는 반박 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에 불과하고, 원문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 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정정보도청구권은 원문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1991. 1. 15. 선고 90다카25468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정정을 구하는 정정보도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2. 24.

재판장 대법관 이 돈 회
 주심 대법관 서 성
 대법관 최 중 영
 대법관 이 임 수

□

Ⅱ . 정정보도청구사례

허위기사를 게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의제자백하였으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전주지방법원 1997. 4. 18.자 판결 (96가5949)

事實概要

전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용현 부장판사)는 1997년 4월 18일 남원시의회 의원인 서____외 24인이 남원시의회 의원들이 시 예산을 부당하게 승인한 의혹이 제기된다고 보도한 남원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라며 정정보도를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허위기사를 게재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39조(의제자백)에 의해 이를 자백한 것이라고 본다”며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원고들은 피고 남원신문이 1996년 5월 31일자 등에 위 사건 기사를 보도하자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1996년 7월 1일 언론중재위원회 전북중재부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신청(96전북중재7)을 했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는 당사자 쌍방의 이익들을 고려하여 중재부 직권으로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었고 시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켜 유감’이라는 취지의 정정보도게재를 결정했으나 남원신문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원고들은 전주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判決文

사 건 : 96가5949 정정보도

- 원 고 : 1. 서
남원시
2. 노
남원시
3. 강
남원시
4. 이
남원시
5. 조
남원시
6. 하
남원시
7. 이
남원시
8. 형
남원시
9. 허
남원시
10. 백
남원시
11. 유
남원시
12. 정
남원시
13. 인
남원시
14. 김
남원시
15. 양
남원시

16. 윤 []
 남원시 []
17. 김 []
 남원시 []
18. 공 []
 남원시 []
19. 조 []
 남원시 []
20. 오 []
 남원시 []
21. 주 []
 남원시 []
22. 김 []
 남원시 []
23. 김 []
 남원시 []
24. 소 []
 남원시 []
25. 김 []
 남원시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봉헌

피 고 : 주식회사 남원신문
 법인등기부상 주소 남원시 []
 송달장소 남원시 []
 대표이사 장경희

변론종결 : 1997. 4. 4.

주 문 : 1. 피고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남원신문'의 제1면 기사란 중 우측 가운데 부분에 가로 10cm, 세로 12cm의 크기로, 그 상단 위쪽에는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특호 고딕체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고, 위 제목 다음 줄에는 『'95 남원시 2회 추경예산 의결 관련 의원들 '의혹없음' 밝혀져』라는 소제목을 제4호 고딕

체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며, 그 밖의 여백에는 별지 제1기제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제6호 명조체의 본문활자로 가로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2. 만일 피고가 위 기간 내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금 2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별지 제2기제와 정정보도문을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남원신문’ 제1면 기사란 중 우측 가운데 부분에 세로 5단의 크기로, 제목 『정정보도문』은 특호 고딕체 활자로 우측 중앙에 세로로, 『'95 남원시 2회 추경예산 의결 관련 의원들 '의혹 없음' 밝혀져』라는 소제목은 제4호 고딕체 활자로 그 좌측이 세로로, 보도문은 본문 활자로 위 소제목의 좌측에 게재하여야 한다 및 주문 제2항.

이 유 : 1. 원고들의 청구원인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발행하는 일간지인 ‘남원신문’은 아래와 같이 허위의 기사를 게재하여 남원시의회의 의원들인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1996. 5. 31.자 제1면에 『전북도경찰청 이 시장 내사 4개월째 의혹 증폭, 시정 “흔들”』이라는 제목과 함께 남원시의회의 의원들이 1995년도 남원시 추경예산을 부당하게 승인하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나. 또 같은 해 6. 7.자 제2면에 『남원시민의 명예를 위해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라는 제목 아래 남원시가 업무추진비를 변칙으로 지출한 것을 인지하고서도 남원시의회가 연말이 불과 3~4일밖에 남지 않은 12. 26. 예산을 승인하여 의혹을 사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훼손된 원고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 바, 나아가 그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 기사부분의 크기, 정정보도문의 글자수,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주문 제1항과 같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면 원고들의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간접강제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주문 제1항의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데에 상당하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주문 제2항과 같이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4. 18.

재판장 판사 김 용 현
판사 차 문 호
판사 조 윤 희

<별지 제1> 정정보도문

본보는 1996. 5. 31.자 1면에 『전북도경찰청 이 시장 내사 4개월째 의혹 증폭, 시정 “흔들”』이라는 제목과 함께 남원시의회 의원들이 1995년도 남원시 추경예산을 부당하게 승인하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또 같은 해 6. 7.자 제2면에 『남원시민의 명예를 위해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라는 제목 아래 남원시가 업무추진비를 변칙으로 지출한 것을 인지하고서도 남원시의회가 연말이 불과 3~4일밖에 남지 않은 12. 26. 예산을 승인하여 의혹을 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기에 이를 정정합니다.

<별지 제2> 정정보도문(원고들이 게재를 구하는 것)

· 제목 : 정정보도문
· 부제목 : 『'95 남원시 2회 추경예산 의결 관련 의원들 '의혹 없음' 밝혀져』
· 내용 : 본보는 1996. 5. 31.자 1면에 『전북 도경찰청 이 시장 내사 4개월째 의혹 증폭, 시정 “흔들”』이란 제목아래 남원시가 지난해 12. 21. '9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시의원들이 마치 부당하게 예산승인을 함으로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또한 같은 해 6. 7.자 제2면에는 『남원시민의 명예를 위해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아래 『공개질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부제목과 함께 연말이 불과 3~4일밖에 남지 않은 12. 26. 예산승인을 한 것에 대해 의회가 사전에 변칙지출을 인지하고서도 예산을 승인하여 의혹을 사게 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모두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었기에 정정보도한다. 따라서 본지는 남원시의회 의장과 의원 전원에게 대한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는 이같은 미확인 보도가 없을 것을 다짐합니다. □

문제된 프로그램은 음주단속을 벗어나기 위한
부조리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그 보도내용 또한
진실하므로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서울지방법원 1997. 9. 3.자 판결 (96가합82966)
서울고등법원 1998. 4. 16.자 판결 (97나47141)

事實概要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김재진 부장판사)는 1998년 4월 16일 모 방송사 기자인 정○○ 씨가 문화방송 및 '카메라 출동' 취재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된 프로그램은 음주운전 및 음주단속을 벗어나기 위한 부조리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있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방송된 것이며 그 보도내용 또한 진실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화방송은 1996년 10월 20일 <MBC 뉴스데스크>의 '카메라 출동' 프로그램에서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일어나는 취중백태를 기획취재하여 보도하였다. 보도가운데 모 방송사 기자인 원고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기자인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항의하는 과정을 원고의 변조되지 않은 음성 및 얼굴과 함께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방송촬영 때문에 교통체증이 유발된 점을 항의한 것이며, 소주 '3분의 2병을 마셨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 신청을 하였다(96서울중재268).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말한 '소주 2/3가 소주 2/3잔을 뜻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며 신청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고 '소주2/3병을 마셨다'는 내용에도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여

중재가 불성립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서울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자 다시 항소를 제기했다.

1심判決文

사 건 : 96가합82966 정정보도

원 고 : 정○○(鄭○○)

서울 강남구○○○동 ○○아파트 ○○○동 ○○○○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양호, 류광현

피 고 : 1. 주식회사 문화방송(文化放送)

서울

대표이사 이득렬

2. 홍 (洪)

같은 곳 기획취재부 내

3. 이 (李)

같은 곳

4. 조 (趙)

같은 곳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예교

변론종결 : 1997. 8. 20.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오후 9시 MBC 뉴스데스크 「카메라출동」 시간에 30초간 화면상의 문자와 대사로 별지 제1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1, 12, 14, 15, 16,

17, 18,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3, 4, 5의 각 기재 및 당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호증의 5, 6, 7, 13, 19의 각 기재는 이를 각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다.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의 기자로서 ○○○ 및 ○○○의 주말뉴스 앵커를 거쳐 현재 위 ○○방송의 보도국 ○○부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문화방송이라 한다)은 “MBC”라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매일 저녁 9시 “MBC 뉴스데스크”라는 뉴스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고 있고, 피고 홍□□은 피고 문화방송의 기획취재부 부장, 피고 이□□는 같은 부 차장, 조□□는 같은 부 기자로 근무하는 사람들로서 위 “MBC 뉴스데스크”에서 방영하는 「카메라출동」이라는 프로그램의 제작을 담당하고 있다.

(2) 피고 홍□□은 1996. 10. 14.과 같은 달 15. 위 「카메라출동」에서 방송할 아이템을 결정하기 위해 기획취재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연말을 앞두고 증가되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음주운전의 실태에 관하여 취재하기로 결정하고, 피고 이□□등 취재기자 3명과 피고 조□□등 카메라 기자 2명을 2팀으로 나누어 같은 달 16.부터 19.까지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취재하도록 지시하였다.

(3) 피고 조□□는 소외 박□□ 기자와 함께 같은 달 17. 22:00경부터 24:00경까지 강남경찰서 교통과의 협조를 얻어 강남구 신사동 소재 삼원가든 앞 노상에서 실시된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취재하였는 바, 피고 조□□는 취재차량 안에는 설치된 ENG 카메라와 별도로 직접 8mm 홈비디오카메라를 휴대하고 단속경관의 음주측정 현장 바로 옆에서 촬영을 하였다.

(4) 피고 조□□가 위와 같이 취재를 하고 있던 같은 날 23:00경 강남경찰서 교통과 소속 의무경찰인 소외 라□□는 서울 ○○가 ○○○○호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단속지점을 통과하려는 원고에게 음주측정을 하기 위하여 원고의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당시 음주 측정기의 센서가 고장나 있었으므로 우선 육안 및 냄새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음주 합동단속 중입니다. 선생님 지금 어디 가십니까?” 등의 말을 시켜보았는데, 차안에서는 술 냄새가 나고 원고가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이 되어 원고에게 하차하도록 지시하였다.

(5) 그러나, 원고는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면서 시비를 벌이다가 같은 경찰서 소속 오□□경장이 “약주 한잔 하셨습니까. 잠깐 내려와 보세요. 협조바랍니다.”라고 부탁하자, 차에서 내리면서 “예, 죄금 했습니다.”라고 말하고는 위 오□□

□이 “사장님, 이리 와보세요”라고 말하자 “아, 이것보세요. 우리 가족끼리 왜 그래, 나 기잔데, 집에 다왔다고 지금. 나 참 먹지도 않았어요. 소주 3분의 1 먹었다니까.”라고 음주 사실을 일부 시인하면서 계속해서 항의하였고, 위 오□이 “어디 계시는 데요?”라고 묻자 “○○방송요, 내 참 불지 않는 것도 내가 싫어하는 놈이 아니고 한데. 술먹은 놈을 잡아야지”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아, 소주 3분의 2 먹었다고 얘길 했다고. 저 친구한테, 저 양반한테, 그러세요. 내리라고 그러더라구. 무조건”이라고 항의하자 위 오□은 “그냥 가세요. 약주 안드셨어. 안드셨어”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원고를 돌려보냈고, 위와 같은 영상과 대화는 피고 조□가 촬영한 8mm 홈비디오 카메라 테이프와 취재차량 안에서 촬영한 ENG 카메라 테이프에 그대로 촬영되어 있다.

(6)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재를 모두 마친 후인, 같은 달 20. 피고 홍□등 위 기획취재부원들은 위 취재자료들을 함께 보면서 방송할 내용을 취사선택하는 과정에서 피고 조□등이 취제한 위 필름을 방영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 이□는 위 선택된 자료를 토대로 방송에 나갈 영상자막과 기자의 멘트를 작성하고, 피고 홍□이 위 자막과 기자의 검토를 마친 후, 피고 이□는 위 기사를 녹음하고, 피고 조□는 화면편집을 하여, 최종적으로 같은 날 20:00경 피고 문화방송 보도국장을 비롯한 국장단의 시사회를 거쳐 위 프로그램을 방송하되, 원고가 “○○방송”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원고의 얼굴을 이른바 모자이크(화면가리기) 처리하여 방송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21:00 “MBC 뉴스데스크”의 「카메라출동」 시간에 위 프로그램(이하 위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방영하였다.

(7) 위 프로그램은 별지 제2목록에 기재된 기자의 멘트와 자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음주 운전 백태”라는 제목하에, 소외 조□ 앵커의 “음주운전의 단속현장에서 드러난 갖가지 취중백태를 이□기자가 고발합니다”라는 멘트 후, 소주 5병을 마시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운전자, 경찰 고위간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단속을 면하려는 현역 공군대령 등의 모습을 방영한 다음, 원고가 경찰관과 걸어가는 모습을 화면에 비추면서 “단속에 걸린 모 방송사 기자의 당당한 모습”이라는 피고 이□의 멘트를 내보내고 “가족끼리 왜 그래, 나 기잔데, 집에 다왔다고, …소주 3분의 2… 불지 않는 것도 내가 싫어하는 놈이 아니고 한데… 먹은 놈을 잡아야지”라는 원고의 목소리와 영상을 내보내면서 “가족끼리 왜 그래…나 기잔데… 소주 2/3병밖에… 먹은 놈을 잡아야지”라는 자막을 내보내고 있고, 그 장면에 이어 갖가지 변명을 늘어 놓으며 선처를 바라는 음주운전자, 뇌물을 제공하고 음주측정을 면하려는 사람, 방송사와의 친분

을 과시하며 선처를 바라는 사람 등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들의 갖가지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8) 한편, 원고의 음성은 변조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얼굴은 이른바 모자이크 처리(화면가리기)로 변조되어 누구인지 쉽게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었으나, 약 0.7초 가량 원고의 얼굴이 모자이크된 화면에서 벗어나며 변조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방송되었다.

2. 명예훼손의 성립

명예훼손이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 바, 우선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은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위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74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의 성명, 소속 방송사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얼굴도 이른바 모자이크 처리되어 쉽게 식별 가능하지는 아니하나, “모 방송사 기자”라고 자막에 처리하여 원고의 직업이 방송기자임을 특정하였고, 원고는 뉴스 앵커의 경력이 있는 중견 방송인으로서 음성도 중요한 식별의 수단이 된다고 할 것인데 음성은 변조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방송되었고, 원고의 얼굴 모습도 모자이크 처리상의 실수로 인하여 약 0.7초간 변조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영되었으므로 체격, 얼굴, 직업, 목소리 등 주위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다수가 원고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여부는 그 방송의 내용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시청자가 그 방송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방송이 시청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단속에 걸린 모 방송사 기자의 당당한 모습”이라는 멘트 아래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고도 기자의 직위를 이용하여 음주측정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원고의 행동을 촬영하여 방송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로서나 전체적인 인상으로서나 충분히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

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한 피고 홍[] 같은 이[] 같은 조[] 및 위 피고들의 사용자이며 위 프로그램을 방송한 피고 문화방송은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위법성 조각사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 조각사유

피고들은 위 프로그램을 방영한 것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도 진실하므로 피고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우리가 민주정치를 유지함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언론, 출판 등의 표현의 자유는 가끔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인격권의 영역을 침해할 경우가 있는데, 표현의 자유 못지않게 이러한 사적인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헌법 제10조 후단)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헌법 제21조 제1항)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인격권으로서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의 조화를 꾀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참조)

나. 위 프로그램의 공공성에 대한 판단

그러므로 먼저, 위 프로그램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방송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음주운전의 폐해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모두(冒頭)에서 조[] 앵커가 언급하듯이 1995년도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음주운전사고는 전체의 6.2%로 15,000건을 넘고 있고, 경찰의 꾸준한 음주단속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근절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음주

단속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부조리, 예컨대 금품수수 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음주측정을 회피할 수 있다는 인식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헤이하게 하는 주된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것인 바,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위 프로그램은 이러한 음주운전 및 음주단속을 벗어나기 위한 부조리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있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방송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원고가 비록 공인으로서 경찰관에게 기자의 신분을 알리고 음주측정을 받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원고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불과하고 국민적인 관심사라고 할 수 없는 것인데 위 프로그램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의 추한 모습만을 방영하면서 그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도 아니한 원고의 모습을 방영한 것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폭로성, 선정성 보도로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자사 방송의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일 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다룬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위 프로그램은 애당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의 비난받아야 할 행태를 직접 보여줌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기획되어 제작된 것이고, 원고를 취재의 대상으로 삼게 된 것도 피고들이 의도한 바가 아니라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우연하게 포착된 것으로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의도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공의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것이고, 음주운전과 상관 없는 일반인도 타인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될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인의 이익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조 제1호,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인의 사생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은 공공의 관심사항이 되는 것이고, 다만 행위자가 일반인인 경우에는 행위자체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행위자가 누구인지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행위자가 공적인 인물(public figure)인 경우에는 행위자가 누구인지 여부 자체가 바로 공공의 관심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보도하는 것은 국민에게 그 관심사를 보도하는 언론의 기능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티브이 뉴스 앵커를 지낸 국내 유수 방송사의 보도국 ○○○차장으로로서 중견 언론인인 동시에 방송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얼굴도 널리 알려져 있고, 원고와 같은 언론인은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함

을 사명으로 하고 있어 공무원의 공적인 역할 못지않게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에서 공적인 인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원고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기자 신분임을 밝히면서 경찰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였다는 사실은 언론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추어 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자료로서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한 교육적, 계몽적 효과도 매우 크다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의 적시는 뉴스의 가치성이 충분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방송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위 프로그램의 진실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영상 및 음성의 진실성 여부에 관한 판단

당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프로그램에 방영된 원고의 모습, 목소리, 발언 내용 등은 편집되지 않은 비디오 테이프 원본에서 일부가 삭제되었을 뿐, 변조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프로그램의 영상과 음성은 진실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기자의 멘트 및 자막의 진실성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위 프로그램에서는 편집전의 비디오 테이프의 화면에 “단속에 걸린 모 방송사 기자의 당당한 모습”이라는 피고 이 의 멘트가 추가되고 “가족끼리 왜 그래, 나 기잔데, 소주 2/3병밖에, 먹은 놈을 잡아야지”라는 자막이 추가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멘트 및 자막은 진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첫째, 원고는 음주 측정을 요구받거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에 걸린”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에 반하고, 둘째, 원고는 “소주 3분의 2”를 마셨다고만 말했을 뿐인데 “소주 2/3병밖에”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에 반한다고 다룬다.

(가) “단속에 걸린 모 방송사 기자의 당당한 모습”이라는 표현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음주운전 단속”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위와 같이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를 정차시키고,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

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속공무원이 육안이나 후각 등을 사용하여 음주의 정도를 살피거나 또는 그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음주측정기의 사용 또는 혈액채취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 용어라고 해석함이 통상인의 언어습관에도 부합하며, 반드시 혈중 알코올농도 0.05%를 넘는 음주 측정수치가 인정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은 경우라야만 음주단속에 걸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정차를 요구받고, 음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관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차 안에서 술냄새가 나고 원고 또한 일부 음주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기자라는 신분을 밝히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하차요구를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비록 그 뒤 음주 측정을 통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된 사실이 없다 하여도, 원고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고 표현하여도, 원고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고 표현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단속에 걸린 모 방송사 기자의 당당한 모습”이라는 표현은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소주 2/3병”의 표현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위 프로그램은 자막으로 “소주 2/3병밖에”라고 표시하고 있으므로, 위 표현이 진실한 사실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주 3분의 1” 또는 “소주 3분의 2”라고 말했다를 뿐, “소주 2/3병”이라고 “병”자를 넣어서 말한 사실이 없음은 인정되나, 위 “소주 3분의 2”의 의미를 두고 피고는 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소주 2/3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소주 3분의 2잔”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티브이 뉴스에서의 자막은 간략하고 단적으로 내용을 표현하여 독자나 시청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보도의 내용을 정확하고 강렬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는 것이므로 출연자의 언어를 그대로 옮길 수는 없는 것이고 이를 축약하거나, 시청자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고, 그 표현이 다소 과장적이거나 자극적이라고 하여도 보도내용의 전체적인 인상이나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것이 아닌 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처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인 소외 라 는 원고와의 대화를 통하여 술냄새가 나고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어 음주 측정 및 하차를 요구한 것이고, 원고는 처음부터 술을 마신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조금 마셨다”, “소주 3분의 1 먹었다”, “소주 3분의 2 먹었다”라고 일관되게 술을 마신

사실은 시인하고 있고, 원고 주장대로 저녁 먹으면서 소주 3분의 2잔만을 마셨다면 음주운전 측정시간인 23:00경에는 “술을 마셨다”고 시인할 필요도 없으며, 이미 충분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치 이하로 낮아져 있을 것이므로 즉각 음주측정에 응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차에서 내려 경찰관에게 ○○방송 기자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려고 할 필요가 없을 것인 바, 당원의 비디오 테이프 검증결과에 나타난 원고의 발언내용, 태도, 상태, 음주측정 당시의 정황 및 일반인의 통상적인 언어 감정에 비추어 보면 “소주 3분의 2”라는 말의 취지는 “소주 3분의 2병”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막에 “소주 3분의 2병”이라고 표시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9. 3.

재판장 판사 박 일 환

판사 강 한 승

판사 고 재 민

제1목록

· 제목 : 정정보도문

· 내용 : MBC뉴스데스크는 지난 10월 20일 일요일 「카메라출동」 시간에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방송하는 과정에서, 화면과 자막으로 모 방송국 기자가 소주 3분의 2병을 마셨으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당시 화면으로 방영된 기자는 음주단속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항의한 것으로 소주 3분의 2병을 마신 것이 아니었고, 소주 3분의 2병을 마셨다고 말한 사실도 없으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관하여 보도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운전자의 모습을 방송함으로써 음주운전자인 것처럼 잘못 보도한 사실 및 당사자의 발언을 사실과 다르게 한 점을 바로잡습니다.

제2목록

· 제목 : 방송내용

· 내용 : 조 [] 앵커의 대사 : 네,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는 전체 6.2퍼센트로 만오천건이 넘었습니다. 경찰단속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좀처럼 근절되고 있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음주운전입니다. 단속현장에서 드러난 갖가지 취중백태를 이 [] 기자가 고발합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취객의 모습을 비추면서)

이 [] 기자의 대사 :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엉망으로 취했습니다.

경찰관 : 소주 5병을 드시고 운전하신거예요?

취객 A : 네

경찰관 : 적발되어 여기서 처리되는 게 다행입니다.

이 [] 기자의 대사 : 현역 공군대령

취객 B : 너희들이 봐달라.

이 [] 기자의 대사 : 경찰 고위간부와의 친분을 과시합니다.

취객 B : 현역 최대령인데, 내가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니깐, 그럼 내가 이 [], 이 [] 총경과 통화할게.

(자막) 현역 최대령인데, 내가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니깐, 그럼 내가 이 [] (전남 경찰청장), 이 [] 총장(경찰청)과 통화할게.

...중략...

(원고가 경찰관과 걸어가는 모습을 화면에 비추면서)

이 [] 기자의 대사 : 단속에 걸린 모 방송사 기자의 당당한 모습

신청인 : 가족끼리 왜 그래... 나 기잔데... 집에 다왔다구 지금. 나 참 먹지도 않았어요. ... 내참 불지 않는 것도 내가 싫어하는 놈이 아니고 한테, 술먹은 놈을 잡아야지. 아, 소주 3분의 2 먹었다구 애길 했다구...

(원고의 얼굴이 약 0.7초간 잠시 방영됨)

(자막) 가족끼리 왜 그래... 나 기잔데... 소주 2/3병밖에 ... 먹은 놈을 잡아야지
...후략...

2심 判 決 文

사 건 : 97나47141 정정보도

원고, 항소인 : 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양호, 류광현

피고, 피항소인 : 1. 주식회사 문화방송(文化放送)

서울 []

대표이사 이득렬

2. 홍 [] (洪 [])

같은 곳 기획취재부 내

3. 이 [] (李 [])

같은 곳

4. 조 [] (趙 [])

같은 곳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예교

변론종결 : 1998. 4. 2.

제1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1997. 9. 3. 선고 96가합82966 판결.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은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제1심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오후 9시 MBC 뉴스데스크 「카메라출동」 시간에 30초간 화면상의 문자와 대사로 별지 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

이 유 : 이 판결에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4. 16.

재판장 판사 김 재 진

판사 황 병 하

판사 조 영 철

정정보도문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10월 20일 일요일 「카메라출동」 시간에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방송하는 과정에서, 화면과 자막으로 모 방송국 기자가 소주 3분의 2병을 마셨으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당시 화면으로 방영된 기자는 음주단속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항의한 것으로 소주 3분의 2병을 마신 것이 아니었고, 소주 3분의 2병을 마셨다고 말한 사실도 없으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관하여 보도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운전자의 모습을 방송함으로써 음주 운전자인 것처럼 잘못 보도한 사실 및 당사자의 발언을 사실과 다르게 한 점을 바로잡습니다. □

Ⅲ . 손해배상청구사례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직접 취재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면서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보도한 경우, 기사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1996. 5. 28.자 판결 (94다33828)
서울고등법원 1996. 9. 20.자 판결 (96나24196)

事實概要

대법원(주심 이돈희 대법관)은 1996년 5월 28일 TV탤런트 겸 영화배우인 최 [] 씨가 주식회사 코리아헤럴드, 내외경제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피고의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간신문사가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마치 직접 취재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면서, 그 기사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및 관련자와 접촉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그 방법이 부적절하였거나 그 노력을 다하지 못하여 실패하자, 더 이상의 사실확인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근거없이 만연히 기사를 작성한 경우, 일간신문이 신속성을 요구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언론매체에게 그 기사의 취재과정에서 그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피고가 발행하는 영자지 코리아 헤럴드는 1991년 4월 12일자 “여배우 불법유학관

런 혐의(Film actress accused of overseas study scam)” 제하의 기사에서 원고가 불법유학을 알선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포함해 동일한 기사내용을 게재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각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라는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1심법원과 2심법원은 “비록 그 기사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취재행위와 관련하여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 내지 책임성을 결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며 원고 패소판결(1·2심판결, 국내언론관계판결집 3집 pp.185~205 참조)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3심판결 후,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1996년 9월 20일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다시 판결했다.

大法院 判決文

사 건 : 94다33828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 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국)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코리아 헤럴드, 내외경제신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6인)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4. 5. 26. 선고 93나39814 판결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발행하는 영자지 일간신문인 1991년 4월 12일자 코리아 헤럴드에 “여배우 불법유학관련 혐의(Film actress accused of overseas study scam)”라는 제목과 『약 100억원 챙겨 : 한국유학생 250명 미국 산악지역 가건물에서 시간만 낭비(Pockets about ₩10bil. : 250 Korean students idling in makeshift building on U.S. mountain)』라는 소제목 아래 “최 (Choi)”라는 설명이 붙은 원고의 사진과 함께 “서울 경찰은 중, 고생 수백명을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 유학토록 불법 알선하고, 100억원 이상을 챙겼다는 미확인 혐의로 유명 여배우 최 를 찾고 있다(Popular film actress Choi is being sought by the Seoul police for allegedly illegally arranging for

hundreds of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o be enrolled at a U.S. high school and pocketing at least 10 billion won in 'arrangement fees.')(중략) 경찰에 따르면 이 학생들은 대부분 서울의 부유층 자녀들로 영어실력이 모자라는 관계로 미국 학교측에서 수업시간 후 학교부설 농장에서 말 먹이를 주는 등의 하찮은 일도 시킨다고 한다. 서울 소재의 한 유학 알선업체인 코리아아카데미의 대표인 최 [] (28)는 경찰수사가 시작된 후 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The students, mostly from highly affluent families in Seoul, were forced by U.S. school authorities to do menial work at the school farm, such as feeding horses after class, because they lacked English ability, the police investigators said. The 28-year-old Choi, head of the Korea Academy, an overseas study arrangement agency in Seoul, is known to have fled to the United States after getting the wind of the investigation.)(중략) 이 업체에서 미국 고등학교에 입학할 알선한 약 250명의 한국 학생은 산간지방의 임시 건물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The roughly 250 Korean students whom Choi's arranged to have enrolled at a language program in the U.S. high school stayed in makeshift building high on a mountain.)(이하 생략)"라는 기사가 게재된 사실, 그런데 사실은 소외 유 []가 위 코리아아카데미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교육법, 병역법 및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에 미달하는 자는 교육감의 유학자격 인정을 받아야 국외유학을 할 수 있음에도, 해외여행 자유화조치 이후부터는 17세 미만자들도 관광이나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여권을 받을 수 있고, 미국 고등학교에서 방학기간에 실시하는 단기 어학연수 과정에 등록하는 경우에도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미국에 학비만 지급하면 쉽게 입학할 수 있는 학교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학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유학생을 모집, 알선함으로써 그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왔으며, 원고는 위 회사의 광고모델이 되었다가 위 유 []의 제의로 위 회사의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위 회사의 유학상담 업무 등을 하여 온 사실, 경찰은 코리아아카데미 등 해외유학 알선업체를 내사한 후 위 유 [], 소외 유 [] 및 원고를 유학여권을 받을 수 없는 250명의 중, 고등학생을 유학 알선하고 그 명목으로 합계 1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하고 1991년 4월 11일 09:30경 서울시경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위 사건에 관하여 "코리아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위 유 [], 유 []과 그 이사장으로 되어 있

는 원고가 공모하여 1990년 1월 25일부터 1991년 4월 10일까지 사이에 학부모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여권발급 신청시 그 목적과 체류기간 등을 유학이 아닌 일반 관광 목적 등으로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25명 중, 고등학생의 불법유학을 알선하여 1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하였다는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하였는데, 위 유 [] 는 이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어 여권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원고와 위 유 [] 은 현재 소재불명으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부하면서 담당 직원이 “원고가 위 유 [] 등과 공모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원고는 현재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미국으로 도피하여 신병이 확보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배 중이다”라는 보충설명까지 하였으나, 사실은 위 발표 당시까지 원고는 미국으로 도피하는 등 수사를 피하려고 한 바가 전혀 없었음에도 원고를 조사한 바도 없었던 사실, 경찰 발표 후 라디오를 비롯한 방송매체들은 같은 날 13:00경 뉴스부터 마치 원고가 위 불법 유학사기 사건의 주모자이고 이에 대한 수사를 피하여 도주한 듯한 표현으로 뉴스를 내보냈고, 같은 날 오후 석간신문인 중앙일보에는 판시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으며, 연합통신도 판시와 같은 내용의 통신문을 송신한 사실, 위 코리아 헤럴드는 영자지인 특수한 사정으로 경찰서에 상주하는 기자가 없는 관계로 경찰수사 관련 기사나 기타 사건기사는 연합통신의 통신문과 방송, 기타 다른 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을 위주로 기사를 작성하여 왔는데, 이 사건 당시에 피고 소속 기자들은 뒤늦게 경찰에 가서 위 보도자료를 구한 후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원고와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원고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코리아아카데미에서도 그 진위를 확인하여 주지 아니하므로 경찰 보도자료, 연합통신의 통신문, 다른 신문의 기사, 방송매체의 방송내용 등을 참고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사실, 그 후 경찰은 같은 달 18. 원고를 조사한 후 여권법위반과 사기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같은 해 5. 18. 여권발급 자체에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여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1992년 6월 26일 원고는 위 코리아아카데미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여 위 유 [] 등이 불법유학알선의 대가로 금원을 받은 비위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사기혐의에 대하여 각 무혐의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 한 다음, 원고가 위 불법유학사기에 관련된 듯한 표현의 기사와 경찰로부터 수배를 받아 미국으로 도피하였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어서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점은 인정되나, 위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고, 당시 피고로서는 경찰 출입기자가 없었으므로 위 사건을 경찰로부터 직접 취재한 것이 아니라 후에 입수한 경찰의 보도자료, 연합통신의 통신

문, 다른 신문의 기사, 방송매체의 방송내용 등을 참고로 하였으며 원고에 대하여도 가능한 한 접촉을 시도하여 원고의 반론권을 보장하려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사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결국 위법성 내지 책임성을 결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를 본다.

신문 등 언론매체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기사 등 보도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당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 199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은 분명하나, 위 기사 자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나 위 기사내용 중 원고가 위와 같은 불법적인 유학을 알선하여 약 100억원의 이득을 챙기고, 경찰수사가 시작된 후 미국으로 도피하였다는 부분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진실이 아닐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기사내용 중 유학간 학생들이 현지에서 받는 처우에 관한 부분도 그 진실성이 의심스럽다.

따라서 피고가 위 기사내용 중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은 위와 같은 부분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원심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에는 경찰출입기자가 없는 탓에 피고 소속 기자들은 경찰의 보도자료, 연합뉴스의 통신문, 다른 신문의 기사, 방송매체의 방송내용을 참고하여 위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기사와 관련하여 피고 소속 기자들이 직접 구한 유일한 취재자료는 경찰의 보도자료뿐이라 할 것인데, 위 기사 내용을 경찰이 보도자료 내용과 비교하여 보아도 경찰의 보도자료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내용, 즉 유학간 학생들이 산간 가건물에서 허송세월하고 있으며, 학교당국이 수업 후에 학교농장에서 말을 먹이는 일과 같은 하찮은 일을 시키고 있거나, 원고가 수사가 시작된 후 미국으로 도피하였다는 내용 등이 추가되어 있고, 특히 그 추가 부분 중 일부를 소재목으로 강조하는 등 과장하여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기사가 작성되어 있다.

또한 언론매체가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참작하여 보도하였다 하더라도 자신

의 보도로 인한 책임은 면할 수 없으므로(더구나 이 사건과 같이,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명시적으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취재한 양 작성하는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 자기 책임하에 그 내용의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특히 일간신문이나 방송의 보도내용은 취재시간이 제한된 탓에 보도내용의 진위여부가 불확실하거나 과장보도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그 진실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진실로 믿기 위하여는 더욱더 진위 여부의 확인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소속 기자들이 경찰 보도자료의 내용에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내용 일부를 추가하여 직접 취재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면서, 그 기사내용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한 노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제1심증인 이□□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 소속 기자들이 원고와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원고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코리아아카데미에서도 그 진위를 확인하여 주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함 다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도 가능한 한 접촉을 시도하여 원고의 반론권을 보장하려 하였다고 하여 마치 피고가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한 듯이 판시하였으나, 강제17호증에 의하면 소외 이□□가 1991년 4월 11일 14:00경 이 사건을 보도한 중앙일보를 보고 원고 집에 전화하여 원고와 통화하였고, 같은 날 저녁 7시 뉴스를 보고 난 후에도 원고에게 전화하여 원고와 통화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 소속 기자들의 원고에 대한 접촉 시도가 부적절하였거나, 그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질 뿐 아니라, 위 이

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증인이 코리아아카데미의 사무실에 전화하니 성명미상의 여자가 “나는 아무 것도 모른다. 지금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인 바, 이는 코리아아카데미측 관련자와 접촉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신원도 확인되지 아니한 자와 위와 같은 말을 들어 원심과 같이 코리아아카데미에서 그 진위를 확인하여 주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 소속 기자들은 위 기사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와 코리아아카데미측 관련자와 접촉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그 방법이 부적절하였거나 그 노력을 다하지 못하여 실패하자, 더 이상의 사실확인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근거 없이 만연히 기사를 작성하였으므로, 일간신문이 신속성을 요구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기사의 취재 과정에서 그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5. 28.

재판장 대법관 정 귀 호
주심 이 돈 회
이 임 수

2심 判 決 文

사 건 : 96나24196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 최 (崔)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국

소송측대리인 유현석, 이진호, 장건상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코리아헤럴드, 내외경제신문

서울

대표이사 김진억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신영무, 심재두, 박교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홍세열, 오종한, 조춘, 김용호, 양영태, 김문
회, 최명호

변론종결 : 1996. 9. 6.

원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3. 8. 12. 선고 93가합2361 판결

환송판결 : 대법원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

주 문 : 1.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
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2. 27.부터
1996. 9. 20.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
의 각 비용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제1항 중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10 내지 13호증, 갑 15. 16호증, 을3. 10. 13 내지 17. 19. 21 내지 23호증, 을9호증의 1 내지 4, 을20호증의 1. 2, 을2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가 발행하는 영자지 일간신문인 1991. 1. 12.자 코리아 헤럴드(Korea Herald) “여배우 불법유학관련혐의(Film actress accused of overseas study scam)”라는 제목과 “약 100억원 챙겨 : 한국유학생 250명 미국 산악지역 가건물에서 시간만 낭비(Pockets about W10bil.:250 Korean students idling in makeshift building on U.S. mountain)”라는 소제목 아래 “최[](Choi [])”라는 설명이 붙은 원고의 사진과 함께 “서울 경찰은 중, 고생 수백 명을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 유학토록 불법 알선하고, 100억원 이상을 챙겼다는 미확인 혐의로 유명 여배우 최[]를 찾고 있다. 이 학생들은 유학비자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일년 짜리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국내 여권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은 유학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학생들은 대부분 서울의 부유층 자녀들로 영어실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미국 학교측에서 수업시간 후 학교부설 농장에서 말 먹이를 주는 등의 하찮은 일도 시킨다고 한다. 서울 소재의 한 유학알선업체인 코리아 아카데미의 대표인 최[](28)는 경찰수사가 시작된 후 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법위반혐의로 경찰이 찾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은 이 유학알선업체의 최고경영자인 유[]인데, 그 또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의 유[](44)는 어제 경찰에 의하여 구속되었다. 이 업체에서 미국 고등학교에 입학할 알선한 약 250명의 한국 학생은 산간지방의 임시건물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미국 고등학교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였다. 최씨의 이 업체는 서울의 주요 신문에 광고를 내어 학생들을 모집하였다. 경찰은 또 다른 유학알선업체 이화텍사스주립유학원의 대표인

김 [] 를 허위 토폴성적표를 발급한 혐의로 구속하였다. 경찰에 의하면 김씨의 허위 토폴성적표로 15명 이상의 한국 학생이 작년과 올해 미국 대학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0. 3. 부당한 방법으로 500점에 훨씬 못 미치는 6명의 고등학생의 토폴점수를 500점 이상으로 올려주고 대신에 총 61,000,000원을 학생들의 부모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가 게재되었다.(원문 : Popular film actress Choi [] is being sought by the Seoul police for allegedly illegally arranging for hundreds of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o be enrolled at a U.S. high school and pocketing at least 10 billion won in “arrangement fees.” The students entered the United States with a one-year tourist visa because they could not apply for students passports. Current domestic passports law bans people under 18 from applying for students passports. The students, mostly from highly affluent families in Seoul, were forced by U.S. school authorities to do menial work at the school farm, such as feeding horses after class, because they lacked English ability, the police invertigators said. The 28-year-old Choi, head of the Korea Academy, an overseas study arrangement agency in Seoul, is known to have fled to the United States after getting the wind of the investigation. Also being sought by the police for violation of the passport law is another to executive of the agency. Yu [] who has also gone into hiding. The agency’s managing director Yu [], a 44-year-old man, was arrested by the police yesterday. The roughly 250 Korean students whom Choi’s arranged to have enrolled at a language program in the U.S. high school stayed in makeshift building high on a mountain. The police refused to identify the U.S. high school. Choi’s agency recruited the students by carrying advertisements in major Seoul dailies, 이하 생략)

나. 소외 유 [] 는 국외여행알선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코리아아카데미(이하 코리아아카데미라고 한다)의 상무이사로서 코리아아카데미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왔는데 교육법, 병역법 및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지 않은 사람의 경우 관할 교육감의 유학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국외유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9. 1.부터 시행된 해외여행 자유화조치 이후부터는 17세 미만자들이 관광이나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일반여권을 발급받아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다는 점과 미국 내 고등학교에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약 1주간의 단기어학연수 과정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국대사관으로부터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일단 미국으로 출국하기만 하면 학업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학비만 지급하면 쉽게 입학할 허가하는 학교가 있어서 탈법적인 방법으로 유학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학을 원하는 중, 고등학생 및 학부모를 상대로 마치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학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유학생을 모집, 알선하고 그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하여왔다.

다. 한편 원고는 세 살 때부터 방송에 출연하여 연예활동을 하여 온 연예인으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81. 10.경 미국으로 유학을 가 그곳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1986. 6.경 귀국하고 국내에서 다시 연예활동을 계속하여 오다 1989. 2.경 코리아아카데미의 광고모델로 출연한 바 있었는데, 유□□는 유학 희망자들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국유학 경험이 있는 인기 여배우인 원고에게 코리아아카데미에서 같이 일해줄 것을 제의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여 그 무렵부터 코리아아카데미의 강남지사에서 근무하게 되어 처음에는 “강남지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고, 같은 해 말경 코리아아카데미의 본사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으로 이전한 후에는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왔다.

라. 원고가 코리아아카데미에서 담당한 업무는 유학생 모집광고를 낼 때 광고모델의 역할을 하는 일과 시간이 나는 대로 위 회사에 출근하여 유학경험과 대학에서의 전공과목인 심리학을 바탕으로 위 회사를 찾아 온 유학희망자나 그 학부모들에게 미국에서의 학교생활과 이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방법, 미국의 교육제도, 어학공부방법 등에 관하여 상담하여 주는 일이었고 그 대가로 코리아아카데미로부터 매월 금 1,500,000원의 보수를 받아 왔는데, 유□□는 “코리아아카데미의 이사장”이라는 설명이 붙은 원고의 사진을 게재한 팜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한편 같은 내용으로 광고문안을 작성하여 일간신문 등에 유학알선광고를 하였으며, 원고는 그 후 약 40명 정도의 학생들을 상대로 상담을 해주었고, 1990. 여름에는 위 회사가 부산과 대구 등지에서 토폴시힘 없이 미국 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사회를 보면서 미국대학 관계자들을 안내하고 소개하는 한편 세미나의 통역을 담당하였고, 같은 해 7. 하순경에는 미국에 있는 엘리엇 팝(ELLIOTT POPE)이라는 중, 고등학교에 약 30명의 유학희망자를 인솔하여 안내하였다.

다. 한편 서울특별시 경찰국에서는 해외여행자유화조치 이후 해외유학알선업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유학자격이 없는 중고생들의 유학을 알선함으로써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하여 1991. 3.경 '코리아아카데미', '이화텍사스주립유학원'을 포함하여 '한국해외유학본부', '해외교육문화원' 등 9개 해외유학알선업체를 내사하였고, 이에 따라 범죄혐의가 짙은 코리아아카데미 및 이화텍사스주립유학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여 코리아아카데미 관계자로 유[] , 원고, 소외 유[] 등을 유학비자를 받을 수 없는 250명의 중, 고등학생을 유학 알선하고 그 명목으로 합계 1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혐의로, 이화텍사스주립유학원 원장인 소외 김[]를 학부모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토폴성적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태평양유학진흥원 상담실장인 소외 오[]을 유학희망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김[]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위조된 토폴성적표를 교부받아 이를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각 입건하면서 같은 해 4. 11. 09:30경 수사과 기자실에서 서울시경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불법해외유학사건을 수사한 보도자료를 배부하였다.

그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화텍사스주립유학원 원장인 김[]가 소외 정[], 오[]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토폴시험성적표를 이용하여 그들의 자녀를 유학하게 한 사실이 밝혀져 동인들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등 행사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코리아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유[], 유[]과 이사장으로 있는 원고에 대하여는 그들이 공모하여 1990. 1. 25.부터 1991. 4. 10.까지 사이에 학부모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여권발급신청시 그 목적과 체류기간 등을 유학이 아닌 일반 관광목적 등으로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250명의 중, 고등학생의 불법유학을 알선하여 1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하였다는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하였는데, 유[]는 이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어 여권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원고와 유[]은 현재 소재불명으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기자들의 질문에 서울특별시 경찰국 담당직원이 "원고가 위 유[] 등과 공모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원고는 현재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미국으로 도피하여 신병이 확보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배 중이다"라고 보충설명까지 하였다.

바. 이에 따라, 라디오를 비롯한 방송매체들은 같은 날 13:00경 뉴스부터 마치 원고가 불법유학사기 사건의 주모자이고 이에 대한 수사를 피하여 미국으로 도주한 듯한 표현으로 뉴스를 내보내었고, 같은 날 오후 석간신문인 중앙일보에서도 "여우가 해외유학사기"라는 제목과 "최[] 씨 미 도피, 2백여 명에 백억원 가로채", "중고생 등 미국서 영어 못해 목장일 하기도"라는 소제목 아래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배포하였으며, 연합통신은 같은 날 오후 ‘통신수신 및 전재계약’을 체결한 피고 등에게 『학생 250여 명 불법유학』이라는 제목과 『알선업자 넷 영장신청 2명 수배』 『토플성적위조-관광비자 이용』이라는 소제목 아래 “서울시경은 11일 해외유학자격이 없는 중, 고교생들을 토플성적표를 위조하거나 관광비자를 발급받게 해 미국과 호주 등지로 유학시켜 온 (주)코리아아카데미 상무 유 [] (44. 서울 []) 등 해외유학알선업자 4명에 대해 사문서 위조, 여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다. 경찰은 또 달아난 (주)코리아아카데미 이사장 최 [] 씨(28. 여, 영화배우)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하는 한편, 이들에게 돈을 주고 자녀의 해외유학을 의뢰한 학부모 채모 씨(45. 주부, 서울 [])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1월 해외유학알선업체인 (주)코리아아카데미를 설립, 미국유학 경험이 있는 배우 출신의 최씨를 월 1백 50만원씩 주고 이사장으로 내세운 뒤, 일간지 등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내 이를 보고 찾아온 남모 씨로부터 1천만 원을 받고 남씨의 아들을 관광비자를 발급받게 해 유학을 보내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모두 250여 명의 학생들을 불법유학시켜 주고 25억여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최씨는 유학희망자 모집과 진학상담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이하 생략)”는 내용의 통신문을 송신하였고, 피고는 위 보도자료, 통신문, 방송, 신문기사의 내용 등에 기초하여 가. 항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배포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유학사기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미국으로 도피하거나 위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지명수배를 받은 일이 없으며, 코리아아카데미는 토플성적 위조와는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허위 내용의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기사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재된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진실에 부합되는 것이며 가사 위 각 기사가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가사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배포한 경우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적시된 기사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또는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취재행위에 관련된 자가 그 내용을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는 위법성 내지 책임성을 결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앞서 든 증거들과 갑 14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보태어 보면, 경찰에서는 코리아아카데미의 운영관계자로 유 []에 대한 신병만을 확보하여 조사하였고, 원고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상 1991. 3. 1.자로 인천 []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서울 []에 남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 내어 경찰관이 위 거주지를 찾아갔으나 여기서 만날 수가 없어 조사하지 못하였고, 한편 원고는 1991. 3. 7.부터 같은 달 11.까지와 같은 해 4. 4.부터 같은 달 9.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 다녀왔으나 위와 같이 수사가 시작된 후 자신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도피하거나 다른 곳으로 달아나지 않았던 사실, 원고는 언론매체가 위 사건을 보도한 이후인 같은 달 18.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유 [], 유 [], 유 []과 공모하여 국외유학자격이 없어 유학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관계로 국외로 출국할 수 없는 중, 고등학생의 여권을 여권발급신청시 진정한 목적인 유학이 아닌 관광으로 기재하여 발급받았다는 여권법위반의 점과 유학알선을 구실로 국외유학자격이 없는 중, 고등학생의 부모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 그러나 그 후 검찰에서 같은 해 5. 18. 원고와 유 [] 등에 여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여권 신청시 그 목적을 유학이 아닌 관광 등으로 기재하여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 후 그 목적과는 달리 유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권발급신청 자체에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처분을 하였고, 원고와 유 []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일단 기소중지결정(유 []에 대하여는 사기죄로 구속기소를 하였다)을 하였으나 1992. 6. 26.에 이르러 원고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도 원고가 코리아아카데미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여 유 [] 등이 불법유학알선의 대가로 금원을 받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던 사실, 이어 피고도 그가 발행하는 1992. 7. 29.자 신문에서 원고가 유학사기사

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등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한편 원고는 영화배우 등으로 활동하는 연예인으로 일반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이른바 공인(公人) 또는 유명인이며 위 기사 내용은 불법유학알선 등의 위법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영향이 지대하므로 이 사건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앞서 인정한 유[] 등의 해외유학 알선에 대하여 원고가 관여하게 된 경위와 관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의 내용 중 원고가 불법유학을 알선하여 약 100억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한 부분과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표현한 부분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고, 유학간 학생들이 현지에서 받은 처우에 관한 부분도 상당히 과장되어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토플성적 위조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기사에서도 원고가 관련되어 있다고 보도하지 않았다.)

(4)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기사내용 중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은 위와 같은 부분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17, 18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기사를 실제 작성한 피고 소속의 사회부 기자인 이[]은 1991. 4. 11. 13:00경 라디오 방송을 통해 원고가 불법유학사기에 관련되었다는 보도를 듣고 연합통신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통신문이 도착하자 그 당시 피고의 사회부장이었던 소외 김[]의 지시에 따라 다른 기자들에게 부탁하여 서울특별시 경찰국이 배포한 앞서 본 내용의 보도자료(갑15호증)를 팩스를 통하여 수신한 사실, 또 이[]은 같은 기자인 소외 황[]으로 하여금 원고와 접촉해 볼 것을 부탁하였으나 황[]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직접 코리아아카데미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 여직원으로부터 “나는 아무 것도 모른다. 지금 아무도 없다”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듣고서는 원고가 그 날 오후 14:00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원고의 집에 있으면서 외부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원고와의 직접적인 전화 접촉조차 하지 않은 채 피고 소속 기자들이 구한 유일한 취재자료인 보도자료를 기초로 하여 연합통신의 통신문, 다른 신문, 방송의 보도내용을 종합하여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명시적으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직접 취재한 양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사실, 한편 이 사건 기사 내용을 경찰의 보도자료나 연합통신의 통신문과 비교해 보아도 그 보도자료나 통신문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는 내용, 즉 유학간 학생들이 산간 가건물에서 허송세월을 시

키고 있다거나 원고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후 미국으로 도피하였다는 내용 등이 추가되어 있고, 특히 그 추가부분 중 일부를 소재목으로 강조하는 등 과장하여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기사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 소속 기자들이 기사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와 코리아아카데미측 관련자와 접촉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그 방법이 부적절하였거나 노력을 다하지 못하여 실패하자 더 이상의 사실확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근거 없이 막연히 허위사실이 포함된 과장된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영자지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경찰관서에 출입하는 기자가 없는 관계로 경찰수사 관련기사나 기타 사건기사는 국내 통신사인 소외 주식회사 연합뉴스로부터 수신료를 지급하고 수신하는 통신문과 방송, 기타 다른 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을 위주로 기사를 작성하는 사정과 일간신문은 신속성을 요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 소속 기자들이 이 사건 기사의 취재 및 작성과정에서 그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피고가 발행하는 영자 일간신문인 코리아 헤럴드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을 게재, 배포한 것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피고 발행의 신문이 배포됨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상당히 훼손된 사실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유등의 유학알선 행위의 불법성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리아아카데미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유학희망자나 그 학부모들의 상담에 응하고 유학희망자를 인솔하고 미국 소재 학교를 안내하는 등 일반인의 오해를 야기한 점,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지위, 피고의 회사 규모와 신문발행부수, 신문의 구독층,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크기 및 전체 기사의 분량 중에서 원고에 관한 기사가 차지하는 비중, 게재 경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그가 발행하는 신문에서 원고가 유학사기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등 내용의 이 사건 기사의 크기와 비슷한 크기의 기사를 게재하여 배포한 점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1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3. 2. 27.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6. 9. 20.까지는 민법 소송의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원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 소정의 연 2할 5분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2조, 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9. 20.

재판장 판사 김 동 건
판사 김 상 균
판사 김 상 철

□

공인의 경우 상업적이 아니라면 언론에 의해
초상이 공표되는 것을 감수해야 하겠지만,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관련 없는 보도에
공표되었다면 이는 초상권침해에 해당된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5. 11. 24.자 판결 (95가합13495)
서울고등법원 1996. 6. 18.자 판결 (96나282)

事實概要

서울고등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는 1996년 6월 18일 임 _____ 씨

가 호화 웨딩드레스 대여업자들의 횡포를 고발하는 뉴스에 자신의 결혼식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보도한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중 초상권 침해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원고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신의 결혼식에서 피고를 포함한 언론기관이 결혼식을 취재하면서 원고의 모습을 촬영할 당시 이를 제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어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더라도 이는 그 결혼식 보도와 관련하여 촬영된 사건 또는 화면을 공표하는 데 대한 동의만을 포함하는 것이지 어떠한 목적에 사용하든 관계 없이 일체의 공표에 대하여 동의한다거나 그 공표와 관련한 자신의 초상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적인 인물의 경우에는 자신의 초상이 상업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자신의 초상이 언론에 의해 공표되는 것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나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하여 더욱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초상이 공표되는 것까지 감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한편 이 사건 보도 이후 ‘원고의 아버지와 원고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정정보도와 2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 수차례 절충 끝에 정정보도를 방영하였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측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는 “정정보도를 합의한 내용과 달리 보도되었고 이에 합의내용을 위반한 데 분노를 느낀 원고측이 피고에 대하여 변호사 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피고측이 원고 아버지를 찾아와 손해배상청구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불법행위와 관련한 피고와의 협상에서 원고 아버지가 결혼까지 한 원고를 대리할 대리권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원고 아버지는 원고를 설득해 보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을 뿐”이라며 피고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자료화면에 나오는 원고가 이 사건 보도내용과 같이 과시적으로 비싼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한 신부의 하나이거나 최소한 그러한 경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감정에 손상을 입혔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공적인 논쟁에 있어서 언론의 초점이 된 자는 그의 초상이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한 스스로 자신의 초상이 언론에 의해 공표되는 것을 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判 決 文

사 건 : 95가합13495 손해배상(기)

원 고 : 임 []

서울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국,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피 고 : 한국방송공사

서울 []

대표자 사장 홍두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현수, 이병선

변론종결 : 1995. 11. 10.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3. 29.부터 1995. 11. 24.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3.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이다.

가. 피고는 T.V. 라디오 방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영방송국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법인인데, 1995. 3. 28.자 KBS TV 9시뉴스와 중간 부분에 “부르는게 값”이라는 제목으로 수백만원짜리 웨딩드레스가 존재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약 1분 55초에 걸쳐 방영하면서, 그 배경화면으로 원고의 결혼식 장면을 약 13초 가량 사용하였다.

나. 위 보도의 내용은 먼저 앵커의 “결혼시즌에 맞춰 최근 한 웨딩드레스 업체가 가격파괴를 선언하고 나섰지만, 한편에선 여전히 수백만원짜리 웨딩드레스가 진열장을 메우고 있습니다. 단 한번 빌려 입는데만 몇 백만원이라는 웨딩드레스가 아직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장□□ 기자의 보도입니다”라는 발언을 15초 가량 방송한 후, 원고의 결혼식 장면 중 하객들을 배경으로 한 원고의 결혼식 입장 장면, 신랑신부 맞절 장면, 주례사 진행으로 화면을 내보내고, 주례사를 듣는 화면 가득한 원고의 모습과 화면 가득한 신랑의 모습을 화면으로 송출하면서 기자의 “길게 잡아도 한 시간이 채 안 되는 결혼식, 이 시간을 위하여 신부가 드레스를 빌리는데 드는 돈은 엄청납니다”라는 발언을 방송하고 그 후 원고가 신랑이 퇴장하는 모습 등을 방송한 후, 이어서 장면을 바꾸어 웨딩드레스 진열장에 진열된 웨딩드레스의 화면, 그 외 2명의 여성이 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의 화면을 송출하면서 기자가 “더구나 지역에 따라 비용은 큰 차이가 납니다”라는 발언을 하고, 이어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하여 인터뷰장면을 내보내면서 “웨딩숍에서 3,000,000원 주고 했다고 들었어요” “1,500,000 불렀는데 깎아가지고 부케까지 1,200,000…” “일반적으로 드레스 빌리는 것만 800,000원이고…”라는 그들의 발언을 방송하고, 이어 웨딩드레스 디자이너, 예비신부 등을 상대로 인터뷰하는 장면에서 그 대여비용이 몇십만원부터 8,000,000원까지 크게 차이가 난다는 내용의 발언들을 내보낸 후, “빌리는데 드는 비용이 실제값보다 적어도 서너배 이상까지 부풀려졌다는 증거입니다. 일생의 한 번밖에 없는 예식임을 교묘히 악용하여 업자들은 터무니없는 드레스 값을 강요하고 있습니다”라는 기자의 발언으로 이 부분 뉴스를 마감하였다.

위 보도 중 원고의 결혼식 장면의 대부분은 원고와 그 신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정면에서 얼굴을 찍은 장면이었다.

다. 한편 원고는 1989. 전대협 대표로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석하기 위해 밀입북하여 세간에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1995. 1. 23. 원고의 결혼식은 각 언론기관에서 취재하여 보도되었고, 피고가 본 사건 뉴스에서 사용한 원고의 결혼식 장면은 그 때 보도자료로 촬영된 것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도 후 호화 웨딩드레스 관련기사에서 자신의 결혼식 장면이 사용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측에 항의를 하여, 피고는 1995. 4. 18. KBS TV 9시 뉴스시간에 “임 씨, 호화 웨딩드레스와 무관”이라는 자막을 내보내면서 앵커가 이 사건 보도내용 중 원고의 결혼식 장면이 삽입된 것은 뉴스편집·제작과정상의 착오였으며 원고가 값비싼 드레스를 입고 호화 결혼식을 한 것처럼 비춰진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바로잡는다는 정정보도를 하였다.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가. 명예훼손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KBS TV의 9시 뉴스에서 “부르는 게 값”이라는 제목으로 수백만원짜리 웨딩드레스가 존재하며 실제 신부들이 결혼식 때 입는 웨딩드레스의 대여료가 심지어 8,000,000원까지 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원고를 알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의 선명한 화면으로 원고의 결혼식 장면을 전반을 방영하였는 바, 피고의 위 뉴스보도의 취지가 웨딩드레스 대여업자들의 횡포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 보도를 접한 일반 시청자들이라면 그러한 사정하에서는 ‘통상적으로’ 그 자료화면으로 나오는 원고가 이 사건 보도내용과 같이 과시적으로 비싼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한 신부의 하나이거나 최소한 그러한 경향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결혼식 장면의 사용에 의해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원고의 명예감정에 손상을 입혔다고 할 것이다.

나. 초상권 침해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결혼식 장면을 원고의 허락 없이 촬영한 후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보도의 배경화면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보통의 감수성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 타인이 자신의 용모, 자태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널리 공표하면 수치심, 곤혹감 등의 불쾌한 감정을 강하게 느끼게 되고 그 결과 정신적 평온이 방해를 받게되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이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평온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생활상의 이익으로서 이는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도덕적으로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아야 할 한 개인의 인격에 관한 권리(이를 편의상 ‘초상권’이라고 한다)라고 함이 상당하나, 한편으로는 전국민의 관심을 끌만한 공적인 논쟁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그 자신의 주장을 널리 홍보하고자 하여 언론의 초점이 된 자는 그의 초상이 상업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그 스스로 자신의 초상이 언론에 의해 공표되는 것을 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국민의 공적인 관심사인 통일문제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하여 실정법에 위배하여 밀입북하여 한 때 전국민의 관심의 대상으로

한동안 언론의 초점이 되어 원고의 초상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의 결혼식 장면은 국내 대부분의 언론기관에 의해 보도되어 이미 공표된 것이기 때문에 그 “결혼식 장면에서의 원고의 초상”은 이미 원고가 묵시적으로 공표를 승낙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후 “공표가 승낙된 위 결혼식 장면에서의 원고의 초상”을 피고가 방영하였다 하여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원고의 결혼식 장면이 관련 보도와 결합하여 원고에 대한 명예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데 대하여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는 바이므로 그 결혼장면상의 원고의 얼굴이 공표된 것만을 따로 떼어 별도의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볼 수도 없어서 원고의 초상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보도 이후 원고의 친정 아버지인 소외 임 []와 원고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정정보도와 금2,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해 오므로, 피고측은 원고의 대리인들과 수 차례의 절충을 거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정정보도를 방영하였고, 이에 따라 위 임 []가 손해배상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의 절충을 통하여 그 주장과 같은 정정보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나 원고의 대리인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의 위와 같은 원고에 대한 객관적 명예와 명예감정의 훼손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그 위자료 액수는, 피고의 이 사건 보도는 원고가 호화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하였다는 점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는 웨딩드레스 업소의 횡포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가사 위 보도를 접한 시청자들이 원고가 호화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을 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허위의 사실이라고는 인정되지 않는 점(원고는 피고의 위 보도가 허위의 사실이라는 주장을 하거나 입증한 바가 없다), 그 보도된 장면은 원고의 비밀적 영역에 속한 사항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범위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질 것이 예정된 결혼식 장면으로 각 언론사에 의해 보도된 장면인 점(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 원고의 결혼식에는 각 정당의 대표 혹은 중진 국회의원들, 종교계나 학계의 저명인사들도 참가하여 세인들간에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보도후 피고측에서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같은 시간대에 정정보도를 하여 원고의 명예가 상당 정도 회복된 점 및 원고의 나이, 신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금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1995. 3. 29.부터 피고가 그 채무의 준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95. 11. 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11. 24.

재판장 판사 이 중 찬
판사 최 종 길
판사 이 병 한

2심 判 決 文

사 건 : 96나282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및 부대피항소인: 임 []

서울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국,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한국방송공사

서울 []

대표자 사장 홍두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현수, 이병선

변론종결 : 1996. 5. 21.

원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5. 11. 24. 선고 95가합13495 판결

주 문 : 1. 원심 판결 중 아래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

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8. 23.부터 1996. 6. 1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부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중 1은 원고의, 나머지 2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3.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원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항소취지: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원심의 비디오 테이프 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TV와 라디오 방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영방송국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법인인데, 1995. 3. 28.자 KBS TV 9시뉴스의 중간 부분에 “부르는게 값”이라는 제목으로 수백만원짜리 웨딩드레스가 존재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약 1분 55초에 걸쳐 방영하면서, 그 배경 화면으로 원고의 결혼식 장면을 약 13초 가량 사용하였다.

나. 위 보도의 내용은 먼저 앵커의 “결혼시즌에 맞춰 최근 한 웨딩드레스 업체가 가격파괴를 선언하고 나섰지만, 한편에선 여전히 수백만원짜리 웨딩드레스가 진열장을 메우고 있습니다. 단 한 번 밀려 입는데만 몇 백만원이라는 웨딩드레스가 아직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장 [] 기자의 보도입니다”라는 발언을 15초 가량 방송한 후, 원고의 결혼식 장면 중 하객들을 배경으로 한 원고의 결혼식 입장 장면, 신랑 신부 맞절

장면, 주례사 진행으로 화면을 내보내고, 주례사를 듣는 화면 가득한 원고의 모습과 화면 가득한 신랑의 모습을 화면으로 송출하면서 기자의 “길게 잡아도 한 시간이 채 안되는 결혼식, 이 시간을 위하여 신부가 드레스를 빌리는데 드는 돈은 엄청납니다”라는 발언을 방송하고, 그 후 원고가 신랑이 퇴장하는 모습 등을 방송한 후, 이어서 장면을 바꾸어 웨딩드레스 진열장에 진열된 웨딩드레스의 화면, 그 외 2명의 여성이 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의 화면을 송출하면서 기자가 “더구나 지역에 따라 비용은 큰 차이가 납니다”라는 발언을 하고, 이어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하여 인터뷰 장면을 내보내면서 “웨딩숍에서 3,000,000원 주고 했다고 들었어요” “1,500,000 불렀는데 깎아가지고 부케까지 1,200,000…” “일반적으로 드레스 빌리는 것만 800,000원이고…”라는 그들의 발언을 방송하고, 이어 웨딩드레스 디자이너, 예비신부 등을 상대로 인터뷰하는 장면에서 그 대여비용이 몇십만원부터 8,000,000원까지 크게 차이가 난다는 내용의 발언들을 내보낸 후, “빌리는데 드는 비용이 실제값보다 적어도 서너배 이상까지 부풀려졌다는 증거입니다. 일생의 한 번밖에 없는 예식임을 교묘히 악용하여 업자들은 터무니없는 드레스 값을 강요하고 있습니다”라는 기자의 발언으로 이 부분 뉴스를 마감하였다.

위 보도 중 원고의 결혼식 장면의 대부분은 원고와 그 신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정면에서 얼굴을 찍은 장면이었다.

다. 한편 원고는 1989년 전대협 대표로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석하기 위해 밀입북하여 세간에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1995. 1. 23. 원고의 결혼식은 각 언론기관에서 취재하여 보도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뉴스에서 사용한 원고의 결혼식 장면은 그 때 보도자료로 촬영된 것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도 후 호화 웨딩드레스 관련 기사에서 자신의 결혼식 장면이 사용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측에 항의를 하여, 피고는 1995. 4. 18. KBS TV 9시 뉴스시간에 “임 씨, 호화웨딩드레스와 무관”이라는 자막을 내보내면서 앵커가 이 사건 보도내용 중 원고의 결혼식 장면이 삽입된 것은 뉴스편집·제작 과정상의 착오였으며 원고가 값비싼 드레스를 입고 호화결혼식을 한 것처럼 비취진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바로잡는다는 정정보도를 하였다.

마. 원고가 실제로 결혼식에서 입은 웨딩드레스는 ‘송이웨딩’에서 금 30만원을 주고 아기 들러리복과 함께 빌린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

가. 명예훼손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KBS TV의 9시 뉴스에서 “부르는게 값”이라는 제목으로 수백만원짜리 웨딩드레스가 존재하며 실제 신부들이 결혼식 때 입는 웨딩드레스의 대여료가 심지어 8,000,000원까지 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원고를 알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의 선명한 화면으로 원고의 결혼식 장면의 전반을 방영하였는 바, 피고의 위 뉴스보도의 취지가 웨딩드레스 대여업자들의 횡포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 보도를 접한 일반 시청자들이라면 그러한 사정하에서는 ‘통상적으로’ 그 자료 화면으로 나오는 원고가 이 사건 보도 내용과 같이 과시적으로 비싼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한 신부의 하나이거나 최소한 그러한 경향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결혼식 장면의 사용에 의해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원고의 명예감정에 손상을 입혔다고 할 것이다.

나. 초상권 침해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결혼식 장면을 원고의 허락 없이 촬영한 후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보도의 배경 화면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를 포함한 국내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이른바 공적인 인물인 원고의 결혼식을 보도하기 위하여 그 결혼식 장면을 촬영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무렵 자신의 결혼식 장면의 촬영 및 공표를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그 결혼식과 관련한 자신의 초상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초상권에 대하여 현행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우리나라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이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민법 제750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초상권의 인정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초상권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초상권의 한 내용인 위 공표거절권과 관련하여 보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설사 원고가 자신의 결혼식에서 피고를 포함한 언론기관이 결혼식을 취재하면서 원고의 모습을 촬영할 당시 이를 제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어 촬영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그 묵시적 동의는 결혼식 장면의 촬영에 대한 동의와 언론 기관이 그 결혼식 보도와 관련하여 촬영된 사진 또는 화면을 공표하는데 대한 동의만을 포함하는 것이고, 촬영한 사진 또는 화면을 향후 어떠한 목적에 사용하든 상관 없이 일체의 공표에 대하여 동의한다거나 그 공표와 관련한 자신의 초상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피고가 원고의 결혼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백만원짜리 웨딩드레스를 고발하는 보도에서 원고의 결혼식 장면을 배경 화면으로 사용하여 시청자들에게 마치 원고가 수백만원짜리 웨딩드레스를 입고 호화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위 화면을 공표하는 것은 원고의 모습을 촬영할 당시 원고로서는 예상치 못한 것으로서 그러한 공표 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공표 행위와 관련한 자신의 초상권을 포기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또한, 세인의 관심을 끄는 공적인 인물의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초상이 상업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그 스스로 자신의 초상이 언론에 의해 공표되는 것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나, 세인의 관심을 끄는 공적인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하여, 더욱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초상이 공표되는 것까지 감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만일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실제로 호화 결혼식을 거행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호화 결혼식을 보도하기 위하여 위 촬영 화면을 사용하였다면 그 법적인 평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실제로 원고는 호화 결혼식을 거행한 바도 없고, 피고가 원고의 호화 결혼식을 보도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초상을 촬영한 화면을 공표한 데 대하여 원고의 묵시적 동의 또는 권리 포기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공적인 인물이므로 원고가 그 화면의 공표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위 행위는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보도 이후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임 []와 원고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정정보도와 금2,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해 오므로, 피고측은 원고의 대리인들과 수 차례의 절충을 거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정정보도를 방영하였고, 이에 따라 위 임 []가 손해배상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연 임 []가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김 []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보도를 한 후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가 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에게 정정보도를 요구하여 수 차례 협상 끝에 피고가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하는 데 합의한 사실, 위 합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가 앵커의 얼굴을 화면으로 잡고 멘트로 정정보도 내용을 처리하되 멘트가 나가는 동안 화면 하단에 "임 [] 씨, 호화 웨딩드레스와 무관"이라는 자막을 계속 내보내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위 정정보도를 방송하면서 위 자막을 잠시 지나가는 형식으로 처리한 사실, 피고가 정정보도를 방송하면서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위반한데 대하여 분노를 느낀 원고측에서 피고에 대하여 변호사 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기에 이르자 피고의 직원인 담당자가 오랫동안 언론계에 종사한 바가 있는 원고의 아버지 임 []를 찾아가 방송국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위 임 []가 그 입장에 동감을 피력한 후 집으로 돌아와 원고의 어머니인 위 김 []에게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할 것을 권하였으나 원고와 위 김 []이 이를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측의 담당자가 위 임 []를 찾아가 사정을 하게 된 경위와 위 임 []가 그 담당자에 대하여 동감을 표시한 경위 및 원고가 성년에 이르러 결혼까지 한 사정 등을 참작하면, 위 임 []가 이 사건 불법행위와 관련한 피고와의 협상에 있어서 원고를 대리할 대리권이 있었던 것이냐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기본적인 대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도 없다), 위 임 []가 피고측 담당자와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것은 딸인 원고를 설득해 보겠다는 취지의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지 그와 같은 대화를 통하여 위 임 []가 이미 결혼까지 한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점에서나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의 위 방송이 원고에 대한 객관적 명예와 명예 감정을 훼손하고,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피고의 방송 내용, 방송 이후 정정보도 방송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및 정정보도 내용, 원고의 나이와 환경, 기타 이 사건 심리과정에서 나타난 사정들을 참작하면 위자료 금액을 금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10,000,000원 및 그 중 원심 인용 금액인 금5,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불법행위일 다음날인 1995. 3. 29.부터 피고가 손해배상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 판결 선고일인 1995. 11. 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당심 인용 금액인 금 5,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5. 8. 23.부터 피고가 손해배상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96. 6.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8. 23.부터 1996. 6. 1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부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6. 18.

재판장 판사 손지열

판사 김 윤 기

판사 박 철

□

수사기관의 공식발표내용에 자기의 견해나
억측을 부가하거나 각색하여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경우에는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지방법원 1995. 12. 22.자 판결 (94가합17753)

서울고등법원 1996. 9. 11.자 판결 (96나7849)

事實概要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송기홍 부장판사)는 1996년 9월 11일 이 □ 씨가 서울신문사 외 5개 중앙일간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를 브로커라고 적시하고, 원고의 혐의사실에 대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원고에 대한 혐의사실이 검찰수사에서 확인된 듯한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다”며 피고 서울신문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의 공식발표에 따른 보도를 하는 경우에도 수사당국의 발표내용에 자기의 견해나 억측을 부가하거나, 사실을 각색하여 보도하거나 그 정도를 초과하여 단정적인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면서 “이 사건 기사는 그 내용으로 보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변호사들의 알선수수료 지급의 범죄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검찰이 원고에 대하여는 혐의사실을 밝힐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여

형사입건조차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기사내용인 원고의 혐의사실은 진실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신문사 외 5개의 언론사들은 1993년 4월 9일 내지 같은 달 10일에 걸쳐 서울 지방검찰청 특수2부가 변호사들의 과다수임료 수수사건 소개인에 대한 소개비지급 등의 비리에 관하여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부장검사의 발표를 근거로 보도 하면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원고에 대하여 ‘브로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보도했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법원은 피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피고들 중 서울신문은 항소를 제기했다.

1심 判 決 文

사 건: 94가합17753 손해배상(기)

원 고: 이 [] (李 [])

부산 []

피 고: 1. 주식회사 동아일보사(東亞日報社)

서울 []

대표이사 권오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형근

2. 주식회사 경향신문사(京鄉新聞社)

서울 []

대표이사 최종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렬, 이동학, 민홍기, 박성호

3. 주식회사 중앙일보사(中央日報社)

서울 []

대표이사 홍석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훈

4.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서울 []

대표이사 이한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시현

5. 주식회사 한국일보사(社)

서울

대표이사 장재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형근

6. 주식회사 국민일보사(國民日報社)

서울

대표이사 조용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렬, 이동학, 민홍기, 박성호

변론종결 : 1995. 12. 1.

주 문 :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한국일보사는 각 금5,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주식회사 국민일보사는 각 금3,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금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3. 4. 10.부터 1995. 12. 22.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같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주식회사 국민일보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7은 원고의, 나머지는 같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같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 4.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각 신문), 갑 제10호증의 1(공소장표지), 2(공소장내용), 갑 제11호증(판결), 갑 제15호증의 1(수사기록표지), 2(기록목록), 3(범죄인지서), 4, 5(각 진술서), 6, 7(각 진술조서), 8(피의자신문조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각 급여목록)이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1993. 4. 초순경부터 서울지방법검찰청 특수2부는 변호사들의 과다수임료 수수, 사건 소개인에 대한 소개비 지급 등의 비리에 관하여 내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같은 달 9. 08:00경 위 특수2부 소속의 검사인 소외 김□□의 사무실에서 변호사 2명과 사무장 등 다수의 직원들이 조사를 받는 현장을 목격한 기자들이 이를 취재하면서 사실확인을 요청하자 위 특수2부의 부장검사인 소외 김□□은 기자실로 찾아와 소외 최○○ 변호사와 소외 박○ 변호사 2명의 신병을 확보하여 브로커 고용혐의에 대하여 수사하고 있고, 같은 날 아침 일찍 위 변호사들의 사무실 직원 9명을 연행하여 사건 수임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 중이라고 발표하였고, 이에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소속의 법조담당기자인 소외 김□□이 위 김□□ 부장검사에게 연행된 위 변호사들의 사무실 직원 중 대표적인 인물의 한자이름과 나이를 밝혀 줄 것을 요구하자 위 김□□ 부장검사는 위 김□□ 검사에게 전화로 확인한 후 당시 위 최○○ 변호사의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원고의 한자 이름과 나이를 알려주었다.

나. 이에 각 신문사 기자들은 위 김□□ 부장검사의 구두발표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들은 1993. 4. 9. 내지 같은 달 10. 피고들 발행의 각 신문에 별지 기재와 같이 위 변호사 최○○, 박○의 혐의사실과 함께 원고의 혐의사실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였다.

다. 위 김□□ 검사는 위 최○○ 변호사를 같은 달 10. 구속하고, 같은 달 22. 서울형사지방법원에 '1991. 8. 20.경부터 1993. 4. 1.까지 도합 61회에 걸쳐 서울시내 각 경찰서 소속 형사사건 담당 경찰관들로부터 사건을 알선받고 그 대가로 그 알선자들에게 합계금 44,500,000원의 사례비를 지급하는 등 금품을 받고 사건 수임을 알선하는 자들로부터 사건수임을 알선받았다'는 혐의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혐의사실을 밝힐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여 위 최○○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하였을 뿐 형사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변호사에게 소개료를 받고 사건을 알선해 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로부터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았을 뿐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사실확인도 없이 위와 같이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같은 피고의 별지 기재 기사는 원고가 변호사법 위반 여부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검찰발표를 그대로 보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의 어떠한 권리도 침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신문보도에 의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보도내용에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으면 족하고, 그 적시되는 사실이 반드시 허위의 사실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이는 표현행위의 객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표현행위의 상대방인 일반의 독자가 통상 신문을 읽는 방법을 전제로 하여 표현행위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행위가 상대방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 기사들을 살펴보면 피고들은 공통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브로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원고가 변호사로부터 알선료를 받고 사건의뢰인을 소개시켜주는 변호사법위반의 범죄행위를 직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란 인상을 주고 있고, 더 나아가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주식회사 국민일보사는 그 기사에서 원고에 대하여 '최변호사 등에게 사건을 알선해 주고 소개료를 받아온', '변호사에게 사건을 유치해주고 건당 수십만~수천만원까지 챙긴', '사건을 알선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온', '소송사건을 알선해 주고 변호사들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독자로서 하여금 원고에 대한 혐의사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하고 있으며,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검찰은 이 [] 씨(31) 등 사건 브로커 9명 중 죄질이 무거운 4~5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라고,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는 '검찰 조사결과 이씨 등 전문 브로커들은 지금까지 수십건의 사건을 변호사에게 알선해 주고 수천만원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도함으로써 아직 혐의사실을 확인 중이라는 검찰의 발표범위를 초과하여 마치 검찰이 원고의 혐

의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각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법성조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모두 진실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그 위법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 내용이 진실에 반한다 하더라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데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역시 위법성이 없거나 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신문 및 잡지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서 그 기사가 이 사건과 같이 검찰 등 공공기관의 발표를 인용 내지 보도하는 형식인 경우 진실성의 판단대상을 발표자체 사실뿐만 아니라 그 내용 되는 사실도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취재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신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함에 비추어 기사가 단순히 풍문이나 억측에 의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 또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 한편, 보도기관이라고 해서 취재활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사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보도에 요구되는 신속성을 위하여 그 조사에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자료 또한 근거는 보도기관으로서 일응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자료 또는 근거가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며, 특히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발표를 그대로 보도한 경우는 정보원의 신뢰도가 높고, 보도의 신속성, 사실탐지 능력의 한계,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어 직접 취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특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뒷받침 조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진실이라고 오신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나, 반면 수사기관의 공식발표에 따른 보도를 하는 경우에도 수사당국의 발표내용에 자기의 견해나 억측을 부가하거나, 사실을 각색하여 보도하거나, 그 정도를 초과하여 단정적인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인 바, 먼저 이 사건 각 기사는 그 내용으로 보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

고 있는 변호사들의 알선수수료 지급의 범죄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이 원고에 대하여는 혐의사실을 밝힐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여 형사입건조차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기사내용인 원고의 혐의사실은 사실이 아니라 할 것인데, 피고들 소속의 기자들이 위 김□□의 구두발표를 토대로 위 각 기사를 작성하였고, 그 발표내용이 서울지검 특수2부가 변호사들의 브로커 고용혐의와 원고를 포함한 그 직원들의 브로커 역할혐의에 대하여 수사 중이라는 사실은 앞서 본 바 있어, (피고들은 위 김□□ 부장검사의 발표내용에 원고가 브로커라든가 원고에 대한 브로커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김□□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러한 발표내용에 위 피고들 발행의 각 기사를 대조, 검토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를 브로커라고 적시하고, 원고의 혐의사실에 대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원고에 대한 혐의사실이 검찰수사에서 확인된 듯한 보도를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발표범위를 초과하여 단정적인 기사를 보도한 점에서 수사기관의 발표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액의 범위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혐의사실의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음은 경험칙상 명백하여 이를 금전으로써 위자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연령, 신분, 교육정도, 피고들이 위 각 기사를 게재하게 된 경위, 게재정도 및 명예훼손 행위 이후의 사정 등이 사건 변론의 나타난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는 각 금 5,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주식회사 국민일보사는 각 금 3,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금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는 각 금 5,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주식회사 국민일보사는 각 금 3,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금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최종불법행위일인 1993. 4. 10.부터 피고들이 그 의무의 준수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5. 12. 22.까지 민
법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12. 22.

재판장 판사 이 원 국
판사 권 오 준
판사 김 복 형

각 피고별 보도기사

1. 동아일보(1993. 4. 10.자)

가. 상단기사

(1) 제목

브로커와 共生...人氣변호사로

朴○·崔○○ 변호사 非理유형

교통사고 전문 「앰블런스」 별명朴

“警察에 소개사례비 지급” 소문崔

(2) 기사내용

10일 오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朴○,崔○○ 변호사는 그동안 법조계 브로커
에 대한 일제 단속이 있을 때마다 브로커와 함께 사법처리설이 나돌았을 정도로 비리
소문이 자자했다.(중략)

한편崔변호사는 형사사건의 1차 발생처인 일선 경찰서를 직접 누비며 사건을 수입
하는 유형.

그동안 강남 소재 모 경찰서의 「고문 변호사」라는 풍문이 나돌았는가 하면 사건을
소개받을 때마다 경찰관에게 얼마씩 나눠준다는 등의 미확인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崔변호사는 7, 8명 정도의 사건 브로커를 고용해 이들에게 사건알선대가로 수입료
의 20~30%를 건네 준 것으로 알려졌다.(중략)

검찰관계자는 「이들 변호사들이 소속 변호사회에 등록되지 않은 사무원을 편법으
로 고용해 사건알선 수수료를 주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구속이 불

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하단기사

(1) 제목

변호사 2명 令狀 청구

서울지검 브로커와 결탁 소송사건 受任

(2) 기사내용

서울지검특수2부는 10일 사건 브로커를 통해 소개료를 주고 소송사건을 수임해온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崔○○, 朴○ 변호사 등 2명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키로 했다.(중략)

검찰은 崔변호사의 경우 사건 브로커들을 통해 서울시내 경찰서 등에서 형사사건 피의자 가족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뒤 소개료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중략)

검찰은 이에 앞서 崔변호사 등에게 사건을 알선해 주고 소개료를 받아온 李동민(31) 등 브로커 9명을 9일 새벽 소환, 조사한데 이어 崔변호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송관련서류 수임사건내용 등을 근거로 이들의 위법사실에 대해 철야조사했다.

2. 경향신문(1993. 4. 10.자)

(1) 제목

구조적 非理 司正 본격화

전국 각계각층 대상 관련자 잇단 內査·소환 辯護士 2명 오늘 拘束

검찰 혐의확인 브로커에 돈주고 受任

의사·변호사 31명은 세무조사도

(2) 기사내용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 파문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사회 각계층의 구조적 비리 등에 대한 본격적인 사정활동이 시작됐다.(중략)

서울지검 특수2부(金□□ 부장검사)는 이날 사건수임과 관련, 브로커를 고용하는 등 비리가 드러난 서울변호사회 소속 崔○○(36·사시 26회)·朴○ 변호사(42·사시 24회) 등 2명을 소환해 철야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의 혐의사실을 확인하고 10일 중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키로 했다. 이들은 검찰의 소환통보에 따라 이날 오후 자진 출두, 소송관계서류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소환된 사건브로커 9명의 진술과 관계서류 등을 정밀 검토한 것을 토대로 이날 오후 이들의 구속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중략)

검찰은 李□□ 씨(31)등 사건 브로커 9명 중 죄질이 무거운 4~5명에 대해서도 구

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崔변호사**는 서울변호사회에 등록하지 않은 사건 브로커 7~8명을 고용해 일선병원과 경찰서 등에 상주시키면서 사건수임을 알선토록 한 대가로 건당 수입료 20~30%씩을 지급한 혐의로 받고 있다.(후략)

3. 중앙일보(1993. 4. 9.자)

(1) 제목

검찰, 辯護士비리 수사

사건브로커 7명 連行...결탁여부 조사

(2) 기사내용

사건 브로커와 결탁, 사건을 수임한 뒤 커미션을 제공하고 과다한 수입료를 받는 등 변호사비리에 대해 검찰이 일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특수2부(金 [] 부장검사)는 9일 **李 [] 씨**(31) 등 사건 브로커 7명을 연행, 변호사와의 결탁여부를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들을 고용해 사건을 맡아온 혐의가 짙은 C모, P모 변호사 등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명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여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중략)

C변호사는 서울 K경찰서를 담당하는 브로커를 두고 사건을 수임하면서 사건 브로커와 담당경찰관들에게 커미션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李씨** 등은 변호사회에 사무원으로 정식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등으로 행세하며 사건을 알선한 뒤 변호사로부터 수입료의 20~30%인 수백만~수천만원씩을 받아온 혐의다.(후략)

4. 서울신문(1993. 4. 10.자)

(1) 제목

非理변호사 2명 오늘 令狀

검찰 경찰·브로커 통해 受任 커미션

거액 소개비 챙긴 9명도 연행, 철야조사

(2) 기사내용

법원과 검찰청 주변에 기생하고 있는 사건 브로커와 이들과 결탁해 사건을 수임해 온 변호사들에 대한 검찰의 일제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사건청탁과 과다한 수입료 등으로 지탄을 받아온 법조계의 부정·비리를 사회정화차원에서 뿌리뽑

기 위한 것이다.

서울지검 특수2부(金 [] 부장검사)는 9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朴○ 변호사(42·사시 24회) 소속 崔○○(36·사시 26회) 등 2명을 불러 밤샘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이 사건 브로커들을 고용, 사건을 수임한 뒤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각각 2억원과 5천여 만원을 브로커들에게 건네준 사실을 밝혀내고 빠르면 10일 중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키로 했다.

검찰은 이들이 브로커들에게 돈을 건네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돈이 건네진 과정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중략)

최변호사는 지난 91년 10월부터 강남경찰서 등 서울시내 일선경찰서 경찰관 20여 명과 李모 씨 등 브로커로부터 형사사건 1백여 건을 알선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수입료의 20% 모두 5천여 만원을 건네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崔·朴변호사에게 사건을 유치해주고 건당 수십만~수천만원까지 챙긴 李 [] 씨(31) 등 사건 브로커 9명을 연행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모두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키로 했다. 이들 9명 중 7명은 최변호사가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사건브로커로 고용했고 2명은 박변호사가 고용했다.

5. 한국일보

가. 1993. 4. 9.자

(1) 제목

非理 변호사 2명 수사

검찰 사건 브로커 7명 연행조사

(2) 기사내용

서울지검 특수2부(金 [] 부장검사)는 9일 미등록 브로커를 고용, 사건을 수임하는 등 비리를 저질러온 변호사들에 대한 본격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상오 변호사 사무실에 고용돼 사건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온 李 [] 씨(31) 등 법조주변 사건 브로커 7명을 연행,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들을 고용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박모, 최모 씨 등 변호사들도 금명소환, 사건수임 과정에서 비리가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에 의하면 이들 변호사들은 대한변협에 등록되지 않은 브로커를 사무원으로 고용 법원·검찰주변에서 민·형사사건 수임을 알선한 뒤 건당 수입료의 20~30%씩을 나눠 갖는 등 비리를 저질러왔다는 것이다.

검찰조사 결과 李씨 등 전문 브로커들은 지금까지 수십건의 사건을 변호사에게 알

선해주고 수천만원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후략)

나. 1993. 4. 10.자

(1) 제목

변호사 非理 수사착수

검찰 브로커 고용 2명 오늘 영장

(2) 기사내용

서울지검 특수2부(金 [] 부장검사)는 9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崔○○(36), 朴 ○(42) 변호사가 사건브로커들을 고용 사건을 소개받은 혐의 등을 잡고 이들을 소환, 철야조사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최변호사 등에게 사건을 알선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온 李 [] 씨 (31) 등 브로커 9명을 이날 상오 소환, 알선한 소송사건 내역, 수수료 규모 등을 조사 했다.(중략)

검찰은 두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받은 대가로 금품을 건네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브로커 4~5명과 함께 10일 중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중략)

또 최변호사는 지난 9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K경찰서 등 서울시내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 20여 명과 李모 씨 등 브로커들로부터 형사사건 1백여 건을 알선받고 사례비조로 건당 수임료의 20%를 지급 모두 5천여 만원을 건네줬다고 검찰은 밝혔다.(후략)

6. 국민일보(1993. 4. 9.자)

(1) 제목

변호사 非理 일제수사

검찰 2명 곧 소환키로...브로커 7명 連行조사

변호사 12명 · 醫師 19명 세무조사 國稅廳

(2) 기사내용

대한변협이 변호사회에 대한 자체정화작업에 나선 가운데 검찰이 소송수행과 관련 사건 브로커와 조직적으로 결탁해 온 변호사들에 대한 본격 수사를 착수했다,

서울지검 특수2부는 9일 소송사건을 알선해주고 변호사들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사건 브로커 李 [] 씨(31) 등 7명을 연행, 조사중이다. 검찰은 또 이들 브로커와 결탁, 사건을 수임받은 혐의로 변호사 C씨와 H씨 등 2명을 금명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 등에 대한 조사결과 이들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받은 대가로 돈을 건네 준 사실이 밝혀질 경우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 브로커들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에 정식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변호사 사무실 종사원으로 일하면서 소송사건을 알선해 준 대가로 건당 수임료의 20~30%를 받아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이와 관련 『변호사들의 수임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국민들의 비난과 함께 브로커들이 알선해 준 대가로 변호사들에게서 수십만~수천만원까지 받는 등 폐해가 심해 일제 수사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2심 判 決 文

사 건 : 96나7849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 이 (李)

부산

송달장소, 서울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서울

대표이사 이한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시현

변론종결 : 1996. 7. 24.

원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1995. 12. 22. 선고, 94가합17753 판결

주 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 4.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갑 제5, 10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갑 제15호증의 4 내지 8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김□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88. 5.경부터 소외 최□ 변호사의 사무원으로 근무해 왔다.

(2) 서울지방검찰청 특수2부는 1993. 4. 초경부터 변호사들의 과다수임료 수수, 사건 소개인에 대한 소개비 지급 등의 비리에 관하여 내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위 특수2부 부장검사이던 소외 김□은 같은 달 9. 10:00경 서울지방검찰청 1층의 기자실에 내려와 변호사들이 사건 브로커를 고용하여 사건을 수입한 비리혐의를 조사 중에 있다. 새벽에 10여 명의 변호사사무실 직원을 데려와 브로커 역할을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 중에 있다는 내용의 발표를 하였고, 기자들이 위 발표만으로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기사작성을 하기 어려우니 소환된 사람 중 한 사람의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자 위 김□은 담당검사인 소외 김□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의 이름과 나이를 확인하여 주었다.

(3) 이에 각 신문사 기자들은 위 김□의 구두발표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10. 피고 발행의 신문에 별지 기재와 같이 위 최□, 박□ 변호사의 혐의사실과 함께 원고의 혐의사실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였다.

(4) 이후 위 김□은 같은 달 22. 위 최□ 변호사를 '1991. 8. 10.경부터 1993. 4. 1.까지 도합 61회에 걸쳐 서울시내 각 경찰서 소속 형사사건 담당 경찰관들로부터 사건을 알선받고 그 대가로 그 알선자들에게 합계금 44,500,000원의 사례비를 지급하는 등 금품을 받고 사건수임을 알선하는 자들로부터 사건수임을 알선받았다'는 혐의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혐의사실을 밝힐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여 위 최□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사건에 대한 참고인자격으로 조사를 하였을 뿐 형사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나. 일반적으로 신문보도에 의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보도내용에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으면 족하고, 그 적시되는 사실이 반드시 허위의 사실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이는 표현행위의 객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표현행위의 상대방인 일반의 독자가 통상 신문을 읽는 방법을 전제로 하여 표현행위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행위가 상대방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게재한 기사의 내용은 마치 원고가 변호사로부터 알선료로 건당 수십~수천만원씩을 받고 사건의뢰인을 소개시켜 주는 브로커로서 변호사법위반의 범죄행위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란 인상을 주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기사가 신문에 게재됨으로써 원고는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명예를 훼손당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기사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모두 진실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그 위법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사 그 내용이 진실에 반한다 하더라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데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역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신문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서 그 기사가 이 사건과 같이 검찰 등 공공기관의 발표를 인용 내지 보도하는 형식인 경우 진실성의 판단대상을 발표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그 내용되는 사실도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취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신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사실이 진실임을 뒷받침할 합리적인 자료 또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고, 특히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발표를 그대로 기사화한 경우는 정보원의 신뢰도가 높고, 보도의 신속성, 사실탐지능력의 한계,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어 직접 취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특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뒷받침 조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진실이라고 오신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나, 수사기관의 공식발표에 따른 보도를 하는 경우에도 수사당국의 발표를 오해하여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거나, 과장 또는 각색하여 단정적으로 보도하거나, 자기의 견해나 억측을 부가하여 보도를 한 경우에는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둘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는 그 내용으로 보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변호사들의 알선수수료 지급의 범죄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이 원고에 대하여는 혐의사실을 밝힐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여 형사입건조차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기사내용은 진실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피고 소속의 기자가 위 김 []으로부터 서울지방검찰청 특수2부가 변호사들의 브로커 고용 혐의와 원고를 포함한 그 직원들의 브로커 역할 혐의에 대하여 수사 중이라는 구두발표를 토대로 위와 같은 기사를 작성하면서 발표와는 달리 원고를 브로커라고 적시하는 등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원고에 대한 혐의사실이 검찰수사에서 확인된 듯한 보도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발표범위를 초과하여 과장 또는 단정적인 기사를 보도한 점에서 피고가 수사기관의 발표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기사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의 위와 같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신문기사의 게재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연령, 신분, 교육정도, 피고가 위 기사를 게재하게 된 경우, 게재정도 및 명예훼손행위 이후의 사정 등이 사건 변론의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이를 금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1993. 4.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5. 12.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9. 11.

재판장 판사 송 기 흥
판사 최 상 열
판사 홍 일 표

서울신문(1993. 4. 10.자) 기사

(1) 제목

非理변호사 2명 오늘 令狀

검찰 경찰·브로커 통해 受任... 커미션

거액 소개비 챙긴 9명도 연행, 철야조사

(2) 기사내용

법원과 검찰청 주변에 기생하고 있는 사건 브로커와 이들과 결탁해 사건을 수임해 온 변호사들에 대한 검찰의 일제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사건청탁과 과다한 수임료 등으로 지탄을 받아온 법조계의 부정·비리를 사회정화차원에서 뿌리뽑기 위한 것이다.

서울지검 특수2부(金 [] 부장검사)는 9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朴 [] 변호사(42·사시 24회),崔 [] 변호사(36·사시 26회) 등 2명을 불러 밤샘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이 사건 브로커들을 고용, 사건을 수임한 뒤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각각 2억원과 5천여 만원을 브로커들에게 건네준 사실을 밝혀내고 빠르면 10일 중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이 브로커들에게 돈을 건네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돈이 건네진 과정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중략)

최변호사는 지난 91년 10월부터 강남경찰서 등 서울시내 일선경찰서 경찰관 20여명과李明 씨 등 브로커로부터 형사사건 1백여 건을 알선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수임료의 20% 모두 5천여 만원을 건네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崔·朴변호사에게 사건을 유치해주고 건당 수십만~수천만원까지 챙긴李 [] 씨(31) 등 사건 브로커 9명을 연행,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모두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키로 했다. 이들 9명 중 7명은 최변호사가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사건브로커로 고용했고 2명은 박변호사가 고용했다. □

교재판매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 사건 보도내용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진실에 근거해 위법성이 없다

서울지방법원 1997. 4. 16.자 판결 (96가합23110)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박일환 부장판사)는 1997년 4월 16일 하안누리 교육원 대표 전 [] 씨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피고의 이 사건 보도내용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고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보도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보도내용은 테이프나 교재판매업자들이 대학가의 신입생들을 상대로 하여 부정한 판매수법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물품을 판매하는 실상을 알려줌으로써 이러한 부정판매에 대한 일반인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으로서 이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방송된 것이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보내온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피해사례들은 모두 보호원에 접수된 구체적인 피해사례들을 근거로 한 것이고, 원고의 업체도 소비자보호원뿐 아니라 각종 민간소비자보호단체 등에 피해신고가 잦은 대표적 업체이었던 점, 원고의 업체에 대하여 각종 단체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모아보면 보도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공사는 1996년 3월 6일 <KBS 9시 뉴스>와 <뉴스라인>에서 “교재 사기판매 극성” 제하의 보도 중 원고가 운영하는 하안누리교육원이 교재 사기판매를 하는 대표적인 업체 중 하나인 것으로 보도했다.

이에 원고는 1996년 3월 1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으나 피신청인이 해당기사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집계한 자료에 근거하여 보도한 것이므로 소비자보호원 집계자료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정정보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불성립되자(96서울중재75)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동일사안에 대하여 제기된 반론보도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반론보도를 방송하라고 판결했다.(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6년 10월 19일 판결 96카합1231)

判 決 文

사 건 : 96가합23110 손해배상(기)

원 고 : 전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 고 : 한국방송공사

서울

대표자 사장 홍두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재중, 경수근, 김정은

변론종결 : 1997. 4. 2.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3,442,079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3. 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송달 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케이.비.에스. 제1텔레비전 '케이.비.에스. 9시 뉴스' 및 '뉴스라인'의 각 첫머리에서 각 뉴스 진행자의 오른쪽 상단 화면에는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각 화면 아래부분에는 두 줄로 "하얀누리교육원 교재 사기판매 한 적 없다"라는 문장을 계속 표시하면서(글자는 통상의 뉴스보도와 같은 크기로) 각 뉴스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정정보도문을 뉴스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각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만약 피고가 위 기간 내에 위 정정보도문 낭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각 위 기간만료의 다음날부터 각 이행완료시까지 각 매일 금 20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피고의 언론보도 및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가. 언론보도 내용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하안누리교육원이라는 상호로 어학원을 운영하고 일반서적을 출판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공사는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전국에 방송의 시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방송문화 발전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바, 피고 공사는 1996. 3. 6. 자사 방송채널인 KBS 제1텔레비전의 'KBS 9시 뉴스'와 '뉴스라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교재 사기판매 극성"이라는 제목하에 별지 방송내용 기재와 같은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내용이라 한다)를 하면서 그러한 교재판매영업을 하는 업체 중의 하나로 하안누리교육원을 지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고 공사의 이 사건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새학기 모든 대학 신입생들을 상대로 카세트 테이프와 교재 등을 강제로 사게 하는 사기판매가 대학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중략) 반품을 하고도 돈을 요구하구요, 교재뿐만 아니라 다니지도 않은 학원비 40만원 정도까지 요구해서 황당했습니다"라는 부분에서는 대학가에서 신입생들을 상대로 하여 일어나고 있는 카세트 테이프와 교재 판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테이프와 교재 판매원들의 전형적인 판매수법을 예시한 뒤 피해자와의 인터뷰를 보여주었고, "소비자보호원 등에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교재 판매업체는 하안누리교육원과 한국교육평가원,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연구원과 태성문화공사 등 23개 업체입니다.(중략) 심적으로 불안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라는 부분은 원고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앞에서 본 부정당한 판매업자의 하나로 하안누리교육원을 들면서 위 교육원에서 보낸 위 통보서를 소개하였고, "흔히들 전화로 사업자에게 해약을 요구하게 되는데(중략) 사기 판매업체에 대한 제재는 극히 미약해 새학기가 되면 소비자들의 피해가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에서는 피해자들의 대처방법을 소개하고 위와 같은 판매업자들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는 바, 위 보도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 공사는 원고가 경영하는 하안누리교육원이 대학가 신입생들을 상대로 테이프와 교재를 사기 판매하고 구매자가 위 물건을 반품하여도 독촉장을 보내는 등 부정당한 판매업체라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말미암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공사의 이 사건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의 보도이고 원고는 그와 같은 보도로 인하여 하안누리교육원의 영업을 사실상 폐업할 수밖에 없었

을 뿐 아니라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 공사는 재산상손해로 금 43,442,079원, 위자료로 금 200,000,000원을 원고에게 배상함과 아울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정정보도문을 방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보도내용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방송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진실하며, 가사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주주의를 유지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언론, 출판 등 표현의 자유는 때로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인격권의 영역을 침해할 경우가 있는데 표현의 자유 못지않게 이러한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 여러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취지에서 볼 때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이 사건 보도내용은 테이프나 교재판 매업자들이 대학가의 신입생들을 상대로 하여 부정한 판매수법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물품을 판매하는 실상을 알려줌으로써 이러한 부정판매에 대한 일반인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으로서 이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방송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이 사건 보도내용이 진실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또는 피고 공사가 이 사건 보도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점에 대하여 본다.

(1) 인정되는 사실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들은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5,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내지 5, 을 제20호증의 1 내지 3, 을 제21 내지 30호증, 을 제32호증의 1 내지 27, 을 제33호증의 1 내지 105, 을 제34호증의 1 내지 23, 을 제35호증의 1 내지 6, 을 제36호증의 1 내지

5, 을 제37호증의 1, 2, 을 제42호증, 을 제45, 46, 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9호증의 2의 기재와 증인 오□□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6 내지 8호증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가) 재정경제원 산하 소비자보호단체인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996. 3. 5. 피고 공사에게 “교재판매 관련 대학신입생 피해 및 대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모사전송기로 보내왔고, 피고 공사 보도본부 소속으로 소비자 담당기자인 소외 이□□은 위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와 한국소비자보호원 담당자의 인터뷰를 곁들여 이 사건 보도 내용을 제작하였다.

(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어학 및 자격증 교재와 관련된 소비자 문제는 판매자가 소비자의 집이나 직장, 학교 등을 방문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가 판매원의 일방적인 권유 및 허위과장 선전에 의해 충동구매 후 해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고 특히 대학 입학시기에 사회적응력이 미숙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피해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1993년부터 1995년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 접수된 대학 신입생 관련 사례 216건 중 44%에 달하는 95건이 3월 중 발생되었다)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어학 및 각종 자격증교재 판매관련 피해실태 및 피해예방대책을 제시함으로써 건전한 교재판매의 유도 및 대학 신입생과 관련된 피해구제건수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어학교재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1995년의 경우 1993년에 비하여 126%가 증가하였고, 자격증교재의 경우 233%가 증가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 보호원의 위와 같은 피해예방을 위한 보도자료의 제작은 시의적절한 것이었다.

(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위 보도자료를 통하여 대표적인 피해사례 8가지를 피해자와 해당업체명을 표시하여 유형에 따라 5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유형으로는 ① 선배라며 접근하여 서클회원 또는 스터디그룹 가입신청서를 쓰게 한 후 교재와 대금청구서를 집으로 우송하는 경우, ② 자격증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준다 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교재와 지로용지가 집으로 배달되어 즉시 우편으로 부쳤으나 반송된 경우, ③ 강의를 해준다고 하여 회원에 가입하였으나 강의는 해주지 않고 교재만 우송해와 취소를 요구하니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 경우, ④ 설문조사를 해달라 하여 응해주었는데 교재와 대금청구서가 배달된 경우, ⑤ 공공기관에서 나왔다고 하여 신뢰감을 준 뒤 신청서를 받거나 장학금 혜택이 주어진다든지 회원수가 한정되었다든지 하여 현혹시키고 서둘러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충동하는 경우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원고의 하얀누리교육원을 위 ① 유형의 사례로 들고 있으며, 이러한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판매의 문제점으로 사회에 대한 적응력이 미숙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인 점과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청약철회 및 행사방법에 대한 규정 등 계약체결전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점을 들고, 이에 대한 피해예방 및 피해발생시 대응방안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있다.

(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1993년부터 1995년까지 교재판매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상담사례가 모두 118건 접수되었는데 그 중 원고 업체에 대한 건수가 가장 많아 전체의 37.3%에 달하는 44건에 이르렀고, 그 외에도 원고 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신고는 한국소비자연맹에 20건, 대한주부클럽연합회에 5건, 한국부인회에 5건, 와이. 더블유. 씨. 에이에 2건 등이 접수되었다.

(마) 위와 같이 각 기관이나 단체에 접수된 원고 업체에 대한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원고 업체의 영업사원들은 신학기에 신입생들을 상대로 강의실이나 교정에서 F.G.S.(Fellowship Group Study)라는 대학연합회와 동아리의 선배라고 자신들을 소개하면서 위 동아리의 새내기들을 모집한다고 현혹하여 사회경험이 일천할 뿐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들떠 있고 동아리 활동에 호기심이 많은 신입생들로부터 위 동아리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받아낸 뒤 금 360,000원이나 하는 영어교재와 카세트테이프를 집으로 보내 그 대금지급을 독촉하고 신입생들이나 그들의 보호자들이 위와 같은 허위설명을 따지면서 또는 계약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교재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반품을 요구하면 부당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반품된 물품의 수취를 거절하면서 그 전액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의 최고장, 독촉장, 호소문 등의 문서를 계속하여 보내고, 심지어 법적처리신청예정통보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내기도 하였다.

(바) 그런데 위 F.G.S.란 원고가 경영하는 교육원의 영어회화교육 프로그램 명칭으로 대학생들의 모임인 동아리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인데도 원고는 위와 같은 차이를 설명하지 아니하고 마치 동아리 모임에서 신입회원을 모집하는 양 회원가입 신청서를 배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형식으로 학원수강생을 모집하였고 회비 명목으로 교재비를 청구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 공사가 이 사건 보도내용을 방송하기 이전 3년 동안 대학 신입생들을 상대로 한 어학교재나 자격증교재의 부당판매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었고 특히 어학교재의 경우 그 피해자들이 대부분 미성년자들인 대학 신입생이었던 점,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보내온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피해사

례들은 모두 위 보호원에 접수된 구체적 피해사례들을 근거로 한 것이고, 원고의 업체도 위 보호원뿐 아니라 각종 민간소비자보호단체 등에 피해신고가 잦은 대표적 업체이었던 점, 원고의 업체에 대하여 각종 단체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모아보면 원고의 업체가 자신의 어학테이프나 교재를 팔면서 이를 영어회화동아리의 회원모집으로 오인시키거나 그 구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대학 신입생들로 하여금 위 제품에 대한 충분한 판단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이 충동적으로 이를 구매하도록 해놓고 위 제품을 받은 신입생들이 위와 같은 계약과정의 흠이나 제품에 대한 불만족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하고 물건을 반품하여도 이를 반송한 채 본인이나 부모들에게 앞에서 본 문서들을 계속하여 보내어 물건대금의 지급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공사의 이 사건 보도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보도내용에 나오는 '사기', '강제' 등의 표현은 다소 과장된 것이긴 하나 이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계약과정에서의 기망적 요소와 물건을 반품한 후에도 집요하게 대금청구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의 표현을 가리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보도내용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보도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보도내용이 원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살필 것도 없이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4. 16.

재판장 판사 박 일 환
판사 강 한 승
판사 고 재 민

보도내용

◎ 류 앵커 :

새학기 모든 대학 신입생들을 상대로 카세트 테이프와 교재 등을 강제로 사게 하는

사기판매가 대학가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기 판매업자들은 피해자들이 교재 등을 반품하는 경우에 법적처리 신청 예정통지서라고 하는 엉터리 독촉장까지 학부모들에게 보내서 위협하고 또 대금을 받아먹는 수법까지 쓰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 이 [] 기자 :

(대학 캠퍼스를 비추면서) 대학 신입생을 상대로 하는 사기판매원들은 날로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사기판매인들은 학교선배 등을 사칭하고 신입생들에게 동아리 가입신청서를 받아 낸 뒤 교재와 대금통지서를 집으로 보내 3,40만원 하는 교재를 강제로 사게 합니다.

또 자격증 안내문을 보내준다거나 영어강의를 해준다고 속여 가입신청서를 받아 낸 다음 이것을 마치 계약서처럼 이용해 교재대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설문서를 주는 장면과 회원가입 및 교재신청서를 작성하는 장면을 비취줌)

특히 설문조사를 한다고 유인해 가입신청서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 피해 여학생 :

(얼굴을 가리면서) 반품을 하고도 돈을 요구하구요, 교재뿐만 아니라 다니지도 않은 학원비 40만원 정도까지 요구해서 황당했습니다.

◎ 이 [] 기자 :

(소비자보호원에서 상대방이 읽고 문서 작성하는 장면과 피해구제카드를 비취주면서) 소비자보호원 등에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교재 판매업체는 하얀누리교육원과 한국교육평가원,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연구원과 대성문화공사 등 23개 업체입니다.

(하얀누리교육원이 보냈다는 법적처리 적힌 편지봉투를 비취주고 법적처리신청예정 통보서를 자세히 비취줌) 특히 이들 업체들은 피해자들이 교재 등을 반품하는 경우 법적처리신청예정통보서라는 엉터리 독촉장으로 학부모들을 위협해 대금을 받아 내기도 합니다.

◎ 피해자 학부모 :

(얼굴이 보이지 않은 자세로 법적처리신청예정통보서를 보면서) 심적으로 불안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많이 걱정을 했죠.

◎ 박 [] (소비원 피해구제국)

(내용증명서를 손으로 들고 비취주면서) 흔히들 전화로 사업자한테 해약을 요구하

게 되는데, 전화로 하면 객관적 근거가 안 남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약을 요구한다는 그런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시면 됩니다.

◎ 이 기자

(대학 캠퍼스와 하얀누리교육원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신입생들을 상대로 한 사기판매는 지난 3년 전부터 급속히 늘기 시작했으나 사기 판매업체에 대한 제재는 극히 미약해 새학기가 되면 소비자들의 피해가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 입니다.

정정보도문

본 방송 1996년 3월 6일 「KBS 9시뉴스」 및 「KBS 뉴스라인」에서 방영한 “교재사기판매극성”이라는 보도 중 하얀누리교육원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하얀누리교육원은 대학 신입생들을 상대로 영어회화 교재 등을 강제로 사게 하거나 교재 판매와 관련하여 사기판매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하얀누리교육원은 학교선배라고 사칭하여 대학 신입생들에게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거나 그들로부터 회원가입신청서를 받아 낸 적이 없으며 그들에게 자격증 안내문이나 영어강의 가입신청서를 교부하거나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하얀누리교육원은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대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나누어 주거나 설문지를 받은 일이 없고 설문지를 이용하여 회원가입을 권유한 적이 없습니다.

하얀누리교육원은 교재구입자가 법정기한 내에 교재를 반품해 올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약정된 손료 이외의 돈을 요구하거나 또는 별도의 학원비를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얀누리교육원은 교재구입자가 법정 반품기간이 지난 뒤에도 교재를 반품할 경우 이를 모두 수용하였으며 교재 구입자가 반품을 하였는데도 하얀누리교육원이 법적처리신청예정통지서를 보낸 사실이 없고 또 교재 구입자가 법정 반품기간이 지난 뒤에도 교재를 반품하지도 않으면서 교재대금납부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백히 나타내거나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차에 걸쳐 안내문과 호소문을 보낸 뒤 그때까지도 교재를 반품하지도 않고 교재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구입자에 대하여 법적처리신청예정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입장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고발성 아이টে
대해 자유토론하는 이 건 프로그램의 특성상,
방송사는 원고회사제품의 효능을 왜곡설명한
출연자를 제지하거나 그 내용을
수정해야 할 의무가 없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7. 8. 1.자 판결 (96가합12727)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4민사부(재판장 윤병각 부장판사)는 1997년 8월 1일 '엠씨스퀘어' 라는 뇌과학습기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양합동과 이 상품사용을 계기로 광고모델로 출연한 강 [] 씨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사건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1996년 5월 21일 한국방송공사는 KBS-2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프로그램의 "뇌과학습기 과연 효과있나" 편에서 뇌과학습기의 효능과 관련한 문제를 방송하였다. 이에 주식회사 대양합동은 문제의 방송이 원고회사의 뇌과학습기 제품인 '엠씨스퀘어' 활용효과에 관한 실험연구결과, 아무런 학업효능 증진효과가 없고 상품광고도 허위, 과장광고이며, 이 상품 광고모델인 강 [] 씨가 인터뷰 요청을 거절해 상품의 효능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 방송을 했다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96서울중재132)했으나 중재불성립되었다.

이에 원고인 이 상품 광고모델 강 [] 씨는 위 프로그램의 인터뷰 요청 거절을 사회자가 반복하여 언급하고 자신이 출연한 광고를 방영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제품제조회사인 대양합동과 함께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이 고발성 아이টে를 다루면서 그에 관한 사실을 직접 보도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해나 의견 내지 입장이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출연시켜 자유 토론형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고, 또한 프로그램 사회자가 원고들의 출연거절 사실을 반복하여 언급한 것만으로 원고회사 제품의 효능 없음과

이를 은폐하려는 인상을 주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상품광고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위 프로그램의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고, 또 원고 강 []의 주장과 관련, 프로그램 사회자가 뇌파학습기의 효능설명에 대해 나타낸 아쉬움으로 광고출연자의 인터뷰 거절 사실을 언급한 것이고 원고회사의 광고에 다른 광고출연자가 더 있었으며 사회자가 광고출연자의 인터뷰 거절 사실을 언급하면서 출연자가 원고임을 특정하지 않았던 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명예훼손 주장도 이유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判 決 文

사 건: 96가합12727 손해배상(기)

원 고: 1. 주식회사 대양합동(大洋合同)

서울 []

대표이사 이준욱

2. 강 []

3. 이 []

원고 2, 3의 주소 서울 []

원고 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이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여운길, 김대회, 이춘원

피 고: 1. 한국방송공사

서울 []

대표자 사장 홍두표

2. 손 [](孫 [])

서울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오수

변론종결: 1997. 6. 2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대양합동에게 금 100,000,000원, 원

고 강□, 이□에게 각 금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6. 5.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별지 기재 내용을 케이비에스(KBS) 제2텔레비전의 09:00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앞 부분에 제목은 24급 고덕활자, 본문은 18급 명조활자의 문자와 함께 음성으로 1회 방송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1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 안□의 증언 및 당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주식회사 대양합동은 1990년경부터 엠씨스퀘어라는 뇌파학습기를 제조하여 판매하여 오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 이□은 1995. 5.경 위 뇌파학습기를 구입하여 당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그의 딸인 원고 강□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한편 원고회사는 원고 강□가 1996학년도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부 입학시험에 합격한 것을 계기로, 원고 이□, 강□에 대하여 위 뇌파학습기의 상품광고에 출연할 것을 교섭하여, 그들로 하여금 1996. 5. 15.자 동아일보 등에 게재된 '고3은 누구나 걱정 50분, 공부 10분 그래요. 이것을 극복해야죠'라는 제목의 엠씨스퀘어 상품광고에 출연케 하였다.

나. 피고 한국방송공사가 운영하는 케이비에스(KBS) 제2텔레비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09: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생활정보 및 고발성 아이템을 다루는 프로그램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방송하여 오던 중, 그 동안 일부 시청자들로부터 시중에서 시판되고 있는 뇌파학습기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를 받은 적도 있고 또 뇌파학습기를 사용한 학생의 성적이 3,381등에서 4등까지 올랐다는 등의 뇌파학습기 광고 내용이 관심을 끌게 됨에 따라 1996. 5. 14. 기획회의에서 그로부터 1주일 후인 같은 달 21.에 뇌파학습기가 어떤 기기이며 그 효능이 어떠한지에 관한 문제를 위 프로그램에서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다. 그리하여 위 프로그램의 담당 프로듀서인 피고 손□은 같은 달 15. 및 같은 달 16. 뇌파학습기의 최대 시장점유자인 원고회사에 전화를 걸어 위 프로그램의 취지를 설명하고 출연해 줄 것을 교섭하였으나 원고회사로부터 엠씨스퀘어에 관한 논문 등 자료만을 제공받았을 뿐 그 요청이 거절당하였고, 위 프로그램의 구성작가인 소외 안□는 같은 달 18. 및 같은 달 20. 원고회사의 위 상품광고에 출연한 원고 이□,

강 []에게 위 프로그램에 출연해 줄 것을 교섭하였으나 역시 거절당하였다.

라. 피고공사는 같은 달 21. 09:05경부터 10:00경까지 위 프로그램의 '뇌파학습기 과연 효과 있나' 편을 방송함에 있어, 이 프로그램의 광고 시작 전 도입부에 원고 이 [], 강 []가 출연한 원고회사의 신문광고를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채 클로즈업 하여 방영하였고, 이어 위 프로그램의 사회자인 소외 왕 []은 09:05경 위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출연진을 소개함에 있어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는 뇌파학습기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의 관계자 두 분이 나오셨구요……. 뇌파학습기를 판매하고 있는 엠씨스퀘어측은 저희가 세 차례나 나와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시다만 거절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구요"라고 말한 다음, 40분쯤 지난 후 다시 "오늘 두 군데 업체에서 나와 주셨고, 엠씨스퀘어측은 저희가 세 차례 좀 나와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나와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위 프로그램의 출연자의 한 사람으로서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의 사무총장인 소외 김 []은 위 프로그램의 또 다른 사회자인 소외 이 []로부터 어느 유명대학에서 행한 엠씨스퀘어의 학습시스템의 활용 효과에 관한 실험연구소에서 위 학습시스템이 학업능력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줄 것을 부탁받고서, 첫 번째 했던 실험내용에 대하여 설명함에 있어 "…… 그 결과를 보면 단지 암기하는데 일일평가에서만 효과가 있었고 그 외의 문장을 이해한다든지 문법을 적용한다든지 이런 것들, 또 총괄평가하거나 이런데서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학습 동기 증진에도 효과가 없었고 학습불안 감소에도 효과가 없었다 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라고 말하고, 또한 두 번째 했던 실험내용을 피고공사가 작성하여 준 차트를 이용하여 설명함에 있어 "여기에서 1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제는 뭐냐하면 이것을 사용하면 성적이 오를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이것을 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일일평가에서 향상된 경우가 5명, 떨어진 경우가 3명, 포기자가 2명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하느냐요. 효과가 있었다는 학생들을 보니까 공부를 원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했던 사람은 효과가 있었고, 목표도 뚜렷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은 사람들은 떨어지거나 포기했다. 이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마치 어떤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기를 하고 결과가 나온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목표가 뚜렷한 사람들은 당연히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아지고, 그 다음에…… 글썄, 그것은 당연한 것을 가지고 마치 이것을 사용하면은 학습이 올라가는 것처럼 자꾸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조 실험결과도 보면 이것이 학습동기가 있고 목표가 있던 학생은 그것에 비례해서 향상이 됐다는 것이고 그외에는 아니다 라는 것을 볼 적에 이것이 꼭 그렇게"라고 말하고, 또한 위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마치 이것을 사용하면 서울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유인광고를 하는데 그런 광고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광고를 했던 학생이 나와서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나오질 않아서 그 광고를 가지고 잘못 이해를 하고, 또 이것만 사용하면 그런 학교에 간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는 것, 학생들이 원래 공부를 했다는 원래 공부를 잘했다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학부모들이 유인광고에 속지 말았으면 좋겠고"라고 말하자, 이에 이어서 위 이□는 "네, 참고로 광고에 등장했던 학생과 학부모께 저희 제작진이 출연섭외를 했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거절하였다는 점을 저희가 말씀드립니다"라고 말하였다.

마. 이 사건 프로그램은 위와 같은 고발성 아이템을 다루면서 업체측 및 소비자측 그리고 전문가, 정부당국자 등 이해나 의견 내지 입장이 다를 수 있는 여러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동수로 출연시켜 자유토론형식으로 진행되어 그 최종적인 판단은 시청자들에게 맡기는 형식으로 제작 방송되어 왔다.

2. 원고들의 청구원인

가. 청구원인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은 방송사 내지 그 프로듀서로서 공정하고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규범윤리로서 의무가 있고 또한 가능한 한 진실한 보도를 추구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보도로 말미암아 특정업체 또는 특정인이 그 명예나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파학습기의 효능이라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방송함에 있어, 출연교섭을 받은 원고회사가 사전에 피고공사측에 방대한 분량의 전문적인 내용이 담긴 관련자료를 전달하여 주면서 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 이를 방송할 것을 요청하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저히 위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과 1주일밖에 되지 않은 방송준비일정을 늦추지 않고 촉박한 방송일정에 따라 위 자료의 충분한 검토 없이 방송을 강행함으로써, 출연자인 위 김□이 원고회사 제품 관련 논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지 아니한 채 위 김□으로 하여금 위 논문의 취지와 전혀 다르게 원고회사 제품의 효능에 관하여 왜곡된 설명을 하게 하고, 또한 위 자료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피고공사 소속 아나운서인 위 왕□, 이□로 하여금 위 김□의 발언을 제지

내지 수정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또한 원고회사와 원고 이 [], 강 []의 출연거절 사실을 그 사유의 설명 없이 반복언급하게 함으로써 원고회사 제품이 아무런 학업효능 증진효과가 없고, 나아가 그 상품광고도 허위, 과장광고라는 인상과 원고회사와 원고 이 [], 강 []가 이 점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인상을 시청자들에게 주었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어 원고들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음과 아울러 또한 원고회사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까지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에게 그 손해배상 및 피고공사에게 위 김 []의 위 논문 설명부분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정정보도 방송을 해 줄 것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회사가 위 프로그램의 방송으로 인하여 그 명예가 훼손되었고 그에 기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와 피고 공사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 사건과 같은 고발성 아이টে를 다루면서 그에 관한 사실을 직접 보도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해나 의견 내지 입장이 다를 수 있는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동수로 출연시켜 자유토론행식으로 진행되는 토론프로그램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그렇다면 피고들이 위 김 []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논문에 관한 차트를 작성하여 제공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위 프로그램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에게 위 프로그램의 출연자인 위 김 []의 원고회사 제품 관련 논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거나 또 위 김 []으로 하여금 원고회사 제품의 효능에 관한 왜곡된 설명 내지 의견을 제지 내지 수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위 왕 []이 원고회사의 출연거절 사실을 반복하여 언급했다 하더라도 위 프로그램의 성격 및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점만으로는 원고회사 제품이 아무런 학업효능 증진효과가 없거나 그 상품광고가 허위, 과장광고라는 인상을 주었다거나 또는 원고회사가 이점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인상을 줌으로써 원고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에서 채택한 각 증거(다만 증인 이 []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및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위 피고공사의 출연요청에 따라 위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엠스퀘어의 일반적 원리 및 그 효능에 관하여 설명하고 이를 옹호하는 발언을 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프로그램의 제작기간이 너무 짧아 그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고 또 원고회사 혼자

는 출연할 수 있으나 다른 군소업체와 함께 출연하면 원고회사가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함께는 출연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 요청을 거절하였고, 그 결과 위 프로그램에는 원고회사를 제외한 다른 2개의 뇌파학습기 판매업체와 위 업체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출연한 소외 신 [] 및 위 업체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출연한 위 김 [] 등이 출연한 사실, 피고측은 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각 의견이나 입장이 다른 출연자들에게 말긴다는 것으로 마무리한 사실, 피고측은 그 과정에서 뇌파학습기의 시장에서 그 점유율을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원고회사를 위 프로그램에 출연시키지 않는다면 가장 잘 알려진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원고회사에게는 출연기회를 주지 않아 위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오해를 시청자들에게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원고회사의 출연거절 사실을 언급하였고 다만 원고회사 혼자서 출연할 수 있으나 다른 군소업체와 함께 출연하면 원고회사가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함께는 출연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언급하기에는 부적절하여 그 거절이유는 밝히지 아니한 사실, 원고회사는 위 프로그램이 방송되기 전부터 그 제품에 관하여 “오를 듯 오를 듯 안오르던 성적이 전교 1등까지 오르더군요. 8개월만에 전교 202등에서 전교 1등으로”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함에 따라, 이에 대하여 1997. 3. 3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 광고가 과장광고라는 이유로 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피고측은 원고회사가 제공한 위 자료들을 미리 모든 출연자에게 전달하였고 한편 위 김 []은 원고회사의 위와 같은 광고내용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에서 위 자료 중 위 논문의 결론부분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 인용하여 설명했으나, 엠씨스퀘어가 암기 부분에 있어서 학습능력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점도 언급한 사실,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는 1996. 8. 7.자 신문인터뷰에서 1996년 상반기에 전년도 판매량의 150%를 판매했다고 밝힌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8호증의 기재와 증인 이 []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성격과 그 진행과정 및 내용, 피고측의 원고회사에 대한 출연교섭 및 그에 대한 원고회사의 출연거절 경위 등을 비추어 볼 때, 위 프로그램의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회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그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프로그램의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회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그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회사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다. 원고 이 [], 강 []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공사가 위 프로그램의 광고 시작 전 도입부에 원고 이 [], 강 []가 출연한 원

고회사 신문광고를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채 클로즈업하여 상영한 사실 및 위 김 []과 위 이 []가 뇌파학습기에 관한 광고에 출연한 학생과 학부모가 피고측의 출연요청에도 불구하고 그 출연을 거절하였다는 점을 언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에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프로그램의 도입부에 방영된 신문광고의 내용 중에는 위 원고들의 사진이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화면은 광고전에 잠시 스쳐가는 형식으로 방영된 사실, 위 김 []과 위 이 []가 학생과 학부모의 출연거절 사실을 언급하면서 문제의 광고가 원고회사의 것이고 또 그 광고출연자가 위 원고들이라는 점을 특정한 것은 아니고, 또한 위 김 []은 마치 뇌파학습기를 사용하기만 하면 학습능력이 제고된다는 취지의 광고내용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에서 그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광고의 출연자가 위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뇌파 학습기의 정확한 효능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광고출연자의 출연거절 사실을 언급한 사실, 원고회사의 광고에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출연한 경우가 위 원고들 이외에도 그 전에 1번 더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김 []과 위 이 []가 언급한 그 출연거절자가 원고들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그 출연거절 사실의 언급으로 인하여 그 광고출연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김 []과 위 이 []의 위와 같은 언급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8. 1.

재판장 판사 윤 병 각

판사 이 정 렬

판사 김 태 의

별지 (정정보도문)

제목 : 1996년 5월 21일자 본 방송 중 뇌파학습기 『엠씨스퀘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정정보도

본문 : 1996년 5월 21일 화요일 오전 본 방송시간에 뇌과학습기 『엠씨스퀘어』와 관련된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그 방송내용 중 서울대 교육연구소가 시행한 엠씨스퀘어에 대한 1, 2차 연구결과를 설명하면서 학습에 대한 엠씨스퀘어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 교육연구소는 엠씨스퀘어에 대한 1, 2차 연구를 통해 엠씨스퀘어 학습시스템이 학습자와 학업효능성 예컨대 기억력이나 집중력 등의 향상에 효과가 있었고, 이러한 효과는 엠씨스퀘어 학습시스템이 학습에 필요한 신체적 생리적 상태를 조성함으로써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에 바로잡습니다. □

자매지간을 모녀지간인 것처럼 묘사해 명예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승낙없이 사진을 게재하여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서울지방법원 1997. 2. 26.자 판결 (96가합31227)
서울고등법원 1997. 9. 30.자 판결 (97나14240)

事實概要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용웅 부장판사)는 1997년 9월 30일 손□(예명 윤□) 씨 등 3인이 세계일보와 자유기고가인 성□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고들에게 1심 판결액보다는 적은 모두 6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사 내

용은 원고 손 []와 동생 손 [] 사이가 자매지간이 아니라는 소문이 있고 그 소문에 근거가 있는 듯한 인상을 일반독자들에게 주도록 작성됨으로써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승낙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입수한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손해배상판결이 유를 밝혔다.

또한 1심 재판부는 원고 손 []를 공인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기사작성 당시에는 이미 영화계를 은퇴하여 프랑스에서 가정생활에 전념하고 있어 더 이상 공인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원고를 공인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기사내용과 같이 타인의 눈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인은 프라이버시가 제한된다’는 이론을 적용할 경우 현저하게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자사가 발행하는 월간지 <클라쎌> 1996년 5월호에 『윤 [] 소문의 20세 연하동생(?) 손 [] 수녀 방문 충격 인터뷰!! “지금 32세가 되는데 동생인가?” “동생이다...”』의 제목을 달고 원고 손 [] 씨와 20세 연하의 동생 손 [] (손 [] 수녀)이 자매지간이 아니라 딸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에 손 []와 그의 부모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였고(96서울중재117) 중재결과 중재불성립되자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문제의 기사를 작성한 <클라쎌>의 편집부장과 편집기사를 피고로 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들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울지방법원 1997. 3. 27.자 판결 96고단10785)

1심 判 決 文

사 건 : 96가합31227 손해배상(기)

원 고 : 1. 손 [] (孫 []), 예명 윤 []

2. 손 [] (孫 [])

3. 박 [] (朴 [])

원고들 주소 서울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 고 : 1. 주식회사 세계일보(世界日報)

서울 []

대표이사 황환채

2. 성

서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일

변론종결 : 1997. 2. 12.

주 문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손[]에게 금 50,000,000원, 원고 손[], 원고 박[]에게 각 금 25,000,000원씩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6. 5. 1.부터 1997. 2. 26.까지는 연 5푼, 1997. 2. 27.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손[]에게 금 300,000,000원, 원고 손[], 원고 박[]에게 각 금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6. 5.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12 내지 17, 19, 20, 25, 27, 28, 31, 35, 36, 39, 40, 44, 47, 51, 59, 62, 64, 66, 68, 6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1) 원고 손[]는 원고 손[]와 원고 박[] 사이에서 출생한 딸로 한때 우리나라 영화계를 풍미한 영화배우였고, 피고 주식회사 세계일보(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업, 도서잡지의 출판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언론사로 월간지 '클라쎄'를 발행하고 있으며, 피고 성[]은 1994.말경부터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세계일보와 클라쎄에 고정적으로 기사를 제공하는 자유 기고가이다.

(2) 원고 손[](1914. 8. 9.생)와 원고 박[](1927. 5. 25.생), 슬하에 원고 손[](1944. 7. 30.생), 소외 손[](1947. 1. 19.생), 소외 손[](1950.1. 29.생), 소외 손[](1953. 3. 15.생), 소외 손[](1957. 1. 29.생), 소외 손[](1963. 11. 3.생) 등 3남 3녀의 자녀들을 두었는데 원고 손[]가 윤[]라는 예명으로 1966. 가을경부터 촬영이 시작되어 1967. 1. 1. 극장에 상영된 '청춘극장'이라

는 영화로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디딘 후부터 세간에 ‘윤 []’는 전남여고에 다닐 때 모극장 경영주의 아들과 연애해서 아이를 낳았고 그 사실이 창피해서 일가족이 모두 서울로 올라왔으며 서울에서는 딸을 동생처럼 호적에 올린 후 처녀로 돌아가 직장에도 다니고 배우모집에도 응모했다’는 내용의 뜬소문이 돌아다니게 되었고 그와 같은 소문은 원고 손 []가 동생인 위 손 []과 나이 차이가 많고 원고 손 []로부터 소외 손 []까지는 모두 3년 터울인데도 위 손 []과 손 []과의 터울이 6년인 점을 근거로 상당한 설득력을 안은 채 돌아다니던 중 1967년 명랑지 5월호에는 ‘윤 []를 둘러싼 일곱 가지 소문과 진상’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소문이 처음으로 기사화되었고 다시 산업경제신문 문화부에 근무하던 소외 최 [] 기자가 1972년 4월 15일자 위 신문 문화면에 “정 []씨가 제작한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영화내용이 윤모 여배우의 사생활과 비슷하다고 해서 화제가 돼있다. 혼전에 얻은 아이를 자기 자식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여인의 고민을 그린 이 영화는 윤모 여배우의 애기와 너무도 흡사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윤 []의 사진과 함께 실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자 이를 참지 못한 원고 손 [], 손 [], 박 []이 위 최 []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위 최 []이 구속된 일이 있었고, 위 수사과정에서도 원고 박 []이 위 손 []을 출산할 당시의 산부인과 의사이던 소외 이 []과 원고 박 []으로부터 나이와 건강 문제로 위 손 []을 유산시키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천주교의 교리를 설명하여 주며 이를 반대하여 위 손 []이 출생하게 된 것이라는 소외 [] 신부 등의 진술에 의하여 위 손 []이 원고 손 [], 박 []의 딸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사실로 밝혀지게 되었다.

(3) 위 손 []은 어릴 때 부모를 따라 서울로 이사하여 리라국민학교, 송의여중, 여의도고등학교를 각 졸업한 뒤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1982.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가 그곳 소르본느 대학교 심리학과에 다니다가 신학에 관심이 많아 파리 카톨릭신학대학교 철학과, 신학과에 재입학하고 수학 중 1990년 아베이 노트담 수녀원에 피정을 가게 된 것을 계기로 베네딕트회에 입회할 것을 결심하여 같은 해 12. 25. 위 수녀원에서 예비수녀가 되는 입회식을 가지고 성모 마리아와 그 남편 요셉의 이름을 따서 []라는 수녀명을 가진 채 수녀의 길을 걷게 되었다.

(4) 피고 성 []은 1996. 3.경 ‘클라쎬’의 편집기자로서 취재, 기고문 정리 및 편집실무를 담당하는 소외 전 []에게 전화로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의 베네딕트 봉쇄 수녀원에서 손 []이 수녀생활을 하고 있는데 취재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하

였고 당시 기획회의에서 위 전 []가 그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자 '클라쎌'의 편집 부
 장으로서 위 잡지의 기획, 취재 및 편집업무를 총괄하던 소외 최 []은 이를 좋은 취
 재내용이라고 판단하여 취재지시를 내렸으며, 피고 성 []은 위 지시를 받고 위 손 []
 을 위 수녀원에 소개한 소외 김 [] 신부에게 그 수녀원에 있는 한국인 출신 []
 수녀를 만나서 수녀원생활에 대해 취재하겠다고 하면서 위 수녀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선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김 []의 소개로 1996. 4. 7. 부활절 저녁
 7:30경 수녀원에 도착하여 같은 달 9. 13:45경 위 장소를 떠날 때까지 위 손 []과
 는 1번, [] 수녀와는 4번 정도 만나 취재를 한 후 기사를 작성하여 이를 인
 편으로 위 전 []에게 보내어 왔고 위 전 []는 피고 성 []이 보내온 기사에 원고
 손 [], 위 손 []의 출생 및 원고 손 []의 영화계 데뷔과정 등을 스포츠 조선과 동
 아일보 등의 기사를 참조하여 별지 기사내용 기재 내용 중 '윤 [] 씨의 본명은 손 []
 []. 6남매 중의 장녀이고 아버지는 손 [] 씨... (중략) ...이 사건은 96년 2월에 터진
 성 [] 사건 때 성 []의 시아주버니 이 []이 5만 달러를 주고 유고 경찰을 매수해
 이루어졌다고 확인되었다'라는 부분으로 삽입하는 외에 위 최 []은 표지에 나올 제
 목을 '본지 대특종 윤 [] 20세 연하 소문의 동생 손 [] 수녀 충격 인터뷰'로
 정하고, 위 전 []는 목차에 실을 제목으로 "본지 대특종 윤 [] 20세 연하 '소문의
 동생(?)' 손 [] 수녀 충격 극비 인터뷰!"라는 문구를 선택하는 한편 독자들의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도록 별지 기사내용 기재 및 제목을 정한 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1996년 5월호 클라쎌 잡지의 광고를 세계일보, 중앙일보 등에 게재하는 한편
 1996. 4. 하순경 88쪽에서 91쪽까지 별지 기사내용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내용
 이라 한다)를 게재하고 원고 손 []나 소외 손 []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채 89
 쪽 왼쪽 하단에 그 입수경위를 알 수 없는 원고 손 []와 소외 손 []이 나란히 서 있
 는 사진과 함께 '본명 손 []인 윤 [] 씨와 동생이라는 손 [] 소녀가 1993년
 함께 한 사진, 형부로 되어 있는 백 [] 씨도 이 수녀원에 자주 찾아와 수녀원 사람들
 과 면회객들은 그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설명을 단 클라쎌 5월호 약 30,000부를 발
 행하여 시중에 발매하였다.

(5) 위 잡지에 광고가 나간 뒤로 원고 손 []는 위 광고문안과 기사내용을 문제삼
 아 피고들에게 항의를 하였고, 피고 성 []은 자신의 잘못을 일부 시인하면서 정정기
 사를 작성하여 보여 주고 광고와 위 잡지의 발행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위
 약속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피고 성 []과 피고 회사의 위 최 [], 전 []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뒤에는 위 전 [] 등이 피고 성 []을 통하

여 위 원고에게 1996. 5. 27.경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자신들이 추가취재를 하였는데 엄청난 사실들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말로 위 원고를 협박하여 위 형사고소 취하를 강요하였고 위 잡지가 발매된 뒤에 독자들로부터 원고들에게 ‘왜 손□□을 수녀원에 보냈느냐’, ‘무슨 사연이 있느냐’는 내용의 전화가 쇄도하였으며 다른 언론 매체들에서도 추가취재를 하고자 원고들을 접촉하려고 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

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소위 손□□을 친언니인 원고 손□□의 동생이 아니라 딸이라고 전제한 다음, 위 손□□이 이를 감추고자 봉쇄 수녀원에 들어가 맘에 내키지 않는 수녀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를 알고 찾아간 피고 성□□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 그녀의 과거를 감추고 있다는 인상을 독자들에게 깊이 심어주고 있고, 원고 손□□와 위 손□□의 사진을 무단게재하여 원고들과 위 손□□의 명예와 프라이버시권,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기사 중 어느 부분도 위 손□□이 원고 손□□의 딸이라는 전제하에 쓰여지지 않았는데 원고들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것은 원고들이 너무 예민하게 위 기사에 반응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원고 손□□의 사진을 게재한 것은 공인인 위 원고에 대한 언론의 자료수집권한 범위 내의 행위로 위법하지 않으므로 위 기사의 게재가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고 다룬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명예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상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프라이버시란 우리 헌법 제17조에 표현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프라이버시권이란 자기만이 간직한 비밀을 공개당하거나 사생활에 간섭을 받아 정신적 타격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 할 것인 바,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는 전자가 공동체의 외적 관계에 있어서 타인에 의한 평판이 침해된 것을 말하는데 반하여, 후자는 자기자신의 감정 및 스스로의 평가에 대한 침해를 말하는 것으로 일응 구별될 수 있으나 양자는 서로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침해행위의 유형에 따라서는 양 개념에 모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언론이 기사를 게재하여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사의 객관적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독자가 통상 그 기사를 읽는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기사의 내용,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배치, 기사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도 고려하여야 하며 비록 기사내용이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였다 하더라도 기사작성자나 편집자의 의도가 가미되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와 같이 오해

될 수 있도록 기사를 작성, 편집하는 행위도 개인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점에 있어 다툼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손 []이 원고 손 []의 딸이 아니라 동생인 사실은 이미 1970년대 초반에 앞에서 살펴본 일련의 사건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바 있고, 언론인들인 피고들로서는 어렵지 않게 위 손 []의 가족관계나 수녀원 입회과정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처음부터 봉쇄수녀원에서 생활하는 한국인 수녀를 취재한다는 표면적인 동기 밑바닥에 위 손 []이 원고 손 []의 딸일 것이라는 풍문과 위 손 []이 외부와 차단된 봉쇄수녀원의 수녀로 생활하고 있다는 두 고리를 엮어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기사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위 잡지의 표지 제목에 '윤 [] 20세 연하 소문의 동생 손 [] 수녀 충격 인터뷰'라고 써 위 손 []이 원고 손 []의 동생이라는 것에 대하여 의문이 있음을 암시하고 기사내용에도 충격적인 내용이 있을 것임을 나타낸 뒤 목차면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다가 소문의 동생이라는 문구 다음에 괄호안에 의문 부호를 넣어 그 의혹을 증폭시키고 '충격 극비 인터뷰'라고 '극비'라는 단어를 삽입하여 은밀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은 인상을 준 뒤 기사 본문 제목에도 "지금 32세가 되는데 동생인가?" "동생이다..."라고 적어 동생이다 라는 대답에 자신이 없거나 머뭇거렸다는 느낌을 주고, 기사 본문에서는 "조선대 영문과 1학년 21세 때에 청춘극장의 여주인공으로 영화계에 나왔는데 이 때가 1967년이다. 손수녀가 태어난 해는 1966년이다. 그녀가 영화계로 뛰어든 해는 손 수녀가 태어나고 난 다음해이다"(갑 제7호증의 17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손 []는 조선대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손 []이 1963년생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며칠전 이곳에 오기 위해 [] 수녀를 이곳에 소개한 신부님을 만났는데, 신부님 또한 개인적인 일이니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덜어줄 것을 당부하셔서 더 이상 물어 볼 수가 없었다", "이 [] 수녀의 침묵을 무엇으로 받아 들여야 할까. 함께 생활하는 또 다른 한국인 수녀 [] 또한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고 한다. 단지 '윤 [] 씨의 동생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석연찮은 느낌이지만 이 또한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며, 5년 이상을 이곳에서 함께 생활했지만 단 한번도 한국말로 그녀와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없다'는 [] 수녀는 '그녀에게서 어떤 비밀스러움을 느낀 후부터 그녀를 위해 자신도 오히려 그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가능한 한 범위 안에서 그녀와의 자리를 피하게 된다'고 말한다. [] 수녀의 말속에 수도자로서의 어떤 자세를 보는 듯해 마음이 숙연해진다."(피고 성 []이 위 김 []과 [] 수녀의 딸이라고 직접 또는 간접인용한 말들이 실제로 그들이 한 것인지 하였다면 그

내용이 같은지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갑 제7호증의 35의 기재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 “[] 수녀. 윤 [] 씨의 동생이기도, 흑 백 [] 씨의 처제이기도, 조카이기도, 소문은 그녀가… 과연 그녀는 왜 이 봉쇄 수도원에 있으며 굳이 우리를 피하는 것일까. 많은 의혹을 남긴다.”, “손 []. 그녀 자신이 이야기하는 윤 [] 씨, 즉 손 [] 씨의 동생이라면 한때 화려했던 영화배우의 동생이기 때문에 숨겨야 하는 것일까. 수녀가 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거늘.”(갑 제7호증의 17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손 []은 피고 성 []이 수녀원 생활에 대하여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을 녹음하거나 기재를 하지 않고 수녀원의 수녀들의 머리와 속옷에 대해 물어보는 등 유치한 질문을 하면서 윤 []와 백 [] 씨를 아느냐고 하기에 더 이상 대답하거나 이야기 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 면회를 중단하고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담아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 손 []와 위 손 []이 모녀 사이일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일단 이곳 수녀원에 들어오게 되면 일체의 외출이 금지된다…(중략)… 만약에 수도생활 중 병이 발생하게 되면 이곳 안에 있는 병원시설로 고칠 수 없다는 진단 아래 외출증을 신청, 로마 교황의 허가 아래서만 바깥 병원에 나갈 수 있는, 바깥 세상과는 철저히 단절된 봉쇄 수녀원으로 이 모든 규칙들이 성베네딕도의 이름아래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갑 제7호증의 43의 기재에 의하면 [] 수녀 자신도 수 차례 외출을 하여 피고 성 []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수녀원에서 외부에 나가기 위하여 교황에게 외출허가를 받는 절차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바깥 세상에 있는 가족들과도 편지 이외의 다른 형태로는 연락할 수 없고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시간대 안에 교환 수녀를 통해 외부로부터 오는 전화를 받을 수는 있지만 수녀 자신이 전화를 걸 수는 없다.”(갑 제7호증의 32의 기재에 의하면 수녀 자신도 필요한 경우 상급 수녀의 허락을 받고 전화를 걸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수도원의 특징이 있다면 이곳 수도원에 들어오고자 하는사람들에게 아무런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곳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단지 신청서에 본인의 사인만이 필요할 뿐이다.”(갑 제7호증의 32의 기재에 의하면 수도원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먼저 수도회로부터 입회허락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수도회 입회 지원자는 상당한 기간을 그 수도회와 관계를 맺으며 입회를 준비하게 되고 입회시에는 특히 가족사항을 중시하여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일 경우 수도회 입회허락이 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마치 위 봉쇄수녀원이 외부로부터 철저히 차단되어 있는 곳으로 바깥 세상에서 불행한 과거를 지냈던 사람들의 도피처인 듯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면회 시간이 끝나는 종소리가 울리

지도 않았는데 그녀는 나갔다 올 사람처럼 면회실을 나갔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 수녀, 그녀의 말 속에서도 진정한 수도자의 길을 걷는 수녀다운 신앙의 깊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긴 했지만, 이 일을 당하고 나니 더욱더 과연 그녀가 진정 자신이 스스로 하느님의 부름을 받고 진정한 신앙에서의 삶을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일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라는 기사내용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손 []이 자신의 취재에 협조하지 않은 사실을 빌미잡아 감정적으로 대응한 인신공격적인 표현이라 할 것인 바, 위에서 든 기사내용을 통찰해보면 이 사건 기사내용은 원고 손 []와 위 손 [] 사이가 자매기간이 아니라는 소문이 있고 그 소문에 근거가 있는 듯한 인상을 일반독자들에게 주도록 작성됨으로써,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들의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 회사는 전체적으로 원고 손 []와 위 손 []이 모녀 사이임을 암시하는 기사내용 중간에 위 두 사람의 승낙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입수한 위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을 게재하고 그 밑에 ‘본명 손 []인 윤 [] 씨와 동생이라는 손 [] 수녀가 1993년에 함께 한 사진…’이라는 설명을 덧붙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 손 []와 위 손 []이 그 게재를 허락하지 않은 사진을 동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에 덧붙여 그 내용에 부합하는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그 공표방법에 비추어 원고 손 []와 위 손 []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 손 []는 1966년경부터 영화배우로 활동하여 왔으므로 공인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위 기사 작성 당시에는 이미 영화계를 은퇴하여 프랑스에서 가정생활에 전념하고 있어 더 이상 공인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가사 위 원고를 공인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기사 내용과 같이 타인의 눈에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인은 그 프라이버시가 제한된다는 이론을 적용할 경우 현저하게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 할 것이어서 원고 손 []가 공인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성 []은 이 사건 기사내용과 같은 기사를 작성하여 ‘클라쎬’지에 이를 게재하게 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기사 및 광고를 발행, 배포한 불법행위자 겸 피고 성 []에게 기사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편집한 위 최 [], 전 []의 사용인으로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위 ‘클라쎌’ 지가 배포되고 광고됨으로써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된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나이와 사회적 위치, 피고 회사의 규모와 언론계에서 차지하는 위치 및 일반인들에 대한 공신력, 피고들의 사실확인보도 의지의 결여, 위 기사의 내용과 크기, 위 기사의 게재 경위와 발행부수, 위 기사 게재 이후의 피고들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 손 [] 에게는 금 50,000,000원, 원고 손 [], 박 [] 에게는 각 금 25,000,000원씩이 적정한 위자료 액수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손 [] 에게 금 50,000,000원, 원고 손 [], 박 [] 에게 각 금 25,000,000원씩 및 이에 대하여 위 ‘클라쎌’ 지의 배포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1996. 5. 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7. 2.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원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2. 26.

재판장 판사 박 일 환
 판사 윤 강 열
 판사 고 재 민

기사내용

프랑스 성베네딕도 수녀원에 윤 [] 소문의 20세 연하 동생(?) 손 [] 수녀 방문 충격 인터뷰!!

“지금 32세가 되는데 동생인가?” “동생이다...”

1. 베일에 싸인 중세 봉쇄 수녀원에서의 3박 4일 생활 경험 최초 공개
2. 영화배우 윤 [] 동생이라는 손 [] 4번 면회 신청, 5분 면담 사생활 내용
3. 손 수녀의 항의로 수녀원에서 쫓겨날 뻔한 방문 그 이후

부활절 맞아 일반인에게 특별 공개된 중세식 베네딕도 봉쇄 수도원. 이곳에 한국인 수녀 두 명이 봉직하는데, 그들을 만나 외부의 시각과는 다른 수녀원 생활을 직접 보고 들은 상상 속의 생활을 최초로 공개한다.

또 6, 70년대 최고 톱 스타 윤 [] 씨의 소문 속의 동생(?) 손 [] 씨를 면회한 신상대화 내용 특종 공개.

“동생이 맞는가?”

당황하며 “그렇다...”

아르장땅의 베네딕도(분도) 수녀원은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원으로 6세기 말경 프랑스 서북쪽 노르망디 지방의 알므네슈에 창설되었다고 전해지는 봉쇄 수도원이다.

이 수녀원은 7백70년에 서거한 아베스 오베르틴 성녀에 대한 존경으로 그 유골을 보존하고 있고 성 베네딕도의 규율에 따라 생활하는 관상 수도원이며 모든 수도자들을 선출한 아베스를 그들의 어머니로 모시고 있다.

이곳에 들어온 수도자들은 전세계 교회의 이름으로 하루 8번의 기도와 신성한 성무일과로 생활하며, 교회의 전통적 언어인 라틴어와 그레고리안 성가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평생을 하느님께 바치는 종신선언을 함으로써 세상과 단절된 생활을 하는 곳이다.

하루에 8번 하는 기도는 관상 수도자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이며 생계와 자급자족을 위 성체와 여러 종류의 사진, 상분, 아콘 그리고 수예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고 소와 양, 닭 등을 키우는 농장과 넓은 면적의 채소밭을 가꾸고 있다.

수도원과 성당 그리고 가족 친지 등 방문자들을 위한 객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 모든 건물과 밭을 포함 8ha라는 넓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다.

베네딕도 성인의 규율에 따라 생활하는 이곳 수도자들의 생활은 지극히 단순하며 형제애로 가득찬 한 가족의 형태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곳에 온 수녀들은 이곳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세상과는 단절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정결, 가난, 순명, 항구성(부동 영속성 : 수도자 자신이 종신서원을 한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항구히 머무는 것)의 4가지 서원을 한다.

현재 53명의 수도자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약 1년 동안의 청원기와 2년의 노비스 생활(견습 수녀), 그후 3년을 위한 단순서원을 하며 마지막으로 종신선언(하느님의 종으로 평생을 바치는 맹세)을 한다. 이 기간까지 6년이 걸린다. 이 종신선언을 이곳 수녀들은 하느님과의 결혼이라고 말하며 그전의 기간을 하느님과의 약혼 기간이라고

말한다.

아베이 노틀담 수도원은 파리에서 기차로 2시간 10분 정도 소요되는 노르망디 아르장땅에 위치하고 있는 조용한 시골 마을이다. 1944년 2차 세계대전의 노르망디 침략으로 이 아르장땅 역시 곳곳에 전쟁의 흔적들이 남아 있고 수도원 역시 붕괴되었다가 1958년 다시 재건되었다고 한다.

별다른 특징이 없는 이 작은 마을의 끝부분에 위치한 이 아베이 노틀담 수도원이 이 마을의 유일한 명소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이 수도원은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봉쇄 수도원이므로 이곳에 사는 마을 사람들도 이 수도원의 수녀들을 거의 볼 수 없다고 한다. 단지 높고 견고한 담의 성당 뒷쪽 어딘가에 수녀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뿐이다 라고 말한다.

우리 또한 이곳 수도원에서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인 수녀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서 며칠 머물렀지만, 단지 객실을 관리하는 수녀와 면회가 허락되는 시간 면회실 안에서만 그 수녀를 봤을 뿐, 기도를 드리는 시간 성당 안에서조차 수녀들을 보기는 힘들었다. 기도를 하는 동안 수녀들은 칸막이 안에서 성가를 불렀고 일반 신자나 면회를 온 가족들은 제단 앞쪽에서 수녀들의 노래 소리만으로 기도를 함께 했다.

일단 이곳 수도원에 들어오게 되면 일체의 외출이 금지된다. 외국인의 경우 프랑스 체류를 위한 체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외출(이곳에 처음 들어온 한국 수녀의 경우 12년 동안 단 한번 체류증을 위해 외출을 했을 뿐이다) 외에 일체의 외출이 금지되어 있고, 만약에 수도생활 중 병이 발생하게 되면 이곳 안에 있는 병원시설로 고칠 수 없다는 진단 아래 외출증을 신청, 로마 교황의 허가 아래 서만 바깥 병원에 나갈 수 있는, 바깥 세상과는 철저하게 단절된 봉쇄 수도원으로 이 모든 규칙들이 성베네딕도의 이름 아래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또한 이곳 수도원에서는 개인의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의 모든 용품들은 자급자족 혹은 배급형식을 통해 지급받는다(이곳에서 생활하는 수녀들은 자신이 입고 있는 옷, 신발 그리고 속옷까지도 '우리들의 옷, 우리들의 신발'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바깥 세상에 있는 가족들과도 편지 이외의 다른 형태로는 연락할 수 없고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시간대 안에 교환 수녀를 통해 외부로부터 오는 전화를 받을 수는 있지만 수녀 자신이 전화를 걸 수는 없다.

수녀원에서 만난 사람들

백 씨도 자주 봤다고 해

이렇게 바깥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이 아베이 노틀담 수도원안에는 현재 53

명의 수녀들이 생활하고 있다. 이 53명의 수도자 중 이 수도원이 창립된 후 처음으로 한국인 수녀가 들어왔다. 그때가 1984년, 이 수도원이 생긴지 1천 4백년이 지난 후였고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의 일이다. 이 수도원의 1천 4백년 역사 이래 처음으로 동양인 수녀가 들어온 것이었다. 그리고 지난 1991년에 또 다른 한국인 수녀가 이곳에 들어옴으로 해서 53명의 수녀 중 한국인 수녀 2명이 이곳에서 수도생활을 하고 있다.

고향이 충청도 보은이라는 58년생 [] 수녀와 전라도 광주 출생이라는 63년생인 [] 노비스(견습 수녀) 두 사람이다.

파리에서 면회와 객실 예약을 위해 여러차례 전화를 한 탓인지 도착하니 객실 수녀가 금방 우리를 알아봤다. 파리에서 아르장팡까지 하루에 두 차례밖에 없는 기차를 타고 도착하니 이미 이날의 면회 시간은 끝나 있었다. 객실과 복도를 겹쳐 있는 유리문으로 보이는 아르장팡의 밤은 한적한 탓일까 파리보다 더 어둡게 느껴진다.

하루의 모든 일과가 9시에 끝나고 소등과 함께 이미 잠자리에 들은 수녀들처럼 자리를 펴고 누웠으나 잠은 멀리 달아나 있고 숲속을 지나는 바람소리만 가슴에 와 닿는다.

도착한 다음날 아침 식사와 기도시간이 끝난 후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의 면회 시간을 이용해 면회 신청을 했으나 부활절 행사로 바쁜 탓인지 5분 정도 [] 수녀의 얼굴만 봤을 뿐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

그리고 또 다음날 다시 면회 신청을 하고 배당받은 면회실에서 기다리니 쇠창살(사진) 맞은편 문이 열리면서 [] 수녀가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두 번 있는 면회 시간을 이용해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 수녀는 12년전 이곳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자신이 종신선언을 한 93년에 단 한번 한국에서 온 친언니와 몇 명의 친구들 그리고 한국에서 온 신부님들을 통해 한국말로 이런저런 세상이야기를 나눈 것 이외에 이번 면회가 두 번째라 마냥 즐겁기만 해 보였다. 자신의 수도생활과 수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중 자신이 걸어가는 이 수도원의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곳 생활을 알리고 싶다고 말하면서, 이곳이야말로 하느님의 품안에서 사는 일이며 천국이라고 스스로없이 말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인간이 벌할 수 없다는 어린시절의 강박관념들이 자신을 이곳으로 이끌어 주었고 지금은 죽음에 대해 조금도 두려움이 없으며, 하느님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욕심을 부린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는 엘리자베스 수녀는 자신이 원했던 모든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며 깊은 신앙으로 하루내내 하느님을 찬양하며 사는 자신의 삶에 만족해 하고

있다.

그리고 나에게 꼭 영세를 받고 성당에 나가기를 바란다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면회 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점심 식사 후 개인 자유시간에 다시 면회 신청을 하겠다는 말을 남기며 □ 수녀님도 같이 뵙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따로 면회신청을 했다. 오후 면회 시간에 우리는 한국인 두 수녀를 다 만날 수 있었다.

인사를 나누고 이름을 물었다.

“언니” 윤 □ 씨와 20세 차이 나

조카로 아는 이도 있어

‘□’의 바깥 세상에서의 이름을 물었더니 ‘손 □’이라고 말했다. 손 □, □ 수녀. 20대 중반이라고 보기에든 힘든 아직 너무나 젊고, 고운 피부가 영화배우였던 윤 □ 씨를 닮은 □ 수녀는 63년생 33세라고 말한다. 이곳에 들어온지 5년. 아직 종신선언을 하지 않은 탓으로 머리에 쓴 가리개가 하얀색이다. 대부분의 수녀들이 나이보다 10년은 젊어 보이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냐고 물으니 대답이 없다. 수녀들은 세수하고 난 뒤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그 탓일까. 대부분의 수녀들은 피부가 맑고 투명하다.

영화배우였던 윤 □ 씨와의 관계를 물어보니 그저 말뚱말뚱 쳐다만 본다. ‘동생입니까’ 하고 다시 물어보니 그저 ‘예’라고 대답한다. ‘언니와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이나 납니까’ 하고 다시 물었더니 대답이 없다. 당황스러워하는 느낌이다. 윤 □ 씨의 본명은 손 □. 6남매 중의 장녀이고 아버지는 손 □ 씨. 부산 태생으로 일본대 법학과를 나와 목장을 경영했었다. 어머니는 박 □ 씨이고 아버지와는 15년 나이 차이가 있었다.

그녀가 어릴 적에 아버지가 부산에서 광주로 이사를 했기에 본적이 광주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전남여고를 다녔다. 조선대 영문과 1학년 21세 때에 ‘청춘극장’의 여주인공으로 영화계에 나왔는데, 이때가 1967년이다. 손 수녀가 태어난 해는 1966년이다. 그녀가 영화계로 뛰어든 해는 손 수녀가 태어나고 난 다음해이다.

이때 그녀는 이미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다. 윤 □ 라는 예명은 공부 잘하던 친구의 성과 조용함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정희라는 이름을 스스로 지었다.

이후 그녀는 승승장구했고 얼마 전에는 ‘만무방’으로 대중상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했다. 그런 그녀가 두 살 연하의 백 □ 씨와 결혼한 이후인 1977년 7월 29일에 고 이 □ 화백의 처 박 □ 씨의 뒷에 걸려 유고 자그레이브에서 납치될 뻔한 일이 있

었다고 전한다. 이 사건은 96년 2월에 터진 성 [] 사건 때 성 []의 시아주버니 이 []이 5만 달러를 주고 유고 경찰을 매수해 이루어졌다고 확인되었다.

며칠전 이곳에 오기 위해 [] 수녀를 이곳에 소개한 신부님을 만났는데, 신부님 또한 개인적인 일이니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덮어줄 것을 당부하셔서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다.

“이곳에 왜 왔습니까?”

“하느님의 부름을 받았을 뿐입니다.”

간단명료하게 대답한다. [] 수녀와는 달리 이곳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곳 생활이 낙원인 줄 알면 안된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닐 수도 있다. 잘못된 기사로 인해 이곳을 이상향의 낙원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진정으로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신자라 해도 그곳에서 진정으로 하느님을 위해서 전 생애를 바칠 의사가 있는 사람만이 이곳에 와야 한다고 ‘대단한 각오가 아니라면 이곳 생활이 쉽지가 않다. 잘못해서 이곳을 오게하게끔 해서 안된다. 정확한 기사라면 몰라도 나가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 라고 말하며 [] 수녀에게 동조를 구하지만 [] 수녀는 말이 없다. 개인의 생활이, 개인적인 사유재산이 개인적인 사고보다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은 이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멀기만한 의식의 차이는 어쩔 수가 없나 보다.

이곳을 자원했을 때 가족들의 반응에 대한 질문에 [] 수녀는 ‘처음 한동안은 가족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 갈등을 겪었지만 지금은 다들 이해해 주신다며 이 또한 하느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 며 말한다. 그러나 [] 수녀의 경우는 ‘모든 가족들이 환영하고 좋아했다’ 고 말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자 어쨌든 ‘하느님의 종으로 평생 살게 되어서 기쁘다’ 고 말하며 입을 다문다.

한국사정을 잘 아는 손 수녀

원장 수녀 통해 면회 항의

[] 수녀. 다시 잘 보니 윤 [] 씨와는 별로 닮은 구석이 없어 보인다. 하얀 피부와 얼굴 윤곽이 조금 닮았을 뿐. 쌍꺼풀 없는 약간 작고 서늘한 눈매와 작은 콧방울, 얇은 입술이 조금 차가워 보이는 인상을 준다.

면회 시간이 끝나는 종소리가 울리지 않았는데 그녀는 잠시 나갔다 올 사람처럼 면회실을 나갔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 이후 이틀에 걸쳐 여러 차례 면회 신청을 했지만 그녀를 다시 만날 수가 없었다.

이곳 수도원에서 수녀들이 부르는 찬송들을 모아서 테이프와 CD로 제작되어 나온다. 이 일의 제작 혹은 판매에 백 [] 씨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 탓인지 혹은 희귀성 때문인지 객실을 담당하는 할머니 수녀님은 우리가 한국 사람인 것만으로도 필요 이상의 친절을 베푸시며 자신도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인 백 [] 씨를 여러 차례 봤다' 면서 자랑삼아 이야기 하신다.

[] 수녀를 백 [] 씨의 조카로 알고 있는 이 수녀님은 '윤 [] 씨가 옛날 유명했던 영화배우였다' 고 말하니 '그럴 줄 알았다' 한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고 물었던 '척 보면 안다' 며 '예쁘다' 고 칭찬이 입이 마른다. 그녀는 아직도 곱다. '단아한 몸매와 늘 검소한 차림에 조금은 어두운 듯한, 그러나 차분한 이미지와 품위를 지닌 50대로 그녀의 조용한 품성이 그대로 배어나오는 듯하다.' 고 말하는 이 프랑스 부인은 1남 5녀의 자식을 두었는데, 두 딸이 수녀가 되어 이 수도원에서 생활하며 하나뿐인 아들은 신부가 되었다고 한다. 나머지 딸 셋과 그녀들의 아버지와 함께 자신의 딸들을 면회온 이 부인의 가족들은 우리가 도착한 날부터 같이 이곳에 머물며 식사 시간마다 함께 하게 되었던 두 수녀의 어머니였다.

가끔 이곳에서 백 [] 씨와 그의 아내를 만났다는 이 부인은 우리보다 더욱더 그들을 잘 알고 있는 듯 이야기 했고, [] 수녀를 백 [] 씨의 사촌 여동생으로 '오해' 하고 있었다. 이 수도원이 생긴 이후 1천 4백년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한국 수녀가 2명이나 들어왔다. 당연히 이들의 출현은 이 수도원 안에서나 밖에서 화제가 될 만한 일이다. 이 봉쇄 수도원 안에서 생활하는 수녀들에게는 동양 사람을 처음 본 수녀가 많았을 것임은 물론이겠지만 [] 수녀의 경우 외모가 틀리다는 것만으로도 큰 화제였다고 말하는 것을 미루어 본다면 이곳에서 생활하는 수녀들이 가족이나 친지들의 방문 중에 이들 이야기가 화제가 되는 것은 분명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백 [] 씨를 아는 사람이라면 더욱 더 마리조제 수녀는 관심의 대상이 되고도 남을 일.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 높은 벽안 수녀들 사이에서도, 이 굳건한 침묵 밖의 세상에서도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 수도원의 특징이 있다면 이곳 수도원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곳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단지 신청서에 본인의 사인만이 필요할 뿐이다.

물론 1천 4백년만에 처음 들어온 한국 수녀의 경우 여권이 필수조건이었을 것이다. 종교인도 체류증은 신청해야만 하니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위해 평생을 바칠 만큼의 신앙심이 깊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 수녀의 침묵을 무엇으로 받아 들여야 할까. 함께 생활하는 또 다른 한국인 수녀 [] 또한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고 한다. 단지 ‘윤 [] 씨의 동생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석연찮은 느낌이지만 이 또한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며, 5년 이상을 이곳에서 함께 생활했지만 단 한번도 한국어로 그녀와 사적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는 [] 수녀는 ‘그녀에게서 어떤 비밀스러움을 느낀 후부터 그녀를 위해 자신도 오히려 그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가능한 한 범위 안에서 그녀와의 자리를 피하게 된다’고 말한다. [] 수녀의 말속에 수도자로서의 어떤 자세를 보는 듯해 마음이 숙연해진다.

[] 수녀. 윤 [] 씨의 동생이기도, 흑 백 [] 씨의 처제이기도, 조카이기도, 소문은 그녀가... 과연 그녀는 왜 이 봉쇄 수도원에 있으며 굳이 우리를 피하는 것일까. 많은 의혹을 남긴다.

손 []. 그녀 자신이 이야기하는 윤 [] 씨, 즉 손 [] 씨의 동생이라면 한때 화려했던 영화배우의 동생이기 때문에 숨겨야 하는 것일까. 수녀가 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거늘.

[] 수녀를 만나고 객실로 돌아온 둘째날 원장 수녀로부터의 전갈을 받았다.

우리가 한국의 한 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언론사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기자들이니 자신들의 이 수도원을 비방하려고 온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날 밤에 쫓겨나지 않기 위해 원장 수녀를 설득해야만 했다. 겨우 이해를 시킨 후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하고 물으니 ‘ [] 수녀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 그녀의 말속에서도 진정한 수도자의 길을 걷는 수녀다운 신앙의 깊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긴 했지만, 이 일을 당하고 나니 더욱더 과연 그녀가 진정 자신이 스스로 하느님의 부름을 받고 진정한 신앙에서의 삶을 원해서 이곳에 온 것일까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수도원 입구 사진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드디어 네 부모와 형제를 떠나 내 품에 다다랐구나. 내가 너희에게 지상에서 원했던 모든 것을 하늘에서 이루어 주겠노라.’

2심 判 決 文

사 건 : 97나14240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 1. 손 [], 예명 윤 []

2. 손

3. 박

원고들 주소 서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고, 항소인: 1. 주식회사 세계일보

서울

대표이사 황환채

2. 성

서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일

변론종결: 1997. 8. 19.

제1심 판결: 서울지방법원 1997. 2. 26. 선고 96가합31227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원고 손 에게 금 40,000,000원, 원고 손 , 같은 박 에게 각 금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6. 5. 1.부터 1997. 9. 30.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하고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5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손 에게 금 300,000,000원, 원고 손 , 박 에게 각 금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6. 5. 1.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위 '클라쎬' 지가 배포되고 광고됨으로써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된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나이와 사회적 위치, 피고 회사의 규모와 언론계에서 차지하는 위치 및 일반인들에 대한 공신력, 피고들의 사실확인보도 의지의 결여, 위 기사의 내용과 크기, 위 기사의 게재경위와 발행부수, 위 기사 게재 이후의 피고들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원고 손□에게 금 40,000,000원, 원고 손□, 박□에게 각 금 10,0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손□에게 금 30,000,000원, 원고 손□, 박□에게 각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클라쎬' 지가 배포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96. 5. 1.부터 피고들이 그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담심 판결선고일인 1997. 9. 3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 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9. 30.

재판장 판사 이 용 응

판사 이 기 택

판사 박 형 명

□

공무원의 개인적인 비위사실을 제보받아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없이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손해배상하라

부산고등법원 1997. 5. 22.자 판결 (96나11761)

대법원 1997. 9. 30.자 판결 (97다24207)

事實概要

대법원 제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은 1997년 9월 30일 김해군 주촌면 최□ 씨가 국제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소심에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보도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사유인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판단은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가 요청되는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의 확인이 용이한 사항인가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히면서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했다.

국제신문은 1995년 3월 15일자 “창고 공장 불법임대 김해군 공무원 물의” 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이 창고를 공장으로 불법임대하고 신고없이 사슴축사를 신축하여 사유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사건기사가 허위보도이고 이로 인해 심대한 명예훼손을 받았으며 1995년 3월 2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문제된 신축사슴축사는 현재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것이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불성립되자(95부산중재6) 신청인은 부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법원은 “국제신문이 제보의 진실여부에 대한 확인절차가 없었던 이상, 위 제보를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에게 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4집 pp. 333~337) 이에 원고와 피고는 모두 항소를 하였고 이 또한 기각되자 상고하였다.

한편, 이와 함께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판결에서 법원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부산지법 제10민사부 1996년 10월 15일 판결 95카합5821, 부산 고법 제3민사부 1997년 5월 22일 판결 96나11778)

2심 判 決 文

사 건 : 96나11761 정정보도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최 []

경남 김해군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국제신문

부산 []

대표이사 남정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연수

변론종결 : 1997. 5. 1.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1996. 10. 15. 선고, 95가합9634호 판결

주 문 :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5. 24.자 청구취지추가 및 원인정정서 부분 송달일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1. 원고의 항소취지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5. 30.부터 당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취지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1. 기초사실의 인정 등

다툼이 없는 바와 같 제2, 7, 12, 17, 18, 19, 21호증의 각 1, 2, 갑 제3 내지 6, 10, 11, 16호증, 갑 제9호증의 5 내지 25,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2, 15 내지 39, 갑 제23호증의 16 내지 23, 을 제 4, 5호증, 을 제6호증의 2 내지 31의 각 기재 및 영상 (이중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갑 제9호증의 14, 15, 21, 22, 23, 25, 갑 제14호증의 1, 2, 3, 5, 6, 8 내지 12, 14, 24, 33, 34, 38은 갑 제9호증의 5, 6, 10, 7, 갑 제14호증의 26, 28, 16, 17, 19, 20, 을 제6호증의 2, 3, 4, 10, 11, 14 내지 19, 22, 27, 28, 29와 차례로 같으며, 갑 제9호증의 13은 갑 제14호증의 26, 을 제6호증의 23과, 갑 제9호증의 16은 갑 제14호증의 29, 을 제6호증의 24와, 갑 제9호증의 17은 갑 제14호증의 31, 을 제6호증의 25와 갑 제9호증의 18은 갑제14호증의

32. 을제6호증의 26과, 갑 제9호증의 20은 갑 제14호증의 15, 을 제6호증의 31과, 갑 제9호증의 24는 갑 제14호증의 18, 을 제6호증의 20, 30과, 갑 제14호증의 4는 을 제6호증의 5 내지 10과, 갑 제14호증의 7은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2, 13과 차례로 같다)과 원심증인 구 [], 김 [], 김 [], 김 [], 박 [], 김 [], 장 [], 이 [], 김 [], 당심증인 이 []의 각 증언(위 김 [], 장 [], 이 [], 이 []의 각 증언 중 아래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김 [], 장 [], 이 [], 이 []의 각 일부증언은 채용하지 아니하며 반증 없다.

가. 원고의 신원 등

원고는 1988. 5. 9. 김해시 []에 전입한 이래 그 아내 및 아들 셋과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면서 그 일대 임야에 감나무 밭을 일구고 사슴을 사육하여 왔으며, 1993. 7. 27.부터 1995. 4. 29.까지 농업직렬 6급 공무원으로서 위 주촌면 부면장의 직무를 맡아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기사에 기재

(1) 피고회사는 부산, 경남 일원에서 비중있는 국제신문이라는 제호의 지방지를 일간으로 발행하는 신문사이다.

(2) 위 국제신문 1995. 3. 15.자 제28면에 별지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는데, 그 내용은 경남 김해군 [] 간부직원인 최모 씨가 그 소유 감나무 밭에 있는 창고를 공장으로 임대하면서 적법한 신고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사슴 축사를 지어 사용함에 있어 역시 적법한 신고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로 나누어진다.

(3) 이 사건 기사에서 지목된 위 최모씨는 그 성씨와 나이뿐만 아니라 신분과 직위에다 사슴을 사육하는 감나무 밭의 소유지번까지 밝혀 당시 경남 김해군 []

으로 근무한 원고를 지칭하는 것임은 그 일대 주민이나 원고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물론 이에 관심을 가지는 불특정 다수인들도 쉽게 추지할 수 있다.

다. 보도내용의 진위

(1) 원고가 1990. 9. 25. 경남 김해군 []면 []임야에 이미 건립된 축사 1동 196.62㎡를 창고로 용도변경하고자 위 면사무소에 그 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달 27. 용도변경 허가를 받고, 1994. 10. 4. 소외 진 []에게 임대하여 이 사건 기사 게재일 당시 위 창고는 위 진 []이 경영하는 []공업사 출고제품 등의 보관창고로만 사용되어 왔을 뿐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공장으로서 쓰이지 아니

하였다.

(2) 원고는 1994. 8. 6. 위 면사무소에 같은 리 [] 임야에 축사 및 퇴비사 각 1동 36㎡의 신축신고를 마친 후 같은 달 10.경 이에 착공하였다가 위 각 동을 40㎡씩으로 일부 증축하다 그 연동으로 관리사 1동 47㎡ 및 화장시 1동 4㎡를 이어 짓느라 도합 131㎡(40×2+47+4)를 축조하게 되었으며, 위 임야는 준농림 지역에 속하여 위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에 건축법 소정의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기사는 모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라. 원고의 피해

원고는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이후 위 []의 직위에서 해제되어 1995. 4. 경상남도 내무과 감사계 주관으로 신문보도 및 지역주민 여론동향에 대한 진위여부를 그 동기로 하는 조사가 2달여 벌어져 1995. 5. 30. 위 인정 기사내용과 더불어 기관장에 대한 신고나 허가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 비주거용 건물 임대를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 창고를 임대하여 영리를 취득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체면과 위신 등 그 직무내외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비위사실이 인정되지만 그간의 공적을 감안한다 하여 경고부 불문처분을 받은 이래 김해시 사적지 관리사업소 관리계장으로 옮겨 근무하게 되었다.

마. 취재의 경위

피고회사 소속기자인 소외 김 []는 1995. 2. 23.경 동료기자 등을 통하여 원고의 비위사실을 알린 위 내삼리장 소외 장 []를 만나 그로부터 직접 제보를 받고 이어 원고의 직속상관으로 위 주촌면장 소외 김 []을 다시 만나 그에게서 “고급간부인 원고가 신고를 안했겠느냐, 신고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음에도 그 진위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위 장 []의 제보만을 바탕으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신문의 경우 그 광범위한 전파성과 기사 내용에 대한 일반 독자의 높은 신뢰성에 비례하여 그릇된 오보로 피해자가 입게 될 손해 역시 지대하고 그 회복 또한 극히 어렵다 할 것이어서, 설혹 그 기사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을 다루고 있다거나 이를 게재한 의도가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진실에 반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 기사와 같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태만히 하든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내지 품위를 손상할 경우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 경력직 공무원의 법규위반이라는 개인적인 비위사실을 그 내용으로 하는 기사를 게재할 경우에는 앞서 그 원고를 작성하고, 게재될 체제와 정도를 결정, 편집한 후 공표, 발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각별히 신중하여야 할 것이되, 그 표현에 있어서도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회사는 위 인정과 같이 취재기자가 경솔히 정보제공자의 말만 주저없이 신뢰한 나머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으로 삼은 원고의 법규위반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조차마져 생략한 채 작성된 원고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별지 기재와 같이 일응 인용보도의 형식을 채용하면서도 그 전후로 피고회사가 실제 그 비위사실을 지득 확인한 양 단정적인 표현을 배치하고, 나아가 관계당국에 대한 모종의 조치를 촉발하는 뜻을 담도록 체제를 잡아 그 발행 일간지에 전반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공표한 일련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이로써 원고의 인격적 법익에 끼치게 될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면책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피고회사는 헌법상의 특권이 보장된 언론기관으로서 대중민주정치의 근간으로 올바른 언론의 창달을 도모함에 필수적인 공공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정부에 대한 제약없는 비판을 조장하게끔 보도할 자유가 있다 할 것이니, 비록 보도사실이 진실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게재함에 있어 그 허위성의 인식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단순히 그 기사의 작성, 편집, 발행에 있어 주의를 해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기사는 그 소속 취재기자가 직접 정보제공자인 위 장□□와 이어 원고의 직속상관인 위 김□□을 차례로 대면한 끝에 나름대로 신뢰를 가지게 된 그 제보내용대로 게재되었을 뿐, 그 허위성의 인식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회사가 이 사건 기사의 게재로 원고의 공무집행상의 과오가 아닌 그 개인적인 비위사실에 관한 정보를 독자에게 무분별하게 제공함으로써 그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자유롭게 토론한다거나 제약없이 비판하도록 한들 위 주장에서 내세운 공공문제와 정부에 대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언론이 형성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앞서 본 취재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허위성의 인식에 중대한 과실도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면책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책임의 범위

원고의 나이와 지위, 생활관계와 그간 원고가 입은 불이익의 성질 및 규모와 이 사건 기사의 내용 및 체제, 허위의 정도 등과의 대비, 그 게재경위와 사후 정정보도가 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수액은 금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 게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5. 5. 24.자 청구취지추가 및 원인정정서 부분 송달일일이 기록상 분명한 같은 달 30.부터 그간 피고회사가 책임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6. 10. 15.까지는 민법 소정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 및 피고회사의 항소는 각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5. 22.

재판장 판사 전 봉 진
판사 박 효 관
판사 지 영 철

기사의 표시

창고 공장 불법임대 金海군 공무원 물의【金海=金 기자】

金海군 공무원의 창고를 공장으로 임대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축사를 짓는 등 불법을 일삼아 물의를 빚고 있다.

15일 金海군과 면 리 일대 주민들에 따르면 직원인 崔모 씨가 일대 자신의 감나무 밑에 있는 60평짜리 창고를 공장으로 불법임대해 주고 있다는 것.

또 자신의 감나무 밑 산기슭에 사슴을 사육하기 위해 50~60평의 축사를 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불법으로 지어 사용하고 있는데도 金海군 등 관계당국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金海군 은 『창고를 불법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 사실은 몰랐으며 신고하지 않은 축사의 경우 농촌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大法院 判決文

사 건: 97다24207 정정보도

원 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최 []

피 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국제신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7년 5월 22일 선고 96나11761판결

변론종결: 1997. 5. 2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나이와 지위, 생활관계와 그간 원고가 입은 불이익의 성질 및 규모,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체제, 허위의 정도 등과의 대비, 그 게재경위와 사후 정정보도가 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액을 그 판시와 같은 금액으로 결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이 제1심과 사실관계를 일부 달리 인정하면서도 제1심이 인용한 위자료액과 동일한 액을 인용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원심판결에 이유 모순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당사자 쌍방이 항소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당초부터 위 원칙의 적용여부가 문제로 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증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축사는 건축법 소정의 신고대상 건축물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거나 신고대상 건축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원심판결에 기사의 허위성의 평가에 관

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인용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기자인 소외 김[]는 동료기자를 통하여 원고의 비위사실을 알린 이장 장[]를 만나 그로부터 직접 제보를 받고, 이어 원고의 직속상관인 면장 김[]을 다시 만나 그에게서 “고급간부인 원고가 신고를 안했겠느냐, 신고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음에도 그 진위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위 장[]의 제보만을 바탕으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고, 그 기사의 표현형식도 일응 인용보도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피고가 실제로 원고의 비위사실을 지득, 확인한 양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당국에 모종의 조치를 촉구하는 뜻을 담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상당한 조처로 수궁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신문에 보도된 기사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진실로 믿고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그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련한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고(대법원 1988년 10월 11일 선고 85다카29 판결, 1996년 5월 28일 선고 94다33828 판결 등 참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가 요청되는 것인가, 정보원이 믿을 만한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의 확인이 용이한 사항인가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기는 하나, 원심이 확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을 수궁할 수 있고 거기에 언론보도에 있어서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언론의 특성상 공직자의 윤리 및 비위사실에 관한 보도에 있어서는 특별히 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이를 무분별하게 무시한 경우에만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거나 상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는 등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위자료의 수액이 적정한 것임은 앞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구체적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거나 위자료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경과실에 대하여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면 손해배상액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 또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9. 30.

재판장 대법관 최 종 영
대법관 정 귀 호
주심 대법관 이 돈 회
대법관 이 임 수

□

원고가 발행하는 신문과 관련한 기사로 인해 발행인인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5. 11. 29.자 판결 (95가합3788)

서울고등법원 1996. 7. 25.자 판결 (96나5348)

대법원 1997. 10. 28.자 판결 (96다38032)

事實概要

대법원 제1부(주심 최종영 대법관)는 1997년 10월 28일 박 [] 외 김 [] 씨가 이 [] (전 주간 '크리스천 한국' 발행인) 외 2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 이 [] 이 발행했던 주간 '크리스천 한국' 은 1993년 4월 28일자 "한국교회 무엇이 문제인가 시리즈 2 교단·교권주의" 제하의 기사에서 현재 진행 중인 [] 교회의 교단·통합과정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잔류파의 문제점들이 통합의 유일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1심법원은 원고 김 [] 를 제외한 2인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2심법원은 “이 사건 기사는 오로지 잔류파와 반대의 입장에 있는 피고 김 [] 만을 취재원으로 하여 원고들의 과거 비위사실을 들추어내어 보도한 점, 원고들의 변명이나 반론을 실지 않음으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정신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원고 김 [] 에게도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1심원고 박 [] 는 동일한 기사로 인하여 피고 이 [] 이 발행인으로 있는 목양신문을 상대로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반론보도문의 게재는 원래의 보도가 있었던 정기간행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폐간된 경우에는 그 피신청인 적격을 상실하였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도 없다”며 반론보도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앞서 원고들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93서울중재105, 106)을 하였으나 불성립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判 決 文

사 건 : 95가합3788 손해배상(기)

원 고 : 1. 박 []

2. 이 []

3. 김 []

원고들 주소 서울 영등포구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형근

피 고 : 1. 이 []

서울 송파구 []

2. 이 []

서울 중랑구 []

3. 김 []

서울 용산구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부

변론종결 : 1995. 11. 15.

주 문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박 [], 원고 이 [] 에게 각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 4. 29.부터 1995. 11. 29.까지의 연 5푼의, 1995.

11. 30.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박[] , 원고 이[]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 김[]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박[] , 원고 이[]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위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김[]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3. 4.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의 송달일까지의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강제1내지, 3호증, 강제4호증의 4, 8 내지 16, 강제5호증의 4 내지 9, 13, 18, 23, 25, 26, 31, 34, 39, 42, 강제6호증의 5 내지 10, 강제7호증의 1 내지 3, 강제8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위 강제 4내지 6호증 중 믿지 아니하는 각 일부 기재는 제외)와 증인 이[] , 김[]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래 []교회는 1981년경 []교단과 []교단(이하 []교단이라 한다)으로 분열되었다가 1991년경 통합을 추진하면서 양 교단 내에 각기 통합을 주장하는 파(통합파라 한다)와 잔류를 주장하는 파(잔류파라 한다)로 나뉘게 되었는데, 통합파들은 1991. 11. 28. 통합 결의를 통하여 []교단이라는 통합교단(소위 조 []목사가 당회장으로 있는 여의도 []교회가 중심교회이다)을 만들어 잔류파와 대립하게 되었다.

나. 원고 박[]는 위 통합전의 []교단의 재단 이사장이고, 원고 이[]은 같은 교단의 목사로서 각 잔류파에 속하는 자들이며, 원고 김[]는, 1990. 2. 23. 주간지로 정기간행물등록을 한 '목양신문' (위 잔류파에 속한 신문이다)의 발행인이고, 한편 피고 이[]은 위 통합파의 중심교회인 여의도 []교회의 장로로서 주간종교지인 '크리스천 한국' 위 발행인이며, 피고 이[]는 위 주간지의 취재부 기자이고, 피고 김[]는 []교회의 목사로서 통합파에 속하는 사람이다.

다. 피고 이[]는 위 '크리스천 한국' 지의 창간 특집으로 '한국교회 무엇이 문

제인가'라는 제목하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도하여 기독교계가 스스로 자성하고 개선하여 진정한 기독교 부흥과 평신도들의 올바른 신앙을 유도한다는 편집목적하에 취재 및 편집기획안을 작성하여 위 주간지의 발행인인 피고 이 []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이 []의 각 연재기사에 대한 확인 및 보도 허락을 받고 피고 이 []는 10회에 걸친 연재 기사를 보도하였다.

라. 위와 같은 10회에 걸친 연재기사 중 1993. 4. 28.자 위 '크리스천 한국' 지 7호의 18, 19면에는 '한국교회 무엇이 문제인가 시리즈 2 교단교권주의'라는 제목 아래 [] 교단의 통합문제가 다루어졌는데, 피고 이 []는 위 통합파측 인사인 피고 김 []만을 취재원으로 하여 그와의 인터뷰와 그가 제시하는 자료만에 근거하여, '기하성 교단통합 왜 시비가 되나? 잔류파의 통합시비 실질적인 속셈은'이라는 소제목하에 양 교단의 통합만이 교계를 위한 길이라는 전제하에 위 [] 교단으로의 통합결의가 소외 조 [] 목사의 결단에 의한 것임을 추켜세우는 취지의 기사를 이어서 '조 [] 목사 잔류측 포함돼 교단통합 반대명분 내세우기 급급'이라는 소제목하에 위 잔류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위 조 [] 목사의 친동생인 소외 조 [] 목사임을 소개하면서 '조 [] 목사가 자신이 관리하는 위 목양신문에 비록 광고이지만 형과 형수 그리고 조카까지 비방하는 내용이 실린 질의서를 게재하도록 허락했다는 것은 적어도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기사를 이어서 '통합반대인물은 교권행사 중진 임원 교단재산 때문인가 의혹'이라는 소제목하에 명예와 물욕에 고개를 내미는 샛꾼 목자들이 위 양교단의 통합문제에 걸림돌이라는 취지의 기사와 위 잔류파의 대표격인 원고 박 []와 소위 조 []이 교단의 중진임원이고 위 통합파가 [] 교단으로의 통합후에 원고 박 []를 상대로 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음을 소개하면서 이어서 '바로 박목사의 합법적이지 못한 재단이사장 취임문제, 모든 회계장부에 대한 감사에 불응한 문제 그리고 개척선교자금 500,000,000원 등의 횡령사건들이 주내용으로 되어 있는 이 소송은 결국 그들의 예측대로 통과, 재단 직무대행자로 소외 김 [] 목사가 대신하게 된 것이다'라는 기사를, 이어서 '목회자가 소송시비 22건 성명서 공개질의서 마구 게재'라는 소제목하에 목회자들은 목회에만 힘을 써야 한다는 전제하에 위 통합파와 위 잔류파 사이에 소송사건이 많다는 것을 비판하면서 그 시초가 된 최초의 소송을 원고 박 []가 먼저 제기하였다고 소개하면서 위 원고의 소송사건 중 아이러니컬한 사건이 있음을 예로 들면서 '일명 부산 []교회사건인데 내용인즉 박 [] 전 재단이사장이 교회재산을 재단에서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재단간사였던 이 [] 목사를 부산 []교회에 파송시켰다. 그러나 재단간사의 명분으로

당회장을 지내오던 이목사는 교회건물을 임의로 용도변경하는 등의 문제를 빚어 교인들의 신뢰를 잃게 되었고 급기야 사례금마저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자 이목사는 교회재무 회계 및 재단이사장인 박목사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는데(1989. 8.) 박, 이목사는 같은 재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자가 처음 그 사건을 접하게 되었을 때는 그 내용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었다. 김목사(피고 김 []를 가리킨다)는 “박, 이목사는 교인상대로는 불가능한 교회의 돈을 타내기 위한 일환으로 자기끼리 짜고서 원고와 피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하나의 제스처라고 할 수 있지요”라고 말했다’ 라는 기사를, 이어서 ‘각종납치 방화사건 전말 마일스 선교자금 6억원의 행방 이 [] 전도사 캐피탈 호텔 앞에서 괴한들에게 납치,’ ‘잔류측 : 공소시효 지난 마일스 선교자금 왜 자꾸 들먹이나 통합측 : 행정서류 인계 불이행,’ ‘유치한 시비논쟁 평신도 이목도 살피야 자기 흡은 잊어 버리고, 그러다’ 라는 각 소재목하에 잔류과측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양 교단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사를 각 게재하였다(이하 위 각 기사내용을 이 사건 기사라 한다).

한편, 이 사건 기사에는 특별히 원고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해명하거나 반론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마. 피고 이 []은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실린 위 1993. 4. 28.자 ‘크리스천 한국’ 지 약 20,000부를 그 무렵 독자들에게 보급하였다.

2. 명예훼손여부에 관한 판단

민법 제764조의 명예훼손이란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양 교단의 통합을 지지하는 입장을 가진 위 ‘크리스천 한국’ 지의 취재기자인 피고 이 []와 발행인인 피고 이 []은 위 통합파의 인사인 피고 김 []만을 유일한 취재원으로 하여 교단통합을 위한 길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오히려 교단 통합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원고 박 [], 원고 이 []의 개인적인 비리를 들추어 내어, 이러한 비리가 교단 통합에 장애요소가 된다는 취지의 기사를 독자들에게 보도, 공표함으로써 목회자로서의 위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

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김 []의 이 사건 기사내용의 제보 및 피고 이 []의 취재 및 편집과 피고 이 []의 이 사건 기사의 발행 및 배포행위는 원고 박 [], 원고 이 []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 김 []는, 피고들이 위 '크리스천 한국'지에 '원고 김 []가 목양신문에 소외 조 [] 목사를 비방하는 질의서를 게재하도록 허락하였다'라는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내용 중에 어디에도 원고 김 []에 대한 기사는 없고, '목양신문에 소외 조 [] 목사를 비방하는 질의서를 게재하였다'라는 기사도 소외 조 []이 위와 같은 질의서를 위 신문에 광고형식으로 게재하도록 허락하였다는 기사로서 위 조 []에 대한 기사 일 뿐 원고 김 []나 그가 발행인으로 있는 위 목양신문에 관한 기사가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 김 [] 또는 목양신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가사 목양신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목양신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지언정 그 발행인인 원고 김 []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 박 [], 원고 이 []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피고들에게는 원고 박 [], 원고 이 []를 비방할 목적이 전혀 없었고, 오로지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발전의 계기로 삼으려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였으므로 위 보도행위가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이 사건 기사의 진실성 여부

위에서 든 강제4호증의 4, 8 내지 16, 강제5호증의 4 내지 9, 13, 18, 23, 25, 26, 31, 34, 39, 42, 강제6호증의 5 내지 10, 강제7호증의 1 내지 3,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위 강제 4내지 6호증 중 믿지 아니하는 각 일부 기재는 제외)와 증인 이 []의 일부증언에 변론에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통합전의 []교단의 재단 이사장인 원고 박 []는 그 휘하 목사인 원고 이 []를 1987. 4. 16. 위 교단 산하 부산 순복음 중앙교회 담임목사로 임명하였는데, 원고 이 []은 위 교회에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중 위 교회건물의 일부를 용도변경하려고 하다가 교인들의 반대에 부딪쳐 좌절되었고, 결국에는 위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사례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당시 위 교단의 대표자인 원고 박 []를 상대로 사례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 이 []이 교인들로부터 사례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유는 위 용도변경 문제 외에도 그가

설교한 내용이 교인들로부터 이단시비를 받아 교인들과 분쟁이 발생한 데에도 이유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기사는 위 이단설교문제를 빼버리고 오로지 위 용도변경 문제로 인하여 원고 이 []이 사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보도하였고, 뿐만 아니라 원고 이 []이 원고 박 []와 위 사례금 청구의 소를 짜고서 하는 소송이라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사실, 한편 위 교단 통합파측 목사들이 1992. 5.경 법원에 원고 박 []를 상대로 위 통합전 []재단의 대의원의 세력분포, 원고 박 []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금횡령 등을 이유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같은 해 9. 7. 법원이 원고 박 []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결정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 결정은 위 통합전의 []교단의 대의원의 세력분포가 통합파가 절대 다수라는 이유로 내려진 것으로 원고 박 []가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위 []교단의 재단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거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와 공금횡령을 하였다든 점(뒤에 모두 검찰에 의하여 무혐의 결정되었다)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사는 대의원의 세력분포에 관한 사실을 빼버리고 오로지 위 원고의 비위사실만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결정이 내려졌다는 취지로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여 판단전대,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배포한 경우라도, 적시된 기사 내용이 진실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하여는, 다소 부적절하거나 과장된 표현 및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주요부분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여야 함은 물론 부수적인 사실이라도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진실성을 갖추어야 하고, 어떤 사실에 관하여 일면만을 적시하고 다른 면을 누락함으로써 그 사실에 관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어떤 소문을 보도한 기사는 그러한 소문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그 소문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기사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할 것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에는 일부 진실한 사실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근거도 없는 사실이 철저한 확인도 없이 포함되어 있으며 어떤 사실에 관하여는 일면만을 부각시키고 다른 면을 누락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 박 [] 및 원고 이 []에 대한 이 사건 기사내용은 전체적으로 진실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판단

더 나아가 이 사건 기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

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는 오로지 위 잔류파와 반대의 입장에 있는 피고 김 []와 그가 제시하는 자료만으로 유일한 취재원으로 하여 원고 박 [] 및 원고 이 []에 대한 과거의 비위사실(위 통합파의 1991. 11. 28. 통합결의 이전의, 그것도 그 전부가 진실이라고는 할 수 없는 사실)을 들추어 내어 보도한 점, 이와 같은 기사를 보도하면서 특별히 위 원고들에게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이 통합파와 잔류파의 문제점을 균형적으로 보도한 것이 아니고 잔류파만의 문제점만을 열거하여 그것이 통합의 유일한 걸림돌이 된다는 보도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보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이유없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 박 [], 원고 이 []의 명예가 훼손됨으로 인하여 그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기사의 진실성 여부, 이 사건 기사의 보도 목적, 위 원고들과 피고들의 관계 및 사회적 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각 금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 박 [], 원고 이 []에게 각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기사의 보도일 다음날인 1993. 4. 29.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5. 11. 29.까지의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위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분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특례법 소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들이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인다) 원고 박 [], 원고 이 []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김 []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 중 원고 박 [], 원고 이 []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분하여 그 1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위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김 []와 피고들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 []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 선고를 붙임과 같이 판결한다.

1995. 11. 29.

재판장 판사 구 충 서
판사 박 범 계
판사 김 정 숙

2심 判 決 文

사 건 : 96나5348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1. 박
2. 이

원고, 항소인 : 3. 김

원고들 주소 서울 영등포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김광년, 김승진, 정광진, 한경수, 배진수

피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 1. 이

서울 송파구

2. 이

서울 중랑구

3. 김

서울 용산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부

변론종결 : 1996. 6. 27.

주 문 :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김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 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 4. 29.부터 1996. 7. 25.까지는 연 5푼, 같은 달 26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김 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박 , 이 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김 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제1, 2심 모두 3등분하여 그 1은 피고들, 나머지 2는 원고 김 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박 , 이 과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당심에서 감축하였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 4.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원고들 :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 : 제1심판결 중 원고 박 [] , 이 [] 에 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강제1, 2, 3호중, 강제4호중의 8 내지 14, 강제5호중의 7 내지 10, 13, 18, 23, 25, 26, 31, 34, 39, 42, 강제6호중의 13, 14, 강제7호중의 1, 2, 3(을제2호중은 그 일부이다), 강제8호중, 제1심증인 김 []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1호중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이 [] , 김 []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가) [] 교회 교단은 1981년경부터 [] 교단과 [] 교단 등으로 분열되었다가 1991년경 교단 통합을 추진하면서 각기 통합을 주장하는 파(이하 통합파라 한다)와 잔류를 주장하는 파(이하 잔류파라 한다)로 나뉘게 되었는데, 통합파들은 1991. 12. 28. 통합결의를 통하여 통합교단인 [] (조 [] 목사가 당회장인 여의도 [] 교회가 그 중심교회이다. 이하 통합전, 후의 [] 교단을 모두 [] 교단이라 줄인다)를 만들어 잔류파와 대립하게 된 사실, (나) 원고 박 [] 는 통합전의 [] 교단의 재단 이사장, 원고 이 [] 은 같은 교단의 목사, 원고 김 [] 는 주간 종교지인 '북양신문'의 발행인으로 각 잔류파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한편 피고 이 [] 은 통합파의 중심교회인 여의도 [] 교회의 장로서 주간 종교지인 '크리스천 한국'의 발행인, 피고 이 [] 는 위 '크리스천 한국'의 취재부 기자, 피고 김 [] 는 [] 교회의 목사로서 각 통합파에 속하는 사람들인 사실, (다) 위 '크리스천 한국'지는 창간 특집으로 '한국교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10회에 걸친 연재 기사를 보도하였는데, 위 연재기사의 하나로 1993년 4월 28일자로 발행된 위 주간지 제7호의 18, 19면 전면에 걸쳐 '한국교회 무엇이 문제인가 시리즈 2 교단·교권주의'라는 제목 아래 [] 교단의 통합문제를 다룬 기사(강제7호중의 2, 3)를 게재하였으며, 위 기사는 피고 이 [] 가 주로 피고 김 [] 로부터

취재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발행인인 피고 이 []의 검토·확인
 을 거쳐 게재되었던 사실, (라) 위 기사는 소제목이 붙은 7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부분에서 ‘[] 교단통합 왜 시비가 되나? 잔류파의 통합시비 실제적
 인 속셈은’이라는 소제목 아래 ‘교단통합을 반대하는 문제의 [] 교단은 통합을
 반대하고 헌법과 총회의 권위를 무시한 [] (전재단이사장 박 []
 목사)와 [] (총회장 조 [] 목사)등 일부 통합 반대세력의 두
 줄기로 구분된다’고 하고 교단 통합은 조 [] 목사의 비장한 결단에 의하여 마침내
 1991년 12월 18일의 통합결의가 이루어졌다고 전제하고, 이어서 (1) ‘조 [] 목사
 잔류측 포함해 교단통합 반대명분 내세우기 급급’이라는 소제목 아래 위 조 [] 목
 사의 친동생인 위 조 [] 목사가 잔류파의 대표적 인물에 포함되어 있음을 언급하면
 서 ‘조 [] 목사…… 설령 형제간에 뜻이 맞지 않았다 해도 자신이 관리하는 위 목
 양신문에 형과 형수 그리고 조카까지 비방하는 내용이 실린 질의서를 게재하도록 허
 락했다는 것은 적어도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는 내용과 (2) ‘통합반대인물은
 교권행사 중진 임원 교단재산 때문인가 의혹’이라는 소제목 아래 ‘상습 도박자는 막
 대한 돈을 잃고서도 결코 도박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다.…… 교계 곳곳에 또아리
 를 틀고 날카로운 눈으로 명예와 물욕에 고개를 내미는 샅꾼 목사들을 생각해 보았
 다.…… 제발 이번 사건이 위와 같은 교권주의자들의 놀이판이 아니기를 비는 마음
 이었다.…… 박 [] 목사가 재단이사장으로 있던 [] 총회에서는 교단통합전에
 이미 재단이사장직 해임청원서를 11번이나 문화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문화
 부에서는 그러한 권한이 없음을 통보, 교단통합이 이루어진 후 통합측의 권 [], 김
 [], 조 [] 목사는 박목사를 상대로 다시 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
 출했다고 한다. 바로 박목사의 합법적이지 못한 재단이사장 취임문제, 모든 회계장
 부에 대한 감사에 불응한 문제 그리고 개척선교자금 5억원 등의 횡령 사건들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는 이 소송은 결국 그들의 예측대로 통과, 재단 직무대행자로 소외
 김경철 목사가 대신하게 된 것이다’라는 내용과 (3) ‘목회자가 소송시비 22건 성명
 서 공개질의서 마구 게재’라는 소제목 아래 통합파와 잔류파 목회자 사이에 소송사
 건이 많다는 것을 비판하고 그 시초가 된 최초의 소송을 원고 박 []가 먼저 제기하
 였다고 소개하고 나서 ‘한편 박목사의 소송사건 중 아이러니컬한 사건이 있었다. 일
 명 부산 []교회 사건인데 내용인즉 박 [] 전 재단이사장이 교회재산을 보호한
 다는 명목 아래 재단간사였던 이 [] 목사를 순복음교회에 파송시켰다. 그러나 재단
 간사의 명분으로 당회장을 지내오던 이목사는 교회 건물을 임의로 용도 변경하는 등

의 문제를 빚어 교인들의 신뢰를 잃게 되었고 급기야 사례금마저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자 이 목사는 교회 재무 회계 및 재단이사장인 박목사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는데(1989. 8.) 박·이 목사는 같은 재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처음 그 사건을 접하게 되었을 때는 그 내용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었다. 김□□ 목사는 “박, 이 목사는 교인상대로는 불가능한 교회의 돈을 타내기 위한 일환으로 자기끼리 짜고서 원고와 피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하나의 제스처라고 할 수 있지요”라고 말했다’는 내용과 이어서 그밖에 ‘각종 납치 방화사건 전말 마일스 선교기금 6억원의 행방 이□□ 전도사 캐피탈호텔 앞에서 괴한들에게 납치,’ ‘잔류측 : 공소시효 지난 마일스 선교기금 왜 자꾸 들먹이나 통합측 : 행정서류 인계 불이행’, ‘유치한 시비논쟁 평신도 이목도 살펴야 자기 흠은 잊어 버리고, 그러다...’ 라는 각 소제목 아래 잔류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말미암아 교단 통합에 장애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 (마) 한편 위 기사에는 특별히 원고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해명하거나 반론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사실, (바) 피고 이□□은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실린 위 1993년 4월 28일자 ‘크리스천 한국’ 지 약 20,000부를 그 무렵 독자들에게 배포한 사실, (사) 피고들은 그 후 위 기사로 말미암아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1994년 11월 9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각 벌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란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 바, 앞서 본 위 1. (라) (1), (2), (3)항의 기사 내용과 그 전후의 기사내용을 종합, 고려하여 보면 교단의 통합을 지지하는 입장을 가진 위 ‘크리스천 한국’지의 취재기자인 피고 이□□와 발행인인 피고 이□□은 통합과 인사인 피고 김□□를 취재원으로 하여 교단통합을 위한 길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원고 김□□가 발행하는 목양신문이 위 1. (라)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게재하고 원고 박□□, 원고 이□□이 위 1. (라) (2),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개인적인 결함과 비리가 있어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교단 통합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는 인상을 위 기사를 읽는 독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기사를 보도, 공포함으로써 위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김 []의 기사내용 제보, 피고 이 []의 취재 및 편집과 피고 이 []의 발행 및 배포행위는 원고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로 피고들에게는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이 전혀 없었고, 오로지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발전의 계기로 삼으려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기사의 진실성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는 강제4호증의 8 내지 14, 강제5호증의 7 내지 10, 13, 18, 23, 25, 26, 31, 34, 39, 42, 강제6호증의 13, 14, 강제7호증의 1, 2, 3, 을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강제6호증의 6 내지 12, 강제9호증의 1, 2, 강제11호증의 1, 2,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7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이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 목양신문은 1993년 1월 23일자 9면에 원고 박 [] 명의로 된 '조 [] 목사에게 공개 질의합니다' 라는 제목의 광고(을제7호증)를 게재하였는데, 위 광고문에는 조 [] 목사의 부인이나 자녀를 비방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들어있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기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고 보도하였던 사실, (2) 위 교단 통합파측 목사인 소외 권 []이 1992년 5월경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원고 박 [] 등을 상대로 위 원고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통합전 [] 교단의 이사장에 취임하였고 회계장부에 대한 감사에 불응하였으며 개척선교자금 5억원 등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7가지 이유로 재단 행정총회에서 위 원고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해임결의를 하였다는 것을 원인으로 직무집행정지 등가처분신청을 하여 같은 해 9. 7. 위 법원이 원고 박 [] 등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 결정은 이유의 실시가 없이 내려진 것으로 원고 박 []가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위 [] 교단의 재단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회계장부에 대한 감사에 불응하였으며 선교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사는 위 원고가 위와 같은 비위를 실제로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는 취지로 보도한 사실, (3) 위 통합전의 [] 교단의 재단이사장인 원고 박 []는 그 휘하 목사인 원고 이 []을 1987년

4월 16일 위 교단 산하 부산 []교회 담임목사로 임명하였는데, 원고 이 []은 위 교회에 담임목사로 재직하던중 위 교회건물의 일부를 용도변경하려고 하다가 교인들의 반대에 부딪쳐 좌절되었고, 결국에는 위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사례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당 위 교단의 대표자인 원고 박 []와 위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사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 이 []이 교인들로부터 사례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유는 위 용도 변경문제 외에도 그가 설교한 내용이 교인들로부터 이단시비를 받아 교인들과 분쟁이 발생한 데에도 이유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기사는 위 이단 설교문제를 빼버리고 오로지 위 용도변경문제로 인하여 원고 이 []이 사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보도하였고, 뿐만 아니라 위 사례금 청구 소송이 원고 이 []이 원고 박 []와 짜고서 한 소송이라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사는 그와 같이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의 기사내용이 진실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하기 위하여는 기사의 주요부분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면 족하고 세부에 있어서 다소 진실과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곧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위 인정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기사내용 속에서는 부수적인 내용으로 보이는 것일지라도 직접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실들에 관하여 그 일면만을 적시하고 다른 면을 누락시킴으로써 그 사실에 관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어떤 소문을 보도한 기사는 그러한 소문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그 소문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기사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할 것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에는 일부 진실한 사실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 근거도 없는 사실이 확인없이 포함되어 있으며 어떤 사실에 관하여는 그 일면만을 부각시키고 다른 면을 누락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사내용은 전체적으로 진실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다. 더 나아가 이 사건 기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는 오로지 위 잔류파와 반대의 입장에 있는 피고 김 []와 그가 제시하는 자료만을 취재원으로 하여 원고들에 관한 과거의 비위사실(위 통합파의 1991년 12월 28일 통합결의 이전의, 그것도 그 전부가 진실이라고는 할 수 없는 사실)을 들추어 내어 보도한 점, 이와 같은 기사를 보도하면서 원고들의 해명이나 반론을 실지 않은 점,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이 통합파와 잔류파의 문제점을 균형있게 보도한 것이 아니고 잔류파만의 문제점만을 열거하여

그것이 통합의 유일한 걸림돌이 된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을제3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그러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들이 위와 같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공동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들이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는 바, 앞서 적시한 이 사건 기사와 크기와, 보도 목적과 게재 경위, 위 주간지의 성격과 발행부수, 원고들과 피고들의 관계 및 사회적 지위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각 금 5,0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0원씩 및 이에 대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기사의 보도일 다음날인 1993년 4월 29일 부터 피고들이 그 각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고 박 [] , 이 [] 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1995년 11월 29일까지, 원고 김청수에 대하여는 당심판결 선고일은 1996년 7월 25일까지 각 민법소정의 연 5푼, 각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할 위 인용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김 []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피고들에게 위 인용금원의 연대지급을 명하고, 원고 김 [] 의 나머지 패소부분 및 원고 박 [] , 이 [] 의 패소부분과 피고들의 패소부분은 모두 당원과 그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김 [] 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박 [] , 이 [] 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7. 25.

재판장 판사 김 상 기
판사 강 재 철
판사 양 호 승

大法院 判決文

사 건: 96다38032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김 []

서울 영등포구 []

소송대리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김광년, 김승진, 정광진, 한경수, 배진수

피고, 상고인: 1. 이 []

서울 송파구 []

2. 이 []

서울 중랑구 []

3. 김 []

서울 용산구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부

변론종결: 서울고등법원 1996. 7. 25. 선고 96나53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명예훼손이란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크리스천 한국'의 기사 내용과 그 전후의 기사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 교단과 [] 교단의 통합을 지지하는 입장을 가진 위 '크리스천 한국'지의 취재기자인 피고 이 []와 발행인인 피고 이 []은 피고 김 []를 취재원으로 하여 원고가 발행하는 목양신문이 판시와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게재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공표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김 []의 기사내용 제보, 피고 이 []의 취재 및 편집과 피고 이 []의 발행 및 배포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0. 28.

재판장 대법관 이 임 수
주심 대법관 최 중 영
대법관 이 돈 희
대법관 서 성



남북교류를 촉구하는 원고의 편지를
'김일성 애도서신' 으로 왜곡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97. 11. 6.자 판결 (96가합2272)

事實概要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은 1997년 11월 6일 전 강원도 의회 의원인 정 [] 씨가 강원일보사와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일성 조문문제와 관련한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원고의 신분이 도의원 으로 도의원 선거를 두달여 앞둔 시점에서, 이 사건 편지의 취지와 원고 등에 대한 검찰의 내사사건을 보고함에 있어 원고의 명예를 해하거나 입후보로 도의원 선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 쉽게 예견되므로 그 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편지를 김일성 애도편지라고 부적절하게 표현하였고, 허위 사실을 보도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고 선거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강원일보는 1995년 4월에서 9월에 걸쳐 원고가 김일성 애도서신을 보냈고 이와 관련하여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모두 16회에 걸쳐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김정일에게 남북간 교류성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과 관련하여 강원일보가 ‘김일성 사망 애도편지’를 보낸 것으로 왜곡보도하였고 통일원이 이에 대하여 경고결정을 하고 검·경찰이 국가보안법 저촉여부를 내사 중이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에 낙선하게 되었다는 이유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원고는 이와 관련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강원일보가 속보와 해설 기사를 통해 원고의 무혐의처분 사실과 이유를 상세히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判 決 文

사 건: 96가합2272 손해배상(기)

원 고: 정 [] (鄭 [])

강릉시 연곡면 []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헌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은호

피 고: 1. 주식회사 강원일보(江原日報)

춘천시 중앙로 1가 53

대표이사 조남진

2. 이 [] (李 [])

춘천시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

변론종결: 1997. 9. 25.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9. 6부터 1997. 11. 6.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9.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강원일보(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사회부 기자인 피고 이 []와 피고 회사의 편집국장 및 편집회의 참석자들(이하 피고 이 [] 등이라고 한다)은 1995. 4. 9.부터 같은 해 9. 6.까지 15회에 걸쳐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강원일보에 원고가 '김정일에게 남북간 교류 성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 (이하 이 사건 편지라고 한다)를 보낸 것에 관하여 '김일성 사망 애도 편지' 를 보낸 것으로 왜곡 보도하였으며, 통일원이 이에 대하여 경고 결정을 하고 검찰과 경찰이 국가 보안법 저촉여부를 내사 중이라는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여 원고로 하여금 도의원 선거에 낙선하게 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이 []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이 [] 등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자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당시 원고는 강원도 의회 의원으로서 공인이었고, 피고 회사는 언론사로서 독자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어 이를 사실에 충실하게 보도한 것일 뿐 원고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원고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이에 대하여 상세히 해설을 덧붙여 보도하였고, 더욱이 피고들의 위와 같은 보도와 원고의 도의원 선거 낙선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룬다.

2.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18,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9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2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편지의 작성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원고와 소외 정 [], 김 [], 이 [], 이 [](이하 위 위원들이라고 한다.)는

1991. 6. 20. 강원도 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정활동을 하면서 남북 강원도 교류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가칭 남북교류추진위원회(이하 위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한 후 1994. 11. 17. 통일원으로부터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받았다.

(2) 위 위원들은 당시 강원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는 중국 길림성 정부 공무원들의 협력을 받으면 대북 접촉이 용이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1995. 1. 17.부터 같은 달 22.까지 중국 장춘 및 북경을 1차로 방문하여 중국 공무원들의 협력을 받아 심양 주재 북한 영사관, 북경 주재 북한 대사관 등에 수차례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북경 주재 북한 대사관 김 [] 영사부장 등과 전화통화만 하였을 뿐 직접적인 접촉은 하지 못하고, 다만 북경 소재 평양냉면집 경리에게 남북강원도 교류 사업에 대한 제안 문건을 위 김 []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사후에 위 문건이 전달되었을 뿐 별 다른 성과 없이 귀국하였다.

(3) 원고는 위 정 [], 김 []과 함께(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 같은 해 3. 16.부터 같은 달 21.까지 재차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방문 전 위 위원회의 간사였던 원고는 이 사건 편지 초안을 작성한 후 위 위원회의 위원장인 위 정 [], 부위원장인 위 김 []에게 이를 보여 주면서 김정일의 지시 없이는 남북강원도 교류사업이 성공할 수 없을 것이고 또 1차 중국 방문시에 북한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접촉에 실패하였으므로 김정일에게 보내는 서신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 북한측이 적극적으로 접촉해 줄 것이니 이와 같은 서신을 준비해 가자고 제안하여 위 양인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편지 초안에 아무런 수정 없이 각자 서명하였다.

(4) 원고 등은 1995. 3. 20. 중국 북경에서 북한측 관계자인 위 김 [] 등을 만난 자리에서 남북강원도 교류문제를 논의하면서 위 김 []에게 이 사건 편지를 전달하였다.

나. 이 사건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된 내용은 북강원 인민위원회와 강원도 의회간의 자매 결연을 비롯하여 상호 의원세미나 개최, 특산물 교환, 문화·체육행사 교류, 학생 수학여행단 교류, 남북 청소년 야영대회 개최 등 남북강원도 교류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김정일이 적극 협조하여 달라는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편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귀하 안녕하십니까. 김일성 주석께서 서거 이후 애통한 마음으로 나날을 보내셨을 총사령관께 삼가 위로와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인사말로 시작되고, 원고의 반독재 투쟁경력을 소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편지 및 위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통일원의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통일원은 1995. 3. 25. 원고 등으로부터 북한측 접촉 결과를 보고 받고 위 편지의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같은 달 29. 위 위원회 대표인 위 정로부터 경위서를 제출 받는 한편, 교류 취소 통고문을 북한에 발송하려 하였으나 정부에서 교류를 방해한다는 역선전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어 이를 보류시켰다.

(2) 춘천지방검찰청은 위와 같은 위 추진위원회의 활동 및 이 사건 편지와 관련하여 강원지방검찰청에 남북교류 추진의 주도자인 원고에 대하여 추진 배경, 성향 등을 내사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한 후 1995. 4. 7. 위 추진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이 사건 편지 내용 등을 담은 정보보고서를 작성하였다.

(3) 이어 강원지방검찰청은 1995. 4. 12.부터 4. 24.까지 원고 등을 상대로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한 후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해 5. 3. 춘천지방검찰청으로 내사 기록을 송치하였으며, 검찰은 같은 해 5. 24.부터 같은 해 9. 6.까지 원고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같은 달 25. 무혐의로 내사 종결 처리하였다.

라.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피고 회사의 각 내용 및 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 이 []는 1995. 4. 8. 위 정보보고서를 입수한 뒤 춘천지방검찰청 및 강원지방검찰청에서 원고 등에 대하여 내사 중인 사실을 확인한 후 1995. 4. 9.자 강원일보의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 회사의 편집국장 및 각 부서의 데스크들이 참석한 편집회의에서 강원일보에 이를 게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목 : “북접촉 도의원 3명 내사”, ② 부제목 : “검·경 김정일에 「김일성 사망 애도」 편지”, “통일원 경위서 요구에 교류위한 순수의도 답변”, ③ 기사 내용 : “도의회 정 [], 김 [], 정 [] 의원 등 도의원 3명이 당국의 승인하에 남북교류를 추진하면서 임의로 김정일에게 김일성 사망을 애도하며 교류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긴 서신을 보낸 데 대해 검·경찰이 국가보안법 저촉여부를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중략) 교류사업을 추진하면서 김정일에게 전해 달라고 보낸 서신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이란 호칭과 김일성 사망을 애도 위로하는 내용을 담아 전달했다는 것.(중략) 한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귀하」로 보낸 이 서신에는 「김일성 주석께서 서거 이후 애통한 마음으로 나날을 보내셨을 총사령관께 삼가 위로와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란 내용이 실려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편지의 작성 경위, 통일원의 경위서 요구 및 제출된 경위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피고 이 []는 원고의 고소로 수사기관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기사 내용은 검찰의 1995. 4. 7.자 정보보고서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 사건 편지의 인사말 속에는 김일성의 죽음을 애도하는 내용의 뜻을 담았다는 생각에서 김일성 사망 애도 편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그 정보보고서의 내용 등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편지에 대하여도 내사를 할 것이고 정부에서 금지한 김일성 사망 애도 내용이 담긴 서신에 대한 내사라면 당연히 국가보안법 저촉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고 보아 위와 같은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 이 [] 등은 1995. 4. 11.자 강원일보에 “김일성 사망 애도 편지 도의원 3명 통일원 경고 검토”라는 제하에 통일원은 원고 등이 이 사건 편지를 보낸 것은 당초의 승인 사항을 명백히 벗어난 행위로서 당초 접촉승인을 취소할 방침이었으나 이들 의원들에게 경고조치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같은 달 12.자 강원일보에 원고 등이 경찰에 자진 출두하여 조사 받은 사실과 원고 등이 경찰에서 한 진술 내용과 함께 통일원이 같은 달 11. 원고 등에게 경고조치하기로 결정하고 금명간 경고 공문을 보내기로 하였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통일원은 원고 등이 이 사건 편지를 보낸 것은 당초 북한주민 접촉 승인 사항을 명백히 벗어난 것이라는 논평을 하였으나, 원고 등에 대한 경고를 검토하거나 결정한 적이 없었다(피고 이 []는 수사기관에서 경고 검토 사실은 자신이 직접 통일원 교류2과 소속 성명불상의 서기관으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확인하였고, 경고 결정 사실은 피고 회사 소속인 소외 문 [] 기자가 통일원 교류2과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 후 내용을 알려 주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1995. 4. 28.자 강원일보에는 “김일성 애도 도의원 3명 보강수사 계속”이란 제하에 도경찰청은 27. 원고 등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여부에 대한 보강수사를 계속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으나, 그날 경찰은 원고 등을 소환 조사한 사실이 없었다(피고 이 []는 수사기관에서 보강수사를 계속하였다는 것은 원고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위와 같이 표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1995. 9. 6.자 강원일보에는 소외 최 []이 작성한 검찰이 남북접촉 승인 과정에서의 승인절차, 북측과의 접촉과정 및 방법, 서신작성경위, 서신에 반정부투쟁을 담은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한 기사가 게재되었으나, 당시 검찰은 원고 등을 상대로 북측과의 접촉방법과 경위만을 조사하였다(위 최 []은 수사기관

에서 당시 담당 검사에게 기사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대로 썼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 이 [] 등은 강원일보에 모두 16회에 걸쳐 “김일성 사망 애도 편지”라는 제목 또는 부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여 이 사건 편지와 관련된 기사를 김일성 사망 애도 편지 관련 기사로 특정하였다.

마. 이 사건 편지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당시의 사회 상황 등은 다음과 같다.

(1) 강원일보의 1995. 4. 8.자 보도가 있기 이전에 피고 회사는 1995. 1.부터 강원일보를 통하여 남북교류추진위원회의 대북교류 내용을 5차례 정도 보도한 바 있고, 1995. 봄경 북한의 김일성이 사망하여 조문 문제가 사회 일각에서 관심의 대상이 된 바 있다.

(2) 피고 회사가 강원일보에 1995. 4. 8. 최초로 이 사건 편지에 관한 기사를 보도한 다음날부터 2일간 양대 텔레비전에서 이를 보도하였고, 7개의 중앙 일간지가 ‘강원도의원 김일성 애도편지’라는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

(3) 위와 같은 보도들이 계속 되는 가운데, 이북 5도민 연합회는 같은 달 17. 규탄 성명을 발표하였고, 이어 같은 달 18. 열린 정기 총회에서는 위 성명서를 낭독하고 원고 등을 규탄하였다.

(4) 한편, 원고는 1995. 6. 27. 실시된 강원도의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3,927표를 얻었으나 1위보다 742표가 적어 낙선하였는데, 1991. 6. 20. 실시된 그 이전의 선거에서는 4,708표를 얻어 2위보다 704표가 더 많아 당선된 바 있다.

(5) 피고 회사는 원고 등에 대한 위 사건이 같은 해 9. 25. 위와 같이 무혐의로 내사종결 되자 같은 달 29.자 강원일보에 검찰은 이 사건 편지가 남북교류추진을 위한 대북접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문제된 부분은 의례적인 인사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한 사실 및 그 이유를 6단에 걸쳐 속보 및 해설 기사의 형태로 상세히 게재하였다.

바. 애도와 위로의 사전적 의미

(1) 위로 : ① 수고함을 어루만져서 치사함, ② 괴로움을 잊게 하고 즐겁게 함(신한 출판사, 신한 새국어 사전), ① 어루만져 괴로움을 잊게 함, ② 마음을 즐겁게 하고 수고를 치사함(약진문화사 표준 국어 대사전),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 주거나 슬픔을 달래 주는 것(금성출판사, 금성판 국어 대사전)

(2) 애도 : 사람의 죽음을 슬퍼함(위 각 사전)

3.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이 [] 등은 피고 회사의 신문기사 작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편지가 사실은 김일성 사망을 애도하기 위한 편지가 아니라 강원남북교류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김정일에게 서신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김정일에게 남북교류 성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편지라는 점과 이 사건 편지 서두에 기재된 위로라는 용어와 애도라는 용어가 사전적 의미에서도 매우 다른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보도인 1995. 4. 8.자 보도에서 이 사건 편지를 “김일성 애도 편지”라고 표현한 이후 모두 16회에 걸쳐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편지의 전체적인 취지가 마치 김일성 사망을 애도하기 위한 편지인 것처럼 왜곡되어 전달하게 하였으며, 같은 달 11. 및 같은 달 12.에는 통일원 관계자의 비공식적 말이나 동료 기자의 말만 믿고 사실과 달리 통일원이 원고 등에게 경고 조치하기로 검토 내지 결정하였다고 보도하였고, 그 후 같은 달 24.경 경찰에서의 내사가 사실상 종결되어 더 이상 수사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8.에 경찰이 원고 등을 조사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고, 같은 해 9. 6.에는 검찰이 원고 등과 북한측과의 접촉방법 및 경위만을 조사하였음에도 이 사건 편지 내용에 관하여 집중 조사한 것처럼 보도하였다.

(2) 그리고, 김일성 조문 문제와 관련된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원고의 신분이 도의원이며 또한 도의원 선거를 두달여 앞둔 시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편지의 취지와 원고 등에 대한 검찰이나 경찰의 내사 사건 내용을 신문보도함에 있어 그 보도 내용에 따라서는 원고의 명예를 크게 해하거나 원고가 입후보한 도의원 선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 쉽게 예견되므로 더욱더 신중히 사실을 확인한 후 적절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 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이 [] 등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편지를 김일성 애도편지라고 부적절하게 표현하였고, 나아가 허위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고 또한 원고가 입후보한 1995. 6. 27.자 강원도의회의원 선거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이 사건 편지와 관련된 사안이 당시 강원도의회의원으로서 공인과 관련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의 필요성이 크고, 피고 회사는 일간 신문사로서 위 사건 내용을 신속히 보도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으며,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 이 [] 및 소외 최 [] 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사실을 확인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편지를 김일성 애도 편지라고 표현한 점, 통일원 관계자의 비공식적 말이나 동료기자의

말만 믿고 기사를 작성한 점, 사실과 달리 보강수사를 계속하였다고 보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이 [] 등이 신문기사의 의미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이 [] 등의 위와 같은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국,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이 [] 등의 위와 같은 신문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이 []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이 [] 등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 및 피고들의 사회적 위치, 피고들의 과실 정도,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무혐의 처분 결과에 대한 피고들의 사후 보도, 기타의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금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편지에 관한 피고 회사의 보도일인 1995. 9. 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7. 11. 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재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는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위 특례법 소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그 의무의 준부 및 범위에 관하여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 중에는 위 특례법 소정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1. 6.

재판장 판사 주 기 동
 판사 남 기 주
 판사 정 선 오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7. 8. 7.자 판결 (97가합8022)
서울고등법원 1998. 1. 13.자 판결 (97나43156)

事實概要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용웅 부장판사)는 1998년 1월 13일 성 씨 등 4인이 문화방송과 '시사매거진 2580' 기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피고는 2백만~6백만원씩 모두 1천6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인용하면서 양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TV 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피고들은 신세대 대학생들의 생기발랄하고 재미있고, 즐겁게 노는 신입생 환영회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방송하겠다는 조건으로 성씨 등의 취재 동의를 받았으나, 신입생 환영회 음주장면과 2차 장소인 나이트클럽 화장실에서의 대화장면 등을 허락없이 촬영 1997년 3월 16일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에서 "공포의 통과의례"라는 제목으로 방영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위 방송으로 인하여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및 초상권이 침해되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위와 같이 판결했다. 그러자 양당사자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1심 判 決 文

사 건: 97가합8022 손해배상(기)

원 고: 1. 성 []
서울 용산구 []

2. 송 []
서울 동대문구 []

3. 김 []
인천 연수구 []

4. 채 []
서울 영등포구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 고: 1.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이득렬

2. 정 []

3. 이 []

피고 2., 3.의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문화방송내 보도제작국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최재경

변론종결: 1997. 7. 10.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성 []에게 금 6,000,000원, 원고 송 []에게 금 2,000,000원, 원고 김 [], 채 []에게 각 금 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7. 3. 16.부터 1997. 8. 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7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3. 1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당원의 검증 결과, 증인 박□의 증언과 증인 차□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차현주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성□, 송□은 □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이하 □대 성악과라고 한다) 3학년에, 원고 김□, 채□은 같은 과 1학년에 각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방송사라고 한다)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등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방송사이며 피고 정□, 이□는 피고 방송사의 피용자 및 피고 방송사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시사매거진 2580'의 담당기자로 아래와 같은 이 사건 기사를 취재, 촬영, 편집, 보도하였다.

나. 피고 방송사의 보조프로듀서인 소외 이□은 1997. 3. 6. 원고 송□의 소개로 전화를 하는 것이라면서 □대 성악과 학회장인 소외 박□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을 소개한 다음 피고 방송사에서는 과거의 사발식이나 신고식 등 좋지 못한 인식이 남아 있는 신입생 환영회의 모습이 아닌 신세대의 생기발랄하고, 재미있고, 단합된 모습의 신입생 환영회를 취재하고자 하는데 성악과의 신입생 환영회를 그러한 모습으로 취재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신입생 환영회 일정을 문의하기에 위 박□은 다음날 오후 6시에 음악대학 내 오페라 연습실에서 신입생 소개식과 간단한 레크레이션이 있고 오후 7시경 문화회관에서 식사를 한 다음 오후 8시경 하이클레스 나이트 클럽에 갈 예정이라고 □대 성악과 신입생 환영회의 일정을 이야기하고 그 신입생 환영회 장면을 촬영후 방송하려는 프로그램의 이름을 묻자, 위 이□은 '시사매거진 2580'이라고 이야기를 하여 위 박□은 □대 성악과 교수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취재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다. 그 후 위 박□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자 다음날 15:00경 피고 정□에게 전화를 하여 같은 날 저녁 6시경부터 진행될 □대 성악과의 신입생 환영회 일정 중 음악대학 내 오페라 연습실에서 있을 예정인 신입생 소개식과 그곳에서의 간단한 레크레이션 행사만을 취재하도록 협력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 정□은 위 박□에게 같은 날 18:00경 □대 음악대학 건물앞으로 피고 방송사 취재팀이 가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같은 날 18:30경까지도 피고 정□ 등의 취재팀이 위 장소에 오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위 박□은 □대 성악과 신입생 환영회를 진행하여 신입생 소개식과 간단한 레크레이션을 마친 다음 □대 성악과 학생들을 이끌고 신촌문화회관으로 이동하였는데 그곳에는 이미 취재팀이 먼저 도착하여 있었다.

라. 그런데 피고 정 []은 위 박 []과 약속하였던 내용과는 다르게 위 박 [] 및 성악과 학생들에게 식당에서 식사장면과 여흥장면을 촬영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여 위 박 []은 식당에서의 촬영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피고 정 [] 등의 취재진이 계속하여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게 하겠으며 부정적인 내용은 방송하지 않을테니 자신을 믿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명함까지 건네 주므로, 위 박 []과 원고들을 포함한 나머지 []대 성악과 학생들은 위 취재팀의 제의사항을 믿고서 위 취재진의 제의에 동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위 취재팀의 취재에 응하면서 원고들을 포함한 []대 성악과 학생들은 다시한번 위 취재팀으로부터 취재장소는 식당으로 국한하고 술을 마시는 장면 등은 촬영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으며,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 피고 정 []은 성악과 학생들에게 합창과 장기자랑, 건배하는 장면의 연출을 요구하였고 또 촬영을 담당한 피고 이 []는 성악과의 대표곡인 '젊었다'의 합창장면과 오페라 연습실에서 이미 한 바 있는 몇가지 레크레이션 내용을 재연출한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

마. 한편 피고 방송사는 1997. 3. 16. 21:40부터 방송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에서 '공포의 통과의례'라는 제목하에 별지기재와 같은 내용의 방영을 하였다.

바. 원고 성 []은 서울 강남구 [], 용산구 [], 과천시 []에 아르바이트 솔리스트(solist) 일을 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내용의 방송후에 위 교회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으며 학교 교수 및 동료 학생들로부터 학교 망신을 시키고 다닌다는 핀잔을 들었고, 원고 송 []은 과천시 []에서 솔리스트로 봉사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방송을 주선하였다는 이유로 부모님 및 성가대원들에게 심한 꾸중을 들었으며, 원고 김 []는 인천 []에서 솔리스트로 봉사하고 있었고 원고 채 []은 서울 []에서 솔리스트로 봉사하고 있었는데 위 방송후 동료 성가대원 및 학교 동료, 교수들로부터 위 원고들과 같은 내용의 비난을 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T.V 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

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초상권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우리나라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이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민법 제750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초상권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초상권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초상권의 한 내용인 위 공표거절권과 관련하여 보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둘이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에 자신들이 위 문화회관에서 한 여흥장면 및 식사장면이 방송되는 것을 승낙하기는 하였으나 신세대 대학생들의 생기발랄하고 재미있고, 즐겁게 노는 신입생 환영회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방송하겠다는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것이고 피고 정 []도 이를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정 []은 원고들을 취재한 장면을 방송함에 있어 신입생 환영회와 관련하여 숨졌다는 모대학의 소위 백 [] 군의 사망사실과 [] 대학교 경영학과 학생들의 막걸리 사발식 장면, 현란한 나이트클럽의 무대장면, 술에 취한 학생들이 길바닥에 쓰러지거나 여관으로 업혀가는 장면, 주로 유흥가 밀집장면, 지방대학 학생들의 철야음주형태, 그리고 신입생 환영회때 숨진 소외 장 []과 관련된 고소장 등을 위 취재장면과 편집하여 ‘공포의 통과의례’라는 제목으로 방송함으로써 이를 시청한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원고들을 포함한 [] 성악과 학생들이 마치 퇴폐적인 유흥에 물든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였으며, 피고 이 []는 원고 채 [], 성 [], 김 []의 위 나이트클럽 화장실에서의 대화 장면을 그들의 동의없이 촬영하고 피고 정 []이 그들의 모습 및 음성을 그대로 방송

함으로써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한 원고들의 주위사람들이 쉽게 원고들을 알아볼 수 있게 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정□□, 이□□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방송사는 그 사용자로서 원고들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및 초상권이 위와 같이 침해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의 나이, 신분, 원고들이 방송된 경위와 방송내용 및 방송시간, 방송 후의 결과 등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위자료액은 원고 성□□은 금 6,000,000원, 원고 김□□, 채□□은 금 4,000,000원, 원고 송□□은 금 2,000,000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성□□에게 금 6,000,000원, 원고 송□□에게 금 2,000,000원, 원고 김□□, 채□□에게 각 금 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의 종료일인 1997. 3. 1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7. 8. 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분의 각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없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8. 7.

재판장 판사 박 태 범
판사 박 정 수
판사 김 선 일

보도내용

공포의 통과의례

정□□ 기자 : 요즘 대학마다 신입생 환영회가 한창입니다.

이른바 새내기들에 대한 신고식도 빠지지 않습니다.

신고식은 다름아닌 술자리입니다.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냉면그릇에 술을 마시는 사발식이 거행되기도 합

니다.

술을 처음 접하는 신입생들에게는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주량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선배들이 따라주는 술을 마시다 보면 어치구니 없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학교

지난 3월 6일

(한손에는 우산을 들고 다른 한손에는 영정을 들고서 우는 여자의 모습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학생들을 비추면서)

여자 : “왜 아무도 모르는 것이야.”

정□□ 기자 : 한손에는 우산을, 한손에는 아들의 영정을 든 어머니가 대학교 교정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학생마다 아들이 어디갔냐며 울부짖습니다.

故 백□□ 군(신입생) 어머니

여자 : “왜, 학생들이 우리 아들 죽은 줄 모르고 있는 것이야.”

“우리아들, 우리아들”

“왜 학생들이 우리아들 죽은 줄 모르고 있는 것이야.”

“우리아들 여기와서 하루동안 공부하다 죽었는데 통틀어서 술먹고 이러다 죽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이야.”

(지나가는 학생들의 모습과 이어 어느 식당내부를 비추며)

정□□ 기자 : 지난달 26일 수강신청을 하러 나간 백□□ 군은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막걸리병과 노래방 내부를 비추며)

정□□ 기자 : 선배들과 2시간 이상 술자리를 함께 한 후 노래방을 찾았습니다.

(노래방 건물옥상에 있는 전기 배전판을 비추면서)

정□□ 기자 : 일행이 노래를 부르는 사이 □□□ 군은 술을 깨기 위해 건물 옥상으로 올라 갔습니다. □□□ 군은 이곳에서 고압선에 감전되어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숨진 백군의 선배

당시 신입생 환영회 동석

정□□ 기자 : “어느 정도 마셨어요?”

“그때 소주하고 막걸리 같이 마셨나?”

학생 : “소주를 마셨거든요.”

정 [] 기자 : “주료”

학생 : “소주만 마셨어요.”

학생 : “1병 정도 마신 것 같아요.”

(3명의 학생들 모습)

정 [] 기자 : “선배들이 권하고 이라면 사실 거부하기 힘든 좌석들 아니에요.”

학생 : “그렇죠.”

정 [] 기자 : “선배들이 좀 권하는 것도 있었고.”

숨진 백군의 선배

당시 신입생 환영회 동석

(3명의 학생들 모습)

학생 : “우리가 뭐 큰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런건 아니다.”

“못챙겨줘서 사고지 진짜 사람이, 사람 일이란 모른 거니까 진짜, 딱, 그 정도예요. 진짜”

“미안하기도 미안하죠.”

(강의실에서 영정을 보며 울고있는 백 [] 군의 어머니 모습)

정 [] 기자 : 그토록 소원했던 대학학부, 그 문턱을 밟기도 전에 숨진 백 [] 군 어머니는 단 하루라도 [] 이에게 대학강의를 들려주어야 했다며 빈 강의실에 앉아 있습니다.

여자 : “대학은 왜가 왜, 이렇게 와보고 싶어 했는데 강의실에 앉아 공부, 엄마가 매일 시켜줄게 [] 아.

에그 배신자야...”

([] 문화식당에서 [] 대학교 성악과 학생들이 식탁에 쪽 둘러앉아 손뼉을 치며 ‘젊었다’ 는 노래를 합창하는 모습)

정 [] 기자 : 한 신입생 환영회입니다.

100여 명의 신입생과 선배들,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선배의 제의에 따라 모두들 한잔씩 비웁니다.

([] 대학교 응원구호 [] 를 외치고 다 함께 건배하는 모습, 성악과 2학년 여학생이 노래하고 다른 학생들은 손뼉치며 호응하는 모습을 내보내며)

(원고 김 [], 원고 송 []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원고 성 [] 을 차례로 비춘 뒤, 이어 소주병을 식탁에 돌리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정 [] 기자 :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고, 소주병은 박스채로 계속 나옵니다.

(식당의 다른 모임의 학생들이 손뼉을 치며 환호하는 모습)

정□ 기자 : 같은 식당 뒷좌석에는 고등학교 동문 환영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학생 : “대학생이, 잠깐만요.”

(카메라를 의식한 듯, 카메라를 쳐다보며)

학생 “대학생 퇴폐문화, 그런거 아니죠?”

학생 : “아니랍니다. 건배!”

(중략)

(문화회관 식당앞에 서 있는 □대학교 성악과 학생들을 비추면서)

정□ 기자 : 밖으로 나선 신입생들, 상당히 취기가 오른 상태입니다.

정□ 기자 : “오늘 술은 한 어느 정도 하셨어요?”

학생(한□) : “밥 그릇으로요, 한, 두잔 정도 마신 것 같습니다.”

정□ 기자 : “밥 그릇으로?”

학생(한□) : “예, 지금 처음 마셔보는 겁니다.”

정□ 기자 : “오늘 처음 마셔보는 거예요?”

학생(한□) : “예”

(□대학교 학생들이 식당에 모여 신입생 환영회를 갖는 모습)

(막걸리를 통에 따르는 모습과 통에 든 막걸리를 냉면그릇으로 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 기자 : 아직도 사발식이 남아있는 서울 한 대학. 선배들의 시범으로 시작됩니다.

(시범을 보이는 4명의 학생이 냉면그릇에 든 막걸리를 마시고 나머지 학생들은 구호를 외치는 장면)

학생들 : “마시자”, “마시자”, “마시자”, “마시자”

정□ 기자 : 막걸리 찬가는 우렁차지만 내심 긴장된 표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학생 : “이때 주의점이”, “예, 아시죠”, “천천히, 꼬박꼬박 잘 드십시오.”

정□ 기자 : 먼저 자축인사

여학생 : “안녕하십니까!”, “민족□!”

(여러명의 학생들이 냉면그릇으로 막걸리를 마시는 모습)

정□ 기자 : 드디어 사발식, 입맛을 다시면서 마시는 학생, 절반을 흘려 버리는 여학생, 고통의 표정이 역력한 신입생, 어쩔뎀 한그릇을 다 비워야만 합니다.

(사발로 막걸리를 마신 학생들이 쓰레기통에 술을 토해내는 모습)

정 [] 기자 : 마시고 나면 곧바로 토해냅니다.

(중략)

조 []

[] 대 경영 3년 반대표

학생(조 []) : “삐뚤어진 고등학교 교육, 중학교 교육 그리고 잘못된 사회구조를 가득 가슴속에 안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어떤 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것을 먹고 그리고 선배들과 하나되는 자리에서 다 토해내는거죠.”

(정 [] 기자, 유흥가가 밀접해 있는 신촌의 한 도로에 서서)

정 [] 기자 : 과별로, 동문회별로, 서클은 서클대로, 3월 한달은 연일 신입생들을 위한 술자리가 넘쳐납니다. 밤 10시반, 이미 거나하게 취한 신입생들과 재학생들, 2차 3차를 향해 나섭니다.

(뒷골목 어둡침침한 조그만 식당에서 학생들이 술을 마시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정 [] 기자 : 사발식을 끝낸 신입생 환영회, 이른바 뒤풀이가 이어집니다. 대학생들만의 특권인 듯 가히 열광의 도가니입니다.

(현란한 조명이 돌아가는 ‘하이클레스’ 나이트클럽의 무대에서 많은 학생들은 춤을 추는 모습을 비추며)

정 [] 기자 : 나이트클럽도 신입생 환영회의 중요 장소입니다. 무대를 가득 채운 수백명의 학생들, 격렬한 춤이 계속됩니다.

(나이트클럽의 화장실에 있는 원고 송 [], 채 [], 김 [], 성 []을 차례로 비추면서)

정 [] 기자 : 화장실에는 여기저기 구토하는 신입생들로 붐빉니다.

(원고 김 []가 화장실의 세면대에 머리를 박고 있는 모습)

채 [] : “괜찮아?”

김 [] : “어지러워요...”

정 [] 기자 : 한쪽에서는 선배들이 기강을 세운다며 신입생들을 구타하는 모습도 보입니다.(화장실 내부 모습)

성 [] : “학번이 우선이야? 나이가 우선이야?”

김 [] : “학번이 우선입니다. 학번이 우선입니다.”

성 [] : “학번이 우선이야.”

김 [] :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홍가 거리에서 학생들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비추면서)

정□ 기자 : 밤 11시 반, 술자리를 마친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거리에서 남녀대학생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구호를 외치는 학생들의 모습)

정□ 기자 :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칩니다.

(문이 닫혀진 의 한 상가앞에 쓰러져 있는 학생들을 비추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학생들은 길바닥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쓰러져 있는 학생을 다른 학생들이 일으켜 세워 등에 업고 가는 모습)

정□ 기자 : 선배 등에 업혀가는 한 학생을 따라가 봤습니다.

대학가 주변 골목으로 들어섭니다.

(어느 여관의 간판과 여관 부근에서 술에 취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어느 학생의 모습을 비추면서)

정□ 기자 : 신입생 환영회하고 이렇게 됐어요?

학생 : “예”

정□ 기자 : 얼마나 마셨길래?

학생 : “소주 3병...”

정□ 기자 :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학생 : “여관이요. 저희 단골여관에...”

정□ 기자 : “환영회때만 되면...?”

학생 : “예, 여관 잡아놓고 술취한 후배들 먼저 보내요.”

(술에 취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학생과 그 옆에 서있는 몇 명의 학생들의 모습)

(중략)

설□

대학가 주변 상인

(의 한 도로상에 서서)

설□ : “밤새도록 2시 3시까지 술을 먹고, 온 길에 오바이트하고 난리났어.”

“또 미니스커트를 입고서 어깨에다 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깨동무하고 다니는 사람도 가관이 아니라는 얘기죠.”

(술에 취해 거리에서 비틀거리고 있는 여학생 등 학생들의 모습을 비추며)

정□ 기자 : 지방대학은 정도가 더욱 심합니다.

객지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배품에 몸을 맡긴 여학생, 이미 인사불성입니다.

정 [] 기자 : 아니 학생들이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요?

여학생 : “아니 많이 마신거 아니에요. 애가 한 잔 마시고 취해서 이렇죠.”

(술에 취해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학생)

정 [] 기자 : 우는 여학생

(엎혀가는 학생)

정 [] 기자 : 하숙집으로 엎혀가는 학생, 천태만상입니다.

정 [] 기자 : 자정 가까운 시간. 3차를 가기 위해 몰려있는 신입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술 좀 하신 것 같아요?

여학생 : “예”

정 [] 기자 : 어느 정도 했어요?

여학생 : “소주 2병 정도요. 처음 먹는 건데 술이 좀 센가 봐요. 저는 몰랐는데…”

정 [] 기자 : 오늘 한 몇시 정도까지 마실 거예요?

학생 : 오늘 집에 안들어갈 생각이예요.

(중략)

(현란한 간판들이 있는 거리에 남녀대학생이 부둥켜 안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비추면서)

정 [] 기자 : 신입생 환영회 때문에 누구보다도 속상한 건 부모들입니다.

특히 딸자식을 둔 학부모들은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 []

신입생 어머니

김 [] : “아 예 때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은 12시 한 10분, 15분 되니까 아주 들어오기만 해봐라 죽인다. 이제는 문도 안열어 줘가지고 반쯤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구요.”

(냉면그릇에 소주 2병을 따르는 모습과, 흐릿한 모습으로 냉면그릇 가득 담긴 소주를 마시는 학생들의 모습)

정 [] 기자 : 지난해 []대 신입생 환영회 때 숨진 장 [] 군. 장군은 선배들이 냉면그릇에 따라주는 소주를 세그릇이나 마셨습니다. 무려 소주 4병반을 단숨에 마셔 버린 것입니다.

김 []

故 장 [] 君 어머니

김 [] : “나는 대학교를 처음 보냈기 때문에, 그 마구 강제적으로 맥이는거 생각도 못했어요.”

“그 나는 야가 안 묵는다 하문 내가 안묵는다 허문 안묵는 줄 알고 알았지 그렇게마 공포스럽게 그리 참말로, 선후배관계는 생각도 못했지”

(고소장의 내용을 비추며)

정 [] 기자 : 얼마전 장군의 부모는 총장과 선배학생 5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상장을 보고 울부짖는 부모 모습)

정 [] 기자 : 1년이 지났건만 슬픔은 더해가고, 잠조차 이루지 못한다고 오열합니다.

(고 장 [] 군의 사진을 비추며)

김 [] : “지금 역수로 보고싶고”

“신학기가 되어갔고 다른 아들 대학에 붙었다 어땠다 그래도 그렇게 되기 쉽고”

([] 대학교 교정과 학생회관 앞에 있는 학생들의 모습 그리고 노래동아리 회원들이 신입회원 모집을 위해 교정에서 합창하는 모습을 이어 비추면서)

정 [] 기자 : 3월 신학기초. 상아탑에 봄은 싱그럽기만 합니다.

신입생들의 표정은 밝고 교정은 활기찬 모습입니다.

([] 대학교 교정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게시판과 그곳 앞을 지나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비추면서)

정 [] 기자 : 게시판에 나붙은 신입생 환영회, 대학만이 누릴 수 있는 추억과 낭만의 시간어요, 공간인 것입니다.

(다시 문화회관 앞 거리에서 손뼉을 치며 ‘젊었다’라는 노래를 합창하는 [] 대학교 성악과생들의 모습을 비추면서)

정 [] 기자 : 그러나 대학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생들에게 1차, 2차, 3차 갈 때까지 가보자는 술문화로 상아탑은 멍들고 있고, 대학가는 이미 유흥의 본산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들의 간판을 비추면서)

신입생 환영회는 과연 젊음과 지성의 향연인가 아니면(다시 문화회관 식당앞에서 합창하고 있는 원고 등 [] 대학교 성악과 학생들의 모습을 비추면서) 공포의 통과례일 뿐인가?

그 답은 대학생들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식날 꽃다발을 든 어느 학생의 사진과 어느 거리에서 술이

취해 쓰러져 있는 학생을 다른 학생들이 일으키는 모습을 비추며)

학부모 : “이제 마지막 사진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마지막 사진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대학 안보냈죠. 그간놈의 대학이 뭔데...”

2심 判 決 文

사 건 : 97나43156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성

서울 용산구

2. 송

서울 동대문구

3. 김

인천 연수구

4. 채

서울 영등포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1.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이득렬

2. 정

3. 이

피고 2., 3.의 주소 : 위 같은 곳.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화

변론종결 : 1997. 12. 9

제1심 판결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

주 문 : 1.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금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7. 3. 16.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성 []에게 금 14,000,000원, 원고 송 []에게 금 18,000,000원, 원고 김 [], 채 []에게 각 금 16,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7. 3. 16.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들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한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2.항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하고, 다만 그 중 제4면 제2행 및 제11행의 “이 []”을 “이 []”으로, 같은 면 제3행의 “학회장인”을 “4학년 학생으로서 같은 과 학생의 대표 역할을 하는 학회장인”으로 각 정정한다.

2. 피고들의 항변

피고들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위 프로그램은 그 무렵 신입생활영회에서 대학신입생이 과음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고가 여러 건 발생함에 따라 신입생활영회의 실태와 그 문제점을 짚어 본다는 의도로 제작되었고, 위 나이트클럽 화장실에서의 원고들의 행동은 미리 그 취재가 계획된 것이 아니라 취재진이 우연히 목격하게 되어 촬영한 것이며, 위 프로그램을 본 시청자라도 그 중 원고들의 화장실에서의 모습은 화면이 어두워서 원고들임을 식별하기가 쉽지 않고, 위 프로그램은 피고 방송사의 대표적인 공익적 보도프로그램으로서 그 공익적 기능이 개인적 사익의 일부 침해로 인하여 위축되어서는 안된다는 등의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위 프로그램의 공익성이 그 보도로 인한 원고들의 사익의 침해보다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이 위 프로그램을 제작, 보도한 것은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보도의 목적과 내용상 원고들의 얼굴과 목소리 등을 그대로 방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들이 그 촬영 후에라도 원고들로부터 그 방영에 관한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위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진행과 내용에 비추어 그 방영으로 인하여 원고들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 원고들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으리라는 것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가사 위와 같은 피고들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들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 및 초상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이 부분에 관한 이유는 제1심 판결의 3.항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성 []에게 금 6,000,000원, 원고 송 []에게 금 2,000,000원, 원고 김 [], 채 []에게 각 금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위 불법행위일인 1997. 3. 16.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같은 해 8. 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분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 13.

재판장 판사 이 용 응
판사 이 기 택
판사 박 형 명

□

‘한통노조의 북한조종설’을 언급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박 총장은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이를 보도한 신문사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서울지방법원 1997. 5. 2.자 판결 (95가합94047)
서울고등법원 1998. 1. 21.자 판결 (97나23466)

事實概要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는 1998년 1월 21일 [] 노조가 95년 파업당시 “노조원들이 명동성당과 조계사에서 농성을 벌인 것은 북한의 조종에 의한 것”이라는 박 [] 전 [] 대총장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씨와 이를 보도한 중앙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박씨는 원고들에게 2천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중앙일보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당시 노조원들의 농성을 북한이 조종한 것이라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노동조합은 물론 그 핵심간부들이 북한의 조종을 당한 것처럼 그 사회적 평가를 현저하게 저하시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이로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면서 박씨의 발언을 보도한 중앙일보의 기사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기사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기각이유를 밝혔다.

원고들은 1995년 파업 당시 주요 중앙일간지가 1995년 6월 15일자 등으로 “한통 노조원 성당-사찰 농성 북한서 사전 조종했다”는 제하로 당시 [] 대 박 [] 총장의 발언을 일제히 보도하자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1995년 6월 19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95서울중재166~170)을 했다. 경향신문 등은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 반론보도를 게재하여 원고들은 중재신청을 취하하였으나 중앙일보(95서울중재169)는 보도문의 게재면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불성립처리됐다. 그러자 원고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1심법원은 박씨는 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중앙일보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원고들과 피고 박씨는 이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정정보도를 게재하라고 결정했다.(서울지방법원 1995년 9월 30일자 결정 95카기3524, “언론중재” 95년 겨울호 165~167면 참조)

박 [] 전 [] 대총장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씨와 이를 보도한 중앙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박씨는 원고들이 청구한 7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리고 중앙일보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했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당시 노조원들의 농성은 북한이 조종한 것이라는 구

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농성에 참가했던 노조원들이 마치 북한의 구체적 지령을 받아 움직이고 있고, 노조가 농성노조원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친북단체인 것처럼 비치게 해 노조 및 노조원들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킨 만큼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 노조원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원고들이 박씨의 발언을 보도한 중앙일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재판부는 “기사내용에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사실 적시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도 진실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 회사의 명예훼손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었다”라며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판결문에서 “박씨의 발언 내용을 게재함에 있어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그 내용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거나 의견을 개입시킨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회사가 박씨의 발언을 빌어 원고들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사회적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사회지도층 중 일부의 의견을 드러냄으로써 공정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기사 게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원고들은 95년 파업 당시 주요 중앙일간지가 1995년 6월 15일자 등으로 “ 노조원 성당-사찰 농성 북한서 사전 조종했다”는 제하로 당시 대 박 총장의 발언을 일제히 보도하자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1995년 6월 19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95서울중재166~170)을 했다. 경향신문 등은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 반론보도를 게재하여 원고들은 중재신청을 취하하였으나 중앙일보(95서울중재169)는 보도문의 게재면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불성립처리됐다. 그러자 원고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95년 9월 30일 인용결정을 받아 낸 바 있다.

1심 判 決 文

사 건: 95가합94047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공사 노동조합

서울 종로구

대표자 조합장 김호선

2. 도

안양시 석수1동

3. 이 []
서울 동대문구 []

4. 박 []
군포시 []

5. 박 []
군포시 []

6. 정 []
서울 노원구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두환, 이상경, 김기중, 안상운

피고, 항소인 : 1. 박 [] (朴 [])
서울 마포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2. 주식회사 중앙일보사(中央日報社)

서울 중구 []

대표이사 홍석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훈

변론종결 : 1997. 4. 4.

주 문 : 1. 피고 박 []은 원고들에게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6. 15.부터 1997. 5. 2.까지는 연 5푼, 1997. 5. 3.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박 []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원고들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6. 1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강제1호증, 강제2호증, 강제3호

증, 강제4호증의 1 내지 6, 강제6호증의 1 내지 12, 강제7호증, 강제8호증, 을제2호 증의 각 기재와 증인 심 [] , 이 [] , 한 [] 의 각 증언(증인 [] 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당원의 [] 대학교 [] 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한실의 일부증언, 증인 최 [] 의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없다.

가. 원고 [] 공사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은 정부투자기관인 [] 공사(이하 소외 공사라고만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1982. 1. 6. 설립되어 위 공사 소속 근로자 약 62,000명 중 원고 도 [] , 이 [] , 박 [] , 박 [] , 정 [] (이하 '위 원고들' 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약 52,000명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이다.

나. 원고 도 [] 는 원고 노동조합의 교육홍보실장, 원고 이 [] 은 여성국장, 원고 박 [] 은 임금국장, 원고 박 [] 는 교섭국장, 원고 정 [] 은 서울지방본부 사무국장으로서, 위 원고들은 모두 원고 노동조합의 핵심간부들이었다.

다. 원고 노동조합은 1995. 5. 2.부터 소외 공사와 1995년도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검찰이 1994. 7.과 같은 해 12월경에 있었던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농성사건과 관련하여 뒤늦게 원고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위 원고들을 각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려고 하자, 위 원고들은 쟁의와 무관한 사유로 조합간부들을 대량 구속하려고 하는 것은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응하여 투쟁하던 중 당시 조합장이던 소외 유 [] 과 위 원고들 및 다수의 조합원들은 정부의 공권력 투입이 곤란한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일부 조합원들을 보내 그곳에서 농성을 전개함으로써 투쟁을 계속하기로 결의하고, 위 원고들과 원고 노동조합의 다른 간부 등 총 13명이 1995. 5. 22.부터 위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들어가 농성을 하였는데, 같은 해 6. 6. 정부가 경찰력을 투입해 위 농성 중이던 노조간부들을 모두 연행하였다.

라. 피고 박 [] 은 당시 [] 대학교 총장으로 재임하던 중이었는데, 위 원고들의 위 농성사태가 있는 뒤인 1997. 6. 14. 춘천에 있는 [] 대학교에서 위 대학 내 교수 등을 초청하여 개최된 수요공개세미나에서 '세계화대비 인성 및 사상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는데, 이 때 위 피고는 '이번에 노조원들이 성당과 사찰에 들어간 것은 북한이 조종한 것이다', '북한의 공산세력이 이미 남한 내 학생, 노동, 재야, 언론에 깊숙이 침투해 각종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 '나는 북한의 정보를 구하는 루트를 가지고 있다', '북한이 이번에는 정치를 잡기 위해 6·27. 선

거를 기점으로 본격화되는 지자제를 목표로 27일 전에 남한 내 동조세력을 규합해 연대 총파업을 주도하고 오는 8월 15일에는 요인암살 및 중요 기물파괴 등을 계획하고 있다' 는 등의 말을 하였다.

마.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일간신문인 '중앙일보' 를 발행하고 있는 바, 1995. 6. 15.자 중앙일보 1면 중간부분에 '노조원들의 성당-사찰 농성, 북한에서 조종했다' 라는 대제목과 '박 [] 총장' 이라는 소제목하에 별지 기사내용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위 피고 박 [] 의 위 발언내용을 그대로 보도하였다.

2. 피고 박 []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박 [] 의 위 발언은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위 농성을 북한이 조종한 것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위 성당과 사찰에서 직접 농성에 참가했던 원고 도 [], 이 [], 박 [], 박 [], 정 [] 이 마치 북한의 구체적 지령을 받아 움직이고 있고 원고 노동조합은 위 원고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친북단체인 것과 같이 비쳐지게 하여 원고 조합 및 나머지 원고들의 명예와 신용을 동시에 실추시켰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명예훼손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나아가 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강제10호중의 1 내지 강제17호중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의 농성이 있기 전인 1994. 7.경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사망하여 예정되어 있던 '남북정상회담' 이 결렬되고 김일성 장례식에의 조문참여 문제 등으로 정치적 및 사회적 논쟁이 한창 일어나는 등 사회적으로 이념적 논쟁이 격화되던 시점이었는데, 이러한 민감한 시기에 천주교 사제임과 동시에 국내의 명문 대학교 총장으로서 사회적 명망이 있던 피고 박 [] 은 1994. 7. 18. 청와대 오찬모임에서 "... 북한에서는 UR비준반대와 미군기지 반납 서명운동을 벌이라는 지시를 이미 팩시밀리를 통해 내려놓고 있다. 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 주사파 뒤에는 사노맹이 있고, 사노맹 뒤에는 사로청, 사로청 뒤에는 김정일이 있다" 고 말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파문을 불러 일으킨 것을 비롯하여, 1994. 7. 19. 에도 "...내가 해외를 돌아다니며 보니까 공산당에 가입한 사람이 한 2, 3백명 된다. 베를린에도 한 20명 있고, 미국에도 있다... 유사시 요인 암살을 위한 테러조직이 있다... 학생들은 해외 6개 지역의 범민련 본부에서 팩시밀리를 통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다”라고 하고, 1994. 8. 1. 일본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에 초청돼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한국에 돌아와 대학 교수가 된 사례도 있다. 그가 누구지는 밝히지 않겠다…”라고 하였으며, 1994. 8. 11.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LA지역회의 강연에서도 “주사파는 전체 학생의 1 내지 2%에 지나지 않지만 영향력이 매우 크며 교수들 가운데도 주사파가 있다”고 하고, 1994. 8. 13. 미국 LA 한국일보 미주본사와의 인터뷰에서도, “학원뿐만 아니라 종교, 언론, 정당에도 주사파가 침투해 있다. 일부 야당에는 주사파가 7백 50명이나 암약하고 있으며…”라고 하였고, 1994. 8. 19. 동아일보와의 회견에서도 “...여당에도 주사파가 있다... 750명이 누구인지 나는 안다...”라고 말하는 등 각종 공식석상에서 북한 김정일의 사주를 받아 행동하는 이른바 “주사파”가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그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하여 해온 사실, 이에 따라 검찰, 국가안전기획부 등 수사기관은 그 ‘주사파’ 들을 색출·검거하기 위하여 수사에 나서기도 하였고, 실제로 1994. 10. 6. 대학 교수 2명이 위 피고가 지칭한 ‘북한 장학금을 받은 교수’ 라는 혐의로 국가안전기획부에 연행되어 조사받다가 하루만에 풀려나기도 하는 등 피고의 위 발언 내용으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발생하기도 한 사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특정인이 주사파 또는 친북세력으로 지목당하는 경우 그 특정인은 수사기관의 현실적인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인으로부터도 반사회세력으로 낙인찍혀 그 사회적 활동의 폭이 현저히 위축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분위기는 이 사건 발언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던 사실, 소위 []공사는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그 규모가 방대한 사업체이고 원고 노동조합은 위 기업의 근로자의 대부분이 소속되어 있는 대규모 노동조합의 하나이어서 당시 원고 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위 공사 및 정부와 마찰을 빚어 오다가 급기야 경찰력 투입이 곤란한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들어가 장기적인 농성에 돌입하기에 이르고, 정부가 위 농성을 진압함에 있어 경찰력 투입이 급기시되어 왔던 위 성당과 사찰에 경찰병력을 투입하기에 이르러 이를 두고 정부와 위 각 종교단체와의 사이에 갈등이 야기되는 등 원고 노동조합의 위 농성사태의 전개와 그 해결과정은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 바, 이와 같은 위 피고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정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위 피고가 한 일련의 발언들의 내용과 표현 방식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 파장의 정도, 위 피고의 위와 같은 발언들로 인하여 현실적인 피해자들이 발생한 바 있음에도 위 피고가 다시 이 사건과 같은 발언을 반복한 점, 위

피고의 이 사건 발언이 행하여진 시기의 사회 상황, 당시의 위 농성사태의 전개과정,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집중정도, 위 피고의 이 사건 발언 내용은 그간의 발언내용들과 달리 특정의 단체와 그 간부들을 지목하여 북한이 그들을 조종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피해의 정도가 훨씬 더 심각한 반면에, 위 발언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않은 점, 피해를 입은 원고 노동조합의 규모와 조합원들의 수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위 피고는 그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금 7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가 게재한 위 기사 내용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의 사실로서 위 피고는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기사의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그 내용 또한 피고 박□의 발언 내용을 아무런 논평없이 사실 그대로 게재한 것에 불과하여 진실되므로 피고의 위 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 박□이 위 공개세미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고, 피고 회사가 게재한 이 사건 기사의 내용도 당시 위 세미나에서 피고 박□이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는 것입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기사는 위 발언 내용의 진위여부와는 무관하게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진실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기사를 게재한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 박□이 천주교 사제임과 동시에 □대학교 총장으로서 그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이 클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주사파' 관련 발언들로 인하여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켜 온 장본인이었던 점, 당시 원고들의 위 농성사태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사건이었고, 위 농성이 진압된 이후에도 경찰력을 성당과 사찰에 투입했다는 점에 관하여 정부와 종교기관들 사이에 갈등이 야기되어 있던 상황에서 천주교 사제로서 위와 같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위 피고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은 사회여론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할 수 있는 점, 피고 회사는 위 발언 내용을 게재함에 있어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그 내용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거나

의견을 개입시킨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가 위 기사를 게재한 행위는 위 피고 박□의 발언을 빌어 원고 노동조합 및 위 원고들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사회적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위 피고와 같은 사회적 지도층 중 일부가 가지고 있는 시각과 의견을 드러냄으로써 위 사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은 그 기사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기사 내용에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사실 적시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도 진실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 회사의 위 명예훼손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었다 하겠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박□은 원고들에게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95. 6. 1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7. 5. 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 날인 1997. 5. 3.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5. 2.

재판장 판사 서 태 영
판사 이 정 식
판사 한 소 영

기사내용

□대 박□ 총장은 '이번에 노조원들이 성당과 사찰에 들어간 것은 북한이 조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총장은 14일 □대 수요세미나에 참석해 '세계화 대비 인성 및 사상교육'이란 주제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공산세력이 이미 남한 내 학생, 노동, 재야, 언론에 깊숙이 침투해 각종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총장은 또 '나는 북한의 정보를 구하는 루트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후, '북한이

이번에는 정치를 잡기 위해 6. 27. 선거를 기점으로 본격화되는 지자제를 목표로 27 일 전에 남한내 동조세력을 규합해 연대 총파업을 주도하고 오는 8월 15일에는 요인 암살 및 중요 기물파괴 등을 계획하고 있다' 고 말했다.

박총장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사상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다' 며 '대학 내 주사파들이 지난 해에 비해 양적으로 줄었지만 질적으로는 각계각층에 더 깊숙이 침투해 각종 파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전국대학 학생회장의 90%' 라고 주장했다.

2심 判 決 文

사 건: 97나23466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1. [] 공사 노동조합

서울 종로구 []

대표자 조합장 김호선

2. 도 []

안양시 []

3. 이 []

서울 동대문구 []

4. 박 []

군포시 []

5. 박 []

군포시 []

6. 정 []

서울 노원구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고, 항소인 : 1. 박 [] (박 [])

서울 마포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외 56인

(별지 3. 대리인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피항소인 : 2. 주식회사 중앙일보사(中央日報社)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홍석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춘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종무

변론종결 : 1997. 12. 17.

원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1997. 5. 2. 선고, 95가합94047 판결

주 문 : 1. 원심판결의 피고 박[]에 대한 부분 중, 같은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6. 15.부터 1998. 1. 2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같은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같은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에 대한 항소 및 피고 박[]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박[]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같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원고들에게, 피고 박[]은 금 7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금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5. 6. 15.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원고들의 항소 :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원고들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6.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박[]의 항소 : 원심판결 중 피고 박[]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 박[]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제6호증의 2, 5, 10, 11,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 2, 4호증, 을 제7호증의 1, 7, 9, 13, 14, 21, 23, 24, 43, 44, 50,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와 원심증인 심[], 한[], 이[], 당심증인 양[], 정[]의 각 일부 증언, 원심법원의 []대학교 []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

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7호증의 1, 3, 8, 9, 14, 21, 24의 다른 각 일부 기재와 원심증인 최 [] 및 위 증인 심 [], 한 [], 양 [], 정 []의 다른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공사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정부투자기관인 []공사(이하 '한국통신'이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 약 62,000명 중 약 52,000명을 구성원으로 한 노동조합이고, 피고 박 []은 []대학교 총장으로 재임 하던 사람이며,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이하 '피고 중앙일보'라고 한다)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일간신문인 '중앙일보'를 발행하고 있다.

나. 원고 도 []는 원고 노동조합의 교육홍보실장, 원고 이 []은 여성국장, 원고 박 []은 임금국장, 원고 박 []는 교섭국장, 원고 정 []은 서울지방본부 사무국장으로서, 모두 원고 노동조합의 핵심간부들이었다.(이하, 원고 도 [], 이 [], 박 [], 박 [], 정 []을 '원고 도 [] 외 4인'이라 한다)

다. 원고 노동조합은 1995. 5. 2.부터 []과 1995년도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마찰을 빚던 중, 검찰이 원고 노동조합의 간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려고 하자, 쟁의와 무관한 사유로 조합간부들을 대량 구속하려고 하는 것은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응하여 투쟁하였는데, 당시 조합장이던 소외 유 []과 원고 도 [] 외 4인 및 다수의 조합원들은 정부의 공권력 투입이 곤란한 명동성당과 조계사에서 농성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도 [] 외 4인을 비롯한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13명이 1995. 5. 22.부터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들어가 농성을 하였으나 1995. 6. 6. 경찰력의 투입으로 연행되어 모두 구속되었다.

라. 피고 박 []은 []대학교 총장으로 재임하던 1994. 7.경부터 각종 공식석상에서 '북한 김정일의 사주를 받아 행동하는 이른바 주사파가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그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파장을 일으켜 왔는데, 원고 도 [] 외 4인을 비롯한 노조원 13명의 농성 사태가 있는 직후인 1995. 6. 14. 12:00경부터 14:00경까지 춘천시 소재 []대학교에서 개최된 수요세미나에서 '세계화대비 인성 및 사상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북한의 공산세력이 이미 남한 내 학생, 노동, 재야, 언론에 깊숙이 침투해 각종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 "나는 북한의 정보를 구하는 루트를 가지고 있다", "북한이 이번에는 정치를 잡기 위해 6. 27. 선거를 기점으로 본

격화되는 지자제를 목표로 6월 27일 전에 남한 내 동조세력을 규합해 연대 총파업을 주도하고, 오는 8월 15일에는 요인암살 및 중요 기물파괴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사상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다”, “대학 내 주사파들이 지난해에 비해 양적으로 줄었지만 질적으로는 각계 각층에 더 깊숙이 침투해 각종 파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전국대학 학생회장의 90%가 주사파다” “정보화시대에 북한은 이미 남한 내 어느 집이 쌀밥을 먹고 어느 집이 보리밥을 먹고 있는지 알고 있을 정도로 북한세력이 남한에 침투해 있다” 라고 말하고, 북한이 각종 노동운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이번에 [] 노조원들이 명동성당, 조계사에 들어가 농성한 것도 북한의 조종을 받은 것이냐”라는 참석 교수 1인의 질문에 대하여, 이를 긍정하면서, “교회와 사찰을 적화통일에 이용하려고 북한이 시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세심한 분별을 해야 한다”, “이번 명동성당과 조계사 사건을 이벤트로 하여 북한이 종교로 하여금 정부와 싸우고 계급투쟁의 앞잡이가 되도록 이용하고 있다. 여기에 노동지도자들의 분별이 좀 미비한 것 같다”, “공권력을 넣은 것은 잘 넣었다. 교회와 정부를 싸움 붙이려는 자들이었다” 등의 말을 하였다.

마. 위 수요세미나는 [] 대학교 부설 []원 소속 회원들이 1990. 4.경부터 격주로 수요일 12:00경에 오찬을 겸해 개최해 오던 것으로서 주로 위 대학교 교수들과 지역인사, 언론인 등이 참석해 왔는데, 피고 박 []의 강연이 있던 위 1995. 6. 14.의 세미나는 [] 대학교 내 전교수 및 언론사가 초청되어 교수들 약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당시 피고 박 []은 언론사 기자가 참석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나, 그 자리에 참석 중이던 연합통신 소속 심 []기자가 피고 박 []의 강연내용을 취재수첩에 그대로 받아 적었고, 그 취재수첩에는 ‘주사파, 작년 비해 양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질적으로 더 깊숙이 침투’, ‘70년 후반부터 대학, 노동, 재야운동에 완전히 잡고 있다’, ‘사노맹, 지역사노에서 노동운동 다 잡고 있다’, ‘젊은이들이 사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 ‘정보화시대에 이북은 어느 집이 쌀밥, 보리밥 먹고 있는지 다 안다’, ‘전국대학 학생회장들 90%...’, ‘언론에도 침투’, ‘정치를 잡기 위해, 지자제, 6·27전 연대 총파업’, ‘8·15 요인암살, 중요 기물파괴’라는 기재와 함께 ‘성당 들어갔던 것, 이북이 뒤에서 조정... 정부와 싸움 붙여’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위 심 []기자는 위 세미나 당일 16:00경 별지 1. 기재와 같은 통신문을 작성하여 송신하였고, 그 통신문을 접한 피고 중앙일보는 같은 날 위 심 [] 및 [] 대학교 관계자에게 피고 박 []의 발언내용을 확인한 뒤 다음날인 1995. 6. 15.자 중앙일보 1면 중간에 “노조원들의 성당·사찰 농성, 북한에서 조종했다. -박 []총장”이라는 제

정일이 있다”, “...내가 해외를 돌아다니며 보니까 공산당에 가입한 사람이 한 2, 3백 명 된다. 베를린에도 한 20명 있고, 미국에도 있다... 유사시 요인 암살을 위한 테러 조직이 있다... 학생들은 해외 6개 지역의 범민련 본부에서 팩시밀리를 통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다”, “북한에 초청돼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한국에 돌아와 대학교수가 된 사례도 있다. 그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다...”, “주사파는 전체 학생의 1 내지 2%에 지나지 않지만 영향력이 매우 크며 교수들 가운데도 주사파가 있다”, “학원뿐만 아니라 종교, 언론, 정당에도 주사파가 침투해 있다. 일부 야당에는 주사파가 7백 50명이나 암약하고 있다...”, “여당에도 주사파가 있다... 750명이 누구인지 나는 안다...”는 등의 발언을 계속하여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 박홍과 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의 발언으로 특정인이 주사파 또는 친북세력으로 지목당하는 경우 그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심각하게 저하될 수밖에 없는 점,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노사간 대립이 격화되던 중 수사기관이 조합간부들을 구속하려 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와 같이 명동성당과 조계사에서 보름 동안 농성하기에 이르렀고 그 진압 과정에서 명동성당에 최초로 경찰력이 투입되어 정부와 각 종교단체간에 갈등이 야기되었으며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바 있었는데, 이에 대해 피고 박[]은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농성사태도 북한이 노동운동을 배후에서 조종하여 교회와 정부를 싸움 붙이려 한 것의 일환이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여 그 발언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위 농성참가자 13명의 일원이던 원고 도[]의 4인은 물론 원고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상당한 정도의 좌절감과 충격을 받은 점, 그러나 한편 위 수요정기세미나는 참석자들이 주로 []대학교 교수들로서 대상범위가 비교적 제한되어 있었고, 피고 박[]은 세미나 참석교수 1인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위 농성사태에 대해 위와 같이 언급하기에 이르렀던 점, 피고 박[]은 당시 언론사 기자가 참석한 줄은 모르고 있었던 터여서 자신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될 줄은 예상하지 못하였으나, 원래 위 세미나의 초청대상에는 언론사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자리에 참석한 기자에 의해 피고 박[]의 발언이 언론매체에 보도된 점, 피고 박[]은 위 발언이 언론매체에 보도된 직후 즉시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발언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하였고, 그 후 위 발언을 보도했던 언론사들 중 대다수가 원고들의 반론문을 게재한 점, 기타 위 농성사태의 전개과정 및 결과, 피고 박[]의 위 발언의 내용 및 본래의 의도, 전체적인 흐름과 상황, 피고 박[]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재산상태, 원고 노동조합의 조직, 규모, 조합원들의 인원수, 원고 도[]의 4인의 지위, 연령, 원

고들의 피해의 정도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박□은 그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금 25,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3. 피고 중앙일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중앙일보가 별지 2. 기사내용 기재와 같이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들어간 것은 북한이 조정한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중앙일보는, 위 기사 보도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도 피고 박□이 그와 같이 발언하였다는 것을 아무런 논평 없이 그대로 게재한 것에 불과하여 진실되므로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박□은 1994. 7.경 이래 '사회 각계각층에 주사파가 침투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해 왔고, 한편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위 농성사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었는데, 위와 같이 사회적 영향력이 큰 피고 박□이 위 수요세미나에서 "북한 공산세력이 이미 남한 내 학생, 노동, 재야, 언론에 깊숙이 침투해 각종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발언에 이어,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위 농성사태도 북한이 노동운동을 배후에서 조종하여 교회와 정부를 싸움 붙이려 한 것의 일환이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던 것인 바, 이는 국가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관련있는 내용에 관한 발언에 해당하므로 피고 중앙일보가 위와 같은 기사를 게재한 것은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피고 박□이 한 위 발언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듣는 사람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중앙일보가 별지 2. 기사내용 기재와 같이 피고 박□이 그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는 것을 논평 없이 그대로 게재한 것 자체도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보도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중앙일보의 위 기사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기사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중앙일보에 대한 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박□은 원고들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95. 6. 15.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준부 및 범위에 관

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1998. 1. 2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원재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중앙일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 중 피고 박□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용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중앙일보에 대한 부분은 당심의 판단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 21.

재판장 판사 강 병 섭
판사 조 인 호
판사 최 영 룡

별지1 통신문

〈지방안테나〉 『노조원들 성당 들어간 것 북한조종』

『이번에 노조원들이 성당과 사찰에 들어간 것은 북한이 조종한 것이다.』 □대 박 □총장은 14일 □대 수요세미나에 참석해 「세계화 대비 인성 및 사상교육」이란 주제 강연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북한의 공산세력이 이미 남한 내 학생, 노동, 재야, 언론에 깊숙이 침투해 각종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총장은 또 「나는 북한의 정보를 구하는 루트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후, 「북한이 이번에는 정치를 잡기 위해 6. 27. 선거를 기점으로 본격화되는 지자제를 목표로 6월 27일 전에 남한 내 동조세력을 규합해 연대 총파업을 주도하고 오는 8월 15일에는 요인암살 및 중요 기물파괴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총장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사상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다」고 시종일관 강조하면서 「대학 내 주사파들이 지난 해에 비해 양적으로 줄었지만 질적으로는 각계각층에 더 깊숙이 침투해 각종 파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전국대학 학생회장의

90%가 주사파」라고 주장했다.

박총장은 「정보화시대에 북한은 이미 남한 내 어느 집이 쌀밥을 먹고 어느 집이 보리밥을 먹고 있는지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북한세력이 남한에 침투해 있다」고 강조했다.

별지2

기사내용

□대 박□총장은 「이번에 노조원들이 성당과 사찰에 들어간 것은 북한이 조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총장은 14일 한림대 수요세미나에 참석해 「세계화대비 인성 및 사상교육」이란 주제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공산세력이 이미 남한 내 학생, 노동, 재야, 언론에 깊숙이 침투해 각종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총장은 또 「나는 북한의 정보를 구하는 루트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후, 「북한이 이번에는 정치를 잡기 위해 6. 27. 선거를 기점으로 본격화되는 지자제를 목표로 6월 27일 전에 남한 내 동조세력을 규합해 연대 총파업을 주도하고 오는 8월 15일에는 요인암살 및 중요 기물파괴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총장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사상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다」며 「대학 내 주사파들이 지난해에 비해 양적으로 줄었지만 질적으로는 각계 각층에 더 깊숙이 침투해 각종 파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전국대학 학생회장의 90%가 주사파」라고 주장했다.

별지3 대리인 목록

(피고 1. 박□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이재성, 정기승, 이진우, 이기창, 이종순, 박동현, 정성철, 오제도, 오희택, 용태영, 황혜진, 황규범, 강달수, 강용구, 김공식, 김동화, 김창수, 김상철, 김유후, 김태경, 나석호, 문상익, 배명인, 박상기, 박재명, 박정근, 박천식, 변무관, 선우종원, 손량, 신창동, 신호양, 안범수, 양현, 오탁근, 우영재, 유택형, 윤태방, 이상곤, 이상규, 이승빈, 이양우, 이장근, 이종남, 이종원, 이창우, 인정현, 장동완, 장봉선, 정승화, 정형근, 지익표, 채훈천, 최석봉, 최성곤, 하창우. □

원고가 호화사교클럽을 조직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부산지방법원 1997. 3. 5.자 판결 (95가합18232)

부산고등법원 1998. 2. 26.자 판결 (97나3873)

事實概要

부산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진봉진 부장판사)는 1998년 2월 26일 이벤트 기획업자인 이 [] 씨가 부산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문제의 기사는 원고가 부유층 미혼 남녀만을 골라 호화사교클럽을 조직하여 초호화연회를 베풀고, 귀족모임을 피하는 듯한 부정적 인상을 주고 있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할 것”이라며 피고는 원고에게 금 3천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사가 전반적으로 진실한 사건이라거나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면서 “기사 성격상 취재기자가 사실확인을 생략하고 기사를 작성하여야 할 만큼 신속을 요하는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취재기자가 신문광고 내용만을 토대로 하여 추측과 과장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일보는 1995년 6월 9일자 “호화사교클럽 물의” 제하의 기사에서 호화사교클럽이 새롭게 등장하여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거액의 입회비를 받고 미혼 남녀회원을 공개모집해 사치풍조와 계층간 위화감을 부추기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였으나(95부산중재15), 피신청인이 “월 참가비를 잘못 보도한 것은 인정하나 가입비가 130만원이나 되고, 가입자격에 제한을 뒤 사치풍조를 조장하는 것은 사실인 만큼 신청인의

정정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 중재불성립되었다.

그러자 신청인은 부산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1심법원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判 決 文

사 건 : 95가합18232 정정보도

원 고 : 이 [] (李 [])

부산 수영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종호

피 고 : 부산일보(釜山日報) 주식회사

부산 동구 []

대표이사 정한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성래

변론종결 : 1997. 2. 19.

-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2. 14.부터 1997. 3. 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728,529,565원 및 이에 대한 1996. 2. 13.자 청구 취지정정및원인보충서 송달일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강제2호증(부산일보 신문기사 및 광고), 강제3호증의 1(부산일보 광고), 강제3호증의 2(조선일보 광고), 3(부산매일 광고), 4(국제신문광고, 을 제1호증과 같다), 5(부산경제신문광고), 강제5호증의 1, 2(각

사업자 등록증), 갑제6호증(팸플릿), 갑제7호증의 1 내지 3(각 세금계산서), 4, 5(각 거래명세서), 갑제8호증, 갑제13호증, 갑제14호증의 1(각 계약서), 갑제9호증(서신), 갑제11호증의 1 내지 4(각 출근부), 갑제14호증의 2 내지 4, 갑제16호증의 1 내지 4(각 간이세금계산서), 갑제15호증의 1(관리비납입영수증), 2, 갑제17호증의 1, 2, 갑제18호증의 1 내지 4(각 영수증), 갑제19호증(신문), 갑제22호증(인증서), 갑제23호증(녹취문), 을제2호증(신청서)의 각 기재, 증인 장 [] , 백 [] 의 각 증언(증언 백 [] 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당원의 주식회사 [] [] 호텔 대표이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백 [] 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 라는 상호로 이벤트기획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 부산일보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일간지인 부산일보를 발행하는 신문사이다.

나. 피고회사는 위 부산일보 1995. 6. 9.자 제31면(사회면)에 “호화사교클럽 물의”라는 제목으로 “거액 가입비… 부유층 남녀 모집”이라는 부제를 달고 “최근 외국사교클럽과 유사한 친교클럽을 운영하는 업소가 부산에 등장,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거액의 입회비를 받고 미혼 남녀 회원을 공개 모집해 사치풍조와 계층간 위화감을 부추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 호텔 객실에 사무실을 차린 [] 회사는 외국의 유명 사교클럽을 흉내낸 자칭 ‘ [] 클럽’이란 사교클럽을 조직, 20 내지 30대 남녀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특히 이 업소는 부산 [] 호텔을 협조업체로 등장시켜 신용도를 높인 뒤 회원들로부터 연회비 1,300,000원과 월 참가비 330,000원 등을 받고 매월 1회씩의 초호화 연회를 베풀 예정이며 연회에는 유명 연예인까지 대거 참여시킬 계획이다. 호텔 객실인데도 버젓이 업소간판까지 내걸고 있는 이 회사는 전화문의를 통해 일단 고객을 선별,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을 상대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클럽회원으로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사회적 지명도가 높은 계층에 한해 자격을 한정하고 있으며 여자의 경우에는 재산과 미모 등을 주요 선발기준으로 정해 귀족모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클럽회원의 비밀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호적초본과 졸업증명서, 소득세납세필증 등 각종 신상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울과 대구 지역에도 지사를 개설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 업소의 관계자는 하루 수백통의 문의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밝혔다.”라는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4단으로 게재하고, 같은면 하단에는 5단 전체의 크기로 “산호빛 사연을

담은 6월의 해변에서 [] 클럽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
[] 클럽은 지성과 교양을 겸비한 신사숙녀들의 프라이드를 지켜드리는 격조높은 사교모임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인들이 즐겨 찾는 품격있는 사교모임을 접할 수 없었던 한국의 미혼 지성인들을 위하여 [] 클럽이 여러분 가까이에 다가왔습니다.”라는 등 위 클럽을 []의 명의로 선전하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다. 이 사건 기사 중 진실성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 회사가 [] 호텔 객실에 사무실을 차리고, 업소간판을 내걸고, 위 호텔을 협조업체로 등장시켰다는 부분

이 사건 기사 게재 당시 []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는 부산 해운대구 [] 이었고, [] 호텔 객실에 사무실을 차린 것은 아니며, 다만 위 호텔 객실을 연락처로 사용하였고, 호텔 객실에 회사의 업소간판을 내걸지 않았으며, 위 호텔을 협조업체로 등장시키지도 않았다.

(2) 거액 가입비, 위 클럽의 회원들로부터 연회비 1,300,000원과 월 참가비 금 330,000원 등을 받는다는 부분

위 클럽의 연회비가 금 1,300,000원인 점은 사실이나, 월 참가비는 금 130,000원이다.

(3) 위 클럽의 행사에 유명 연예인까지 대거 참여시킬 계획이라는 부분

위 클럽 행사의 원만한 진행자로서 유명 연예인을 2명 참여시킬 계획이었다.

(4) 부유층 남녀 모집, 위 회사가 클럽회원으로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사회적 지명도가 높은 계층에 한해 자격을 한정하고 있다는 부분

위 회사는 클럽회원의 자격을 특별히 한정해 두지는 않았고, 신문광고 등에서 의사, 교수, 법조인, 방송인, 건축, 세무, 설계, 회계사, 공·관기업체, 상장기업체, 기타 전문직 종사자로서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삶에 자신을 가진 사람들은 위 클럽에서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누릴 수 있다고 하였을 뿐이다.

(5) 여자의 경우 재산과 미모 등을 주요 선발기준으로 정하고 있다는 부분

위 회사가 클럽 회원을 뽑을 때 여자의 경우에 재산과 미모 등을 주요 선발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남녀 구분 없이 위 클럽에 입회신청서를 제출할 때 입회신청서의 자기소개(Self Instruction)란에 신장, 눈의 색상, 머리카락색, 체중, 쌍꺼풀, 곱슬여부, 혈액형, 시력, 특기, 취미, 종교 등을, 환경란에 가족관계, 주거의 형태, 부모의 직업, 월소득액, 동산 및 부동산 소유 등을, 직업 및 경력란에 근무처, 부서,

직위, 근무경력, 연봉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6) 클럽회원의 비밀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호적초본과 졸업증명서, 소득세 납세필증 등 각종 신상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부분

위 회사는 신문광고나 클럽안내 책자 등에서 회원의 신상에 관한 모든 자료는 탑 시크리트(TOP SECRET)로 관리한다고 밝히고 있고, 위 클럽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비서류로서 호적초본, 주민등록등본, 최종학교졸업 증명서(재학증명서), 반명함판사진 2매,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구하고 있지만 소득세납세필증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라. 이 사건 기사는 피고회사의 기자인 소외 백 []이 작성하였는 바, 위 백 []은 1995. 6. 5.자 부산일보 제1면 하단에 5단 전체의 크기로 위 클럽에 관한 첫 번째 광고가 실린 후 위 클럽에 관한 독자들의 관심이 잇따르자 위 클럽을 취재하기로 마음 먹고 위 [] 회사를 방문하지 않은 채 그 직원인 소외 정 []에게 전화로 위 클럽에 가입하기 위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클럽에 관한 사항을 문의한 후, 자신의 신분이 기자임이 밝혀지자 원고로부터 직접 만나서 위 클럽의 목적 등에 관한 설명을 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위 광고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클럽을 설립하여 미혼남녀들에게 공개적인 사교의 장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려고 하였고, 위 1995. 6. 5.자 광고 이후 같은 달 9.까지 위 회사에 위 클럽에 관한 문의전화가 쇄도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위 클럽은 여자 19명, 남자 10명의 회원을 모집하였으나,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됨으로 인하여 회원의 가입 요청이 중단되고 기존의 가입회원들은 회원가입 신청을 철회하였으며, 원고는 회원모집 업무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바. 원고는 위 영업을 위하여 위 각 광고 등 신문광고비 금 30,874,500원, 직원급료 금 8,300,000원, 팸플릿 등의 인쇄 및 복사비 금 9,438,000원, 사무실 월차임, 관리비 금 2,281,730원, 사무실비품대금 4,088,000원, []호텔 사용료 금 1,368,335원, 직원 유니폼 대금 2,179,000원 등 합계금 58,529,565원을 지출하였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신문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여부에 관하여는 그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가 통상 신문을 읽는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에 원고의 이름이 직접 게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원고와 생활을 같이 하는 주변 사람들은 위 회사의 대표로서 위 클럽을 설립하여 위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원고를 지칭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가 허위의 사실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점, 기사의 제목과 기사에 사용된 문구, 기사의 흐름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볼 때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부유층 미혼 남녀만을 골라 호화사교클럽을 조직하여 초호화연회를 베풀고, 귀족모임을 피하는 등의 사람인 듯한 부정적 인상을 주고 있어,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어 수 많은 독자에게 보도, 공포됨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원고의 위 영업을 방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백 []의 사용자로서 동인의 직무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기사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재된 것이고, 기사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백 []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항변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사가 전반적으로 진실한 사실이라거나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백 []이 이 사건 기사 내용의 진실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영업을 위하여 지출한 위 1. 바. 항 기재 금 58,529,565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금원은 이 사건 기사의 게재여부와 관계없이 지출된 금원으로서 피고의 위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그러나 피고회사는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고 영업이 방해됨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피고회사가 위 부산일보의 같은 날 같은 면 하단에 위 클럽을 선전하는 광고를 실고, 바로 그 상단에는 위와 같은 기사를 게재한 점,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크기 및 게재 경위, 원고가 위 영업에 투자한 비용,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불이익, 원고의 나이와 경력,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그 위자료 액수는 금 5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이 사건 1996. 2. 13.자 청구취지및원인보충서부분 송달일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6. 2. 1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7. 3. 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3. 5.

재판장 판사 양 인 석
판사 조 성 제
판사 김 태 호

2심 判 決 文

사 건 : 97나3873 정정보도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이

부산 수영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중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갑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부산일보 주식회사

부산 동구

대표이사 김상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석

변론종결 : 1998. 2. 19.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1997. 3. 5. 선고 95가합18232 판결

주 문 : 1. 원심판결 중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2. 14.부터 1998. 2. 26.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

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제2심 모두 이를 20분하여 그 1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728,529,565원 및 이에 대한 1996. 2. 13. 청구취지정정 및 원인보충서 송달일로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원고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로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1. 인정되는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강제2호증, 강제3호증의 1 내지 5(강제3호증의 4는 을제1호증과 같다), 강제5호증의 1, 2, 강제6호증, 강제7호증의 1 내지 5, 강제8, 9, 10호증, 강제11호증의 1 내지 4, 강제12호증의 1, 강제14호증의 1 내지 4, 강제16호증의 1 내지 4, 강제17호증의 1, 2, 강제18호증의 1 내지 4, 강제19호증, 강제22, 23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장[] , 백[] , 당심증인 김[] 의 각 증언(증인 백[] 및 김[] 의 각 증언 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당심의 원고본인신문 결과, 원심법원의 주식회사 [] 호텔 대표이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제4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 및 위 증인 백[] , 김[] 의 각 일부증언을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 · 피고의 신분 등

원고는 1995. 3.경부터 [] 라는 이름의 사교클럽(이하 위 클럽이라고만 한다)을 조직, 운영하기 위하여 같은 해 6. 2. [] 라는 상호로 이벤트기획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회사가 발행하는 부산일보를 비롯한 일간지들에 광고를 내는 등으로 위 클럽을 홍보하여 회원모집에 착수하였던 자이고, 피고회

사는 부산, 경남 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산일보라는 제호의 일간지를 발행하는 회사이며, 소외 백 []은 위 부산일보의 기자로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던 자이다.

나. 이 사건 기사에 게재

피고회사는 원고의 광고의뢰에 따라 같은 해 6. 5.과 같은 달 9. 두차례 위 클럽을 선전하는 지면하단 5단크기의 통광고를 게재하였고, 위 두 번째 광고가 게재된 같은 달 9. 그 광고가 실린 같은 면(31면)의 상단에 4단으로 “호화사교클럽 물의”라는 제목과 “거액가입비... 부유층 남녀 모집”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그 광고의 주요내용 및 이 사건 기사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광고의 주요내용

산호빛 사연을 담은 6월의 해변에서 [] 클럽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 클럽은 지성과 교양을 겸비한 신사숙녀들의 프라이드를 지켜드리는 격조높은 사교모임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인들이 즐겨 찾는 품격있는 사교모임을 접할 수 없었던 한국의 미혼 지성인들을 위하여 [] 클럽이 여러분 가까이 왔습니다. 인기정상의 연예인·예술인과 우아하고 격조높은 런치파티와 함께 품위있는 분위기 속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격 : 20대 30대의 미혼남녀로서 클럽규정의 엄격한 심의를 거친 분에 한합니다. 의사, 교수, 법조인, 방송인, 건축, 세무, 설계, 회계사, 공·관기업체, 상장기업체, 기타 전문직 종사자로서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삶에 자신을 가지신 분들을 []에서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습니다. 등

(2) 이 사건 기사의 전문

최근 외국사교클럽과 유사한 친교클럽을 운영하는 업소가 부산에 등장,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거액의 입회비를 받고 미혼 남녀회원을 공개 모집해 사치품조와 계층간 위화감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 호텔 객실에 사무실을 차린 「 []」 회사는 외국의 유명사교클럽을 흉내낸 가칭 「 [] 클럽」이란 사교클럽을 조직, 20~30대 남녀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특히 이 업소는 부산 [] 호텔을 협조업체로 등장시켜 신용도를 높인 뒤 회원들로부터 연회비 1백 30만원과 월 참가비 33만원 등을 받고 매월 1회씩의 초호화 연회를 베풀 예정이며 연회에는 유명 연예인까지 대거 참여시킬 계획이다. 호텔객실인데도 버젓이 업소간판까지 내걸고 있는 이 회사는 전화문의를 통해 일단 고객을 선별,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을 상대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클럽회원으로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사회적 지명도가 높은 계층에 한해 자격을 한

정하고 있으며, 여자의 경우에는 재산과 미모 등을 주요 선발기준으로 정해 「귀족모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클럽회원의 비밀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호적초본과 졸업증명서, 소득세납세필증 등 각종 신상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울과 대구지역에도 지사를 개설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 업소의 관계자는 『하루 수백통의 문의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밝혔다. <백 [] 기자>

다. 기사의 진위 여부

(1) 이 사건 기사 중 진위 여부가 문제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기사 게재 당시 [] 회사의 사업장은 부산 해운대구 [] []에 소재하였고, 다만, 위 클럽의 행사장으로 위 [] [] 호텔의 연회장을 사용하기 위하여 객실 1실을 위 호텔에서부터 장기간 임차하는 것이 필요하였던 관계로 이를 임차하여 연락처로 사용하였으며, 임차한 호텔객실에 업소의 간판을 걸지도 아니하였고, 위 호텔을 협조업체로 하지도 않았다.

(나) 클럽의 연회비는 금 1,300,000원이었으나, 월 참가비는 금 130,000원이었다.

(다) 원고는 위 클럽의 행사에 진행자로서 연예인 2명을 참여시킬 계획이었다.

(라) 위 클럽의 회원의 자격을 특별히 한정하여 두지는 않았고, 다만 앞서 본 것처럼 신문광고를 통하여 의사, 교수, 법조인, 방송인, 건축, 세무, 설계, 회계사, 공·관기업체, 상장기업체, 기타 전문직 종사자로서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삶에 자신을 가진 사람들은 위 클럽의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누릴 수 있다고 하였을 뿐이다.

(마) 클럽의 여자 회원에 관하여 재산과 미모 등을 주요 선발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남녀 구분없이 입회신청서의 자기소개란에 신장, 눈의 색상, 머리카락 색, 체중, 쌍꺼풀, 곱슬여부, 혈액형, 시력, 특기, 취미, 종교 등을 환경란에 가족관계, 주거의 형태, 부모의 직업, 월소득액, 동산 및 부동산 소유 등을, 직업 및 경력란에 근무처, 부서, 직위, 근무경력, 연봉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입회신청서에 외모를 일부 기재하도록 한 것은 과거 원고가 일한 바 있는 호텔의 구직신청서를 참조하여 만들었던 관계로 그 구직신청서에 기재토록 되어있는 외모에 관한 항목이 위 자기소개란에 포함된 것이었다.

(바) 클럽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비서류로서 호적초본, 주민등록등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재학증명서), 반명함판 사진 2매,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요구하였으나, 소득세납세필증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2) 따라서 이 사건 기사는 그 내용 중의 상당한 부분이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라. 취재의 경위

위 백 []은 1995. 6. 5. 부산일보에 게재된 위 클럽의 첫번째 광고가 실린 후, 위 클럽에 관한 독자들의 다소 항의가 섞인 문의를 받고서 위 클럽을 취재하기로 마음먹고, 동료기자 소외 김 []으로 하여금 위 클럽에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가장하고 위 []의 직원인 소외 정 []에게 전화상으로 위 클럽 회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문의하게 한 후, 스스로도 위 정 []에게 같은 방법으로 위 클럽에 대하여 문의하다가 자신이 기자임이 밝혀지자 원고로부터 위 클럽에 관하여 설명을 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후, 다른 사실확인 절차를 빠뜨린 채 주로 위 광고의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

마. 기사 게재 전후의 기타 정황 등

(1) 원고는 위 클럽과 관련한 영업을 위하여 위 부산일보에 광고비 금 19,332,500원 상당의 광고를 게재하는 등 광고비 합계 금 30,874,500원 상당의 광고를 게재하였고(다만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광고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광고비채권을 포기하였다), 직원급료 금 8,300,000원, 팸플릿 등의 인쇄 및 복사비 금 9,438,000원, 사무실 월차임, 관리비 금 2,281,730원, 사무실비품대금 4,088,000원, []호텔 사용료 금 1,368,335원, 직원 유니폼 대금 2,179,000원 등 합계금 27,655,065원을 지출하였다.

(2) 위 []에는 1995. 6. 5. 광고이후 같은 달 9.까지 여러사람으로부터 회원가입 문의전화가 걸려오고 남녀 합계 29명의 회원을 모집하였으나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이후 회원가입요청이 중단되고 기존의 가입회원들도 모두 회원가입을 취소하여 원고 회원 모집 업무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는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및 표현에 사용된 어휘 등으로 보아 독자들에게 위 []가 위 클럽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거나, 위 클럽의 취지나 목적이 비윤리적인 것이라는 등의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에 족한 것이어서 위 백 []의 취재 및 기사 작성으로 인하여 위 []를 경영하는 원고의 영업을 방해되고 또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백 []의 취재 및 기사작성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회사는 위 백 []의 사용자로서 위 백 []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면책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먼저 이 사건 기사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믿지 아니하는 증거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기사의 상당부분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피고회사는 가사 그 내용에 진실하지 아니한 부분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백[]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믿지 아니하는 증거 이외에는 그와 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가 그 성격상 취재기자가 사실확인을 생략하고 기사를 작성하여야 할 만큼 신속을 요하는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백[]에게 대면을 요청하였으므로 위 백[]이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고, 원고를 대면하여 사실을 확인하기가 용이하였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로 위 클럽의 신문광고내용만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점을 알 수 있으므로(이 사건 기사는 위 신문광고내용만을 토대로 하여 위 백[]의 예단에 바탕을 둔 추측과 과장에 의하여 작성됨으로 인하여 진실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백[]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진실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회사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는, 위 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위 클럽에 관한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영업을 위하여 지출한 위 1. 마.의 (1) 기재 광고비 등 합계 금 58,529,565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바, 위 금원 중 피고회사에 대한 광고비 금 19,332,5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회사 또한 원고에 대한 위 광고비채권을 포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보 수 없고, 이를 제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기사의 게재와 관계없이 지출된 금원이고,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됨으로 인하여 지출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위 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금원이 이 사건 기사의 게재와 관계없이 지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클럽과 관련한 원고의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원고가 그 지출액 만큼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위 금원은 위 백[]의 불법행위와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바, 위 금원을 지출한 사실만으로 차 후 원고가 위 금원 상당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2) 다만, 피고회사는 원고의 영업이 방해되고, 명예가 훼손됨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원고의 나이와 경력,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불이익의 성질 및 그 정도, 이 사건 기사의 내용, 크기, 게재경위 및 허위의 정도, 원고가 위 영업에 투자한 비용, 이 사건 기사가 위 클럽의 광고가 게재된 날의 같은 면의 상단에 게재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할 때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수액은 금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1996. 2. 13. 청구취지정정 및 원인보충서부분 송달일인 1996. 2. 14.부터 피고회사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1998. 2.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회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회사에 대하여 위 인용금원을 초과하는 금원의 지급을 명한 피고회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되, 원고의 항소 및 피고회사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2. 26.

재판장 판사 진 봉 진
 판사 지 영 철
 판사 윤 근 수



IV.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형법 제309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무죄이다

서울지방법원 1994. 11. 22.자 판결 (94고합485, 94고합1032)

서울고등법원 1996. 8. 1.자 판결 (94노3855)

대법원 1997. 2. 14.자 판결 (96도2234)

事實概要

대법원(주심 김형선 대법관)은 1997년 2월 14일 한약업자인 정○○씨 외 1인을 피고로 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과 관련하여 판결문에서 “형법 제309조 제2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며 “피고인이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형법 제309조 제2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라고 밝혔다.

피고는 자신이 김□□씨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시킨 혐의와 무자격으로 한방의료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다.

1심 判 決 文

사 건: 94고합485, 94고합1032(병합)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나. 약사법 위반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 행사

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 고 인: 1. 가,나,라,마. 정○○, 한약업사

2. 다,라. 하○○, 정당인

검 사: 김진태

변 호 인: 변호사 박찬주, 백승현, 조용환, 김형태(피고인 1.을 위한 사선)

변호사 전문영(피고인 1.을 위한 국선)

주 문: 피고인 정○○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정○○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정○○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23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정○○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정○○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죄

피고인 하○○는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정○○은 한약업사로서 충남 천안시 ○○동 39의 21에서 해동한약방을 경영하는 자인 바,

1. 가. 한의사가 아니면서 1991. 9. 2. 위 ○○한약방에서 소화불량으로 찾아온 환자 이□□을 상대로 생년월일을 물어 오행분석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화불량 외에 추가로 신장염이 있다고 진단하는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금 7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90. 4.경부터 1993. 3.경까지 사이에 환자 4명을 상대로 합계 금 240,000원을 받고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고,

나. 한약업사로서는 한약품을 임의 조제할 수 없고,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성환의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판매만 할 수 있음에도, 1992. 1. 14. 위 해동한약방에서 관절염으로 찾아온 환자 이□□에게 소풍활혈탕을 처방하면서 임의로 황연, 백개자, 우술, 목과, 초오 등의 한약재 등을 더하여 조

제하여 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의약품의 임의 조제하고,

2. 공소외 김 [] (남, 35세)은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자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점에 착안, 허위사실로써 그를 비난하면 이것이 언론 등에 공포됨으로써 무자격 한약업사들의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도하에 김 []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1994. 2. 4. 김 []을 만난 사실이 없으며, 위 김 []의 서신은 그린벨트 관련건임에도 불구하고 1994. 4. 26. 서울구치소에서 세계일보 채 [] 기자를 만나 “2월 4일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 씨, [] 씨 누나, 지 [] 씨 등과 만나 [] 씨로부터 더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 자제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을 한데 이어, 같은날 22:30경 서울구치소 앞에서 한겨레신문 이 [] 기자 등 언론사기자 20여 명을 만나 “한약업사 구제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는 []의 개인서신을 받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여, 1994. 4. 27.자 한겨레신문 1면에 “김 [] 씨 자필로 서신이 왔는데 민원을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지난 2월 4일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이 [] 씨와 김 [] 씨, 김 [] 씨의 누나 등과 만났으며 김 [] 씨가 ‘더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 자제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는 등 피고인의 위 주장내용이 그대로 게재되게 함으로써 허위의 기사가 게재된 신문 약 수십만 부가 그 무렵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독자들에게 보급되게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김 []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맹 [], 선 [], 공 [], 변 [], 이 [], 전 []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감정인 김 []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판시 제2의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채 [], 이 [], 지 [], 김 [], 황 [] 정 [], 성 []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가 채 [], 성 []에 대하여 작성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제1항(판시 부정의료행위의 점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각 약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판시 각 의약품 임의조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판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각 죄 사이,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고 벌금형 병과)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전과없고, 피고인이 한약업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나 약사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실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인 이득이 경미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하○○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하○○는 행사할 목적으로 1992. 10. 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당 사무처 민원실에서 복사용지에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수신 보건사회부장관, 참조 약정국장, 제목 한약업사 자격시험 합격대상자 구제촉구건, 우리당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구제조치하도록 방침을 결정하여 동 민원서류를 보사부에 이첩하오니 보사부장관은 합격처리에 필요한 지침을 해당 시, 도지사에게 시달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 사무총장 김 []”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사무총장의 관인을 찍어 []당 사무총장 명의의 사문서 1통을 위조하고,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시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해 11. 4.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신 보건사회부장관, 참조 약정국장, 제목 한약업사 자격시험 합격대상자 구제재촉구건, 동민원을 불합리하게 처리하는 것은 정부 불신과 집단 민원 소지만 계속 될 것이므로 민자당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구제조치하도록 방침을 결정한 것이오니 보건사회부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 해당 시, 도에 '83년도 실시한 한약업사 자격시험 성적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여 한약업사 자격을 구비한 자에 한하여 구제조치에 필요한 지침을 시달하여 동 민원 해결에 협조하여 주시고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사무총장 김 []”라고 기재하여 민주자유

당 사무총장 김 [] 명의의 사문서 1통을 위조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먼저 1992. 10.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살피면, 증인 김 []이 이 과정에서 한 진술 및 위 '한약업사 자격시험 합격대상자 구제추구건, 문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피고인 정○○으로부터 민원서류를 접수하고는 대통령선거에 따른 득표 등을 의식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 하○○는 그 당시에 []당 민원조사부장 대우로 있으면서 민원인들로부터 진정, 탄원서 등의 민원서류를 접수받아 내용에 따라 분류하고, 그 내용에 따라 각 정부 부처에 이첩하던 업무를 맡아 왔으며, 위 피고인은 위 문서를 작성하여 통제실에서 통제확인을 받고, 총무국에서 사무총장의 직인을 찍는 등의 결제절차를 밟아 발송하였고, 그 당시는 대통령 선거가 임박하여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민원서류의 처리는 실질적으로 거의 위 피고인에게 위임되어 있었으며, 또한 그 당시 []당에서는 민원부서에서 문서를 작성하여 통제실로 가지고 가면 별다른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제실에서 통제도장을 찍어주고, 그 서류를 다시 총무국으로 가지고 가면 사무총장의 직인을 보관하고 있는 총무국 직원 역시 통제도장이 찍혔는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사무총장의 직인을 찍어 주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은 그 당시의 업무성격에 비추어 최소한 민원업무 처리 절차에 한하여는 위 피고인에게 위 당의 사무총장 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주어진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위 피고인이 작성한 위 문서가 통상 []당에서 정부부처로 민원을 이첩하던 양식과는 다르고, []당 내에서 정책위 의장을 중심으로 한 당의 회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어서 위 피고인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마음대로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목적이 어떠한 것인가는 내부관계에 그칠 뿐이지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며, 형식상 그 작성 명의를 허위가 없으므로 이는 소위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할 뿐이고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달리 위 피고인이 위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결국 이 부분 사문서위조죄 및 위 문서의 행사죄는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1992. 11. 4.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 살피면, 위 김 []의 진술 및 위 '한약업사 자격시험 합격대상자 구제추구건' 문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하○○는 위 '한약업사 자격시험 합격대상자 구제추구건'의 문서를 보사부로 받

송하였으나 보사부로부터 아무런 조치가 없자 피고인 정○○으로부터 다시 한번만 더 당 차원에서 촉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약업사 자격시험 합격대상자 구제재촉구건'이라는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을 한 후, 위 문서는 결제절차를 밟거나 발송하지 아니하고 보관한 채로 그 사본을 모사전송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정○○에게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사문서위조죄에서의 사문서라 함은 그 명의자가 작성한 진정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것 인지의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종류, 내용,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 문서는 A4 복사용지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비록 수신, 참조, 제목, 내용을 거쳐 ' [] 사무총장 김 [] '라고 찍혀 있어 문서의 양식을 갖추고 있기는 하나, 위 사무총장 명의의 서명도 없으며 직인도 찍혀 있지 아니하고, 그러한 정도의 문서양식은 공문서나 회사의 사문서 등을 기안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것이고, 더구나 그 내용이 [] 당에서 그 사무총장의 명의로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민원의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위와 같이 워드프로세서를 작성한 문서의 초안 정도에 불과한 정도만으로는 일반인들이 위 문서가 진정한 [] 당의 문서라고 보기에 는 미흡하다 할 것이고, 달리 위 문서가 진정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결국 이 부분 사문서위조죄 역시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하○○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정○○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은 1992. 12. 8. 위 해동한약방에서 피고인 하○○가 임의로 작성한 민자당사무총장 김영구 명의의 '한약업사자격시험 합격 대상자 구제촉구건'의 사본과 '한약업사 자격시험 합격대상자 구제재촉구건'의 사본을 위조된 점을 알면서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감사원에 진정서를 우송하면서 첨부하여 행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행사한 것이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무죄부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이 행사한 각 문서는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대상이 되는 위조된 사문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

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정○○이 별지 4 기재 환자들을 상대로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피고인은 위 환자들에게 한약업사로서 투약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자신은 한방 의료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이를 부인하고 있는 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법경찰리가 []

[]에 대하여 작성한 각 진술조서 및 압수된 각 투약부(증제1호 내지 증제8호), 투약카드(증제9호), 당뇨약(증제10호) 등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한편 증인 고 []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위 피고인에게 찾아가 진맥 등을 하고 약을 지은 것이 아니고 위 증인의 남편이 위 피고인에게 찾아가 위 증인의 증상을 이야기하고 보약을 지어 달라고 하여 약을 일단 지은 후 증인이 피고인을 찾아가 약을 받아 오면서 진맥을 한번 했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비록 위 피고인이 위 증인의 맥을 짚은 바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위 증인에 대하여 한약업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한방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위 피고인이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기로 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정○○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중 위 피고인이 위 김 []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1억2천만원은 변호사 수임료로서 공소의 지 []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이 []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소의 이 []에게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1994. 4. 26. 서울구치소에서 세계일보 채 [] 기자를 만나 “1억2천만원은 지 [] 씨를 통해 여의도 []호텔에 있는 김 [] 씨 사무실에서 김 []과 이 [] 변호사가 있는 자리에서 정치자금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같은날 22:30경 서울구치소 앞에서 한겨레신문 이 [] 기자 등 언론사기자 20여 명을 만나 “1억500만원을 여의도 []호텔 []의 사무실에서 이 []의 소개로 민원해결관련 정치자금으로 주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여 1994. 4. 27.자 한겨레신문 1면에 『김 []씨 쪽에 1억여 원 줬다』라는 제목아래 “92년 대선 직전인 12월 12일 1억 2천만원을 여의도 []호텔에 있는 김 [] 씨 사무실에서 주었다”, “이 돈은 변

호사 수입료가 아니라 한약업사들을 구제해 달라는 조건의 정치자금이었다”는 등 피고인의 위 주장내용이 그대로 게재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김 []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공연히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먼저 과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위 피고인은 지 []로부터 전해받은 어음의 부전지 말미에 이 []의 이름과 그 옆에 김 []의 이름이 써 있으며 지 []로부터 이것은 변호사 선임비가 아니라 민원해결관련 정치자금이라고 들어서 알게된 사실을 기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이며 당시에는 자신은 위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증인 지 []의 증언에 의하면 위 증인은 '83한약업사구제추진위원회에서 한약업사 시험에서 60점 이상의 성적을 올리고도 시험에서 낙방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일을 하여 오던 중, 1992. 10. 14. 위 이 []을 소개받아 동인에게 위 문제를 상의하면서 위 한약업사구제에 대하여 입법적인 절차 등을 포함한 모든 포괄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위임하면서 금 1억2천만원을 교부하게 되었으며, 그 당시 []당 중앙상무위원이던 위 증인은 그 후 위 이 []을 통하여 위 김 []을 소개받게 되었고, 그러한 인연으로 대통령선거에 임박하여서는 한약업사들의 모임 및 위 증인이 관여하고 있던 그린벨트해제추진위원회 대표들의 모임에 위 김 []이 참석까지 하게 되었으며, 위 증인은 위 김 []로부터 1992. 12. 14.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정책 건의해주신 내용 중 대부분을 적극 수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 1992. 12. 14.”이라고 기재된 각서까지 전달받았으나, 위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한약업사들을 구제하기 위한 민원은 처리되지 않았으며, 그러자 한약업사 회원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고소까지 당하게 된 위 증인이 회원들에게 자신이 정치적인 노력까지 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하여 위 이 []에게 어음을 건네주고 받은 어음 부전지 적요란의 이 []이라는 이름 옆에 다시 김 []이라는 이름을 위 증인이 써 넣고 회원들에게 이를 보여주며 회원들의 불만을 무마시키려 하였고, 그후 1994. 1.경 피고인 정○○으로부터 청와대 집무실의 모사전송기의 번호를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활동상황을 보내 그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 위 증인의 그동안의 활동상황을 보내줄 것을 부탁받게 되자 위 증인은 각종 탄원서 등의 자료와 함께 대통령선거 당시 자신들이 당선을 위하여 힘써왔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하여 위 김 []의 이름이 쓰여진 위 어음부전지와 위 각서를 위 피고인에게 보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록 위 피고인이 청와대로 위 서류들을 보낸 이후 이 부분이 문제시 되고, 그래서 1994. 2. 4. 서울 잡실에 있는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위 이 [] 과 지 [], 피고인 등이 만난 자리에서 위 이 [] 과 위 피고인이 언쟁을 하는 도중 위 지 [] 가 그 취지가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같은 경위로 위 어음부전지를 입수하고 그에 대한 위 지 [] 의 설명을 들은 위 피고인으로서 위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이야기한 위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기보다는(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인지 허위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진실인 것으로 믿은 그 내용을 말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결국 위 피고인에게는 위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할 것이며, 달리 위 피고인이 위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할 것이며, 달리 위 피고인이 위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위 공소사실과 단순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11. 22.

재판장 판사 김 주 형
판사 김 남 근
판사 김 상 현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환자성명	일시	장소	진료방법	병명	금액
1	공 []	90. 4. 3.	이산군 []면 소재 []한약방	문진, 오행	월경불순, 소화불량, 수족냉	7만원
2	변 []	90. 8. 23.	"	문진, 촉진, 오행	위염, 관절염, 소화불량	10만원
3	이 []	91. 9. 2.	"	문진, 오행	신장염, 소화불량, 눈 통증	7만원
4	전 []	93. 3. 12.	"	오행	비뇨기	약 반환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성명	병명	처방명(본방)	가감약재명
1	90. 3. 16.	충남 아산군 □ □ □	이 □	신염(두통)	보증치석탕	택사, 원육, 감초, 녹용, 공사인, 백두구
2	90. 3. 30.	"	전 □	기관기염	소청용탕	맥문동
3	90. 9. 26.	"	강 □ (오 □ 의모)		"	패모, 백급
4	92. 1. 14.	충남 천안시 □ □	이 □	관절염	소풍활혈탕	황연, 백개자 우슬, 목과, 초오
5	92. 3. 21.	"	김 □	담 성	소청용탕	곽향, 지각, 길경, 행임, 쌍백피

별지 3

순번	일시	대상	건명	행사방법
1	92. 12. 7.	청와대 민정비서실	진정서 등	진정서 뒷면에 사본으로 첨부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함
2	92. 12. 8.	감사원	"	"
3	93. 1. 19.	민자당 중앙당	"	"
4	93. 6. 10.	대검찰청	"	"
5	94. 2. 14.	청와대 외 6개소	"	"

별지 4

순번	환자성명	일시	장소	진료방법	병명	금액	비고
1	우 □	89.12.	아산군 □면소재 □한약방	문진	당뇨	액수미상	
2	"	90. 1.	"	"	"	"	
3	하 □	90.1.29.	"	문진, 오행	기관지 천식	30만원	

4	우	90.3	"	문진, 침	당뇨	약수머상	
5	차	90.2.22.	"	문진	식중독	18만원	
6	고	90.3.2.	"	문진, 맥진	기혈부족, 요통, 소화불량	50만원	
7	김	90.3.2.	"	문진, 오행	우측수족마비, 소화불량	7만원	
8	김	90.5.2.	"	문진	견비통	7만원	
9	이	90.6.1.	"	오행, 문진, 맥진	소화불량, 정력부족, 설사	30만원	
10	안	90.6.15.	"	"	생리불순, 혈압, 두통, 소화불량	10만원	
11	이	90.6.23.	"	"	신경성위염, 소화불량 원기부족	10만원	
12	이	90.7.1.	"	"	혈압, 사지통, 식욕부진	30만원	
13	성	90.7.14.	"	문진, 오행	빈혈, 요통	7만원	
14	정	90.7.	"	문진, 맥진, 타진	좌골신경통	5만원	
15	강	90.9.26.	"	오행, 문진	소화불량, 신장이상	20만원	
16	김	90.11.25.	"	문진	감기	15만원	
17	오	90.11.27.	"	문진, 촉진	신경통, 무릎관절	15만원	
18	성명불상	91.9.25.	"	오행, 문진	수족비통, 기관지염, 불면증	6만원	
19	이	91.10.21.	"	문진, 오행	식욕부진, 어깨마비, 정력부족	10만원	
20	오	91.10.23.	"	"	당뇨, 위염	10만원	
21	이	91.10.23.	"	문진, 맥진	생리불순	10만원	
22	윤	91.11.16.	천안시 봉명동 소재 해동한약방	"	고혈압, 당뇨	10만원	
23	정	92.1.5.	"	문진, 오행	당뇨	15만원	
24	이	92.1.14.	"	오행	관절염, 수족비통	10만원	

25	황 □	92.3.18.	"	문진,오행,	촉진관절염	15만원	
26	정 □	92.3.18.	"	문진	당뇨	60만원	
27	현 □	92.4.27.	"	문진, 오행	수족마비, 지방간, 소화불량, 불면증	15만원	
28	이 □	92.12.24.	"	문진	당뇨	25만원	
29	김 □	93.1.7.	"	문진, 맥진	기혈부족, 요통, 소화불량	50만원	
30	안 □	93.1.7.	"	"	정력부족	15만원	
31	김 □	93.1.7.	"	"	허약	15만원	
32	전 □	93.1.16.	"	"	디스크	18만원	
33	이 □	93.3.26.	"	"	수족비통, 요통	10만원	
34	박 □	93.5.3.	"	"	축농증	15만원	
35	박 □	93.5.18.	"	문진	수족비통, 소화불량, 당뇨	28만원	
36	안 □	93.5.30.	"	문진, 오행, 타진	정력부족, 요통	15만원	
37	김 □	93.8.11.	"	문진, 오행	소화불량	10만원	
38	예 □	94.1.4.	"	문진, 촉진, 오행	알레르기 피부염 (체질개선)	30만원	
39	박 □	94.1.7.	"	문진, 오행	수족마비	24만원	
40	박 □	94.1.7.	"	"	기혈부족	15만원	
41	박 □	94.1.7.	"	"	기혈부족	15만원	
42	손 □	94.2.14.	"	문진, 맥진, 오행	수족비통	10만원	

2심判決文

사 건 : 94노3855

가. 보건범죄단속등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나. 약사법 위반

다. 사문서 위조

라. 위조사문서 행사

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 고 인 : 1. 가, 나, 라, 마, 정○○, 한약업사
2. 다,라, 하○○, 정당인

항 소 인 : 피고인 정○○ 및 검사

검 사 : 이창복

변 호 인 : 변호사 백승헌, 정연순(피고인 정○○을 위하여)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 11. 22. 선고 94고합485, 1032(병합) 판결

주 문 :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정○○을 징역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하○○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정○○에 대하여는 원심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23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정○○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1. 피고인 정○○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정○○은 한약업사로서 찾아온 고객에게 건강상담을 하고 고객으로부터 병명을 듣거나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는 말만 듣고 바로 한약을 판매하였을 뿐, 환자를 진단하거나 오행분석 등의 방법으로 병명을 알아내어 한약을 처방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정○○이 진단을 하고 한방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약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정○○은 한약업사로서 한약을 임의 조제한 바 없고, 단지 기성한의서 11종에 기재된 처방과 수증용약례에 따라 환자의 요구에 의하여 한약재를 추가하는 등으로 한약을 혼합하여 판매하였을 뿐이고, 이는 한약업사에게 허용된 행위로서 약사법 위반죄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약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정○○은 세계일보 채 기자와 면담하면서 1994. 2. 4. 잠실 롯데호텔 커

피습에서 김 [] 과 그 누나를 만났거나 김 [] 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채 [] 기자로부터 정치자금을 김 [] 에게 주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김 [] 을 만난 적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피해자 김 [] 과 그 누나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황 [] 의원 사무실에서 본 적이 있다고 말하였을 뿐인데, 채 [] 기자가 잘못 알아들었거나 피고인 정○○의 말을 왜곡하여, 피고인 정○○이 1994. 2. 4. 잠실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김 [] 과 그 누나를 만났으며, 그 자리에서 김 [] 이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 자제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잘못 보도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정○○은 “추진위원회에서 정책 건의해 주신 내용 중 대부분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서신 사본을 지 [] 로부터 받아 보게 되었는데, 위 서신은 김 [] 이 한약업사 구제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는 서신이 맞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 정○○은 지 [] 로부터 위 서신이 한약업사 구제에 관한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위 서신이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없었고, 또한 피고인 정○○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 정○○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김 [] 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항소 이유

가. 피고인 하○○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하○○에 대한 이 사건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공소사실은 그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증 법칙을 위반하고 사문서 위조의 법리에 관한 오해를 하여, 1992. 10. 1.자 [] 당 사무총장 김 [] 명의의 문서에 대하여는, 피고인 하○○에게 위 당의 사무총장 명의를 사용하여 그와 같은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주어진 것이라고 보고, 1992. 11. 4.자 [] 당 사무총장 김 [] 명의의 문서는 그것이 문서의 초안에 불과하여 진정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외관과 형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 정○○에 대한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한약업사 자격시험 합격대상자 구제촉구건’ 및 ‘한약업사 자격시험 합격대상자 구제촉구건’ 이 각 위조된 문서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하○○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하○○는 위 각 문서를 피고인 정○○에게 모사전송하기 전에 위 각 문서는 사무총장 명의로 나갈 수 없는 것으로 피고인 하○○가 임의로 작성하여 보사부에 발송한 것이니 쓸데없이 사용하지 말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정○○은 위

각 문서의 모사전송 사본을 받은 지 2, 3일 후에도 피고인 하○○로부터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으므로, 피고인 정□□이 위 각 문서가 위조된 점을 알면서 이를 각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 정○○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다. 피고인 정○○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의 점 중 일부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정○○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 환자들을 상대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이미 제출된 각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할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이 그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은 유지될 수 없다.

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중 일부에 대하여

지□□, 김□□, 정□□의 각 진술과 이□□의 예금계좌, 변호사 선임 계약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적시한 “120,000,000원이 지□□를 통하여 김□□의 사무실에서 김□□과 이□□변호사가 있는 자리에서 한약업사들의 민원해결관련 정치자금으로 전달되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허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정○○은 그 적시 사실이 허위인 점을 알았으며, 설사 피고인 정○○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자료나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3. 판단

가. 피고인 정○○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이 각 판시한 바와 같이 한약업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환자의 생년월일로 이른바 오행분석을 하여 병명을 진단하거나 촉진 등으로 진단을 하여 한약을 처방하는 등으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한 사실, 기성환의서에 기재된 처방과 달리 한약재를 임의로 추가하는 등으로 한약을 임의 조제한 사실, 1994. 2. 4. 잠실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김□□과 그 누나 등을 만났고, 김□□로부터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 자제하라”는 말을 들었고, “한약업사구제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는 김□□의 개인서신을 받았다”고 허위주장을 하여 그와 같은 허위의 사실이 신문에 게재되게 한 사실을 각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기록

을 살펴 보아도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한 각 사실 인정 및 판단 과정에 아무런 위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정○○의 각 항소 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1) 하○○에 대한 각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다음에 드는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하○○에게 []당 사무총장 명의의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인 하 []가 문서 작성 권한을 가진 사람의 결재를 받은 바 없이 권한을 초과하여 문서를 작성하여 각 행사하였고, 1992. 11. 4.자 사문서는 일반인이 진정한 사문서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과 형식을 갖춘 문서임이 명백하고 문서 작성 명의자의 직인과 날인이 없다 하여 사문서 위조의 객체인 사문서로 보는데 지장이 없어 피고인 하○○에 대한 각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하겠으므로 검사의 위 논지는 이유 있다.

(2) 피고인 정○○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한약업사 자격시험 합격대상자 구제촉구건' 및 '한약업사 자격시험 합격대상자 구제재촉구건'이 피고인 하○○에 의하여 위조된 문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하○○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정○○은 피고인 하○○로부터 모사전송으로 위 각 문서를 받기 전에 그로부터 위 각 문서는 사무총장 명의로 나갈 수 없는 것으로 피고인 하○○가 임의로 작성하여 보사부에 발송한 것이니 쓸데없이 사용하지 말라는 부탁을 받았고, 위 문서의 모사전송 사본을 받은 지 2, 3일 후에도 피고인 하○○로부터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으므로, 피고인 정○○은 위 각 문서가 위조된 점을 알면서 이를 각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인 정○○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조사한 다음에 드는 각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의 각 환자에 대하여 각 그 기재와 같은 한방 진료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환자 중 위 별지 순번 제4, 11, 13, 26번의 각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에 대하여 한방진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유지될 수 없다.

(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4. 4. 26. 서울구치소에서 세계일보 채 [] 기사를 만

나 120,000,000원은 지 [] 씨를 통해 여의도 [] 호텔에 있는 김 [] 씨 사무실에서 김 [] 과 이 [] 이 있는 자리에서 정치자금으로 전달됐다고 주장하고, 같은 날 22:30경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면서 한겨레신문 이 [] 기자 등 20여 명의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105,000,000원을 여의도 [] 호텔 김 [] 의 사무실에서 이 [] 의 소개로 민원해결 관련 정치자금으로 주었다고 주장하여 1994. 4. 27.자 한겨레신문 1면에 “김 [] 씨 쪽에 1억여 원 줬다”라는 제목 아래 “92년 대선 직전인 12월 12일 1억2천만원을 여의도 [] 호텔에 있는 김 [] 씨 사무실에서 주었다”, “이 돈은 변호사 이 [] 에게 준 변호사 수임료가 아니라 한약업사들을 구제해 달라는 조건의 정치자금이었다”는 등의 피고인 정○○의 위와 같은 주장 내용과 같은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심 증인 정 [], 지 [], 당심 증인 권 [] 의 각 진술과, 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를 종합하면, 피고인 정○○이 지 [] 로부터 전해 받은 어음의 부전지 말미에 이 [] 과 김 [] 의 성명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지 [] 로부터 그가 이 [] 을 통하여 김 [] 에게 105,000,000원을 정치자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말을 들었고, 실제로 김 [] 이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한약업사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한약업사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 [] 가 피고인에게 “추진위원회에서 정책 건의해 주신 내용 중 대부분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 1992. 12. 14.”라고 기재된 김 [] 의 서신을 받았다고 과시하면서 위 서신이 한약업사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는 내용의 서신이라며 피고인 정○○에게 그 사본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 정○○ 으로서는 지 [] 가 김 [] 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정○○의 항소는 이유 없고, 검사의 항소 중 하○○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정○○에 대한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의 점에 대한 일부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있다 할 것인 바, 피고인 하○○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피고인 정○○에 대하여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과 당심에서 비로소 유죄로 인정된 각 범죄 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로

하고 각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정○○은 한약업사로서 충남 천안시 []에서 해동한약방을 경영하는 자, 피고인 하○○는 1996. 2. 5.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인 바,

1. 피고인 정○○은

가. 한의사가 아니면서, 1991. 9. 2. 위 해동한약방에서 소화불량으로 찾아온 환자 이 []을 상대로 생년월일을 물어 오행분석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화불량 외에 추가로 신장염이 있다고 진단하는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금 7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89. 12.경부터 1994. 2. 14.경까지 사이에 환자 34명을 상대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고,

나. 한약업사로는 한약품을 임의 조제할 수 없고,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성 한의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판매만 할 수 있음에도, 1992. 1. 14. 위 해동한약방에서 관절염으로 찾아온 환자 이 []에게 소풍활혈탕을 처방하면서 임의로 황연, 백개자, 우술, 목과, 초오 등의 한약재 등을 더하여 조제하여 주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의약품의 임의 조제하고,

다. 1992. 12. 8. 위 해동한약방에서 피고인 하○○가 임의로 작성한 []당 사무총장 김 [] 명의로 '한약업사 자격시험 합격대상자 구제촉구건'의 사본과 '한약업사 자격시험합격 대상자 구제촉구건'의 사본을 위조된 점을 알면서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감사원에 진정서를 우송하면서 첨부하여 행사하는 등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행사하고,

라. 공소외 김 [] (남, 35세)은 현직 대통령의 아들로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점에 착안, 허위사실로 그를 비난하면 이것이 언론 등에 공표됨으로써 무자격 한약업사들의 한약업사 자격취득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도하에 김 []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 정○○이 199. 2. 4. 김 []을 만난 사실이 없으며, "추진위원회에서 정책 건의해 주신 내용 중 대부분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 1992. 12. 14."라고 기재된 김 []의 서신은 그린벨트 관련건임에도 불구하고, 1994. 4. 26. 서울구치소에서 세계일보 채 [] 기자를 만나 "2월4일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 씨, [] 씨 누나, 지 [] 씨 등과 만나 [] 씨로부터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 자제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을 한 데 이어, 같은날 22:30 경 서울구치소 앞에서 한겨레신문 이 [] 기자 등 언론사기자 20여 명을 만나 "한약

업사 구제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는 김 []의 개인서신을 받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여, 1994. 4. 27.자 한겨레신문 1면에 “김 [] 씨 자필로 서신이 왔는데 민원을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지난 2월 4일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이 [] 씨와 김 [] 씨, 김 [] 씨의 누나 등과 만났으며 김 [] 씨가 ‘더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 자제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는 등 피고인 정○○의 위 주장내용이 그대로 게재되게 함으로써 허위의 기사가 게재된 신문 수십만 부가 그 무렵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독자들에게 보급되게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김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하○○는

가. 행사할 목적으로 1992. 10. 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당 사무처 민원실에서 복사용지에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수신 보건사회부장관, 참조 약정국장, 제목 한약업사 자격시험 대상자 구제촉구건, 우리 당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구제조치하도록 방침을 결정하여 동 민원서류를 보사부에 이첩하오니 보사부장관은 합격처리에 필요한 지침을 해당 시, 도지사에게 시달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 사무총장 김 []”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사무총장의 직인을 찍어 []당 사무총장 명의의 사문서 1통을 위조하고

나. 위 같은 일시, 장소에 위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해 11. 4.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신 보건사회부장관, 참조 약정국장, 제목 한약업사 자격시험 대상자 구제재촉구건, 동 민원을 불합리하게 처리하는 것은 정부 불신과 집단민원 소지만 계속될 것이므로 []당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구제조치하도록 방침을 결정한 것이오니 보건사회부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 해당 시, 도에 '83년도 실시한 한약업사 자격시험 성적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여 한약업사 자격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구제조치에 필요한 지침을 시달하여 민원 해결에 협조하여 주시고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사무총장 김 []”라고 기재하여 []당 사무총장 명의의 사문서 1통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하○○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및 피고인 정○○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에 대한 증거로 “피고인들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원심 증인 김 []의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김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수사기록 제470내지 475정의 ‘한약업사 자격시험 합격대상

자 구제촉구건’ 사본 및 ‘한약업사 자격시험 합격대상자 구제촉구건’ 사본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피고인 정○○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및 약사법 위반의 점에 대한 증거로 “당심 증인 []

[]의 각 진

술, 사법경찰리 작성의 이 []을 제외한 위 각 증인 및 현상주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의 회신, 경희대학교 의과대학부속 한방병원장의 회신의 각 기재, 압수된 투약부(증제1내지8호), 투약카드(증제9호), 당뇨약(증제10호)의 현존”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이 들고 있는 각 증거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정○○의 무면허의료행위의 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피고인 정○○의 각 의약품 임의 조제의 점: 각 약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정○○의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1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구형법(1995. 12. 29. 법률 제 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9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하○○의 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1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하○○의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1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피고인 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의 징역형에 가중하되 벌금형 병과)

피고인 하○○: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된 ‘한약업사 자격시험 합격대상자 구제촉구건’을 행사한 죄의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정○○: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정○○: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정○○: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무죄 부분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의 일부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정○○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4의 순번 제1, 4, 7내지12의 각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점은, 이에 부합하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

[]에 대한 각 진술조서가 원심이나 당심 법정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바 없어 각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된 투약부(증 제 1내지8호), 투약카드(증제9호)만으로는 위 각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별 지 2의 순번 제2, 3, 5, 6의 각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의 점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원 심 증인 [], 당심 증인 []의 각 진술과 사법경찰리 작성의 위 증인들에 각 진술조서의 기재 및 압수된 투약부(증제1내지8호), 투약카드(증제9 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정○○이 한약업사로서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진단 등을 수 반하는 한방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외 별지 4 기재 각 의 료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보건범죄단속 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 니한다.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일부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정○○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이 1994. 4. 26. 서울구치소에서 세 계일보 채 [] 기자를 만나 120,000,000원은 지 [] 씨를 통해 여의도 [] 호텔 에 있는 김 [] 씨 사무실에서 김 [] 파 이 [] 이 있는 자리에서 정치자금으로 전달 됐다고 주장하고, 같은 날 22:30경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면서 한겨레신문 이 [] 기자 등 20여 명의 기자들을 만나 105,000,000원을 여의도 [] 호텔 [] 의 사무실에서 이 [] 의 소개로 민원해결 관련 정치자금으로 주었다고 주장하여 1994. 4. 27.자 한겨레신문 1면에 『김 [] 씨 쪽에 1억여 원 줬다』라는 제목 아래 “92년

대선 직전인 12월 12일 1억2천만원을 여의도 맨하탄호텔에 있는 김 [] 씨 사무실에서 주었다”, “이 돈은 변호사 수임료가 아니라 한약업사들을 구제해 달라는 조건의 정치자금이었다”는 등의 피고인 정○○의 주장 사실과 같은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김현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의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996. 8. 1.

재판장 판사 최 병 학
판사 하 광 룡
판사 최 강 섭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환자성명	일시	장소	진료방법	병명	금액	비고
1	[]	89.12.	아산군 면소재 [] 한약방	문진	당뇨	약수미상	
2	"	90. 1.	"				
3	"	90.3.	"	문진, 침	당뇨	약수미상	
4	[]	90.4.3.	"	맥진, 문진, 오행	월경불순, 소화불량, 수족냉	7만원	
5	[]	90.6.1.	"	오행, 문진, 맥진	소화불량, 정력부족, 설사	30만원	
6	[]	90.6.15.	"	"	생리불순, 혈압, 두통, 소화불량	10만원	
7	[]	90.6.23.	"	"	신경성위염, 소화불량, 원기부족	10만원	
8	[]	90.7.1.	"	"	혈압, 사지통, 식욕부진	30만원	
9	[]	90.7.14.	"	문진, 오행	빈혈, 요통	7만원	
10	[]	90.7.	"	문진, 맥진, 타진	퇴골신경통	5만원	
11	[]	90.8.23.	"	문진, 촉진, 오행	위염, 관절염, 소화불량	10만원	
12	[]	90.11.27.	"	문진, 촉진	신경통, 무릎관절	3만원	
13	[]	91.9.2.	천안시 동소재 [] 한약방	문진, 오행	신장염, 소화불량, 눈통증	10만원	
14	성명불상	91.9.25.	"	오행, 문진	수족비통, 기관지염, 불면증	6만원	
15	[]	91.10.21.	"	문진, 오행	식욕부진, 어깨마비, 정력부족	10만원	
16	[]	91.10.23.	"	"	당뇨, 위염	10만원	

17		91.10.23.	"	문진, 맥진	생리불순	10만원	
18		91.11.16.	"	"	고혈압, 당뇨	10만원	
19		92.1.5.	"	문진, 오행	당뇨	15만원	
20		92.1.14.	"	오행	관절염, 수족비통	10만원	
21		92.3.18.	"	문진, 오행, 축진	관절염	15만원	
22		92.3.18.	"	문진	당뇨	60만원	
23		92.4.27.	"	문진, 오행	수족마비, 지방간, 소화불량, 불면증	15만원	
24		92.12.24.	"	문진	당뇨	25만원	
25		93.1.16.	"	문진, 맥진	디스크	18만원	
26		93.3.12.	"	"	비뇨기	15만원	
27		93.3.26.	"	"	수족비통, 요통	10만원	
28		93.5.3.	"	"	축농증	15만원	
29		93.5.18.	"	문진	수족비통, 소화불량, 당뇨	28만원	
30		94.1.4.	"	문진, 축진, 오행	알레르기 피부염 (체질개선)	30만원	
31		94.1.7.	"	문진, 오행	수족마비	24만원	
32		94.1.7.	"	"	기혈부족	15만원	
33		94.1.7.	"	"	기혈부족	15만원	
34		94.2.14.	"	문진, 맥진, 오행	수족비통	10만원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성명	병명	처방명(분방)	가감약재명
1	90. 3. 16.	충남 아산군		신염(두통)	보중치석탕	텍사, 원육, 감초, 녹용, 공사인, 백두구
2	90. 3. 30.	위 같은 곳		기관지염	소청용탕	매문동
3	90. 9. 26.	위 같은 곳	(의모)	소화불량, 신장이상	"	패모, 백급
4	92. 1. 14.	충남 천안시		관절염	소풍활혈탕	황연, 백개자, 우슬, 목과, 초오
5	92. 3. 21.	위 같은 곳		담 성	소청용탕	곽향, 지각, 길경, 행임, 쌍백피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대상	건명	행사방법
1	92. 12. 7.	청와대 민정비서실	진정서 등	진정서 뒷면에 사본으로 첨부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함
2	92. 12. 8.	감사원	"	"
3	93. 1. 19.	민자당 중앙당	"	"
4	93. 6. 10.	대검찰청	"	"
5	94. 2. 14.	청와대 외 6개소	"	"

별지 4 무죄부분

순번	환자성명	일시	장소	진료방법	병명	금액	비고
1		90.1.29.	이산군 면소재 한약방	문진, 오행	기관지천식	30만원	
2		90.2.22.	"	문진	식중독	18만원	
3		90. 3.	"	문진, 맥진	기혈부족, 요통, 소화불량	50만원	
4		90.3.2.	"	맥진, 오행	우측수족마비, 소화불량	7만원	
5		90.5.21.	"	문진	견비통	7만원	
6		90.9.26.	"	오행, 문진	소화불량,신장이상	20만원	
7		90.11.25.	"	문진	감기	15만원	
8		93.1.7.	천안시 동소재 한약방	문진, 맥진	기혈부족, 요통, 소화불량	50만원	
9		93.1.7.	"	"	정력부족	15만원	
10		93.1.17.	"	문진, 오행	허약	15만원	
11		93.5.30.	"	문진, 오행, 타진	정력부족, 요통	28만원	
12		93.8.11.	"	문진, 오행	소화불량	15만원	

大法院 判決文

사 건 : 96도223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약사법 위반·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 고 인 : 정○○ 외 1인

상 고 인 :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 변호사 백승현 외 1인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6. 8. 1. 선고 94노3855 판결

주 문 :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정○○의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 및 피고인 하○○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그 명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하○○의 이 사건 사문서위조죄 및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위조사문서 행사죄의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본즉 수궁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의 이 점에 대한 판시 취지는 이 사건 []당 사무총장 명의의 각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피고인 하○○에게 있었다는 입증책임이 위 피고인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원심이 명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문서에 관한 범행 당시 위 피고인에게 위 각 문서의 작성권한이 없었음이 인정된다는 취지이므로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한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위반한 잘못도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문서에 관한 범행 당시 []당 사무총장 명의의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피고인 하○○가 문서 작성권한을 가진 사람의 결재를 받은 바 없이 권한을 초과하여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죄가 된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문서위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정○○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그 명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정○○의 이 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 및 약사법 위반죄의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수공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한약업사 자격밖에 없는 피고인 정○○이 환자의 생년월일로 이른바 오행분석을 하여 병명을 진단한 후 한약을 처방하였다면, 그 오행 분석은 환자의 병상과 병명을 규명하는 판단작용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어서 일종의 진찰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오행분석에 의한 처방은 일종의 치료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이는 의료법 제25조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약사법 제36조 제2항에 의하여 한약업사에게 허용되는 혼합판매행위는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 기성한의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판매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정○○이 오행분석에 의하여 병명을 진단한 후 자신의 처방에 의하여 기성한의서에 기재된 처방(본방)에 임의로 다른 한약재를 추가하여 한약을 조제하였다면 이는 약사법 제36조 제2항의 혼합판매가 아니라 약사법 제26조 제1항의 의약품의 제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153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약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그 명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정○○의 이 사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 사실 중 그 판시 일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본즉, 수공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4.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1983년에 실시된 한약업사 자격시험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받고도 불합격한 자들로 구성된 전국83한약업사자격취득대책위원회 고문인 공소의 지 []가 위 대책위원회의 회원들로부터 한약업사자격취득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1인당 금 300만원씩을 각출받아 자신이 대표로 한약업사 자격취득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김 []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 수임료로 착수금 1,000만원, 성공보수금 9,000만원을 선불하되 패소할 경우 성공보수금은 반환하기로 약정하여 함께 금1억원을 위 각출금에서 지급하였으나 1991. 9.경 위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실, 새로운 구제책을 찾고 있던 위 지 []는 공소의 조 []의 소개로 1992. 10.

14. 이 []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 변호사를 만나 위 대책위원회 회장이던 공소의 김 [] 의 입회하에 한약업사 자격취득을 위한 소송이나 입법청원 등 모든 가능한 법적 절차를 위임하는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선임료는 착수금을 금 1억 2,000만원, 성공보수를 금 2억원으로 하고, 착수금을 위 김 [] 변호사로부터 반환 받을 금 9,000만원에 금 3,000만원을 더하여 지급하기로 하여 착수금 중 금 1억500만원은 지급일을 1992. 12. 12.로 하는 지 [] 발행의 약속어음 5장을 교부하고, 나머지 금 1,500만원은 계약 당일 대전에 내려 간 위 지 [] 가 온라인으로 이 [] 변호사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위 어음의 지급기일까지 어음의 지급기일 연장을 요구하여 지급기일을 1993. 1. 8.로 하는 지 [] 발행의 약속어음 3장으로 교환하였다가 1993. 1.경 금 7,500만원만 결제되고 금 3,000만원짜리 어음 1장에 대하여는 지급기일을 다시 같은 해 1. 20.로 연기하였다가 1. 20. 전에 지 [] 가 이 [] 변호사에게 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어음은 반환받은 사실, 그런데 위 선임계약 후 지 [] 는 당시 이 [] 변호사가 [] 당의 김영삼 대통령 후보의 아들인 김 [] 의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있음을 알고 김 [] 에게 자신들의 문제에 도움을 청하려 하여 이 [] 변호사의 소개로 1992. 11. 초 여의도 [] 호텔 안의 김 [] 의 사무실에서 김 [] 을 만나 자신들이 한약업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후 1992. 11. 26. 서울 [] 호텔에서 위 대책위원회 회원 70여 명이 모인 자리에 김 [] 이 이 [] 변호사와 함께 나가 지지를 부탁하고 이 [] 변호사는 구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를 한 사실, 지 [] 를 비롯한 위 대책위원회 회원들은 선거 후에 자신들의 구제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하였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도 곧바로 성과가 없자 위 위원회 회원들은 지 [] 에 대하여 돈의 사용처를 추궁하는 등 하여 지 [] 가 곤경에 처하게 되자, 지 [] 는 1993. 1. 말경 서울 서초구 [] 호텔에서 열린 83한약업사자격취득추진위원회에서 회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한약업사 자격취득을 위한 정치자금을 현찰이 없어 어음을 할인하여 현금으로 바꿔서 주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또 같은 달 31. 유성 [] 호텔에서 열린 83한약업사자격취득추진위원회 총회에서 어음을 사채시장에서 바꿔서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였는데 비밀을 지켜야 하므로 다 말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지 [] 는 위 약속어음이 정치자금의 지급에 사용되었다고 한 자기의 주장에 맞추기 위하여 변호사 선임계약 당시 어음을 발행하면서 어음부전에 '이 []' 이라고 기재하였던 것에 ()를 치고 그 아래에 '김 []!' 이라고 추가 기입한 사실, 피고인 정○○도 위 대책위원회의 회원을 통하여 이러한 내용을 들어서 알게 되어 1994. 1. 말경 지 [] 에게 대통

령 집무실에 팩스로 자신들의 구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내겠다고 하자 지[]는 위 어음부전을 팩스로 피고인 정○○에게 전송하여 이를 받아 본 피고인 정○○은 위 어음이 정치자금으로 김[]과 이[]에게 교부된 것으로 생각하여 그러한 내용의 진정서를 대통령 비서실에 팩스로 제출하였고, 그 후 1994. 2. 4. 서울 잠실 []호텔에서 이[] 변호사와 지[]가 피고인 정○○에게 위 돈이 정치자금이라 아니라 변호사 수임료인데 왜 그런 진정을 하느냐고 추궁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후, 이 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되면서 1994. 4. 26. 22:30경 서울구치소 앞에서 한겨레신문 이[] 기자 등 언론사기자 20여 명에게 “1억500만원을 여의도 []호텔 김[]의 사무실에서 이[]의 소개로 민원해결 관련 정치자금으로 주었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정○○의 위 발언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발언은 허위사실의 적시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28. 선고 94도2186 판결 참조). 그런데 위에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 정○○은 공소외 지[]가 이 사건 금원이 정치자금으로 교부되었다고 한 말을 진실한 것으로 확신하였고 이러한 확신은 1994. 2. 4. 이[] 변호사와 지[]의 추궁만으로 쉽사리 깨어지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위 피고인으로서 자신의 발언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 정○○이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라고 할 것인 바, 원심의 판시는 그 이유설시에 있어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결국은 위와 같은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인정을 잘못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형법 제309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동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나 같은 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도 같은 법 제309조 제1항의 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도1732 판결 참조), 또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심리의 과정에 비

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이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305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위 인정사실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보고, 특히 일죄로 기소된 이 사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일부의 점에 대하여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점 등과 이 사건의 진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을 형법 제309조 제1항이나 제307조 제1항으로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를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도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2. 14.

재판장 대법관 박 만 호
대법관 박 준 서
주심 대법관 김 형 선
대법관 이 용 훈

□

에 기재한 뒤, 이를 약 300여 부 전자복사하여 속초신용협동조합의 약 260여 명의 조합원들에게 나눠줌으로써 피해자들 및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1년6월, 2심에서 1백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피고는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1심 判決文

사 권: 95고단220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 고 인: 1. 김○○, 정당인
2. 정○○, 제과점업

검 사: 윤보성

변 호 인: 변호사 김택정(피고인 김○○을 위하여)
변호사 한준희(피고인 정○○을 위하여)

주 문: 피고인 김○○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정○○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김 []은 1989. 2.경부터 1992. 2.경까지 속초시 [] 소재 속초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인 바, 1990.경 위 조합에서는 조합사옥을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현 조합사옥이 있는 부지를 매수한 다음 1992. 1. 16.경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춘천시 [] 소재 소위 공소외 광산종합건설주식회사가 공사비 금 657,000,000원에 낙찰을 받아 사옥신축공사를 시작하여 1993. 1.경 준공된 사실이 있으며, 그 시경 위 조합 이사인 상피고인 정○○은 위 사옥신축공사에 비리가 있는 것으로 의문을 품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위 조합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조합의 공금이 횡령되었거나 과다지출되는 등의 비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위 정○○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므로 위 조합에서는 신용협동조합 강원도연합회에 감사를 의뢰하고, 위 연합회에서는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에 감사를 의뢰하여 위 중앙회에서 감사팀이 내려와 1993. 6. 7.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건축계획미흡, 건축위원회활동 부적, 설계업무 부적, 공사계획업무 미흡, 변칙 업무처리, 회계 변칙처리 등 사소한 부분이 지적되었을 때 조합의 공금이 유용되었거나

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비리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위 정○○도 1993. 7. 2.경 “조합사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관계자에게 어떠한 개인적 비리나 부정이 없었으며 신협자산에 손해를 끼친 바가 없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경로나 방법으로든지 건축에 관계한 모든 개인과 조합의 명예를 손상할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이를 위반시는 민형사적인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조합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정○○, 위 조합의 평조합원인 공소의 정□□와 공모하여 위 조합사옥 신축공사 당시 조합이사장이던 피해자 최□□, 전무인 피해자 최□□, 감사인 피해자 최□□, 광산종합건설주식회사 이사이자 현장소장이던 피해자 김□□을 비방할 목적으로, 1994. 10. 하순경 위 정○○은 위 조합사옥신축공사의 비리에 대해서 질문하는 위 정□□와 위 정○○에게 “자신은 이미 그 건에 대해 각서를 써준 바 있기 때문에 직접 나서서 할 수는 없으니 질의서를 보내주면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사실을 밝히자”고 하여 같은 해 11. 5.경 위 정○○은 위 정□□와 함께 위 정○○ 앞으로 “속초신협 건축에 관한 의혹에 대해 답변을 부탁하며, 건축의혹에 관한 일들이 9,000여 조합원 및 속초사회에 명백히 밝혀지기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1995. 1. 5.경 속초시□□□□소재 위 정○○ 경영의 제과점에서 위 정○○은 위 정○○에게 ‘이사장님과 임원에게’ 라는 제하에 “조합사옥 건축계약서가 위조되었고, 건축공사 낙찰은 광산종합건설에서 하였지만 무면허 업자인 김□□이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였고, 흙막이공사와 관련하여 금 25,000,000원을 과다지출하였고, 냉난방공사 대금은 낙찰금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최□□과 최□□이 공모하여 하도급업자인 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냉난방비로 금 75,000,000원을 지출하였고, 1992 1. 1. 정부노임 단가로 신축공사 대금을 정하였기 때문에 노임을 인상하여 지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김□□, 최□□, 최□□이 공모하여 노임을 과다지출하였고, 주차장 설치비용조로 금 34,600,000원을 최□□과 최□□이 횡령하였고, 실내 인테리어공사를 수의계약하여 금 110,000,000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신용협동조합법의 계약규정 제17조에 위배되는 일로서 조합에 손해를 끼쳤고, 조합사옥 일부를 라이온스와 요식협회에 무료 임대하였는데 실무자의 업무미숙으로 임대료에 대해 세금이 금 2,500,000원이나 부과되어 납부되었으므로 실무책임자인 최□□ 전무가 이를 변상하여야 하는데도 감사인 최□□을 이를 묵인하였고, 조합사옥 입찰 당시 특수조건에 김○○은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는데 최□□이 특수조건을 위조하였고, 문□□은 조합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고 거래실적도 없는데 최□□과 최돈○이사, 변□□이사가 공모하여 문□□ 소유 자연녹지 지역의 임야를 금 30,000,000

원에 근거당설정받은 다음 대출금이 실제로는 문 []에게 지불되지 않고 하도급업자인 김 []에게 주어서 공사비로 충당하게 하였으니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1995. 1. 7.까지 서면으로 답하지 않으면 민, 형사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내용의 최고서 사본을 건네주어 위 정 []는 위 정○○, 공소외 박 []와 함께 이를 근거로 같은 달 15.경 속초시 [] 소재 ‘ []’ 커피숍에서 ‘서명운동에 동참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조합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비리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백지에 기재하고, 위 정○○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최고서를 첨부한 다음 이를 약 300여 부 전자복사하여 같은 날 16. 속초시 [] 소재 한 []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위 조합의 평조합원인 공소외 성 []에게 위 유인물을 나눠주고 서명날인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9.경까지 약 260여 명의 조합원들에게 위 유인물을 나눠줌으로써 위 피해자들 및 위 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2. 검사가 작성한 정 [], 최 [], 김 []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3. 피고인 김 []이 작성한 각서사본, 최고서사본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4. 수사기록에 편철된 유인물사본(제8정), 우편물사본(제21정)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김○○에 대하여: 형법 제309조 제1항, 제30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0조

2. 미결 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 대장암 수술을 받은 환자인 점 참작)

공소기각

피고인 정○○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정○○이 상피고인 김○○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들 및 위 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는 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되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사건인 바 최 []이 작성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1995. 7. 25. 피고인 정○○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정○○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995. 8. 2.

판사 박 성 규

2심 判 決 文

사 건: 95노430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 고 인: 김○○, 정당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성욱

변 호 인: 변호사 박형일, 김철수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95.8.2. 선고 95고단220 판결

-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3.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
5.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1994. 11. 5.경 원심 공동피고인 정○○, 공소외 정□□로부터 속초신용협동조합 사옥신축공사에 관한 비리의혹에 대하여 해명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1995. 1. 5.경 위 정○○, 정□□에게 원심판시와 같은 내용의 최고서 사본을 건네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1989. 2.경부터 1992. 2.경까지 위 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재직 당시에 위 조합사옥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착공한 바가 있었는데, 위 정○○, 정□□ 등 다수의 조합원으로부터 위 조합사옥 신축과 관련된 비리의혹에 대하여 해명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오로지 위 조합의 업무를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히고 만약에 비리가 밝혀진다면 조합원들의 손실을 전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의도에서 위 최고서 사본을 건네준 것일 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공소외 최□□, 최□□, 최□□, 김□□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최

고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 위 정○○, 정□□와 공동으로 위 공소외인 및 위 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

가사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특히, 피고인이 1993. 7. 2.경 “조합사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관계자에게 어떠한 개인적 비리나 부정이 없었으며 실험자산에 손해를 끼친 바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위 조합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4. 11.경 위 정□□를 찾아가 조합사옥 신축과 관련된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서를 보내주면 답변서를 보내주겠다고 말한 점, 위 정○○, 정대호가 1995. 11. 5.경 피고인에게 보낸 질의서의 형식과 내용으로 보아 건축의혹에 관한 질의내용이 장차 9,000여 조합원 및 속초 지역사회에 알려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점, 위 정□□, 정○○이 위 조합의 감사도 아닌 개인 입장에서 해명을 요구하면서 질의서를 보낸 것인데도 1995. 1. 3.경 위 조합의 이사장과 임원에게 피고인이 작성한 위 최고서를 발송한 점, 위 최고서의 내용 중에는 위 사옥신축과는 관련이 없는 건물의 임대, 공소외 문양은에 대한 대출관계 등에 관한 부분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점, 위 최고서의 내용이 단순히 사옥신축과 관련된 사실자체의 해명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행위를 법률적으로 횡령 혹은 배임, 문서위조 등으로 평가하여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최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달리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사유가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이 고령인데다가 대장암으로 투병 중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 점에서 이유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중 제 6, 9, 15, 23, 26, 29, 51 행 '정○○' 을 '김○○' 로, 제12행 '설계업무부적' 을 '설계업무부적' 으로, 제17행 '관계한' 을 '관계한' 으로, 제37,38행 '계약' 을 '계약' 으로, 제41행 '최□□' 을 '최□□' 은' 으로, 증거의 요지 중 제4행 '김□□' 을 '김○○' 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1995.12.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09조 제1항, 제307조 제1항, 제30조, 제1조 제1항(판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각 절)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최□□에 대한 판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벌금형을 선택하여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증액)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미결 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12. 26.

재판장 판사 최 병 덕
판사 김 우 수
판사 김 성 대

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 사건 유인물이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8. 26.

재판장 대법관 이 임 수
 대법관 최 종 영
주심 대법관 정 귀 호
 대법관 이 돈 희

□

V. 헌법재판소결정사례

공륜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영화 상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구 영화법은 헌법상 금지된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위헌이다

헌법재판소 1996.10. 4.자 결정 (93헌가13, 91헌바10(병합))

事實概要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1996년 10월 4일 영화사 '장산곶매' 대표 강□씨가 공연윤리위원회(공륜)의 사전심의를 규정한 구 영화법 12조 1항에 대해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이 조항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 21조는 국가 행정권의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공륜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영화상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구 영화법은 헌법상 금지된 사전검열에 해당돼 위헌”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공륜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율적인 기관이라 하더라도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를 채택하고 공연법에 의해 공륜을 설치토록 해 행정권이 공륜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했으므로 공륜을 검열기관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청소년이 음란·폭력영화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통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등급을 심사하는 것은 사전검열이 아니다”고 밝혔다.

강□씨는 92년 4월 전교조 해직문제를 다룬 영화 '달힌 교문을 열며'를 사전심의

없이 상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

한편 영화법은 1995년 12월에 '영화진흥법'으로 개명되면서 개정되었으나 문제의 사전심의 조항은 1997년 4월 10일 '영화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決定文

사 건 : 93헌가13,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
91헌바10 영화법 제12조에 대한 헌법소원

제청법원 : 서울지방법원(93초145)

제청신청인 : 강

과천시

대리인 변호사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제청관련사건 : 서울지방법원 92고단7586 영화법위반

청 구 인 : 1. 홍

서울

2. 유

서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용일, 최일숙

소원관련사건 : 서울지방법원 89노6866 영화법위반

주 문 : 영화법(1984.12.31. 법률 제377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중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부분은 각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93헌가13 사건

서울지방법원은 제청신청인(피고인) 강 에 대한 영화법 위반 피고사건(92고단 7586)을 심리하던 중 제청신청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93초145)에 따라 영화법(1984. 12. 31. 법률 제3776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2항 및 제13조 제1항의 위헌여부가 위 영화법위반 피고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고,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허가인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1993. 9. 5.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2) 91헌바10 사건

청구인들은 그들이 공모하여 “오 꿈의 나라”라는 영화를 상영함에 있어서 상영 전에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항소심인 서울지방법원 89노6866으로 사건 계속 중, 위 법원에 법 제12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같은 법원 90초5448)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1991. 5. 7. 이를 기각하자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 제12조 제1항, 제2항 및 제1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심의) ①영화(그 예고편을 포함한다)는 그 상영 전에 공연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필하지 아니한 영화는 이를 상영하지 못한다.

③ 이하 생략

제13조(심의기준) ① 공연윤리위원회 또는 방송심의위원회는 제12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영화에 대하여는 이를 심의필한 것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도 상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심의필을 결정할 수 있다.

1.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
2.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3.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4. 국민정신을 해이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② 생략

한편, 심판의 대상과 관련이 되는 벌칙규정으로는 법 제32조 제5호가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내지 4. (생략)

5. 제12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를 상영한 자

(2) 한편, 법은 1995. 12. 30. 법률 제5130호로 제정 공포되고 1996. 7. 1.부터 시행된 ‘영화진흥법’에 의하여 이미 폐지되었다. 그러나 영화진흥법은 제12조 및 제

13조에 이 사건의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과 같은 내용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에는 “이 법 시행 전 종전에 영화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영화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록 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고 있다 할 것이므로 나아가 위헌 여부를 가리기로 한다.

2. 관계인의 의견

가. 제정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93헌가13 사건)

(1) 영화도 사상·양심 및 지식·경험 등을 표현하는 수단인 하나이므로, 영화의 자유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포함된다 할 것인데, 법 제12조 제1항, 제2항은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허가나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또한 이러한 사전심의제는 예술활동의 독자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예술 및 언론·출판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예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2조 제1항과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

(2) 법 제13조 제1항은 위 규정에 의한 공연윤리위원회(이하 “공륜”이라 한다)의 심의기준의 하나로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제3호)”, “국민정신을 해이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제4호)”를 들고 있는 바, 이는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추상적이며 모호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규제에 관한 합헌성 판단기준의 하나인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의 이론에 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

나. 제청신청인의 의견(93헌가13 사건)

(1) 영화상영의 자유 역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으므로 그에 대한 어떠한 형식의 사전 통제도 모두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을 금지한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법은 구법에 문화부장관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공륜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개정하였으나,

① 우선 공륜의 구성면에서 공륜위원은 문화체육부장관(제정당시에는 문화부장관이었으나 그 뒤 1993. 3. 6. 법률 제4541호에 의한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문화체육부장관으로 되었다. 이하 “문화체육부장관”이라 한다)의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위촉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정부의 예산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점에서

공륜은 검열기관에 해당하고,

② 또한 공륜은 영화에 대한 심의를 필하여 주지 않을 수도 있고 내용을 삭제하여 심의필을 할 수도 있으며, 더욱이 공륜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행정적 수단이 아닌 형벌적 제재를 과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공륜의 사전심의제도는 본질적으로 사전 검열제도에 해당하며,

③ 심의기준이 자의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실제의 심의과정에서도 검열자의 개인적인 사상, 기호나 영화의 구체적인 장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왔다는 점에 미루어 보더라도 심의기준 자체에 위헌성이 있음을 알 수 있고,

④ 공륜의 심의에 대하여 즉각적인 구제방법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도 사전 심의제도는 헌법에 위반된다.

(2) 영화의 영향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선입견에 입각한 영화상영의 자유에 대한 제한론은 영상산업이 비약적으로 발달하여 영화가 하나의 표현수단으로 일상적이며 대중적인 수단으로 정착한 현재에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다. 세계 각국이 영화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나라에서만 사전심의제를 통하여 이를 규제함으로써 영화인들의 창의력을 말살하고 한국영화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국민정서와 청소년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전심의제를 정당화하려는 견해가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전심의 방법이 그 적절한 방법으로 되지 못함이 이미 증명되었고, 영화에 대하여는 자율적 수준의 영화등급심사와 그 엄격한 시행에 의하여서만 해악방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가 마련한 영상진흥법 개정시안은 이에 좋은 참고가 된다).

다. 심판청구이유의 요지(91헌바10 사건)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는, ① 영화에 대한 심의 주체인 공연윤리위원회가 문화체육부장관이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되고,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며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등 행정권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점, ② 심의기준이 애매모호한 점, ③ 예술표현 행위의 금지가 행해지는 점, ④ 공연윤리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받을 기회가 없는 점, ⑤ 심의 없이 영화를 상영하였을 경우 단순한 행정질서벌이 아닌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언론 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된다.

라. 법원의 제정신청기각이유(91헌바10 사건)

영화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대상이 아니다. 영화가 가지는 대중

예술성과 표현의 직접성에 비추어 볼 때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의 보전을 위하여 사전검열은 필요하고도 가능하다. 그리고 공공질서에의 배치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가려내는 것이므로 심의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마. 문화체육부장관의 의견(93헌가13 사건 및 91헌바10 사건)

(1) 영화에 대한 검열제도는 1984. 12. 법 개정시 이미 폐지되었고, 법은 영화 상영에 대한 규제를 공륜의 사전심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법에 의한 공륜의 사전심의제도는,

① 공륜 위원이 예술·언론·방송·출판·공연·교육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중에서 위촉되고 있으며, 특히 영화심의위원은 영화감독, 평론가 등 영화전문가와 신문사 논설위원, 대학교수, 여류작가, 여성·청소년단체 간부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결국 자율적인 심의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

② 심의 후 법시행령 제2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심의필증을 미리 교부하고 5일 이내에 결과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사후 보고하는데 지나지 아니하고, 심의 전이나 후의 행정부의 간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사전검열이라고 할 수 없다.

(2) 언론·출판의 자유도 내재적 한계가 있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법률에 의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선진 외국에서도 영상매체에 대한 사전심의나 제약을 법률로써 제도화하고 있으며, 판례도 이를 합헌이라고 하고 있다.

특히, 영상매체는 신문·잡지 등 출판매체와는 달리 일반대중에게 영상이라는 생동감있고 충격적인 방법으로 동시에 광역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파급되는 영향력이나 충격이 엄청나다는 특수성이 있다. 영화의 폭력, 음란화로 인한 청소년에 대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현재에도 세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3) 공륜의 심의기준은 법과 법시행령 및 공연윤리심의규정 등에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막연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하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바. 법무부장관(91헌바10 사건) 및 검찰총장의 의견(93헌가13 사건)

법은 영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것이고, 현행법상의 공륜에 의한 사전심의제도는 영화에 대한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심의기준이 막연하거나 불명확하지도 않다. 따라서 법 제12조, 제13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의 원칙

(1) 의사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여기서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은 다른 의사표현 수단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한 보장을 받음은 물론 영화는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예술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 및 상영은 학문·예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도 보장을 받는다.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러한 검열제가 허용될 경우에는 국민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직접 그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이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금지를 규정한 것은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하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위에서 밝힌 검열의 개념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2) 한편,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률로써도 허용될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검열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① 먼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검열은 사전검열만을 의미하므로 개인이

정보와 사상을 발표하기 이전에 국가기관이 미리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발표를 저지하는 것만을 의미하고(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결정 참조),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의사표현에 대하여 공개한 뒤에 국가기관이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바26 결정). 그러므로 사후심사나 앞에서 밝힌 검열의 성격을 띠지 아니한 그 외의 사전 심사는 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검열의 성격을 띠지 아니한 심사절차의 허용 여부는 표현의 자유와 이와 충돌되는 다른 법익 사이의 조화의 문제이므로 헌법상의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원칙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상충하는 다른 법익과의 교량과정을 통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다.

② 검열금지의 원칙은 정신작품의 발표 이후에 비로소 취해지는 사후적인 사법적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법절차에 의한 영화상영의 금지조치(예컨대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가치분 등)나 그 효과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벌규정(음란, 명예훼손 등)의 위반으로 인한 압수는 헌법상의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③ 검열금지의 원칙은 바로 영화에 대한 사전심사를 모두 금지하는 것도 아니다. 영화는 시청각을 표현수단으로 하는 영상매체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일단 상영되거나 나면 그 자극이나 충격이 매우 강하게 그리고 직접 전달되어 영향력이 클 뿐만 아니라, 비디오의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그 파급 효과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고, 일단 소비자에게 보급되고 난 뒤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방법마저 없다. 그러므로 영화를 상영 또는 보급하기 이전에 심사·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 특히 청소년이 음란, 폭력 등 영화에 접근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할 필요성 역시 매우 크다.

심의기관에서 허가절차를 통하여 영화의 상영 여부를 종국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열에 해당하나, 예컨대, 영화의 상영으로 인한 실정법 위반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청소년 등에 대한 상영이 부적절할 경우 이를 유통단계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 등급을 심사하는 것은 사전검열이 아니다. 설사 등급심사를 받지 아니한 영화의 상영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할 때에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경우(예컨대 새 영화진흥법 시안 제11조의 등급심의)에도 검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여기서의 상영금지 는 심의의 결과가 아니고 단지 일괄적인 등급심사를 관철하기 위한 조치에 지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나. 법 제12조 제1항, 제2항 및 제13조 제1항의 위헌성

(1) 법은, 영화는 상영 전에 공륜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12조 제1항),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모든 영화의 상영을 금지하고(제12조 제2항) 사전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를 상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제32조 제5호)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3조 제1항은 영화에 대한 심의기준을 정하고, 심의기관인 공륜이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영화에 대하여는 심의필 결정을 할 수 없으나,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도 상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심의필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화에 대한 심의제의 내용은 심의기관인 공륜이 영화의 상영에 앞서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영화에 대하여는 상영을 금지할 수 있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를 상영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 그 핵심이므로 이는 명백히 앞서 '가의 (1)'에서 밝힌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한 사전검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헌법상의 검열금지의 원칙은 검열이 행정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한하므로 영화의 심의기관인 공륜이 이에 해당한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검열을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보아 검열기관은 행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검열기관의 구성은 입법기술의 문제이므로 정부에게 행정관청이 아닌 독립된 위원회의 구성을 통하여 사실상 검열을 하면서도 헌법상 검열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은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공륜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연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면 공륜의 위원은 문화체육부장관에 의하여 위촉되고(공연법 제25조의 3 제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공륜은 국가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륜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같은 법 제25조의 3 제6항)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륜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율적인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법에서 영화에 대한 사전허가제도를 채택하고, 공연법에 의하여 공륜을 설치토록 하여 행정권이 공륜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였으므로 공륜은 검열기관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공륜이 비록 그의 심의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이 보장된 심의기관이라 할지라도

검열기관인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결정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 심의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단지 심의절차와 그 결과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형태의 심의절차에 요구되는 당연한 전제일 뿐이기 때문이다. 국가에 의하여 검열절차가 입법의 형태로 계획되고 의도된 이상, 비록 검열기관을 문화체육부장관에서 민간인들로 구성된 공륜으로 대체했다고 하여 법이 정한 사전심의제도의 법적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4. 결론

이러한 이유로 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제13조 제1항에 근거한 공륜에 의한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에 관한 부분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검열제도라 할 것이므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4.

재판장 재판관 김 용 준
 재판관 김 진 우
 재판관 김 문 희
 재판관 황 도 연
 재판관 이 재 화
 재판관 조 승 형
 재판관 정 경 식
 재판관 고 중 석
 재판관 신 창 언

□

음반 제작시 공륜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토록 한 구 음반법의 규정은
 헌법이 금지한 검열행위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 1996. 10. 31.자 결정 (94헌가6)

事實概要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 재판관)는 1996년 10월 31일 가수 정 [] 씨가 음반을 제작할 때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에 대해 낸 위헌제청사건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 음반법이 음반제작시 공륜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받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이 금지한 검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조항들 중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 계류 중인 정씨의 음반법 위반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심판대상이 아니다”며 위헌여부 판단을 하지 않았다.

위헌결정을 받은 음반 사전심의 규정은 95년 12월 음반법 개정 때 이미 삭제된 바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1997년 3월 27일 판매·배포 또는 대여할 목적으로 음반을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도 같은 내용을 규정한 제16조 2항 등에 대해서도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決定文

제청법원 : 서울형사지방법원(1994. 5. 10. 94초1385 위헌법률심판제청)

제청신청인: 정 []

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천정배

당해사건 : 서울형사지방법원 93고단373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주 문: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1991. 3. 8. 법률 제4351호로 제정되어 1995. 12. 6. 법률 제 501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중 음반의 제작에 관한 부분, 제16조 제2항 전문부분 중 음반의 판매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제24조 제2항 중 각 음반을 판매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제청신청인에 대한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사건(93고단373)을 심리하던 중 제청신청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94초1385)에 따라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1991. 3. 8. 법률 제4351호로 제정되어 1995. 12. 6. 법률 제 501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 제2항, 제24조 제1항 제4호, 제2항의 위헌 여부가 위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1994. 5. 10.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 제16조 제1항, 제2항, 제24조 제1항 제4호, 제2항 중 주문 기재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 위헌제청서에는 제청대상 법률조항으로 위 각 법률조항의 조문 전체를 기재하고 있지만 이 사건 제청결정이유에 의하면 위 각 조항 중 나머지 부분은 당해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제16조(심의) ① 판매·배포·대여 등의 목적으로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음반……의 내용에 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공연법에 의한 공연윤리위원회(이하 '공연윤리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한 음반……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내지 3. 생략

4.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음반……과 그 제작 또는 복제에 직접 사용된 기자재 및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인쇄물은 이를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2. 관계인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

음반에 관하여 이른바 사전심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은 그 자체가 예술의 자유나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한계를 벗어나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위 자유들을 규정한 헌법규정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형벌로 제재하고, 그 행위에 사용된 물건들을 몰수하도록 한 것은 언론 출판에 대한 사

전허가나 검열을 금지한 헌법 제21조에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볼 소지가 있다.

나. 문화체육부장관의 의견

(1) 공연윤리위원회(이하 '공륜'이라 한다)의 심의제도는 심의기구의 자율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심의위원은 민간전문인으로 구성되어 그 심의의 내용이나 결과가 창작물에 대한 훼손은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효과궤 달성할 수 있도록 자율심의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제작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음반제작 전에 심의함으로써 적절한 방법으로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

(2) 우리나라는 서구의 개방적 관행이나 생활문화와는 달리 전통적인 고유의 미풍양속과 도덕적 규범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대중가요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회전반에 폭넓게 확산·보급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고 국민정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윤리적 측면에서의 여과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국민정서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사전심의 없이 배포되고 난 이후에는 그 악영향을 돌이킬 수 없으므로 사전심의제도가 필요하다.

(3) 따라서 현행 심의제도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범위 내에서 음반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음반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및 정서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이다.

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

(1) 대중예술이 국민의 문화생활과 정서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에 대하여도 일정한 정도의 제한이 필요하며 무제한의 자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국가존립의 기초가 되는 가치질서나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음반이 일단 판매·배포되면 그 영향은 기하급수적으로 대중에게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사후적인 방법으로 구제하기 매우 곤란하다.

(2) 공륜은 예술, 언론, 방송, 출판, 공연, 교육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전적으로 국가예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일정한 범위 안에서 국가의 보조를 받을 뿐 이므로 동 위원회를 행정관청이라 할 수 없고 특수한 성격의 공공기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음반에 대한 사전심사는 민간심의기구인 공륜에서 수행하는 점에서 행정관청에서 주관하는 사전검열과는 차이가 있다.

(3)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에서 합리적인 심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심의기준은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민주사회에서 다소 추상적이고 경

계가 불분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더 이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 법무부장관의 의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과 거의 같다.

마. 제청신청인의 의견

(1) 가요를 음반에 담아 배포하는 행위도 언론·출판행위의 일종이므로 음반의 제작과 판매도 언론·출판의 자유로 헌법상 보호되어야 한다. 현행 음반 등에 대한 사전심의제는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에 해당하므로 동조 제1항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 제22조 제1항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제한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2) 현행 음반에 대한 사전심의기준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 “저속한 언어사용”,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 또는 물건을 허위로 묘사” 등과 같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추상적이므로 “모호하기 때문에 무효”이며 또한 “광범위하기 때문에 무효”이다.

3. 판단

가.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의 원칙

(1)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의사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여기서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음반은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예술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 및 판매·배포는 학문·예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을 받음과 동시에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도 보장을 받는다.

한편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언론·출판에 대하여 사전검열이 허용될 경우에는 국민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하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서도 절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의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그러나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표현의 발표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 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 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3헌가13, 91헌바10 결정 참조).

(3) 한편,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률로써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검열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가) 먼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검열은 사전검열만을 의미하므로 개인이 정보와 사상을 발표하기 이전에 국가기관이 미리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발표를 저지하는 것만을 의미하고(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결정 참조),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의사표현에 대하여 공개한 뒤에 국가기관이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바26 결정 참조). 그러므로 사후심사나 앞에서 밝힌 검열의 성격을 띠지 아니한 그 외의 사전심사는 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검열의 성격을 띠지 아니한 심사절차의 허용여부는 표현의 자유와 이와 충돌되는 다른 법익 사이의 조화의 문제이므로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 원칙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검열금지의 원칙은 정신작품의 발표 이후에 비로소 취해지는 사후적인 사법적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법절차에 의한 음반판매의 금지조치(예컨대 명예훼손이나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가처분 등)나 그 효과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벌 규정(음란, 명예훼손 등)의 위반으로 인한 압수는 헌법상의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또한 검열금지의 원칙은 음반에 대한 사전심사를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음반은 음을 표현수단으로 하는 매체로서 국민의 문화생활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력

이 크고 그 파급효과가 광범위한데다 일단 음반이 소비자에게 보급되고 난 이후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음반을 제작 또는 판매하기 이전에 이를 심사,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이 퇴폐적인 음반에 접근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할 필요성 역시 매우 크다.

따라서 청소년 등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음반에 대하여는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미리 등급을 심사하는 이른바 등급심사제도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 제17조 제2항에서도 연소자의 건전한 덕성함양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등 연소자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음반에 대하여는 공륜의 심의시 연소자가 시정할 수 없음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의 위헌성

(1) 법 제16조는 제1항에서 음반의 제작시 공륜의 사전심의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제2항에서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모든 음반에 관하여 판매 등을 금지하면서,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고, 제24조 제2항에 따라 위반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음반과 그 제작기자재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심의기관인 공륜이 음반의 제작·판매에 앞서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반에 대하여는 제작·판매를 금지하고, 심의를 받지 아니한 음반을 제작·판매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명백히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한 사전검열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1995. 12. 6. 법률 제4351호로 개정된 음반및비디오등에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서는 음반에 관하여 필요적 사전심의회제도를 폐지하고 임의로 공륜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헌법상의 검열금지의 원칙은 검열이 행정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한하므로 음반의 심의기관인 공륜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검열을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보아 검열기관은 행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검열기관의 구성은 입법기술의 문제이므로 정부로 하여금 행정관청이 아닌 독립된 위원회의 구성을 통하여 사실상 검열을 하면서도 헌법상 검열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은 음반을 제작하기 전에 공륜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공연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면 공륜의 위원은 문화체육부장관에 의하여 위촉되고(공연법 제25조의 3 제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공륜은 국가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륜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같은 법 제25조의 3 제6항)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에서 음반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를 채택하고, 공연법에 의하여 공륜을 설치토록 하여 행정권이 공륜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였으므로 공륜은 실질적으로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검열기관으로 볼 수밖에 없다(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3헌가13, 91헌바10 결정 참조).

공륜이 비록 민간인으로 구성되고 심의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이 보장된 심의기관이라 할지라도 검열기관인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그것은 결정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 심의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단지 심의절차와 그 결과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형태의 심의절차에 요구되는 당연한 전제일 뿐이고, 국가에 의하여 검열절차가 입법의 형태로 계획되고 행정권이 공륜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한 이상 공륜이 민간인들로 구성되었다고 하여도 검열기관으로서의 법적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3) 따라서 법이 규정한 공륜의 심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에 해당하므로 음반을 제작하기에 앞서 공륜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공륜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음반의 판매를 금지하면서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이 사건 법률조항부분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31.

재판장 재판관 김 용 준
재판관 김 진 우
재판관 김 문 희
재판관 황 도 연
재판관 이 재 화
재판관 조 승 형

재판관 정 경 식
주심 재판관 고 중 석
재판관 신 창 언

□

공륜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음반을 판매·배포
또는 대여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형사처벌토록 한 구 음반법의 규정은
헌법이 금지한 검열행위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 1997. 3. 27.자 결정 (97헌가1)

事實概要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신창언 재판관)는 1997년 3월 27일 강□ 씨가 공연윤리위원회(공륜)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음반을 판매·배포 또는 대여할 목적으로 보관 등을 금지한 구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16조 2항 등에 대해 낸 위헌제청사건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공륜의 사전심의조항(16조 1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판매’ 행위와 동일조항 내에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내용상으로도 이를 구별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판매보다 전 단계인 보관에 대하여는 검열금지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 재판관)는 96년 10월 31일 가수 정 씨가 음반을 제작할 때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동법 16조 1항 등에 대해 낸 위헌제청사건에서 “음반제작시 공륜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받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이 금지한 검열행위에 해당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決定文

제청법원 : 서울지방법원(1996. 12. 17. 96노4552 위헌심판제청)

피 고 인 : 강

당해사건 : 서울지방법원 96노4552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주 문 :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1991. 3. 8. 법률 제4351호로 제정되고, 1995. 12. 6. 법률 제501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전문부분 중 음반의 보관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제24조 제2항 중 각 음반을 보관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서울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항소심 재판 중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1991. 3. 8. 법률 제4351호로 제정되고, 1995. 12. 6. 법률 제 501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2항 전문부분 중 음반의 보관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제24조 제2항 중 각 음반의 보관한 자에 관한 부분의 위헌여부가 위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1996. 12. 17.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 제16조 제2항의 전문부분 중 음반의 보관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제24조 제2항 중 각 음반을 보관한 자에 관한 부분의 위헌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6조(심의)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한 음반 ... 을 ... 판매 · 배포 또는 대여할 목적으로 ... 보관 ...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음반 ... 과 그 제작 또는 복제에 직접 사용된 기자재 및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인쇄물은 이를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한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그리고 위 제16조 제2항과 관련된 같은 조 제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6조(심의) ① 판매 · 배포 · 대여 등의 목적으로 음반 또는 비디오물을 제작하거

나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반입 또는 복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음반 또는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공연법에 의한 공연윤리위원회(이하 “공연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

헌법재판소는 1996. 10. 31. 선고한 94헌가6호 결정에서 법 제16조 제1항 중 음반의 제작에 관한 부분, 제16조 제2항 전문부분 중 음반의 판매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제24조 제2항 중 각 음반을 판매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한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법 제16조 제2항 전문부분 중 음반의 보관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제24조 제2항 중 각 음반을 보관한 자에 관한 부분 역시 헌법에서 정한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여진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법 제16조 제1항 중 음반의 제작에 관한 부분, 제16조 제2항 전문부분 중 음반의 판매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제24조 제2항 중 각 음반을 판매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헌법 제21조 제1항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의사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며, 의사표현의 매개체인 음반의 제작·판매 등의 자유도 이 조항에 의하여 보장을 받는다.

한편 헌법 제21조 제1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하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절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의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그런데 법 제16조 제1항 중 음반의 제작에 관한 부분, 제16조 제2항 전문부분 중 음반의 판매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제24조 제2항 중 각 음반을 판매한 자에 관한 부분은 심의기관인 공연윤리위원회가 음반의 제작·판매에 앞서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반에 대하여는 판매를 금지하고, 심의를 받지 아니한 음반을 제작·판매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으므로, 공연윤리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검열기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심의는 동 조항에서 말하는 검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부분은 사전검열제도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4헌가6 결정 참조).

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음반을 “판매·배포 또는 대여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와 처벌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규정형식상 위 헌법재판소결정에서 판단한 “판매”행위와 동일조항 내에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내용상으로도 이를 구별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판매보다 전단계인 보관에 대하여는 검열금지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도 있으므로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27.

재판장	재판관	김 용 준
	재판관	김 문 희
	재판관	황 도 연
	재판관	이 재 화
	재판관	조 승 형
	재판관	정 경 식
	재판관	고 중 석
주심	재판관	신 창 언
	재판관	이 영 모

□

Ⅵ. 기타사례

전교조가 비합법단체라고 하여 정간물법상 뚜렷한 근거 없이 단체의 목적과 성격을 문제삼아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1996. 7. 24.자 판결 (95구27365)

事實概要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김경일 부장판사)는 1996년 7월 26일 정□ 전교조위원장(이하 원장)이 공보처 장관을 상대로 낸 정기간행물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가 비합법 단체라는 이유로 전교조가 발행하는 신문의 등록을 거부한 공보처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교조가 법외 노조로 비합법단체인 점은 명백히 인정되지만 정간법상 뚜렷한 근거도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단체의 목적과 성격을 문제삼아 등록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만약 단체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그 단체가 발행인으로 되어있는 정간물의 등록을 거부한다면 이는 사실상 그 단체를 심사하는 것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함은 물론 헌법상 금지된 허가제로 남용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95년 4월 전교조신문사의 이름으로 격주간지 전교조신문 등록신청을 공보처에 제출했다가 “불법단체인 전교조의 활동을 조장하기 위해 발행하려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判決文

사 건: 95구27365 정기간행물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원 고: 정 []

광주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국,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피 고: 공보처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정성광

변론종결: 1996. 6. 19.

주 문: 1. 피고가 1995. 5. 2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정기간행물등록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소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원고가 1995. 4. 28. “전교조신문사”라는 기업의 이름으로 월 2회, 교육전반과 교양을 다루는 특수주간신문인 “전교조신문”(이하, 이 건 간행물이라 한다)을 발행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정기간행물등록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고가 같은 해 5. 27. 동 정기간행물의 제호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약칭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전교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발행인 또한 신청서에 첨부된 이력서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건 간행물은 불법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활동조장을 위해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결성 및 가입은 위법행위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판정한 만큼 동 불법단체가 사실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등록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 등록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강제1호증(을제4호증과 같다), 강제2호증의 1, 2, 강제4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은 것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정간법”이라고만 한다)이 정한 어떠한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등록신청서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도 이 건 간행물의 발행주체는 개인이 아닌 단체인 사

실이 명백한 바 그렇다면 정간법시행령 제6조 제2호에 따라 이 건 간행물의 발행주체인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건 등록신청과 같이 제출했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전혀 제출치 아니함으로써 법규상의 형식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흠결이 있고 또 정간법 제7조 제5항에 의하면 '기등록된 정기간행물의 제호와 동일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유사한 제호의 정기간행물은 등록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전교조'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고 노동조합법 제7조 제2항에서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동법 제48조에 위 규정위반시 처벌규정까지 두고 있으므로 타 법규에 의하여 금지·처벌되는 제호를 사용하는 이 건 간행물의 등록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바 위 각 주장사실은 이 건 처분시에 전혀 그 처분사유로 삼은 바 없는 새로운 사실들이고 위에서 본 이 건 처분사유에 포함되는 사유로 볼 수도 없어 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나. 관계법령

정간법 제1조는 이 법은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신문·통신·잡지·기타 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특수주간신문이라 함은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동법 제7조 제1항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기간행물의 제호, 종별 및 간별, 발행인·편집인 및 인쇄인의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발행인 또는 인쇄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 발행소의 소재지, 판형, 사용어,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보급방법과 주된 보급대상 및 지역, 일간신문·일반 주간신문 또는 통신의 경우에는 제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시설을 공보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고만 한다) 제6조 제2호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주체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정간법에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공보처에 등록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의사형성발표, 정보수집전달, 여론형성 등을 내용

으로 하는 실질적인 언론·출판의 자유를 구속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공보처장관에게 등록하게 함으로써 그의 특수한 사회적 기능을 보장하고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법 소정의 등록이란 행정청에의 신고행위 또는 공증행위로 일정한 사실을 행정청에 신고하여 동 사실을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는 행위이고 동법에는 규제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범위, 등록사항 등이 객관적, 외형적으로 한정되어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신청자가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신청할 경우 등록관청에서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주무 행정관청은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위하여 행정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게 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벌칙을 설정하고 있는 법률을 단지 집행·시행하고 있는데 불과할 뿐이어서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보도의 내용을 간섭하거나 허가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가23 결정 참조).

(2)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은 것은 이 건 간행물의 제호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약칭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전교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점과 발행인 또한 신청서에 첨부된 이력서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건 간행물은 불법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활동조장을 위해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불법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등록은 불가하다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앞서 인용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건 간행물의 제호가 ‘전교조신문’이고 정간법상의 등록사항이 아니기는 하나 등록신청서상 기재사항의 하나로 요구된 언론기업의 명칭에 전교조신문사로 기재하고 있으며, 그 발행인 및 편집인인 원고가 이 건 간행물의 등록신청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신분인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고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당국이 그 설립을 불법시하고 학교 교직원의 위 단체가 입을 단속하고 있기는 하나 사실상 단체로서 존재하고 그 명칭이 ‘전교조’라는 약칭으로 널리 불려지고 또 사용되고 있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즉 전교조 위원장의 신분을 갖는 원고가 이 건 간행물의 등록신청서에 제호를 ‘전교조신문’, 언론기업의 명칭을 ‘전교조신문사’라고 기재하여 등록신청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사실상 관련이 되어 있어 그 영향이 직, 간접적으로 이 건 간행물에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발행인이 개인인 원고로 신청되어 있는 이 건 간행물의 발행주체를 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

가사 이 건 간행물의 발행주체가 피고주장과 같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사유로 위 조합 불법단체성을 든 점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처분청의 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동법 제84조 및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노동운동을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형사처벌 및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1992. 4. 28.자 90헌바27 내지 34, 36 내지 42, 44 내지 46, 92헌바15(병합))에 근거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여기에다 노동조합법이 그 제7조 제2항에서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까지 아울러 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조합이라는 그 명칭마저도 사용할 수 없는 단체임이 틀림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노동운동을 목적으로 공무원인 교직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실재한다면 이러한 단체는 실정법상 그 설립 및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비합법단체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정간법은 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대한민국에 주소로 두지 아니한 경우, 형법 또는 국가보안법상의 일정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사회안전법이나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안처분의 집행 중에 있는 자 등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고 그 결격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단체에 관하여는 단지 그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 발행할 수 있는 정기간행물의 범위에 제한이 따른다거나 또는 그 대표자에게 일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정간법 제9조 제2항, 제3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공보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외에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보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을 뿐 그 단체가 어떠한 목적의 단체이고 그것이 현행법상 합법적인 단체로 허용이 되느냐의 여부를 묻고 있지 않고 있다. 정간법이 개인이 발행인 또는 편집인인 경우 개인 자체의 전력 등 특정한 인격적 요소의 일부를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면서도 단체 자체의 목적이나 성격에 관하여 아무런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취지는 만약 단체의 목적, 성격에 따라 그 단체가 발행인으로 된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거부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목적이나 성격 등 실로 막연한 사유를 들어 발행인인 단체를 심사, 그에 따른 등록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어서 이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어 자칫 헌법상 금지된 허가제로 남용할 여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취지일 것이다. 여기서 목적, 성격 등을 통한 단체의 심사가 선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범죄단체 기타 불법목적에 위한 단체가 그 불법목적에 달성 또는 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려 드는 경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이 없지 않느냐는 우려는 그러한 불법목적에 공공연히 표방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제출이 요구되는 그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의 첨부가 어렵다는 점에서, 또 그러한 목적이 정관이나 규약에 표방되어 있지 않고 은비된 단체인 경우 만약 정기간행물을 통하여 그 단체의 불법목적에 달성 또는 조장하려 한다면 정간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등에 따라 각 통제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우려는 대부분 해소된다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사실상 또는 사후적인 통제장치에 의하여 통제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정간법상 하등의 근거 없이 막바로 단체의 목적, 성격을 문제삼아 이를 이유로 그 등록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건 간행물의 발행인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고 나아가 그것이 불법단체임을 내세워 이 사건 거부처분에 이른 것은 막연한 추측에 의해 그 발행주체를 오인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간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어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7. 24.

재판장 판사 김 경 일
 판사 신 명 중
 판사 김 창 석

□

신청인의 학위논문이 외국논문을 표절한 것이라는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판매, 배포해서는 안된다

서울지방법원 1996. 11. 23.자 결정 (96카합3181)

事實概要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한상호 부장판사)는 1996년 11월 23일 장 [] 법대 교수가 자신의 학위논문이 외국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라는 <한겨레21> 1996년 11월 28일자 기사와 관련,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인쇄물판매및배포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문제가 된 기사의 제목과 단정적인 표현을 일부 지우지 않은 채 이 잡지를 인쇄·배포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개인의 명예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한다”며 “문제의 기사 가운데 표절논문으로 서울법대 교수가 됐다는 단정 부분은 이를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후 장교수는 1996년 11월 29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여(96서울중재304) 피신청인과 합의하여 1996년 12월 26일자 <한겨레21>에 반론보도문이 게재되었다.

決定文

사 건: 96카합3181 인쇄물판매, 배포금지 등 가처분

신청인: 장 []

서울 []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양호, 서동우

피신청인: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 _____

대표이사 권근술

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원순, 임재연, 이종걸

주 문: 1. 신청인이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신청인을 위하여 보증으로 금 5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편집한 주간지 '한겨레21' 제135호 증 별지 목록기재 부분을 삭제 또는 말소하지 아니하고는 위 주간지를 판매,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위 주간지에 대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다. 피신청인이 위 주간지 중 별지목록기재 부분을 적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판독할 수 없게 삭제 또는 말소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삭제 또는 말소 후 피신청인이 위 주간지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보전권리의 내용: 인격권에 기한 명예훼손금지청구권

이 유: 헌법상의 언론·출판의 자유는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언론기관의 보도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그 기사를 취재한 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편집한 주간지 '한겨레21' 제135호 증별지목록기재 부분은 신청인이 타인의 논문을 표절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학위로 교수가 되었다고 단정하면서 신청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에 의하면 신청인의 명예가 심하게 손상되고 있는 반면, 피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이 위와 같은 단정적인 표현으로 신청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보도를 하여도 좋을 정도로 그 보도가 충분한 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고 있다거나 그 기사를 취재한 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신청 중 별지목록기재 부분에 관한 삭제 또는 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별지목록기재 부분 중에는 편집자나 기자 이외에 제3자의 편지 및 진술을 인용한 부분도 있으나 비록 제3자의 견해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부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명예가 침해되고 있음은 마찬가지이므로 그 부분 역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신청인은 주간지 '한겨레21' 제135호 증 제12면부터 제14면까지 전체 부분에 관한 삭제 또는 말소를 구하고 있으나, 별지목록기재 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넘지 않는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주문 제1항 기재 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1. 23.

재판장 판사 한 상 호

판사 김 형 두

판사 정 준 영

목 록

한겨레21 제135호 증

1. 표지 중 『표절교수, [] 법대 강단에 서다』라는 부분.
2. 제4면 차례 중 『표절로 [] 법대 강단에 서다』라는 부분.
3. 제5면 포커스 중 『표절로 [] 법대 강단에 서다, [] 법대대학원에서 '베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 법대의 강단에 서 충격을 주고 있다』라

는 부분.

4. 제12면 중

(1) 제목 『표절로 [] 법대 강단에 서다, [] 출신 전직판사 ‘베낀 논문’ 으로 교수 임용… 두학교 은혜 급급』 부분.

(2) 제목 하단 편집자 주 부분 중 “학위논문 표절의 당사자는 장 [] (33) 씨” 라는 부분.

(3) 본문 중 “저는 그 논문의 상당 부분이, 국제거래법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이 쓴 내용을 표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어떻게 [] 대가, 표절한 논문을 제출한 사람에게 최고의 법학 학위인 ‘S.J.D.’ 를 부여했는지 무척 실망스러웠습니다” 라는 부분.

(4) 본문 중 “장씨의 논문과 그가 표절한 다른 논문들을 비교해볼 때, 그는 다른 사람이 쓴 문장을 그대로 옮겼을 뿐 아니라,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다른 방법들을 통해 표절을 감추려고까지 했습니다” 라는 부분.

(5) 본문 중 “이 서한에서 그는 특히 장씨가 표절한 5명([] , [] , [] 등)의 저자와 논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 장씨의 논문과 그가 표절한 저자들의 논문들을 비교한 결과, 상당 부분 동일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라는 부분.

(6) 본문 하단 사진에 대한 “표절의 증거, [] 대 법대 장 []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오렌지색)과, 그가 베낀 외국논문(녹색)” 이라는 설명 부분.

5. 제13면 중

(1) 본문 중 “특히 장씨의 논문 가운데(43쪽)는 [] 과 [] 의 논문(509 쪽) 중 1000으로 돼 있는 숫자를 100으로 잘못 베껴 내용이 틀린 경우도 있다” 라는 부분.

(2) 본문 상단 사진에 대한 “최고학부, 오명 뒤집어 쓰는가, 표절사건은 [] 대 법대와 [] 대 법대의 도덕성과 명예, 학문적 전통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충격적 사건이다” 라는 설명 부분.

6. 제14면 중

(1) 본문 중 “이 변호사는 ‘그 논문에 장 [] 가 범한 여러 개의 상당히 뻔뻔스러운 표절의 사례들이 들어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고 했으며, 이에 대해 [] 대 법대의 한 교수는 ‘표절에 대한 적절한 조치’ 를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라는 구절부터 “더욱이 아무리 [] 법대쪽에서 처음에 장교수의 표절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법대 교수 임용 때 다시 학위논문을 심사하는데 심사위원들이 이를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라는 구절까지의 부분.

(2) 본문 중 “실제 장교수의 표절에 관계된 저자 가운데, 장교수가 그 많은 부분을 베낀 것으로 드러난 [] 변호사나 그의 공저자인 [] 변호사도 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장교수와 이 두 사람은 미국 워싱턴 소재 ‘[]’이라는 법률회사에서 94년부터 약 1년 동안 함께 근무한 적이 있고, 지금까지 한-미 통상법과 관련 여러 형태의 업무 협조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라는 구절까지의 부분. □

신청인을 비방하기 위해 진실성이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게재하여 공인으로서의 명예를 훼손시킨 주간지의 관련 기사를 삭제하고, 단행본의 판매·배포를 금지한다

서울지방법원 1997. 10. 10.자 결정 (97카합2923)

事實概要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997년 10월 10일 김대중 씨가 ‘김대중 X파일’의 저자 손 [] 씨와 (주)인사이드월드를 상대로 제기한 인쇄물판매 배포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인사이드월드 1997년 8월 20일, 9월 3일자 중 X파일 관련 기사를 삭제하고 단행본 ‘김대중 X파일’의 판매, 배포를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계엄사 수사발표는 수사 자체가 강압에 의해 이뤄진 것인 만큼 당시 수사자료를 기초로 김대중 씨가 공산당활동 등을 했고 아직 전향하지 않는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한 기사는 믿을 수 없다”며 “단행본 내용과 격주간지 기사가 김대중 씨를 비방하려는데 표현의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

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손 [] 씨가 쓴 단행본 ‘김대중 X파일’ 과 주간지 인사이드월드는 김대중 씨를 용공 인사로 묘사하였기에 김대중 씨는 이들 책과 간행물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決定文

사 건: 97카합2923 인쇄물발행판매배포등금지가처분

신청인: 김대중(金大中)

고양시 []

대리인 변호사 박상천, 조찬형, 박찬주, 천정배, 이상수, 추미애, 신기남, 이기문, 유선호, 이성재, 안상운

피신청인: 1. 주식회사 인사이드월드

서울 []

대표이사 손 []

2. 손 [] (孫 [])

서울 []

3. 엄 []

서울 []

피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홍규

주 문: 1. 가. 피신청인 주식회사 인사이드월드 및 피신청인 손 []는 피신청인 주식회사 인사이드월드가 발행하는 주간지 인사이드월드(INSIDE THE WORLD) 중, (1) 통권 제113호(1997. 8. 20.자) 표지의 『97, 김대중 X파일①』 『김대중 씨 사상 검증 받아야 한다』 『김정일, 김대중 당선 원하고 있다』는 부분, 6면 차례란 및 본문 20면부터 21면까지에 게재된 『김정일, 김대중 씨 대통령 당선 바라고 있다』는 제목하의 기사, 7면 차례란 및 제22면부터 26면까지 게재된 『97, 김대중X-파일① 김대중 씨는 사상 검증 받아야 한다!』는 제목하의 기사 및, (2) 통권 제114호(1997. 9. 3.자)표지의 『97, 김대중 X-파일②』라는 부분, 9면 차례란 및 본문 26면부터 29면까지에 게재된 『97, 김대중 X-파일② 김대중 씨 공산당 활동 얼마나? 몇번 체포됐나? 그 진상!』이라는 제목하의 기사,

본문 30면에서 31면까지 게재된 『김대중 X-파일 제1탄 색깔논쟁 정치 판에 등장』이라는 제목하의 기사를, 각 삭제 또는 말소하지 아니하고는 위 각 주간지를 발행, 판매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위 피신청들이 소지하고 있는 위 각 주간지에 대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다만 집행관은 위 피신청인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 각 주간지 중 위 “가”항 기재 표지부분 및 기사를 적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판독할 수 없게 삭제·말소한 후 위 각 주간지의 보관을 풀고 이를 위 피신청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위 피신청인들은 위 “가”항 기재 기사를 판독할 수 없게 삭제·말소한 후에는 위 각 주간지를 발행, 판매, 배포할 수 있다.

2. 신청인이 피신청인 손 [] , 피신청인 엄 [] 을 위하여 각 보증으로 금 30,000,000원씩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위 피신청인들은 별지 제1목록 기재 저작물을 각 인쇄, 제본, 발행, 판매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위 피신청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위 각 저작물과 그에 관한 인쇄용 지형 및 사진(필름)에 대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다. 집행관은 위 보관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피신청인들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재한 단행본을 발간하거나, 같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 기사나 광고를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거나,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종합유선으로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4. 만약 피신청인들이 위 제3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에게 그 위반한 게재물 1건 또는 광고 1건에 대하여 금 3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5.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6.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주문 제2항, 제3항과 같은 재판·피신청인 주식회사 인사이드월드 및 피신청인 손 [] 는 피신청인 주식회사 인사이드월드가 발행하는 주식회사 사이더월드(INSIDE THE WORLD) 통권 제113호(1997. 8. 20.자)

미국에 요구” “김대중은 서울인가? 평양인가?” 등 위 피신청인이 1996. 3.경 16년간의 추적 끝에 발굴해 냈다는 이른바 『김대중 X-파일』의 내용 등을 기술한 기사를 이 사건 주간지의 통권 제78호부터 제82호까지 게재하여 이를 발행한 바 있다.

다. 이 사건 주간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피신청인 손 [] 또는 특별취재반·취재부명의로 각 게재하고 있다.

(1) 통권 제113호(1997. 8. 20.자)는 표지에서 “97, 김대중 X-파일①” “김대중 씨 사상 검증 받아야 한다” “김정일, 김대중 당선 원하고 있다”고 게재한 다음, 6면 차례란 및 본문 20면부터 21면까지에서는 『김정일, 김대중 씨 대통령 당선 바라고 있다』는 제목하에 “북한은 YS정권과의 대화를 기피하고 오로지 DJ만을 지지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 부자가 2대에 걸쳐 DJ의 당선을 바란다는 것은 이들 사이에 끊을 수 없는 뭔가가 숨겨져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7면 차례란 및 제22면부터 26면까지에서 『97, 김대중 X-파일① 김대중 씨는 사상검증 받아야 한다!』는 제목하에 신청의 정 []과의 대담 형식으로 “DJ는 과거 공산당 활동 국민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며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떳떳하다. 그렇지 않으면 또 전향하지 않은 공산주의자로 비난받는다”, “정 [] 박사는 돌아가시면서 ‘김대중을 조심하라. 믿을 수가 없는 인물이다’ 라고 말하고 김대중의 친북한 행동도 우려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2) 통권 제114호(1997. 9. 3.자)는 표지에서 『97, 김대중 X-파일②』라고 게재한 다음, 9면 차례란 및 본문 26면부터 29면까지에서 『97, 김대중 X-파일② 김대중 씨 공산당활동 얼마나? 몇번 체포됐나? 그 진상!』이라는 제목하에 “김대중은 해방직후 5년간 공산당 활동을 하다가 목포시 경찰지서 습격사건, 남조선로동당 활동자금 제공 혐의 등으로 몇 차례 체포당하였고 6·25 때에는 총살 대상자로 분류, 체포됐으나 실무자들의 착오로 총살을 면하게 된 사상이 불투명한 사람”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본문 30면부터 31면까지에서는 『김대중 X-파일 제1탄 색깔논쟁 정치판에 등장』이라는 제목하에 피신청인 손 []의 저서 ‘김대중 X-파일’을 광고하면서 김일성은 김대중을 남한 대통령 만들기에 애썼다는 등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라. 1997. 8. 25. 초판 1쇄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저작물은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

(1) 표지에서 『김일성의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라는 부제하에 김일성의 친필 서명과 웃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신청인의 친필 서명과 김일성 사진쪽을 바라보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나란히 두었다.

(2) 피신청인 손 []는 이 사건 저작물을 집필하게 된 동기가 오는 12월에 치러야 할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인 김대중의 사상적 불투명성을 파헤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취지의 글을 책머리에 게재하였고, 본문 70면, 71면에서는 “이번 12월 선거를 앞두고 김대중 X-파일이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뿐 아니라 그 언론인(피신청인 손 []를 지칭함)은 다른 4건의 김대중 X-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자칫하면 DJ는 여당후보뿐만 아니라 김대중 X-파일을 갖고 있는 언론과의 치열한 투쟁을 해야 할 판이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3) 본문 제1장에서 제5장까지에서는 『DJ는 무슨 색깔일까』, 『김대중은 전향하지 않은 공산당』 등의 제목하에 “김대중 총재가 6·25전쟁시 공산당원이었고, 당시 체포된 450명과 함께 미해군 함정에서 총살형이 되기 직전 미해군 정보부에 있던 김대중 씨의 같은 고향친구 김 []의 조언에 따라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 “그는 6·25전에 좌익활동을 하다가 자수하여 보도연맹에 가입했었다. 6·25 때는 예비검속되어 총살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 실무자의 착오로 총살을 면했다” “내가 특히 놀란 것은 1960년대에는 불순인물과 은밀히 만난 사실이 있었다는 것 등에 관한 기록이었다” “공산주의와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우리 처지에서 공산주의와 한때나마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을, 그것도 성장과정과 배경이 석연치 못한 부분이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추대한다는 것은 도저히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4) 제6장부터 제9장까지에서는 『김대중 X-파일 추적』 『김일성은 김대중을 가장 믿었다』 『김대중을 남한 대통령으로 만들라-미국에 요구』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 침략하지 않겠다』 등의 제목하에 1974. 8. 9.부터 다음날인 10.까지 평양 대동강변 김일성 별장에서 이루어진 김일성과 일본의 우스노미야도쿠마(宇都官徳馬)의원간의 회담기록(이 회담기록을 피신청인 손 []는 그가 16년간 추적하여 발굴하여 낸 “김대중 X-파일”이라고 부르고 있다) 및 일본 마이니찌 신문의 위 회담에 관한 보도내용을 기초로 한 대담 내용을 게재하면서 “김일성 주석이 일본의 국제적인 거물 정치인 우수노미야에게 ‘김대중을 지지한다. 북한은 그를 믿고 있으며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은밀하게 말하고 김대중을 적극 지지해 주도록 당부함에 따라 우수노미야 씨는 20년 동안 철저히 김대중 씨를 위한 지원활동을 해왔다” “이로써 광복 후 남로당에 가입한 바 있는 김대중 씨가 전향하지 않은 채 정치가가 되었으며 정치가로 변신한 후에도 최근까지 김대중 씨 주변에는 끊이지 않고 용공시비가 일어나며 북한 밀입국

자들과 김대중 씨 사이의 불투명한 관계가 말썽이 된 데 대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김일성-우스노미야-김대중 그들 3명의 깊은 3각 커넥션은 어디까지이며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이제 그 답은 김대중 씨가 내릴 차례이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2.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인격권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

위 소명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의 과거 경력 및 현재 제1야당추천 대통령후보로서의 사회적 지위, 피신청인 손 []의 이 사건 기사 및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기사 및 이 사건 저작물의 주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이 사건 주간지 및 이 사건 저작물의 발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신청인의 인격권의 일부를 이루는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신청인은 그 침해에 대한 배제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이 사건 주간지 부분 및 이 사건 저작물의 인쇄, 제본, 발행, 판매, 배포 등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그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 바, 피신청인 회사와 피신청인 손충무가 지금까지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이 사건 주간지를 통하여 신청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여 온 경위, 피신청인 손 [], 피신청인 엄 []

이 김대중 X-파일 제2탄, 제3탄을 곧 발간할 것이라고 예고 및 정기간행물에 광고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사실, 이로 인한 대통령후보로서의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재한 단행본을 발간하거나, 같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 기사나 광고를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거나,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종합유선으로 방송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은 나아가 아직 발행되지 아니한 『김대중 X-파일 제2탄 ‘김대중은 6·25때 총살 대상자로 체포됐다’』라는 표제의 저작물 및 『김대중 X-파일 제3탄 ‘나는 김대중을 3번 살려 주었다’』라는 표제의 저작물에 대하여도 각 그 인쇄, 제본, 발행, 판매 또는 배포의 금지를 구하고 있으나, 위 두 저작물은 단지 발행이 예고되고 있을 뿐 그 저작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서 위 두 저작물이 신청인의 인격권

을 침해한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부족하고, 기사 위 두 저작물에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신청인의 인격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간행물 발간 등의 금지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을 따로 인용하는 바이므로 신청인의 위 신청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기사 및 이 사건 저작물은 그 목적이 공적 인물인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판단자료를 제공하여 유권자가 대통령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한다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 및 이 사건 저작물의 발행 등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격권으로서 개인의 명예의 보호라는 법익과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취지에서 언론기관의 보도나 공적 인물에 관한 논평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그 논평 내용이 공정한 의견이나 비판에 해당하고, 충분한 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그 기사를 취재한 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표현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기사나 이 사건 저작물이 진실하다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현재 신청인의 대통령후보로서의 지위에 비추어 이 사건 기사나 이 사건 저작물의 내용은 신청인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손상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익형량의 관점에서 볼 때 표현의 자유의 폭이 좁아지고 그 보도의 진실성에 대한 증거가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1)기록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1974. 8. 9.부터 다음날인 10.까지 평양 대동강변 김일성 별장에서 김일성과 일본의 우스노미야도쿠마(宇都官德馬) 의원간에 회담이 이루어졌고 위 회담 중에 당시 야권의 지도자이던 신청인에 관하여 일부 대화가 오고 간 사실은 소명되나, 위 자료를 토대로 나아가 김일성과 신청인 사이에 어떠한 연결고리가 존재하고 있다거나 현재 김정일이 신청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을 소명하기에는 부족하고, (2) 1980년 소위 김대중내란음모사건에 대한 계엄사의 수사발표는 그 수사주체가 강압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배제한 국헌문란행위자로 판명된 점(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판결)에 비추어 위 자료를 기초로 하여 신청인이 공산당 활동을 열심히 하였다거나 신청인은 아직까지도 전향하지 않은 공산주의자라는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며, (3) 그밖에 신청인이 공산주의자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간행물이나 단행본에 게재된 글을 피신청인들이 그대로 믿고 인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기록 및 이 사건 저작물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기사 및 이 사건 저작물의 목적이 공적 인물인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판단자료를 제공하여 유권자가 대통령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한다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기사나 이 사건 저작물의 내용, 저작 동기와 경위, 저작자인 피신청인 손□의 과거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나 이 사건 저작물은 신청인 개인의 경력, 저서, 연설, 회견, 신청인이 속한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토대로 하여 대통령후보인 신청인의 사상을 공정하게 논평하는 데에 표현의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과거 행적에 대한 일부 검증되지 아니한 문헌이나 신청인을 대상으로 한 제3자의 회담기록 등에 기초하여 신청인을 일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서 비방하려는 데에 그 표현의 중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보전의 필요성 유무에 대한 판단

신청인의 대통령후보로서의 지위 및 앞으로 제15대 대통령선거가 2개월 남짓 남은 점, 지금까지 이 사건 주간지에서 신청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여 온 경위, 피신청인 손□, 피신청인 엄□이 김대중 X-파일 제2탄, 제3탄을 곧 발간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 신청인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본안승소판결을 기다림이 없이 즉시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이 사건 월간지의 판매·배포 금지 등을 구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간접강제 부분에 대한 판단

지금까지 피신청인 회사와 피신청인 손□가 주요 선거를 전후로 하여 이 사건 주간지에서 신청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여 온 경위, 피신청인 손□, 피신청인 엄□이 김대중 X-파일 제2탄, 제3탄을 곧 발간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들은 주문 제3항 기재의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결정을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신청인들로 하여금 앞으로 위 주문 제3항

기재결정을 위반할 경우에 신청인에게 그 위반한 게재물 1건 또는 광고 1건에 대하여 각 금 30,000,000원씩을 지급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본다.

5.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현재 발행되어 판매되고 있는 이 사건 저작물의 발행 등 금지부분에 관하여는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손충무, 피신청인 업창용을 위하여 각 보증으로 금 30,000,000원씩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10.

재판장 판사 이 규 홍
판사 오 석 준
판사 서 경 환

제1목록

도서명: 김대중 X-파일 제1탄

(부제: 김일성의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

저 자: 손

발행인: 업

발행처: 새세상출판사

제2목록

1. 별지 제1목록 기재 저작물을 광고하는 내용
2.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지금도 김정일이 김대중을 지지하며 그의 대통령 당선을 바라고 있다는 내용
3. 김일성이나 김정일과 김대중 사이에 무엇인가 연결고리가 있다는 내용
4. 김대중은 공산주의자라는 내용
5. 김대중이 과거에 공산당(남로당) 활동을 하였다는 내용.

언론중재 신청과 처리 절차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업무

* 仲裁業務

•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자와 해당 언론기관 간의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회복시켜 주고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是正勸告業務

•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언론기관의 발행인에게 是正을 권고하여 건전한 언론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재신청서의 제출요령

- 중재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문제가 된 보도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보도문 및 중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중재신청을 할 때는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대리인(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이 중재를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창구에는 중재신청서 용지를 비치하고 무료로 배부해 드립니다.

중재신청 및 처리절차

* 중재신청의 종류

- 반론보도청구 - 언론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자신의 반론을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정보도청구 - 허위보도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정정기사를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후보도청구 -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형사절차가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자신의 결백을 추후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신청기간

-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추후보도청구의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중재사건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중재부의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할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중재회의

- 중재회의는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관할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중재부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중재기일에 해당 중재부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 중재대리인에 대한 중재부의 허가**

• 변호사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의 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중재기일에 중재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 및 합의간주된 경우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합의간주 -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직권에 의한 중재결정 및 중재불성립결정**

•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중재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중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또한 중재부는 중재에 적합치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합니다.

***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중재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중재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취하 및 취하간주**

• 중재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재기일에는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중재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신청

-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않아도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의 신청은 중재불성립결정 또는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

* 전국 15개 중재부,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

- 언론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7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에 사무처가 있습니다.
- 75명의 중재위원들은 각 시도별로 설치된 중재부에 소속되어 중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5인 이내로 구성된 중재부는 서울에 5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춘천, 청주, 전주, 창원, 제주에 각 1개씩 모두 15개의 중재부가 있습니다.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이 맡고 있습니다.

* 중재부의 관할구역

-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합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및 방송관련법, 선거법 중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한 조항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第16條(反論報道請求權) ① 定期刊行物에 公表된 事實的 主張에 의하여 被害를 받은 者(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事實報道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月 이내에 定期刊行物을 발행하는 者(이하 “言論社”라 한다)에게 書面으로 反論報道文의 게재를 請求할 수 있다. 다만, 事實報道가 있는 후 6月이 經過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反論報道請求書에는 被害者 또는 그 代理人의 署名·捺印과 住所를 기재하고, 異議對象인 記事의 本文과 게재를 요청하는 反論報道文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言論社가 反論報道掲載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被害者 또는 그 代理人과 反論報道的 內容, 크기 등에 관하여 協議한 후 日刊新聞과 週 1回 이상 발행하는 定期刊行物 및 通信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日 이내에 같은 定期刊行物에, 그밖의 定期刊行物은 編輯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發行號에 이를 無料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被害者가 反論報道請求權의 행사에 正當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請求된 反論報道的 內容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商業的인 廣告만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反論報道는 事實的 陳述과 이를 명백히 傳達하는데 필요한 說明에 局限되고 違法한 內容을 포함할 수 없다.

⑤ 反論報道的 內容은 讀者投稿의 形式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反論報道文의 字數는 異議의 대상이 된 公表內容의 字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⑥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團體의 公開會議와 法院의 公開裁判節次에 관한 事實記事의 경우에는 第1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⑦ 國家·地方自治團體,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당해업무에 대하여 그 機關 또는 團體를 代表하여 反論報道的 請求할 수 있다.

第17條(言論仲裁委員會) ① 言論報적으로 인한 紛爭을 仲裁하고 定期刊行物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言論仲裁委員會(이하 “仲裁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仲裁委員會는 40人 이상 80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며, 委員은 學識과 經驗 및 德望이 있는 者 중에서 文化觀光部 長官이 위촉하되, 委員의 5分の 2 이상은 法官의 資格이 있는 者 중에서 法院行政處長이 추천한 者로 하고 委員 중 5分の 1 이상은 言論界 人士 중에서 위촉한다.

③ 仲裁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副委員長 2人을 두되, 각각 委員 중에서 互選한다.

④ 仲裁委員會의 委員長·副委員長 및 委員의 任期는 각각 3年으로 한다.

⑤ 政黨의 黨籍을 가진 者(公職選舉 및 選舉不正防止法에 의하여 실시하는 選舉에 候補者로 登錄한 者를 포함한다)와 公務員(法官의 資格을 가진 者 및 教育公務員은 제외한다) 및 言論社에 소속된 現職 言論人은 仲裁委員會의 委員이 될 수 없다.

⑥ 仲裁委員會의 委員은 法律과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職務를 행하며, 職務上 어떠한 指示도 받지 아니한다.

⑦ 仲裁委員會의 委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當과 實費補償을 받을 수 있다.

第18條(仲裁節次등) ① 被害者 또는 言論社는 言論報道로 인한 反論報道請求權 또는 民法 第764條에 의해 訂正報道 등을 구하는 權利에 관한 紛爭에 대하여 第16條 第1項이 정하는 期間(第16條 第1項의 節次를 거친 경우에는 被害者와 言論社間 協議 不成立된 날 부터 14日)안에 書面으로 仲裁委員會에 仲裁를 申請할 수 있다. 仲裁申請에 관하여는 第16條 第2項 및 第7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 仲裁은 5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된 仲裁部에서 하되, 仲裁部의 長은 法官의 資格이 있는 委員이어야 한다.

③ 仲裁部의 長은 필요한 경우 당해 仲裁事件의 대상 定期刊行物을 발행하는 言論社에 仲裁對象 表現物이나 그 寫本의 제출을 命하거나 仲裁에 필요한 證據調査를 할 수 있다.

④ 仲裁은 申請接受日로부터 14日 이내에 하여야 하며 仲裁部의 長은 지체없이 仲裁期日을 지정하여 當事者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출석을 요구받는 者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출석하여야 한다.

⑤ 第4項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仲裁申請人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仲裁申請을 取下한 것으로 보며, 言論社인 被申請人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仲裁申請 趣旨에 따라 反論報道 또는 訂正報道를 이행하기로 合議된 것으로 본다. 다만, 天災·地變 기타 正當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疏明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仲裁結果 當事者間에 合議가 성립된 경우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合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이외에는, 仲裁部는 職權으로 當事者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申請趣旨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公평한 해결을 위한 仲裁決定을 할 수 있고, 仲裁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仲裁不成立 決定을 한다. 다만, 職權으로 仲裁決定을 하는 경우에는 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仲裁申請 接受日로부터 21日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⑦ 仲裁結果 當事者間에 合議가 成立된 경우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合議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第6項의 規定에 의한 仲裁決定은 裁判上 和解와 동일한 效力이 있다. 다만 當

事者が 第6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을 送達받은 날부터 7日 이내에 仲裁部에 異議申請을 한 경우에는 그 決定은 效力을 상실한다.

⑧ 仲裁委員會는 定期刊行物에 의한 침해사항을 審議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發行人에게 是正을 勸告할 수 있다.

⑨ 仲裁의 節次와 仲裁部의 구성방법, 그 管轄, 事務處의 組織, 是正勸告의 방법과 節次, 仲裁委員會 委員의 手當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9條(反論報道請求事件의 審判) ① 仲裁委員會의 仲裁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法院에 反論報道請求의 訴를 제기할 수 없다. 反論報道請求의 訴는 第18條 第6項의 仲裁不誠立 決定 또는 第7項의 異議申請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日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被害者는 反論報道請求의 訴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民事訴訟法 第693條에 의한 申請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② 第18條 第1項의 規定은 民法 第764條의 規定에 의한 權利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에 대한 第1審 裁判은 被告의 普通裁判籍 所在地의 地方法院 合議部의 管轄로 한다.

④ 第1項 規定에 의한 請求에 대하여는 民事訴訟法의 假處分節次에 관한 規定에 의하여 裁判하며, 請求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法院은 第16條 第3項 내지 第5項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反論報道의 게재를 命할 수 있다. 다만, 民事訴訟法 第697條 및 第705條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⑤ 反論報道請求事件의 裁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第19條의 2(不服節次) ① 反論報道請求를 인용한 裁判에 대하여는 抗訴하는 이외에 不服을 申請할 수 없다.

② 第1項의 不服節次에서 審理한 결과 反論報道請求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判명되는 경우에는 反論報道請求를 인용한 裁判을 取消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경우 言論社가 이미 反論報道義務를 이행한 때에는 그의 申請에 따라 取消裁判의 내용을 報道할 수 있음을 宣告하고, 申請에 따라 被害者로 하여금 言論社가 이미 이행한 反論報道와 取消裁判의 報道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 게재 사용료로서 적정한 損害의 賠償을 하도록 命하여야 한다.

第20條(追後報道請求權) ① 定期刊行物에 의하여 犯罪嫌疑가 있다거나 刑事上의 措置를 받았다고 報道된 者는 그에 대한 刑事節次가 無罪判決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終結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月 이내에 書面으로 言論社에 이 사실에 관한 追後報道의 게재를 請求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追後報道의 내용은 請求人의 名譽나 權利回復에 필요한 범위내에 局限된다.

③ 追後報道請求權에 관하여는 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反論報道請求權에 관한 이 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21條(補助金) 國家는 豫算의 범위 안에서 仲裁委員會에 補助金을 支給할 수 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언론중재위원의 위촉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 장관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의 대우) 중재위원회는 그 위원에 대하여 중재위원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의 지급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24조(중재신청)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중재신청서를 중재위원회 사무처 또는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26조(중재관할권등) ①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다만, 동일한 관할구역 안에 수개의 중재부가 설치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재사건을 담당할 관할중재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외지사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중재관할권은 서울특별시내 소재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③ 위원장은 관할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중재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중재절차) ① 중재부의 결정은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5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② 중재부의 장은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중재위원회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대상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피신청인이 1차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중재부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게재를 요하는 반론보도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게재방법 등을 정하여 2차 중재기일 출석요구서와 함께 피신청인에게 송부한다.

⑤ 당사자가 법 제18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새로운 중재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당해 중재부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신청이 이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시 중재기일을 지정한다.

⑦ 중재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⑧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재에 관한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28조(중재화해조서 및 중재결정문 등) ①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

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가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합의성립통지서 및 그 중재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정 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하는 때에는 중재결정문 또는 중재불성립결정문을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서 등본을 그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제29조(시정권고) ① 법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소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

④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는 중재위원회 명의로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에게 서면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통보받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⑥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받은 시정권고소위원회는 당해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권고를 철회한다.

⑦ 시정권고소위원회의 운영, 시정권고의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0조(사무처) ① 중재위원회의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각 중재부에 사무처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사무처 직원의 정원·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1조(관계서류의 보존) ①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중재절차에 관한 조서와 관계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을 위하여 법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등) ① 중재위원회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는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 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신청·관할·중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4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방송법

第41條(反論報道請求權) ① 放送에 公表된 事實的 主張에 의하여 被害를 받은 者(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事實報道가 있음을 안 날부터 1月 이내에 放送局에 書面으로 反論 報道的의 放送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事實報道가 있는 후 6月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反論報道請求書에는 被害者 또는 그 代理人의 署名·捺印과 住所를 기재하고, 異議對 象인 報道內容과 放送을 요청하는 反論報道文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放送局이 反論報道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被害者 또는 代理人과 反論報道的의 內容 등에 관하여 協議한 후 이를 無料로 放送하여야 한다. 다만, 被害者가 反論報道請求權의 行 사에 正當한 이익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나 請求된 反論報道的의 內容이 명백히 事實에 반하 는 경우 또는 商業的인 廣告만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放送을 거부할 수 있다.

④ 反論報道的는 事實的 陳述과 이를 명백히 傳達하는 데 필요한 說明에 局限되고 違法的인 內容을 포함할 수 없다.

⑤ 反論報道文의 字數는 異議의 대상이 된 公表內容의 字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⑥ 放送局이 행하는 反論報ados는 그 公表가 행하여진 동일한 放送周波數에 의하여 동일한 效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⑦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團體의 公開會議과 法院의 公開裁判節次에 관한 事實放 送의 경우에는 第1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⑧ 國家·地方自治團體,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당해 業務에 대하여 그 機關 또는 團體를 대표하여 反論報ados를 請求할 수 있다.

第42條(다른 法律의 準用) 放送에 의한 紛爭의 仲裁과 그 節次에 관한 사항과 反論報 道請求事件의 審判에 관한 사항 및 追後報道請求權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定期刊行物 의 登錄 등에 관한 法律 第17條 내지 第2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39조(다른 법령의 준용)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에 의한 분쟁의 중재와 그 절 차에 관한 사항과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에 대하여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8조와 제33조 규 정을 준용한다.

종합유선방송법

第45條(反論報道請求權) ① 綜合有線放送에 公表된 事實적 主張에 의하여 被害를 받은 者(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事實報道가 있음을 안 날부터 1月 이내에 綜合有線放送局에 書面으로 反論報道的 放送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事實報道가 있는 후 6月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反論報道請求書에는 被害者 또는 그 代理人의 署名·捺印과 住所를 기재하고, 異議對象인 報道內容과 放送을 요청하는 反論報道文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綜合有線放送局이 反論報道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被害者 또는 代理人과 反論報道的 內容등에 관하여 協議한 후 이를 無料로 放送하여야 한다. 다만, 被害者가 反論報道請求權의 행사에 正當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請求된 反論報道的 청구내용이 명백히 事實에 반하는 경우 또는 商業的인 廣告만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放送을 거부할 수 있다.

④ 反論報道는 事實적 陳述과 이를 명백히 傳達하는 데 필요한 說明에 局限되고, 違法한 內容을 포함할 수 없다.

⑤ 反論報道文의 字數는 異議의 대상이 된 公表內容의 字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⑥ 綜合有線放送局이 행하는 反論報道는 그 公表가 행하여진 것과 동일한 채널 및 時間帶에 동일한 效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⑦ 第1項의 反論報道請求에 프로그램 供給者가 함께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당해 프로그램 供給者도 第6項의 規定에 의한 방법으로 反論報道義務를 이행하여야 한다.

⑧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團體의 公開會議과 法院의 公開裁判節次에 관한 事實放送의 경우에는 第1項 내지 第7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國家·地方自治團體,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당해 業務에 대하여 그 機關 또는 團體를 대표하여 反論報道를 請求할 수 있다.

⑩ 綜合有線放送에 의한 紛爭의 仲裁과 그 節次에 관한 사항과 反論報道請求事件의 審判에 관한 사항 및 追後報道請求權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定期刊行物의 登錄등에 관한 法律 第17條 내지 第2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

제37조(다른 법령의 준용) 법 제4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에 의한 분쟁의 중재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8조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第8條의 3(放送의 選舉報道에 대한 反論報道請求權) ① 選舉日 전 90일부터 選舉日 까지 放送에 의하여 公表된 人身攻撃, 정책의 歪曲宣傳 등으로 피해를 받은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그 放送이 있음을 안 때부터 48時間 이내에 放送社(第70條(放送廣告)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施設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代表에게 書面으로 反論報道的 放送을 請求할 수 있다.

② 放送社의 代表는 第1項의 反論報道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候補者나 그 代理人과 反論報道的 內容 등에 관하여 協議한 후 이를 요구받은 때부터 24時間 이내에 無料로 放送하여야 한다. 다만, 候補者가 反論報道請求權의 행사에 正當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請求된 反論報道的 內容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商業的인 廣告만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放送을 거부할 수 있다.

③ 第2項에 의한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放送社의 代表는 選舉放送審議委員會에 지체없이 이를 回附하고, 選舉放送審議委員會는 回附받은 때부터 48時間 이내에 이를 審議·決定하여야 한다.

④ 放送法 第41條(反論報道請求權)第2項·第4項 내지 第7項의 規定은 第1項의 反論報道請求에 이를 準用한다.

第8條의 4(定期刊行物の 選舉報道에 대한 反論報道請求權) ① 選舉日 전 90일부터 選舉日까지 定期刊行物の登錄등에 관한法律 第2條(用語의 定義)의 規定에 의한 定期刊行物에 公表된 人身攻撃, 정책의 歪曲宣傳 등으로 피해를 받은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그 報道가 있음을 안 때부터 48時間 이내에 定期刊行物을 發行하는 者(이하 “言論社”라 한다)에게 書面으로 反論報道文의 게재를 請求할 수 있다.

② 言論社의 代表는 第1項의 反論報道請求를 받은 때에는 48時間 이내에 候補者나 그 代理人과 反論報道的 內容·크기 등에 관하여 協議한 후 編輯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定期刊行物の 다음 發行號에 이를 無料로 掲載하여야 하되, 다음 發行號가 選舉期間 종료후에 發行되는 경우에는 당해 言論社의 부담으로 日刊新聞에 이를 掲載하여야 한다. 다만, 候補者가 反論報道請求權의 행사에 正當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請求된 反論報道的 內容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商業的인 廣告만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報道를 거부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言論社의 代表는 定期刊行物の登錄등에 관한法律 第17條(言論仲裁委員會)의 規定에 의한 言論仲裁委員會에 지체없이 이를 回附하고, 言論仲裁委員會는 回附를 받은 때부터 48時間 이내에 이를 審議·決定하여야 한다.

④ 定期刊行物の登錄등에 관한法律 第16條(反論報道請求權)第2項·第4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第1項의 反論報道請求에 이를 準用한다.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 및 지역중재부 주소

사무처 및 서울중재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02)732-6031~4, 6011~3 725-0050 FAX. 730-9420 · 5487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03-17, 18(백산빌딩 8층)	(051)759-7083~4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541-1(제일빌딩 5층)	(053)763-0020~1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74-2(동명회관 A동 5층)	(062)676-0360~1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27-1(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42)525-0778~9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46(송림빌딩 703호)	(0331)211-9027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709-10(화남빌딩 6층)	(0361)55-2878
충북중재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94-62(세전빌딩 502호)	(0431)276-8083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132(비사별빌딩 8층)	(0652)88-0010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용호동 73-39(동산빌딩 301호)	(0551)63-1787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81-3(현곡빌딩 4층)	(064)22-3328

國內言論關係判決集 第5輯

(言論仲裁 통권 67호 부록)

1998년 6월 20일 인쇄

1998년 6월 30일 발행

發行人 金 斗 鉉

編 著 言論仲裁委員會 調查研究室

發 行 言 論 仲 裁 委 員 會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빌딩15층

전 화 : 732-6031~4, 732-6011~3, 725-0050,

730-9498, 7317-571, 588

FAX : 730-9420, 5487

(이 책은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조성한 공익자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

